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법 무 부

I . 일 반 회 계

사 업 명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진	이동희	김혜진
	사업시행주체	국가소송과	02-2110-4401	02-2110-3208	02-2110-4505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3,677	2,961	-	2,543	2,543	△418	△1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108	2,961	2,746	2,689	2,746	2,689	-	57	2,543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 NDSL 운영경비	2,734	2,734	2,675	-	59	1,676	1,676	1,660	1,676	1,660	-	16	1,248
· 송무관련 운영경비	588	566	517	-	49	585	578	536	578	536	-	41	595
○ 비목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108	2,961	2,746	2,689	2,746	2,689	-	57	2,543
· 일반수용비(210-01)	871	652	652	-	-	870	662	657	662	657	-	5	87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5	5	-	-	11	6	5	6	5	-	1	10
· 특근매식비(210-05)	72	68	68	-	-	72	70	58	70	58	-	11	85
· 임차료(210-07)	7	7	7	-	-	7	7	7	7	7	-	-	7
·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28	-	18	1,046	1,046	1,040	1,046	1,040	-	6	1,046
· 국내여비(220-01)	56	56	46	-	1	56	56	49	56	49	-	7	56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3	14	13	-	1	14
·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	-	83	83	80	83	80	-	3	83
· 특정업무경비(250-03)	40	40	40	-	-	37	37	37	37	37	-	-	34
· 일반연구비(260-01)	645	645	604	-	41	620	620	620	620	620	-	-	202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35	40	35	-	5	40
·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자산취득비(430-01)	1,108	1,108	1,060	-	48	75	75	57	75	57	-	18	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28	2,961	2,746	2,689	2,746	2,689	-	57	2,543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 일반수용비(210-01)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 NDSL 운영경비	2,734	2,734	2,675	-	59	1,676	1,676	1,660	1,676	1,660	-	16	1,248
- 일반연구비(260-01)	645	645	604	-	41	620	620	620	620	620	-	-	202
-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28	-	18	1,046	1,046	1,040	1,046	1,040	-	6	1,046
- 자산취득비(430-01)	1,043	1,043	1,043	-	-	10	10	0	10	0	-	10	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송무관련운영경비	588	566	517	-	49	585	578	536	578	536	-	41	595
- 일반수용비(210-01)	171	167	167	-	-	170	170	165	170	165	-	5	171
- 공공요금및세제(210-02)	10	5	5	-	-	11	6	5	6	5	-	1	10
- 특근매식비(210-05)	72	68	68	-	-	72	70	58	70	58	-	11	85
- 임차료(210-07)	7	7	7	-	-	7	7	7	7	7	-	-	7
- 국내여비(220-01)	56	47	46	-	1	56	56	49	56	49	-	7	56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3	14	13	-	1	14
-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	-	83	83	80	83	80	-	3	83
- 특정업무경비(250-03)	40	40	40	-	-	37	37	37	37	37	-	-	34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35	40	35	-	5	40
-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자산취득비(430-01)	65	65	17	-	48	65	65	57	65	57	-	8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 및 자문예산) 법무부 소관 헌법·행정·국가소송 등 고액,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예산
- (NDSL 운영경비) 효율적인 국가·행정 소송수행과 관리를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 (송무관련 운영경비) 국가·행정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기관의 법률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관 운영·교육 등 필수적인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항),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정부법무공단법(전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②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 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 12. 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 5. 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 운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23	4,112	4,022	2,961	2,5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운영
: (2025 본예산) 1,676백만원 → (2026) 1,248백만원, 428백만원 감액
- ② 송무관련 운영경비
: (2025 본예산) 585백만원 → (2026) 595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③ 소송 및 자문예산
: (2025 본예산) 700백만원 → (2026) 700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행정소송 승인 및 지휘 역량 강화
 - 국가·행정소송 직접수행 내실화, 소송수행정 지도 감독 철저
 -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지휘·지원 강화
 - 국가·행정소송 패소율 억제 및 국가예산 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 원고 또는 피고 소제기 → 소장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소송수행자 지정(검사, 공익법무관, 법무부 직원, 소송수행청 공무원) → 소송진행 및 보고(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법정출석 대응) →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항소·상고 여부 판단(국가소송은 검찰지휘, 행정소송은 법무부) → 확정 또는 항소심, 상고심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22	2,961	3,206	3,206	3,206	
2025~2029		2,961	2,543	2,543	2,543	2,5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2022년도 법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37	△14	2,323	-	△41	-	2,282	2,280	98.1	99.9	-	2
2023	4,112	-	4,112	-	△254	-	3,858	3,830	93.1	99.3	-	28
2024	4,022	-	4,022	-	△237	-	3,785	3,677	91.4	97.1	-	108
2025	2,961	-	2,961	-	△215	-	2,746	2,689	90.8	97.9	-	57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국가배상금 지급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진	이동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4401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가배상금 지급	107,743	131,765	-	144,835	144,835	13,070	9.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 소송비용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 배상금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 일반수용비(210-01)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 배상금(310-01)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 소송비용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일반수용비(210-01)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 배상금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배상금(310-02)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 (배상금)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00	100,000	100,000	131,765	144,8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집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송비용

: (2025 본예산) 700백만원 → (2026) 940백만원, 240백만원 증액

② 배상금

: (2025 본예산) 131,065백만원 → (2026) 143,895백만원, 12,830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배상금의 적정한 편성으로 청구 즉시 지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연 5~12% 고율의 지연손해금 절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 개정으로 2015. 10. 1. 이전에는 20%, 이후에는 15%, '19.6.1. 이후부터는 1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 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000	131,765	131,765	131,765	131,765	
2025~2029		131,765	144,835	144,835	144,835	144,8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송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승소율 제고(배상원금 및 지연이자 절감)
- 정밀한 소요 예측에 의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지출 최대한 억제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000	-	150,000	-	343	-	150,343	149,311	99.5	99.3	-	1,032
2023	100,000	-	100,000	-	254	-	100,254	100,253	100.0	100.0	-	1
2024	100,000	-	100,000	-	7,743	-	107,743	107,743	107.7	100.0	-	-
2025	131,765	-	131,765	-	215	305,300	437,280	437,279	331.9	100.0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1031-301-310-02) 1차 예비비 2,431억원, 2차 예비비 622억원 배정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법무활동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국가배상금 지급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진	이동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4401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팀	박내칠	02-2182-007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658	678	-	702	702	24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 인건비 지원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 비목별 분류(합계)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 민간경상보조(320-01)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 민간경상보조(320-01)	658	658	658	-	-	678	678	678	678	678	-	-	7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경상보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② 추진경위

- 국가로펌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당 기간 예산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다른 공단과 달리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다보니 상당 부분 적자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업무부담 가중됨
- 이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송 등에서 국가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2011년부터 국가가 지원(정부법무공단법 일부 개정)
- 자체 수입만으로는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고 있고,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결원 상태에 있는 변호사의 충원 필요하므로 공단 재정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9	287	658	678	70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부법무공단
- 사업 수혜자 : 정부법무공단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보조	정부법무 공단	702백만원	정액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2025 본예산) 678백만원 → (2026) 702백만원, 24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 등에 대한 법률지원 성과(건)	목표	-	-	1,692 (신규)	1,680	1,680	최근 3년간 법률 지원 건수('22년	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종류별(국가, 행정, 민사, 헌법, 중재) 본안사건수 + 신청사건수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	-	1,766	1,710	-	1,516건, '23년 1,610건, '24년 1,766건) 평균		
	달성도	-	-	104.4	101.8	-	1,631건 + 3%(49건) = 1,680건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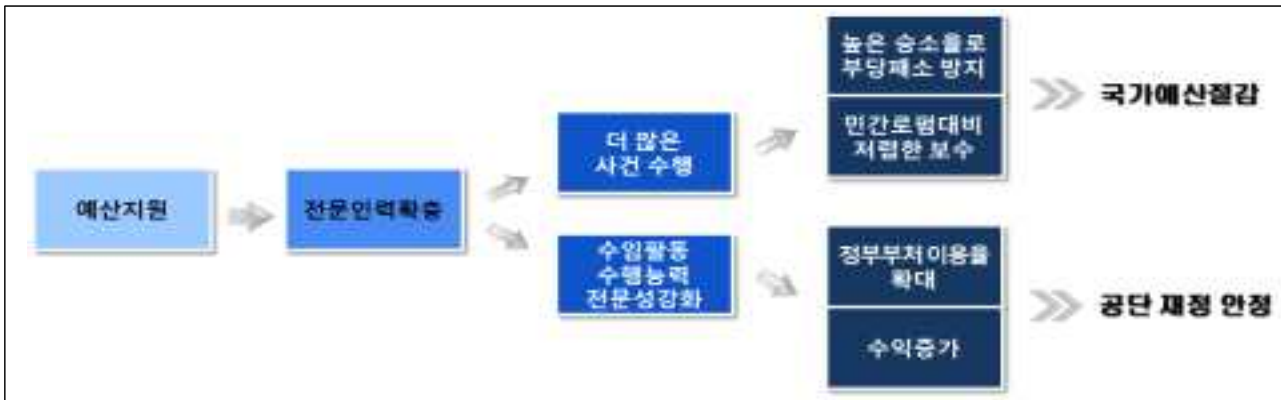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력 충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공단은 전문변호사 충원 및 유지 가능
- 높은 승소율로 부당 패소로 지출되는 국고를 절감하고, 민간 대비 저렴한 보수로 국가 소송예산 절감에 기여
- 인력 충원으로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되고, 수임 사건 확대 가능해져 재정안정 도모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58	678	658	658	658	
2025~2029		678	702	702	702	7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등 다양한 법률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적규모를 확보하고, 전문성·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체 재정으로 흑자 기조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재정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인건비 일부 지원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으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신뢰도·인지도 상승으로 수입 사건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 다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2011년, 2013년, 2017년~2020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 자립할만한 재정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흑자 기조 유지될지 불투명
- 경쟁력·전문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를 점진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으나, 저가의 수입료로 인해 자체 재정만으로는 순조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고려될 필요
-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저렴한 보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수행자 교육 지원 등 공익 기능 수행에서 오는 손실을 일부 보전 필요
- 높은 승소율로 국가배상금 절감하고, 저렴한 보수로 국가의 소송예산을 절감하는 등 비용 대비 효용성이 매우 큰 사업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9	-	319	-	-	-	319	319	100.0	100.0	-	-
2023	287	-	287	-	-	-	287	287	100.0	100.0	-	-
2024	658	-	658	-	-	-	658	658	100.0	100.0	-	-
2025	678	-	678	-	-	-	678	67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9	319	319	319	-	319	319	-	-	100.0
2023	287	287	287	287	-	287	287	-	-	100.0
2024	658	658	658	658	-	658	658	-	-	100.0
2025	678	678	678	678	-	678	678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 산출방식 변경, 변호사 퇴사 방지 및 승소율 제고 방안 마련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0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김민정	김준성 검사	조혜영
	사업시행주체	국제법무지원과	02-2110-3670	02-2110-3668	02-2110-3662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360	516	516	580	510	△6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1	381	360	-	21	516	516	503	516	503	-	13	510
·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분석	179	179	163	-	16	179	179	174	179	174	-	5	179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202	202	197	-	5	337	337	329	337	329	-	8	273
· 전문위원 운영	-	-	-	-	-	-	-	-	-	-	-	-	58
○ 비목별 분류(합계)	381	381	360	-	21	516	516	503	516	503	-	13	510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48
· 일반수용비(210-01)	198	198	186	-	12	327	327	319	327	319	-	8	263
· 임차료(210-07)	-	-	-	-	-	6	6	6	6	6	-	-	6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1
· 국외업무여비(220-02)	114	114	107	-	7	114	114	109	114	109	-	5	114
· 사업추진비(240-01)	19	19	19	-	-	19	19	19	19	19	-	-	19
· 정책연구비(260-02)	50	50	48	-	2	50	50	50	50	50	-	-	50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1	381	360	-	21	516	516	503	516	503	-	13	510
·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 분석	179	179	163	-	16	179	179	174	179	174	-	5	179
-일반수용비(210-01)	57	57	45	-	12	57	57	56	57	56	-	1	57
-국외업무여비(220-02)	65	65	63	-	2	65	65	61	65	61	-	4	65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정책연구비(260-02)	50	50	48	-	2	50	50	50	50	50	-	-	50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202	202	197	-	5	337	337	329	337	329	-	8	273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일반수용비(210-01)	141	141	141	-	-	270	270	263	270	263	-	7	206	
-임차료(210-07)	-	-	-	-	-	6	6	6	6	6	-	-	6	
-국외업무여비(220-02)	49	49	44	-	5	49	49	48	49	48	-	1	49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2	
• 전문위원 운영	-	-	-	-	-	-	-	-	-	-	-	-	58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48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1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법률지원)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법률지원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기업(중소·중견기업)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23. 8. 8.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 신설에 따라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등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규범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업무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381	516	5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 사업 수혜자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 분석
: (2025) 179백만원 → (2026) 179백만원, 전년동
- ②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 (2025) 337백만원 → (2026) 273백만원, 64백만원 감액
- ③ 전문위원 운영
: (2025) 0백만원 → (2026) 58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 법무활동 프로 그램'이 '법무 활동' 프로그램 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국제법무지원과 신설('23. 8. 8.)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370건
2024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423건 ○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의 등 법률설명회 개최 총 29회 - 해외 현지 설명회 4회 개최('24. 5. 브라질, '24. 7. 베트남, 홍콩, '24. 9. 독일) - 국내 온·오프라인 설명회 25회(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공동 개최) ○ 관련 자료 책자 발간 3권 -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2024 최신동향)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독일편)
2025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407건 ○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의 등 법률설명회 개최 총 23회 - 해외 현지 설명회 4회 개최('25. 3. 키르기스스탄, '25. 4. 독일, '25. 7. 인도, '25. 12. 프랑스) - 국내 온·오프라인 설명회 20회(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공동 개최) ○ 관련 자료 책자 발간 2권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UAE편)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일본편,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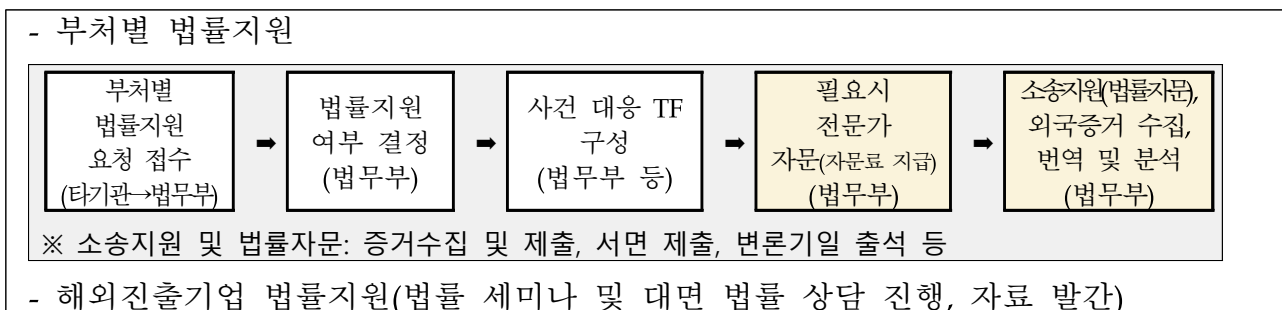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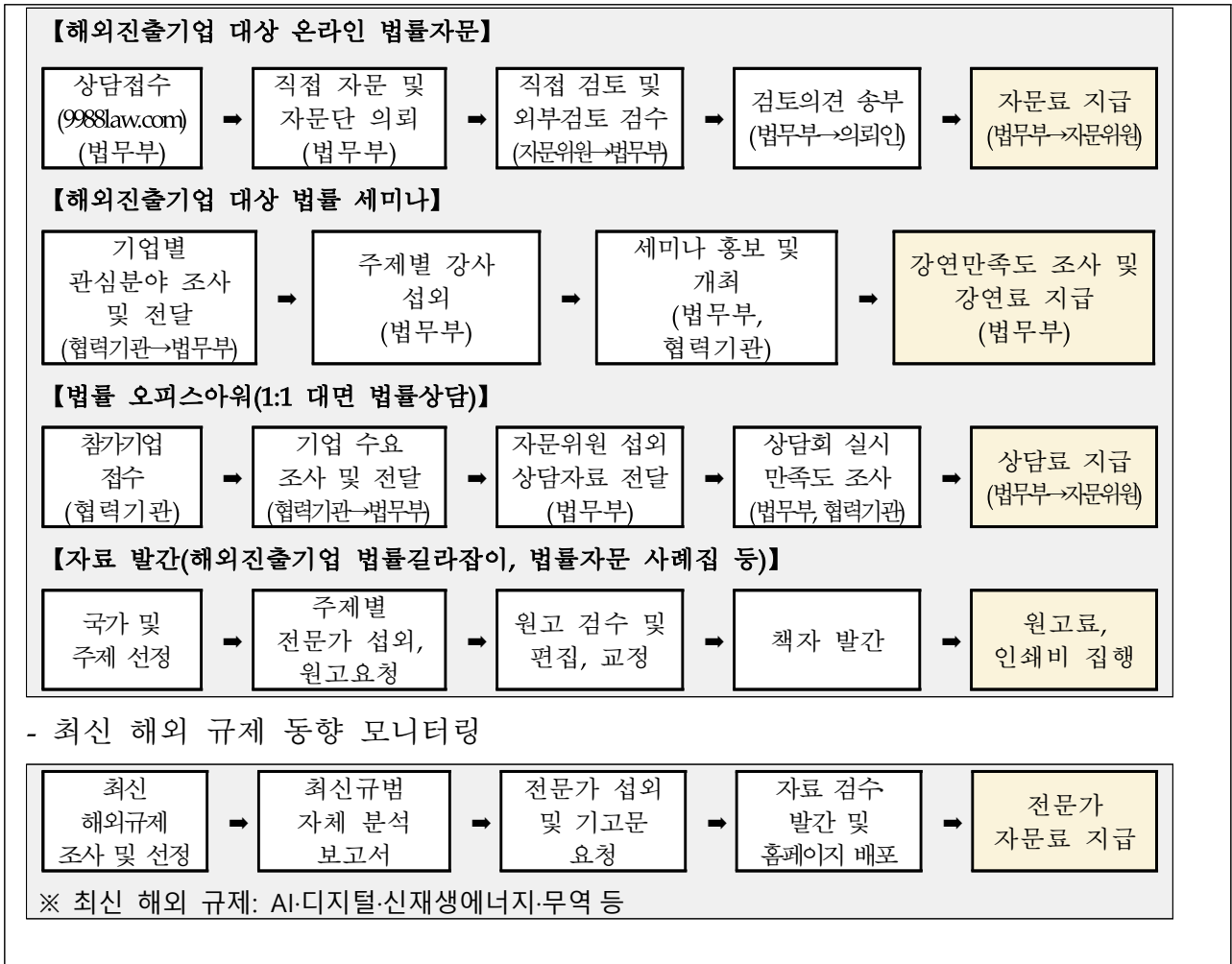
-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
- 국제규제·규범 동향 모니터링 및 리서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해 정부 시책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 마련하는 등 사전 리스크 관리하여 각종 국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
- 해외 법률기관, 해외 현지 법률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등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여 정부부처 국제법률 지원에 적극 활용
-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 법률지원 제공을 통해 국가수출전략인 원전, 방산, 해외 건설, 콘텐츠 등 산업의 수출·수주 확대 지원 실현 일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81	516	381	381	381	
2025~2029		516	721	742	764	7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등과 관련된 각종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국제법무지원과가 신설되었지만 이를 대응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력 증원(2명) 및 인건비 증액 필요성이 있음(법사위, 25예산)
 - 최근 외국기업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충실한 법률지원이 요구되는데, 현재 국제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위원 등 인력이 부족해 보여 그 보강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증액 필요성이 있음(예결위, 25예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전문인력 증원 및 인건비 증액 적극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국내·외 국제소송 中 소가, 사회적 파급효 등 기준으로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및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 온·오프라인 법률자문, 현지 법률설명회·상담회 등 개최 통해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화
- 미국, EU, 중국 등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및 수입·수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상국 들을 중심으로 안보·환경·디지털·투자 등 분야의 주요 규범·규제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하고,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가하여 동향 파악
- 주요 교역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ESG·AI·투자 등 최신분야의 중요 규범·규제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하고, 관련 국제회의 협의체 등에 참석하여 정부입장 개진 및 국내법과의 법률 정합성 제고에 기여
- 외교부, KOTRA 등을 통한 현지 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국내 소관부처와 외국 정부기관 간 우리기업 지원(상호 상대방 국가 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협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381	-	381	-	-	-	381	360	94.5	94.5	-	21
2025	516	-	516	-	-	-	516	503	97.5	97.5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새롬
	사업시행주체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671	734	734	808	842	108	1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4	684	730	680	22	28	842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68	152	-	16	165	173	162	173	162	10	1	265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17	113	4	-	117	109	97	105	93	10	2	117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82	88	82	-	6	88
·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69	-	11	80	80	80	80	80	-	-	80
·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57	-	3	60	60	56	60	56	-	4	60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7	-	-	17	17	15	17	15	2	-	17
· 공무원 보수	201	201	175	-	26	207	207	193	207	193	-	15	215
○ 비목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4	684	730	680	22	28	842
· 상용임금(110-03)	167	167	147	-	20	172	172	161	172	161	-	11	179
· 일반수용비(210-01)	235	235	228	-	7	235	223	216	223	216	-	7	26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	7	4	-	3	7	7	5	7	5	-	2	7
· 임차료(210-07)	15	15	7	-	8	15	27	27	27	27	-	-	15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 국내여비(220-01)	7	7	7	-	-	7	7	6	7	6	-	1	7
· 국외여비(220-02)	195	195	184	-	11	195	191	190	191	190	-	1	246
·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5
·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2	12	10	12	10	-	2	11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정책연구비(260-02)	30	33	29	4	-	30	34	12	30	8	22	-	50
· 고용부담금(320-09)	33	33	26	-	7	34	34	30	34	30	-	4	35
·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4	684	730	680	22	28	842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68	152	-	16	165	173	162	173	162	10	1	265
-일반수용비(210-01)	26	26	26	-	-	26	26	26	26	26	-	-	51
-임차료(210-07)	15	15	7	-	8	15	27	27	27	27	-	-	15
-국외여비(220-02)	109	109	101	-	8	109	105	104	105	104	-	1	160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9
-정책연구비(260-02)	10	13	13	-	-	10	10	-	10	-	10	-	30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17	113	4	-	117	109	97	105	93	10	2	117
-일반수용비(210-01)	81	81	81	-	-	81	69	68	69	68	-	1	81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3	4	3	-	1	4
-국외여비(220-02)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정책연구비(260-02)	10	10	6	4	-	10	14	4	10	-	10	-	10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82	88	82	-	6	88
-일반수용비(210-01)	87	87	87	-	-	87	87	81	87	81	-	6	87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69	-	11	80	80	80	80	80	-	-	80
-일반수용비(210-01)	30	30	23	-	7	30	30	30	30	30	-	-	30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국외여비(220-02)	43	43	40	-	3	43	43	43	43	43	-	-	43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57	-	3	60	60	56	60	56	-	4	60
-일반수용비(210-01)	9	9	9	-	-	9	9	9	9	9	-	-	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	7	4	-	3	7	7	5	7	5	-	2	7
-국외여비(220-02)	24	24	24	-	-	24	24	24	24	24	-	-	24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2	12	10	12	10	-	2	11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4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7	-	-	17	17	15	17	15	2	-	17
-일반수용비(21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여비(220-02)	4	4	4	-	-	4	4	4	4	4	-	-	4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정책연구비(260-02)	10	10	10	-	-	10	10	8	10	8	2	-	10
· 공무원 보수	201	201	175	-	26	207	207	193	207	193	-	15	215
-상용임금(110-03)	167	167	147	-	20	172	172	161	172	161	-	11	179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33	33	26	-	7	34	34	30	34	30	-	4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UN국제상거래법 위원회,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국제규범 성안 과정보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국제법무연구」 학술지 발간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전문 교육과정인 'O.K.아카데미' 및 국제기구·로펌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 (통상협상 법률지원) FTA, BIT 등 통상·투자 협정 제·개정 시 법률자문역으로 참여하여 상대국과의 세부 문언 협상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검토 실시

- (법무분야 국제협력) 해외 법무요인 등과 국제법무 관련 교류 및 타국과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해외 주재 법무협력관 자료 공유 및 회의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2.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각 국 중앙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공무직 보수) 국제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영문 에디터 및 국제법 전문위원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② 추진경위

- '09. 한-미 FTA 후속조치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및 시행
- '10. 법무부 주요 정책 및 최신 판례 등을 소개하는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영문저널 발간 시작
- '1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3. 3.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
- '13.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14.부터 'O.K 아카데미(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추진
- '18. 캄보디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 카타르·홍콩, '20. 세계은행 등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법무협력협정 체결
- '19. 외국법자문사 22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건 설립인가,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총 7회 개최,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94건 자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누계 50건, 신규 6건), 해외 로펌·국제기구 등에 청년법조인 총 45명 파견
- '20. OECD 경쟁위원회 등 국제회의와 한-중 FTA, RCEP 등 각종 통상협상 참석 및 관련 자문 제공,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68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자격승인 12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신규 12건) 등
- '21.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규범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총 40회, 각종 통상협상 참석 총 32회

및 관련 법률자문 총 30건,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324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8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건 설립인가 등

- '2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6개 실무작업반 및 본회의 등 참석, 미국 국무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면담, 국제거래법연구단 정례회의 개최, 외국법 자문사 15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3.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및 사업확대,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총회 등 법무 관련 국제회의 13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3회, 「통상법률」의 '등재학술지' 재승격 등
- '24.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 등 국제회의 11회 참석,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재개, 외국법자문사 10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5.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회의 10회 참석,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 및 운영, 외국법자문사 9명 자격승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7	743	728	734	84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25) 734백만원 → ('26) 842백만원, +108백만원
- ①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25) 165백만원 → ('26) 265백만원, +100백만원
- ②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25) 117백만원 → ('26) 117백만원, 전년동
- ③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25) 88백만원 → ('26) 88백만원, 전년동
- ④ 통상협상 법률지원
: ('25) 80백만원 → ('26) 80백만원, 전년동
- ⑤ 법무분야 국제협력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 전년동
- 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25) 17백만원 → ('26) 17백만원, 전년동
- ⑦ 공무원 보수
: ('25) 207백만원 → ('26) 215백만원,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 법무활동 프로 그램'이 '법무 활동' 프로그램 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4회) - UNCITRAL 본회의 부대행사(7. 7.),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11. 11.)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주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14건) 및 법률자문 제공(24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제공(자문위원 243명, 자문 194건, 법률상담 행사 10회, 설명회 8회 등)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5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2개소)
2023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3회) - 법무부-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권 세미나(2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28건) 및 법률자문 제공(20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제공(자문위원 213명, 자문 370건, 법률상담 행사 및 설명회 11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설립인가(2개소)
2024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1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재개(9.9) -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11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22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2개소)
2025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0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개정 T/F 발족(5월) 및 운영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6월) 및 운영 - 'HCCH Asia-Pacific Week'(6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11월) 등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37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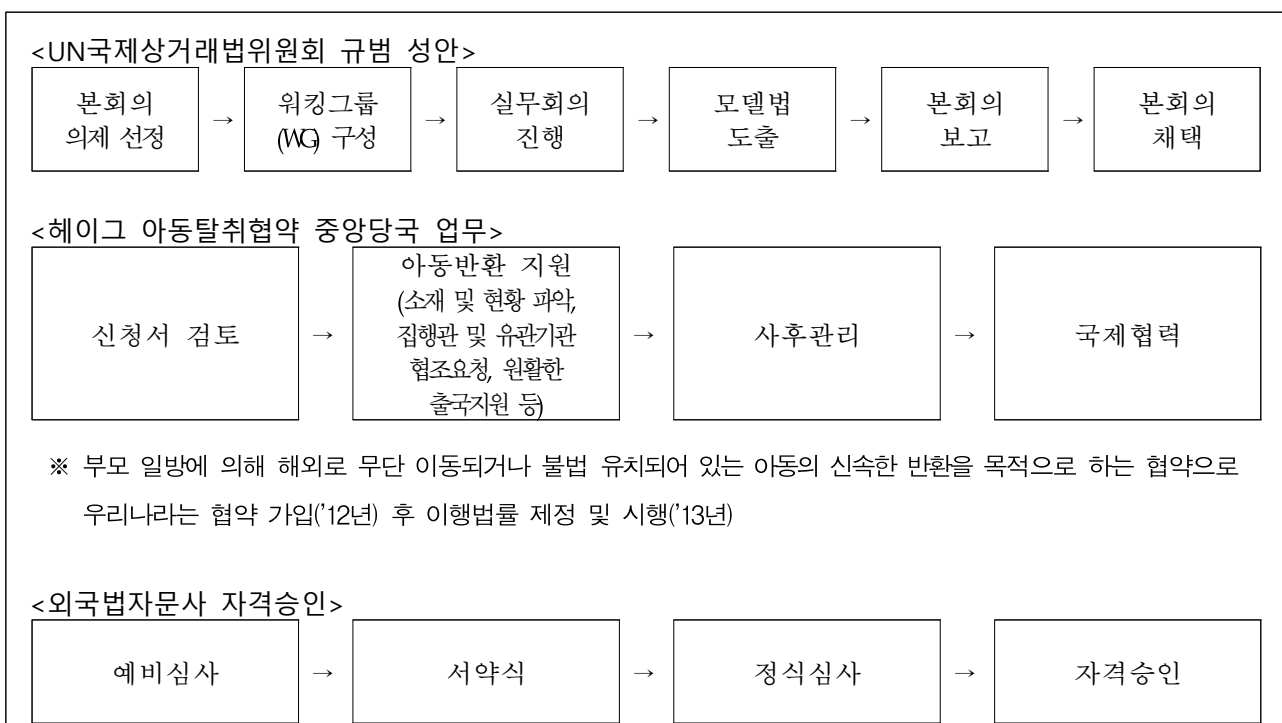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신규 거래유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거래규범 성안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및 국내 도입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 구축
- FTA, BIT 등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가 및 관계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전문 학술지 발간 등으로 범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인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28	734	743	757	773	
2025~2029		734	792	816	840	8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예결위,22결산)
 - 조직개편(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프로그램 이관(예결위,24예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통상법률」은 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우수한 연구 실적, 엄격한 심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3. 12. 3년마다 진행되는 KCI 학술지 평가 결과 기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격
▪ 조직개편(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프로그램 이관	▪ 프로그램(국제법무활동 1400) 신설 및 사업 이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각종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법제와 입장 반영하고, 선진적인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 지속
 - 국제협약의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무분야 국제협력
 -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법률서비스 분야 경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국제중재·조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하고 청년 법조인의 국제기구·해외 로펌 진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
- 통상협상 법률지원
 - 각종 국제통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부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국가적 통상 관련 대응 역량 강화하고 국익 극대화 노력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충실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5	△42	763	-	34	-	797	743	97.4	93.2	-	53
2023	743	-	743	-	△3	-	740	618	83.2	83.5	3	119
2024	728	-	728	3	-	-	731	671	92.2	91.8	4	56
2025	734	-	734	4	△4	-	734	684	93.2	93.2	22	2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국제회의(대면), 국제교류가 재개됨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및 국제사법 번역 감수, 영문잡지 제작 등 연말 잔여 집행 소요에 34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원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 53백만원 불용
2023	- 전용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3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3백만원 이월
2024	- 불용 : 공무원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 26백만원,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 연구용역 주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발주 일정에 따른 미완료로 22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17)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431-300)	220-02	4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1431-303)	220-02	제52차 UNCITRAL 회의 참석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새롬
	사업시행주체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25	150	150	238	216	66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 법제정비 지원	102	105	77	24	4	92	116	105	92	81	-	11	156
· 공무원 보수	56	56	48	-	8	58	58	47	58	47	-	11	60
○ 비목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 상용임금(110-03)	46	46	39	-	7	48	48	38	48	38	-	10	50
· 일반수용비(210-01)	18	18	17	-	1	18	18	13	18	13	-	5	2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1	-	1	-	-	1	1
· 임차료(210-07)	7	7	6	-	1	7	7	6	7	6	-	1	9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국외여비(220-02)	25	25	24	-	1	25	25	21	25	21	-	4	60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8
· 정책연구비(260-02)	40	43	19	24	-	30	54	54	30	30	-	-	40
·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9	9	8	9	8	-	1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 법제정비 지원	102	105	152	24	4	92	116	105	92	81	-	11	156
-일반수용비(210-01)	18	18	17	-	1	18	18	13	18	13	-	5	2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0	-	1	1	1	-	1	-	-	1	1
-임차료(210-07)	7	7	6	-	1	7	7	6	7	6	-	1	9
-국외여비(220-02)	25	25	24	-	1	25	25	21	25	21	-	4	6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8
-정책연구비(260-02)	40	43	19	24	-	30	54	54	30	30	-	-	40
· 공무직 보수	56	56	175	-	8	58	58	47	58	47	-	11	60
-상용임금(110-03)	46	46	39	-	7	48	48	38	48	38	-	10	50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9	9	8	9	8	-	1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의 법제 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 법령 연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② 추진경위

- '19. 3. '남태평양 도서국가 국제 중재법 세미나' 공동 개최(아시아개발은행)

- '19. 5.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법제 개선방안' 현지 세미나 개최
- '19. 6. '대한민국과 몽골의 형사법제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9. 8.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초청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 9. '미얀마 지식재산권 법령 법제 정비지원' 세미나 개최
- '20. 1. '몽골 형사법제 정비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 '20. 3. 지난 5개년 법제정비 지원 사업 자체평가
- '20. 11. ADR 컨퍼런스 개최(개도국 법률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세션)
- '20. 12. '캄보디아 중재·조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난 5개년 '법제 정비지원 사업 결과 종합 자료집' 발간
- '21. 11. UNCITRAL과 개도국 공무원·법률가 대상으로 'ADR 스페셜 세션' 개최
- '21. 12. '아태지역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
- '22. 7. 태국 사법연구원 대상 워크숍 개최
- '22. 11. '제11회 아태지역 ADR 컨퍼런스',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 개최
- '23. 4.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하여 조정법제 개선방안 연구결과 전달 및 우리나라 조정 실무 소개
- '23. 12. 캄보디아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기구(약칭 'NADR') 설립 지원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법무부 공동 세미나 개최
- '24. 9. 캄보디아 조정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3월)을 토대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을 초청하여 단기 집중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 실시하고, 법무부 고위급을 초청하여 캄보디아의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 사업 논의
- '24.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 실시
- '25.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캄보디아에 가장 적합한 조정법제 모델을 탐색
- '25. 7.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및 NADR 소속 조정인, 법관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관련 기관 견학
- '25.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견문 확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26.~'30.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 정비 5개년 계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2	156	158	150	21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25) 150백만원 → ('26) 216백만원, +66백만원

① 법제정비 지원

: ('25) 92백만원 → ('26) 156백만원, +64백만원

② 공무원 보수

: ('25) 58백만원 → ('26) 60백만원,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 법무활동 프로 그램'이 '법무 활동' 프로그램 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7. 태국 사법연구원 대상 워크숍(7. 20.)
2023	○ 4. 캄보디아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4. 25.~26.) ○ 12. 캄보디아 조정법제정비 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2. 6.)
2024	○ 9.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등 초청하여 단기 집중교육 실시(9. 24~28.) ○ 9.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사업 논의 ○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 관련 현지 세미나 개최(11.27.~12.1.)
2025	○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 ○ 7. 캄보디아 고위급 초청 조정법제 비교법 연구 세미나 개최(7.23.) ○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건문 확장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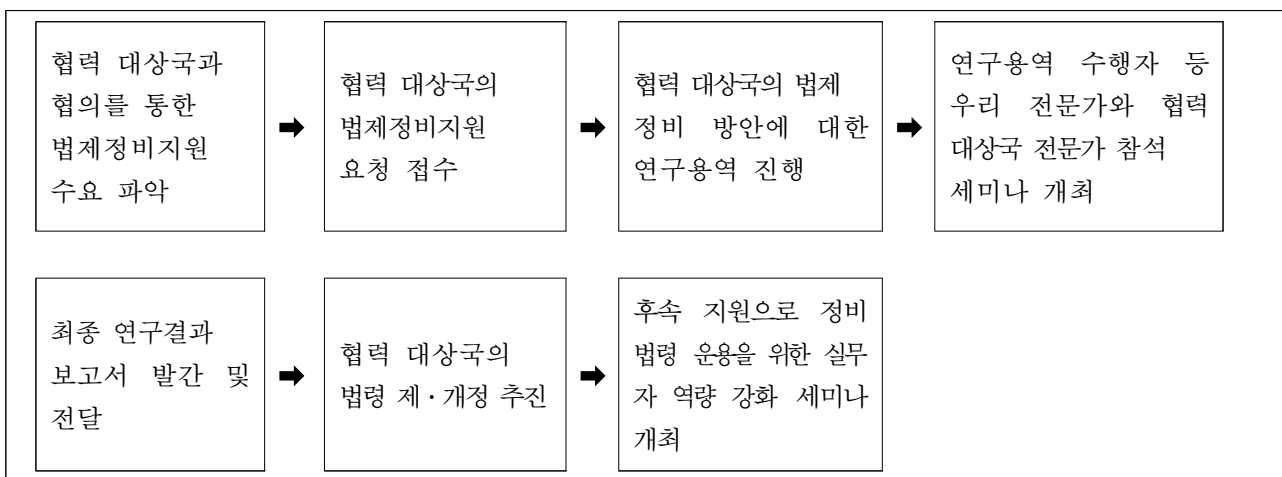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 및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개도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가 형성될 경우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
- 국내 로펌 및 국내 법조인들 진출의 발판 마련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일반적인 ODA와 달리, 법제정비 개선 사업은 전문가 단기 파견 및 연구 등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

-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실제 진출), 대한상사중재원, KOTRA 등과 같이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8	150	164	179	195	
2025~2029		150	377	388	400	4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무원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23결산, 예결위)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공무원 퇴직 후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채용분야(통·번역) 특성상 퇴직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계약 시 사전 통보기간 설정, 수시 면담 실시 등 공백기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개발도상국의 중재법 등 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법조인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법률 환경 조성에 기여
- 한편,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원조 효과가 큰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UNCITRAL 아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실시 추진 및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수집·연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	-	162	-	△ 34	-	128	108	66.7	84.4	2	18
2023	156	-	156	2	-	-	158	123	78.8	77.8	3	32
2024	158	-	158	3	-	-	161	125	79.1	77.6	24	12
2025	150	-	150	24	-	-	174	152	101.3	87.4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국제회의·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34백만원 전용 - 불용 : 2022년, 공무원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6백만원 및 개도국 내부상황 불안정으로 인한 법제정비 요청 저조로 국외여비 7백만원 불용,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 : 공무원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등 8백만원 불용, 기타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이월 :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24백만원 이월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14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투자 분쟁중재 수행및대응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조아라	민경원 검사	신혜정
	사업시행주체	국제투자분쟁과	02-2110-3331	02-2110-4245	02-2110-431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262	4,717	4,717	4,896	4,723	6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7,731	7,706	7,731	7,706			4,723
· 국제투자분쟁 예방및대응	84	84	84			72	85	85	85	85			71
· 전문위원 인건비	143	143	130		13	148	148	123	148	123			154
○ 비목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7,731	7,706	7,731	7,706			4,723
· 상용임금(110-03)	119	119	113		6	123	123	102	123	102			128
· 일반수용비(210-01)	4,862	4,962	4,962			4,496	7,506	7,506	7,506	7,506			4,496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 국외여비(220-02)	243	143	143			45	49	49	49	49			45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23	23	23	23	23			23
· 고용부담금(320-09)	23	23	16		7	24	24	20	24	20			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4,717	7,706	4,717	7,706			4,723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84	84	84			72	85	85	85	85			71
-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44	53	53	53	53			44
-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 국외여비(220-02)	27	27	27			20	24	24	24	24			20
- 사업추진비(240-01)	2	2	2			3	3	3	3	3			2
· 전문위원 인건비	143	143	130		13	148	148	123	148	123			148
- 상용임금(110-03)	119	119	113		6	123	123	102	123	102			128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 고용부담금(320-09)	23	23	16		7	24	24	20	24	20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룬스타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정부 상대 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중재의향서 접수사건 대응, UNCITRAL 등 ISDS 제도 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석, ISDS 예방 교육 및 FTA·BIT 등 투자협정 협상 등을 통한 ISDS 사전 방지 ※예방 사업은 국제법무지원과 수행 사업
- (전문위원 인건비) ISDS 전담 수행을 위한 국제법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1조의3 제2항 제3호(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6항(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 ② 추진경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91	5,504	5,275	4,717	4,7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2025) 71백만원 → (2026) 71백만원, 전년동
② 전문위원 인건비 : (2025 본예산) 148백만원 → (2026 요구) 154백만원, 6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 법무활동 프로 그램'이 '법무 활동' 프로그램 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 정부입장발표 브리핑 실시('22. 8. 31.) ·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 신청('22. 10. 15.)
2023	· 론스타 사건 정부 및 론스타 양측 판정 취소신청 제기('23. 7. ~ 9.)
2025	·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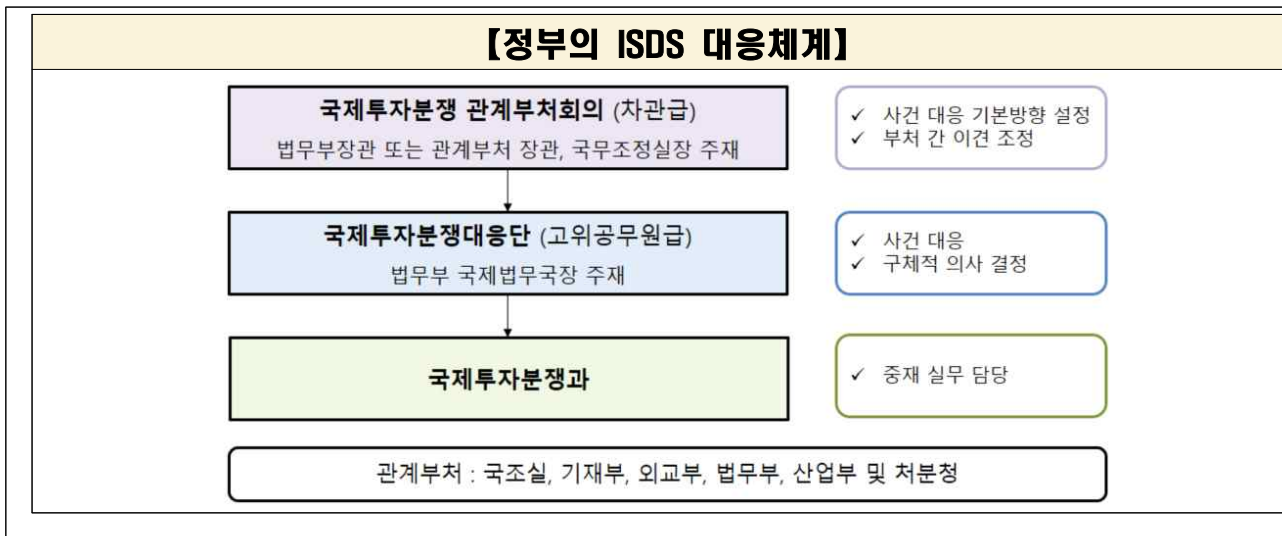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국익 제고
- UNCITRAL 등 각종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75	4,717	5,135	4,517	4,517	
2025~2029		4,717	4,717	4,717	4,859	5,0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 |
|---|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22년 예산 집행률 78.5%로 부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미흡사업으로 선정) |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성과지표 달성, 집행률 제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정 |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19	△328	4,891	-	△298	-	4,593	3,604	73.7	78.5	-	989
2023	5,504	-	5,504	-	-	-	5,504	5,472	99.4	99.4	-	32
2024	5,275	-	5,275	-	-	-	5,275	5,262	99.8	99.8	-	13
2025	4,717		4,717	-	4	3,010	7,731	7,706	163.4	99.7	-	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1.19.)	국제거래및국제 통상법률지원 (1431-301)	국외여비 (220-02)	4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및대응 (1431-303)	국외여비 (220-02)	제52차 UNCITRAL 회의 참석 필요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론스타	210	01	3,010	론스타 사건 정부대리로펌에 대한 미지급 법률자문비용('25.12.2.)
합 계			3,010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기업환경지수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업환경지수 수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재철	김영수	김좌환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39	2,653	2,653	2,653	2,65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	79	79	78	79	78	-	1	79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28	28	14	-	14	28	28	28	28	28	-	-	28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 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 일반수용비(210-01)	53	53	51	-	2	53	53	53	53	53	-	-	53
· 임차료(210-07)	34	34	22	-	12	34	34	34	34	34	-	-	34
·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	9
· 정책연구비(260-01)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3	23	23	23	23	-	-	23
-임차료(210-07)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2
-국외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	79	79	78	79	78	-	1	79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임차료(210-07)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국외여비(220-02)	26	26	26	-	-	26	26	25	26	25	-	1	26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	-	14	-	14	28	28	28	28	28	-	-	28
-일반수용비(210-01)	-	-	2	-	2	16	16	16	16	16	-	-	16
-임차료(210-07)	-	-	12	-	12	12	12	12	12	12	-	-	12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정책연구비(260-02)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B-Ready)에 대비한 평가체계 분석 및 기업환경 우수국가 기업법제 분석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제도개선 노력 홍보를 위하여 기업법제 우수국가 등에서 세미나 개최하려는 것임
- (서울국제콘퍼런스) 기업환경평가기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협력대상국 관계자, 기업환경개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환경 법제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것임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하여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기업법제의 변화방향 및 구체적인 법제 내용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13항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
-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임
- '17. 6. 베트남 기업환경 법제개선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 '17. 7.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호주 현지 세미나 개최
- '17. 10.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캐나다 현지 세미나 개최
- '17.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8. 6.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노르웨이, 영국 현지 세미나 개최
- '18.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러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 '18. 10. 발표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5위 달성
- '18.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9. 5.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미국 워싱턴 현지 세미나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한 정부대표단 세계은행 방문 설명
- '19. 9.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조지아 현지 세미나 개최
- '19. 10. 발표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5위 연속 달성
- '19.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 4.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3일간 진행, 기재부 총괄)
- '20.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화상 세미나 개최
- '21. 5.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기재부 총괄)
- '21.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뉴질랜드, 독일, 일본 화상 워크숍 개최(2일간 개최)
- '21.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2.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2.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3.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싱가포르, 홍콩)
- '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4. 08. 12.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상장회사 간담회/기업투자환경 세미나)
- '24.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8	223	253	2,653	2,65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환경 평가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보조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 센터)	2,400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세미나 개최 : ('25) 56만원 → ('26) 56백만원, 전년동
② 서울국제콘퍼런스 개최 : ('25) 79백만원 → ('26) 79백만원, 전년동
③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 ('25) 28백만원 → ('26) 28백만원
④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
⑤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25) 2,400백만원 → ('26) 2,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재기관 역량 강화(보조) (단위:점)	목표	-	-	(신설)	73	-	국제중재활성화 실적 은 직전 3년간 평균값 대비 5%(91점) 상회하 는 95점을 근거	국제중재사건 신청 금액별 점수*×0.5+국제중재 홍보 활동**×0.5 *95점:1억원 이하(1점), 1억원 초과 10억원 이 하(2점), 10억원 초과(3점), 금액 없는 사 건(2점) **51점:국제중재행사 개최(10점),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석(3점)	대한상사중재원 사건관리 시스템 통계, 자체 통계
	실적	-	-	-	190.5	-	국제중재홍보활동 실 적은 대한상사 중재원 의 국내외 행사(3회) 및 설명회 개최(7회)		
	달성도	-	-	-	261.0	-	실적등을 참고 51점으 로 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 2022.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3	○ 2023.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4	○ 2024. 10.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4. 8. ~ 12.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	○ 2025. 11.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5.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5.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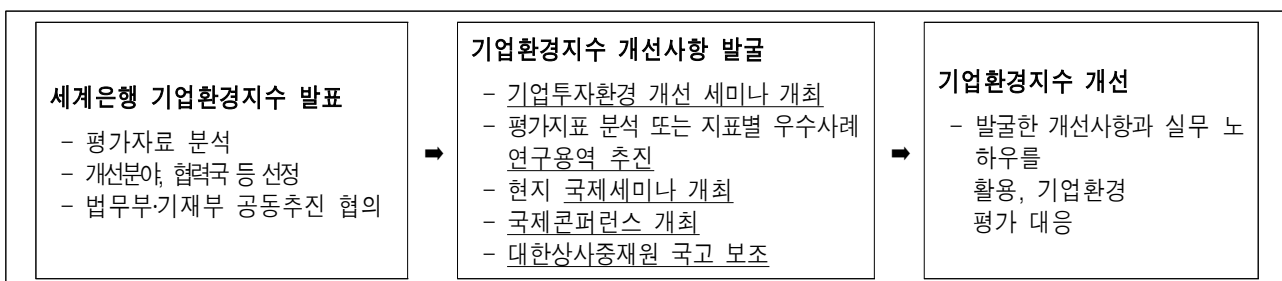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순위 향상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 기여('19년 기준 190개국 중 5위)
- ※ '24년 신기업환경평가(B-Ready) 실시('25. 12. 29. 101개 국가 대상 평가 최종 보고서 공개)
- 과잉경쟁 방지, 분야별 가중치 산정 곤란 등의 사유로 종합 순위 미발표, 단순 합산 평균은 1위(분야별 순위 : 필수재 공급, 과세제도, 시장경쟁, 도산 1위, 입지 선정 3위, 노동 8위, 국제교역 25위, 분쟁해결 26위, 창업 38위, 금융 46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3	2,653	2,653	2,653	2,653	
2025~2029		2,653	2,653	2,653	2,653	2,6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연구용역 과제 추진
-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현지 세미나 및 기재부, 세계은행 공동으로 서울 국제콘퍼런스 개최 예정
-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8	-	248	-	-	-	248	246	99.2	99.2	-	2
2023	223	-	223	-	-	-	223	222	99.6	99.6	-	1
2024	253	-	253	-	-	-	253	239	94.5	94.5	-	14
2025	2,653	-	2,653	-	-	-	2,653	2,260	85.2	85.2	-	3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400		2,400	2,400		2,400	2,008	-	-	8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아라	김해경	양진원
	사업시행주체	법무심의관실	02-3110-3501	02-2110-4262	02-2110-351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5,110	4,659	-	4,554	4,554	△105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4,646)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 법제정비(민법개정)	546	546	546	-	-	324	324	316	324	316	-	8	325
·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697	3,697	3,697 (3,233)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 공무원상용임금	37	40	39	-	1	39	39	38	39	38	-	1	43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32	828	-	4	882	882	881	882	881	-	1	887
○ 비목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 상용임금(110-03)	31	34	33	-	1	32	32	32	32	32	-	-	35
· 일반수용비(210-01)	802	752	752	-	-	622	622	622	622	622	-	-	622
· 특근매식비(210-05)	55	55	55	-	-	45	45	39	45	39	-	6	51
· 임차료(210-07)	90	90	88	-	2	78	78	78	78	78	-	-	78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38	38	36	-	2	38	38	36	38	36	-	2	38
·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 사업추진비(24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정책연구비(260-02)	340	340	340	-	-	320	320	320	320	320	-	-	320
· 고용부담금(320-09)	6	6	6	-	-	7	7	6	7	6	-	1	8
· 법정민간대행(320-08)	3697	3697	3697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3233)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4646)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 법제정비(민법개정)	546	546	544	-	2	324	324	316	324	316	-	-	325
-일반수용비(210-01)	333	333	333	-	-	153	153	153	153	153	-	-	153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	-	36	36	36	36	36	-	-	36
-특근매식비(210-05)	20	20	20	-	-	10	10	4	10	4	-	6	11
-임차료(210-07)	27	27	27	-	-	15	15	15	15	15	-	-	15
-국내여비(220-01)	10	10	8	-	2	10	10	8	10	8	-	2	10
-정책연구비(260-02)	120	120	12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697	3,697	3,697 (3,233)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 공무직상용임금	37	40	39	-	1	39	39	38	39	38	-	1	43
-상용임금(110-03)	31	34	33	-	1	32	32	32	32	32	-	-	35
-고용부담금(320-09)	6	6	6	-	-	7	7	6	7	6	-	1	8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32	830	-	2	882	882	881	882	881	-	1	887
-일반수용비(210-01)	469	419	419	-	-	469	469	469	469	469	-	-	469
-특근매식비(210-05)	35	35	35	-	-	35	35	35	35	35	-	-	40
-임차료(210-07)	63	63	61	-	2	63	63	63	63	63	-	-	63
-국내여비(220-01)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사업추진비(240-01)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정책연구비(260-02)	220	220	220	-	-	220	220	220	220	220	-	-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지원 - 민법개정위원회)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와 사회·경제 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함, 민법의 현대화는 변화한 경제·사회 현실반영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중대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조계·학계의 협력을 위해 '23. 6. 16. 민법개정위원회 출범하고 개정작업 착수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분쟁을 심의 조정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 '23년 1월 인권구조과 소관에서 법무심의관실 소관으로 이관
- (법제정비 지원 - 민사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국민의 재산·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 법령을 선진화하고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21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② 추진경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추진 경과>

- 2016. 5.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7. 5. 30.)
- 2017. 5. 3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7. 7. 1.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5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9. 4. 17.)
- 2019. 4. 17.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6곳)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
- 2023년부터 법률구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분리됨.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 업무추진 경과>

- 2018.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18.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18.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19.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5. 민법 일부개정
- 2019.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9. 5. 민사소송법 제642조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
- 2019.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19. 8.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19.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 2019. 9.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19.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11.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0. 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공동소관>
- 2020.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동소관>

- 2020.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0.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1. 민법 일부개정
- 2021.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2021.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2021.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회제출
- 2023.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2023.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3.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7.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2023.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익법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3	4,341	5,162	4,659	4,554

* '23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이관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법정 민간 대행	대한법률 구조공단	3,299	전액 국고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법제 정비 사업(민법개정위원회)
: (2025 본예산) 324백만원 → (2026) 324백만원, 전년 동
- ② 민간대행[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2025 본예산) 3,414백만원 → (2026) 3,299백만원, 115백만원 감액
- ③ 법제 정비 사업 운영(민사법등)
: (2025 본예산) 882백만원 → (2026 요구) 888백만원, 6백만원 증액
- ④ 공무원 상용임금
: (2025 본예산) 39백만원 → (2026) 43백만원, 4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809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904건
2022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2,824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201건
2023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5,94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730건
2023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5,94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730건
2024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706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68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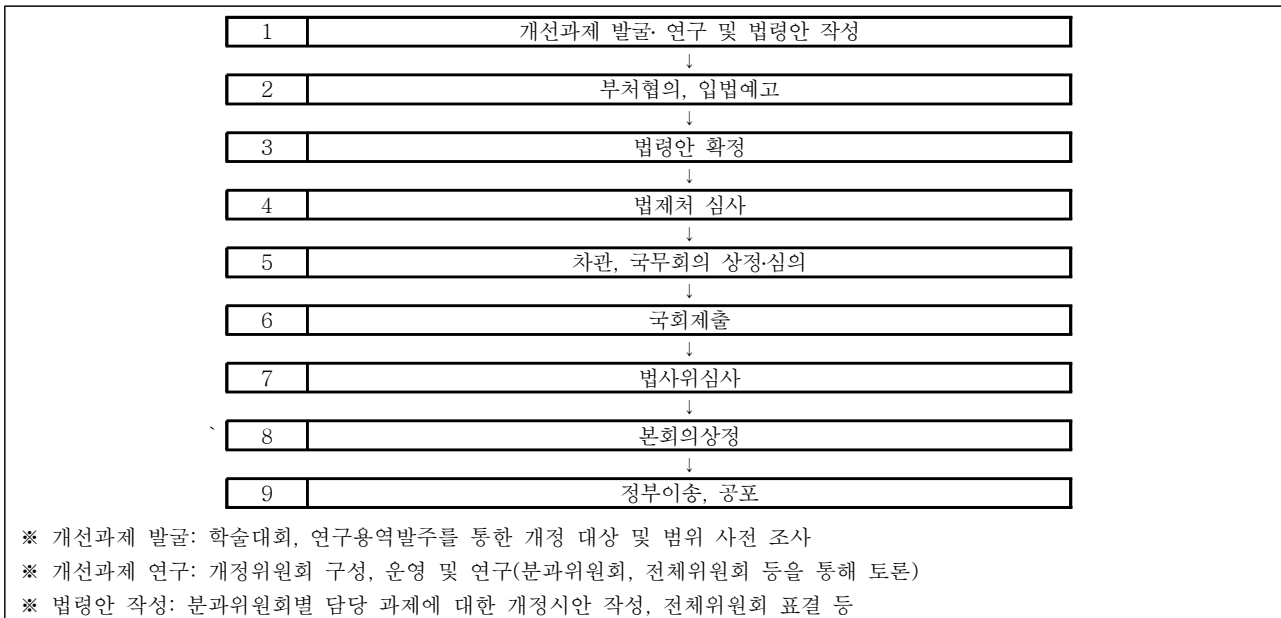
-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추진(민법개정위원회)
- 민법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임, 변화한 경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 정부 내 로펌으로서 고품질 법무서비스 지원
- 유권해석 강화 등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교류 강화

- 임대차분쟁 조정으로 국민 권리 증진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값 급등과 전문자격사 가담 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업무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사례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 제도 발전과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구하라법 시행[민법]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62	4,658	5,505	5,717	5,943	
2025~2029		4,659	4,798	4,941	5,089	5,2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통폐합(사업 이관하여 통합운영)
- (결과요약) 대법원의 '사법서비스향상'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며, 동일사업을 두 부처가 나누어 보조금을 지원하여 통합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무부의 '한국 법학원 운영지원'은 폐지 후 대법원 '사법서비스향상'으로 이관하여 2023년부터 '한국 법학원지원'과 통합 운영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97	△24	1,173	-	△6	-	1,168	1,129	96.2	99.6	20	19
2023	4,341	-	4,341	20	-	-	4,361	4,361	100.0	100.5	-	-
2024	5,162	-	5,162	-	△47	-	5,115	5,111	99.0	99.9	-	4
2025	4,659	-	4,659	-	-	-	4,659	4,649	99.8	99.8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65	265	265	265	-	265	265	-	-	100.0
2023(임조위)	3,407	3,407	3,031	3,407	-	3,031	3,031	-	376	89.0
2024(임조위)	3,697	3,697	3,233	3,697	-	3,233	3,233	-	464	87.4
2024(임조위)	3,414	3,414	3,414	3,414	-	3,414	3,180	-	234	93.1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조사업 >

- '22년까지 인권구조 사업에서 운영
- '23년부터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사업 -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성장동력확 충을 위한 기업법제선 진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재철	김영수	김좌환
	사업시행주체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3,354	2,595	2,595	4,456	4,456	1,861	7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 법제정비	497	447	432	-	15	499	499	465	499	465	30	4	500
· 법제운영	325	325	324	-	1	325	325	325	325	325	-	-	327
· 중재산업활성화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 비목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 상용임금(110-03)	45	45	34	-	11	47	47	46	47	46	-	1	52
· 일반수용비(210-01)	508	458	458	-	-	508	508	508	508	508	-	-	50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7	5	-	2	7	7	5	7	5	-	2	7
· 특근매식비(210-05)	24	24	24	-	-	24	24	24	24	24	-	-	30
· 임차료(210-07)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 복리후생비(210-12)	0	0	0	-	-	0	0	-	0	-	-	-	0
·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 국내여비(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업무여비(220-02)	28	28	27	-	1	28	28	27	28	27	-	1	28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8	8	8	-	-	8
·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30	-	-	130	130	100	130	100	30	-	121
· 민간경상보조(320-01)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 고용부담금(320-09)	9	9	7	-	2	9	9	9	9	9	-	0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00	3,370	3,354	-	16	2,595	2,595	2,561	2,595	2,561	30	4	4,456
· 법제정비	497	447	432	-	15	499	499	465	499	465	30	4	500
- 상용임금(110-03)	45	45	34	-	11	47	47	46	47	46	-	1	52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일반수용비(210-01)	231	181	181	-	-	231	231	231	231	231	-	-	23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7	5	-	2	7	7	5	7	5	-	2	7	
- 특근매식비(210-05)	18	18	18	-	-	18	18	18	18	18	-	-	22	
- 임차료(210-07)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1	
- 복리후생비(210-12)	0	0	0	-	-	0	0	-	0	-	-	-	0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21	-	-	21	21	20	21	20	-	1	21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30	-	-	130	130	100	130	100	30	-	121	
- 고용부담금(320-09)	9	9	7	-	2	9	9	9	9	9	-	0	10	
· 법제운영	325	325	324	-	1	325	325	325	325	325	0	0	327	
- 일반수용비(210-01)	277	277	277	-	-	277	277	277	277	277	-	-	277	
-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6	6	6	6	6	-	-	8	
- 임차료(210-07)	4	4	4	-	-	4	4	4	4	4	-	-	4	
-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 국외업무여비(220-02)	7	7	6	-	1	7	7	7	7	7	-	-	7	
-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 중재산업활성화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 민간경상보조(320-01)	2,578	2,578	2,578	-	-	1,771	1,771	1,771	1,771	1,771	-	-	3,6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법제운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공익신탁제도의 활성화 등

경제 관련 법제 운영

- (중재산업 활성화)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율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어음법, 수표법, 신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시행령 등 33개 소관법령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16. 0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공동 소관)
- '16. 0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만기 단축)
- '16. 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할 집중 등)
- '16. 1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10.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 '17.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8. 02. 최고금리인하 이자제한법 시행
- '18. 05. 어음만기 단축 위한 전자어음법 시행
- '18. 05.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 '18. 12.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18. 12.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 '19. 04.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개최
- '19. 08.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19. 09. 전자증권제도 도입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19. 09. 주주총회 내실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9. 11.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19. 1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
- '19. 12.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 '20. 01.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06.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
- '20. 06.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20. 06.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 0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20. 08. 도산 전문분야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자문단 정비
- '20. 08.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 09.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관련 「집단소송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 11.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 12. 이자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 12.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청회
- '20.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정 「상법」 공포·시행
- '21. 01. ‘코로나 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보도자료 배포
- '21. 02. 「상법 시행령」 개정
- '21. 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 개인회생절차 이용 대상 부채 한도 상향
- '21. 0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기존 연 24% → 연 20%로 개정
- '21. 06.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21. 06. 특허청과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개최 및 공동업무협약(MOU) 체결
- '21. 07. 법률지원단 변호사 온라인 간담회 개최
- '21. 08. 한남대 창업지원단 간담회 개최
- '21. 09.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IT·지식재산 분야의 전문변호사 확충
- '21. 10.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21. 11.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자문단 위촉식(자문회의 총 4회)
- '21. 11. 2021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 ※ 토론주제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파산 면책 인정
 - ※ '20. 12.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총 21회 운영
- '22. 0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

- '22. 09.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 '22. 12. 도산절차에서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 도산법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 및 대응
- '22. 12. 추가 설치된 부산회생법원의 역할 증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 참석하고 우리 부 의견을 제출하여 대응
- '22. 12.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 특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2.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87건)
- '23. 01~0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3.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75건)
- '24. 0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24. 0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08~0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0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비용지원 46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49	3,271	3,400	2,595	4,45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재산업 활성화	보조	대한상사 중재원	3,629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제정비 : ('25) 499백만원 → ('26) 500백만원, 1백만 원 증액
② 법제운영 : ('25) 325백만원 → ('26) 327백만원, 2백만 원 증액
③ 중재산업 활성화 : ('25) 1,771백만원 → ('26) 3,629백만원, 1,858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단위:점)	목표	708	800	-	-	-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계 기준 변동*에 따 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세부사업→프로그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실적	856	870	-	-	-			
	달성도	120.9	108.8	-	-	-			
중재 산업 활성화(보조) (단위:점)	목표	162	170	178	(지표 변경) 259.4		국내중재활성화 실적 은 직전 3년간 평균값 대비 5%(494점) 상회 하는 518점 설정 복합중재심리시설 평 가는 만족도조사 실시 하여 80% 기대	국내중재사건 신청 금액별 점수*×0.4+복합시설 만족도**×0.3+전문인력 양성***×0.3 *514점:1억 원 이하(1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점), 10억 원 초과(3점), 금액없는 사건(2점) **80점:청결도(10%), 정보 제공(10%), 친절도 (10%), 편의성(20%), 접근성(20%), 전반 적만족도(20%)	대한상사중재원 사건관리 시스템 통계, 만족도조사 결과, 자체 통계
	실적	243	260	257	260.8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달성도	120	152.9	144.4	100.5		중재전문인력 양성 실적은 직전 3년간 평균 값(90점) 대비 94점 설정	***94점: 교육횟수(회당 5점)+참여인원(5명당 1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률지원(점)	목표	(신규)	190	-	-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계 기준 변동*에 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세부사업→프로그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실적		161	-	-				
	달성도		84.7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 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 ○ '22. 7. 경제형별 규정 개선 TF참여
2023	○ '23. 1~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3.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75건)
2024	○ '24. 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 ○ '24. 6~12. 경제형별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8~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등 개정 ○ '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46건)
2025	○ '25. 7.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9. 영세업자 도산 시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5. 9. 경제형별 합리화 TF출범 및 경제형별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개선) ○ '25. 9.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12. 2025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 '25.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3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 아울러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사법에 기업 투명성을 위한 장치를 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
- 고부가가치의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급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법률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법제 개선사항 발굴 - <u>중소기업 세미나</u> 등 애로사항 파악, 의견 청취를 통한 과제 발굴 - 체계적 법령정비를 위한 <u>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용역</u> 수행 - 상사분야 동향 파악을 위한 <u>선진법제포럼</u> 운영 및 <u>선진상사법률연구</u> 발간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및 운영 - <u>법령 제·개정</u> 관련 위원회 운영, 의견 수렴 및 해설자료 발간 등 법제 개선 추진 - <u>공익신탁제도</u> 운영·관리 및 <u>중재산업 활성화</u> 추진 및 <u>창업·중소기업 법률지원</u>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00	2,595	2,595	2,595	2,595	
2025~2029		2,595	4,456	4,456	4,456	4,4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결산)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 ('23. 결산) ①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②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③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4. 결산) 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②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상법의 체계적 정비
 -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 및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 지속
- 선진 도산법제의 구축
 - 2006.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기존의 법률들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편제와 용어 전반을 정비하여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등 도산절차 프로세스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산법제 마련
- 경제 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제 개선
 - 결함 개념의 명확화, 소송절차 개선 등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집단소송 체계 명확화를 통해 경제주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금융 법제의 선진화
 - 신탁법, 이자제한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등의 체계적 정비 및 전자유가증권의 등록·관리 시스템의 완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 실현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높은수준, ~'27년)

- (결과요약)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49	△30	3,219	96	-	-	3,315	3,217	99.9	97.0	38	60
2023	3,271	-	3,271	38	-	-	3,309	3,282	100	99.2	20	7
2024	3,400	-	3,400	△50	-	-	3,370	3,354	98.6	99.5	-	16
2025	2,595	-	2,595	-	-	-	2,595	2,561	98.7	98.7	30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365	2,365	2,365	2,365	-	2,365	2,328	-	37	98.4
2023	2,365	2,365	2,365	2,365	-	2,365	2,364	-	1	100
2024	2,578	2,578	2,578	2,578	-	2,578	2,578	-	-	100
2025	1,771	1,771	1,771	1,771	-	1,771	1,77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공익신탁 홍보 개선방안 마련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
2023	-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2024	-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5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0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법무실	정우석	김승재 서기관	손승혁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10-2110-365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24	826	826	947	947	121	1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	817	724	-	93	826	826	822	826	822	-	4	947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399	-	71	470	470	467	470	467	-	2	570
· 공무원 상용임금	201	198	175	-	26	208	208	206	208	206	-	2	228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51	-	2	150	150	150	150	150	-	-	150
○ 비목별 분류(합계)	820	820	724	-	92	826	826	822	826	822	-	4	947
· 상용임금(110-03)	166	163	145	-	19	171	171	171	171	171	-	-	188
·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	-	88	88	88	88	88	-	-	88
· 복리후생비(210-12)	3	3	2	-	-	3	3	3	3	3	-	-	3
·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336	-	71	407	407	404	404	404	-	2	507
·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 특정업무경비(250-03)	4	4	4	-	-	3	3	3	3	3	-	-	3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고용부담금(320-09)	32	32	28	-	3	34	34	32	34	32	-	2	37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0	820	724	-	92	826	826	822	826	822	-	4	947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399	-	71	470	470	467	470	467	-	2	570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336	-	71	407	407	404	404	404	-	2	507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공무원 상용임금	201	198	175	-	26	208	208	206	208	206	-	2	228
-상용임금(110-03)	166	163	145	-	19	171	171	171	171	171	-	-	188
-복리후생비(210-12)	3	3	2	-	-	3	3	3	3	3	-	-	3
-고용부담금(320-09)	32	32	28	-	3	34	34	32	34	32	-	2	37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51	-	2	150	150	150	150	150	-	-	150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	-	88	88	88	88	88	-	-	88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경비(250-03)	4	4	4	-	-	3	3	3	3	3	-	-	3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전자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 (공무원 상용임금) 법무부 아포스티유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5명)에 대한 보수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예방사법 기능 강화 및 선진 법률문화 축진을 위한 공증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② 추진경위

- 2009. 2. 공증인법 개정안 공포(전자공증제도는 2010. 8. 7. 시행)
- 2009. 10. ~ 2010. 4.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 2010. 8. 전자공증제도 시행
- 2011. 2. ~ 전자공증시스템 위탁관리·운영 중
- 2016. 11. ~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7. 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7. 7. ~ 12.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및 화상공증시스템 구축 완료
- 2017. 11.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 2017.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 공포·시행
- 2018. 2 ~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완료
- 2018. 6. 20. 공증인법 시행령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따른 화상공증제도 시행
- 2019. 2. ~ 3. 화상공증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재외공관 대상 화상공증제도 집중 홍보
- 2019. 1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2020. 4.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 2020. 9. 전자공증시스템 문서관리솔루션 이중화
- 2020. 10.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개정
- 2022. 6.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사업 완료
- 2022. 7. 제22차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2022. 9. ~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 2023. 3.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공정증서 고도화
- 2024. 6.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사서증서 및 종이공증 고도화
- 2025. 5. 신규 지정공증인 전자공증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0	1,274	820	826	947

- 기타: 공증인(임명공증인 83명, 지정공증인 108명, 인가공증 240개 사무소), 공증처리건수 약 4,000만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 ('25) 470백만원 → ('26) 57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상향(7% →11%) ※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24) 최저 요율 5등급은 12%

②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원 5명 상용임금

: ('25) 208백만원 → ('26) 228백만원, 21백만원 증액

- 공무원 처우개선(3.8%) 반영

③ 공증제도 운영 및 신뢰도 제고

: ('25) 148백만원 → ('26) 148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증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독 및 교육(건)	목표	성과계획서의 변동에 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음							
	실적								
	달성도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건)	목표								
	실적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중사무 처리 건수 : 2,353,213건 ○ 공중인 인원 : 임명공중인 82명, 인가공중 225개 사무소
2023	○ 공중사무 처리 건수 : 2,445,654건 ○ 공중인 인원 : 임명공중인 83명, 인가공중 225개 사무소
2024	○ 공중사무 처리 건수 : 2,004,956건 ○ 공중인 인원 : 임명공중인 83명, 인가공중 225개 사무소
2025	○ 공중사무 처리 건수 : 2,065,104건 ○ 공중인 인원 : 임명공중인 83명, 인가공중 240개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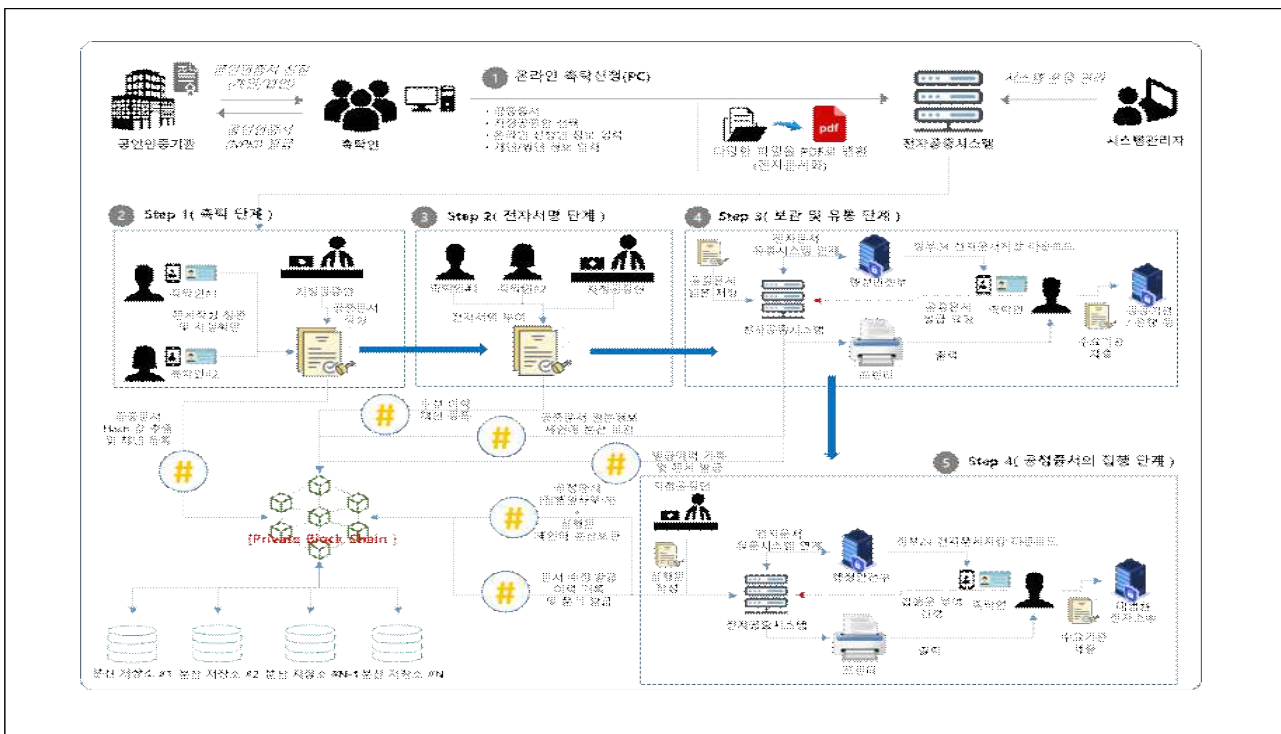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중 신뢰도 제고 및 공중제도의 예방사법 기능 강화, 서민 법률분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선진법률문화 조성, 공정사회 구현
-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공증시스템 활성화와 이용 편의성 증진, 대국민 서비스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20	820	1,025	1,025	1,025	
2025~2029		820	947	950	955	9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증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공증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공증감사 및 교육 실시
 - 전국에 산재한 공증사무소에서 처리되는 공증업무의 통일성·적정성 도모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예방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서류검열 강화
- 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 활성화
 -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공증 시스템 활성화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아포스티유 가입국 증가에 따른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원 증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0	-	730	-	-	-	730	717	98.2	98.2	6	7
2023	1,274	-	1,274	6	-	-	1,280	1,273	99.9	99.5	-	7
2024	820	-	820	-	△3	-	817	724	88.3	88.6	-	93
2025	826	-	826	-	-	-	826	822	99.5	99.5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온라인 공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17)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038-300)	상용임금 (110-03)	2,642천원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고용부담금 과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정우석	김승재 서기관	손승혁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2-2110-365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국장 김종현	유정은 주임	
		사무국	02-3476-4067	02-3476-4061	
	사업시행주체	법조윤리협의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78	779	779	767	767	△12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54	454	488	-	6	489	489	218	489	218	-	-	489	
·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34	58	34	-	-	58	
○ 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 일반수용비(210-01)	366	366	366	-	-	401	401	401	401	401	-	-	401	
· 임차료(210-07)	13	13	9	-	4	13	13	3	13	3	-	10	13	
·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 국외여비(220-02)	25	25	23	-	2	25	25	22	25	22	-	2	25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정책연구비(260-02)	40	40	80	40	-	40	40	40	40	40	-	-	40	
·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78	40	6	779	779	767	779	767	-	12	767	
·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54	454	494	40	6	489	489	194	489	194	-	-	489	
-일반수용비(210-01)	366	366	366	-	-	401	401	401	401	401	-	-	401	
-임차료(210-07)	13	13	9	-	4	13	13	3	13	3	-	10	13	
-국외여비(220-02)	25	25	23	-	2	25	25	22	25	22	-	2	25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40	40	80	40	-	40	40	40	40	40	-	-	40	
·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	-	232	232	232	232	232	-	-	220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내역사업명)
-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 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징계 개시신청 등 업무 수행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변호사 정보 공유, 법무법인 정관 변경 전산화 등을 위한 변호사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변호사법 제89조의3(법조윤리협회의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② 추진경위

○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

- 2013. 6. 마을변호사제도 운영(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
- 2017. 3. 법조윤리협회의의 현장조사권 신설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7. 6. 매경 2017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수상
- 2017. 9.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 2018. 7. 매경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2년 연속 수상
- 2018. 1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9. 3. ~ 11.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202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
- 2020. 5. 제4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2020. 7. 전국 1,491개 읍·면·동에 1,349명의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 및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 2021. 1.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2021. 6.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1.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3개 기관, 115명)
- 2021. 7. 경기 광주시에서 마을변호사 온라인예약 및 화상상담 시범사업 시행
- 2021. 9.~22. 7. 리걸테크 TF 구성·운영(기간 중 총8회 진행)
- 2021. 12.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2.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8개 기관, 130명)
- 2022. 6.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 2023. 5.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전국 7개 시·도 75명)
- 2023. 12.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 2024. 10.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9	773	744	779	7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윤리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보조	법조윤리 협의회	220	정액	변호사법 제89조의 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 ('25) 489백만원 → ('26) 489백만원(전년동)
- ②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 ('25) 232백만원 → ('26) 220백만원(△12백만원)
- ③ 변호사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용
: ('25) 58백만원 → ('26) 5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호사 제도개선 활동 건수(건)	목표				52.5 (신규)	55			
	실적				55	-			
	달성도				104.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및 활동 지원(전국 7팀, 총원 32명) ○ 전국 1,424개 읍면동에서 1,250명의 마을 변호사와 1,624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활동
2023	○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지원(전국 7개 시도, 75명 활동)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28명의 마을변호사와 1,627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4	○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476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5	○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580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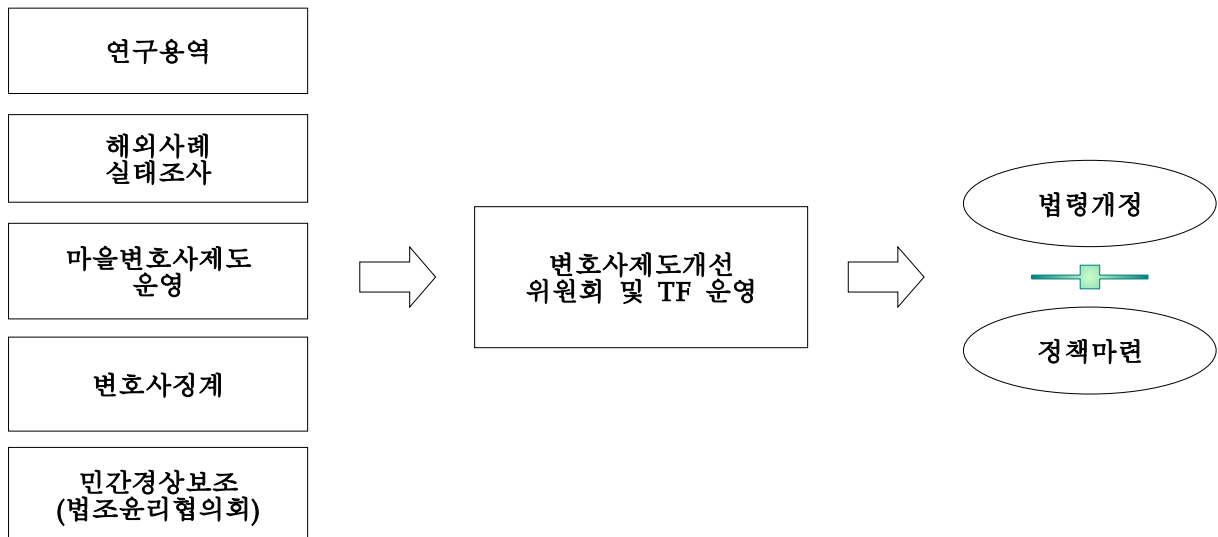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제도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도모
- 국민의 법조접근성 강화 및 법률복지 실현, 변호사의 공익 활동 강화 등 적극 추진
- 비위 법조인 퇴출 등 법률시장 윤리·공익성 강화
- 리걸테크 산업 등 변호사제도 공공성 훼손하지 않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검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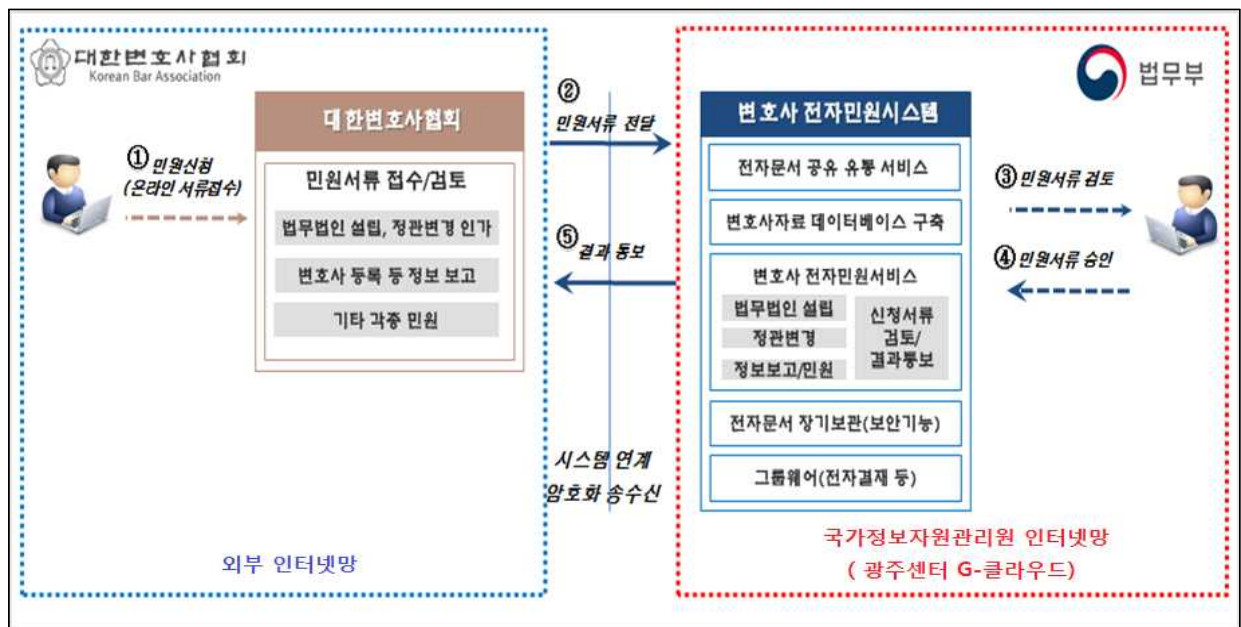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44	779	767	788	790	
2025~2029		779	767	790	800	8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 수 급증 등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하고 법조비리 감독체계 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법조통계 구축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 예약 창구와 화상상담 공간의 점진적 확장,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추구
- 법조윤리 및 선진 법조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풍토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전의사항

- 법조윤리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현장조사 등 사업비 부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9	-	649	-	-	-	649	630	97	97	-	19
2023	773	-	773	-	-	-	773	723	93.5	93.5	40	10
2024	744	-	744	40	-	-	784	783	105.2	99.8	-	1
2025	799	-	799	-	-	-	799	767	96	96	-	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76	176	176	176	-	176	176	-	-	100
2023	274	274	274	274	-	274	274	-	-	100
2024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025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5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동근	권호연	박주현
	사업시행주체	법조인력과 직접수행	02-2110-3244	02-2110-3389	02-2110-38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5,112	5,283	-	5,283	5,109	△174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	85	5,283	5,283	5,188	5,283	5,188	-	95	5,109
· 변호사시험	4,826	4,826	4,743	-	83	4,912	4,912	4819	4,912	4819	-	93	4,738
·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	2	371	371	369	371	369	-	2	371
○ 비목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	85	5,283	5,283	5,188	5,283	5,188	-	95	5,109
· 상용임금(110-03)	32	32	32	-	-	33	33	30	33	30	-	3	36
· 일용임금(110-04)	138	131	68	-	63	138	138	78	138	78	-	60	83
· 일반수용비(210-01)	737	835	831	-	4	737	832	830	832	830	-	2	73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0	-	6	16	16	13	16	13	-	3	16
· 특근매식비(210-05)	33	33	33	-	-	33	33	29	33	29	-	4	38
· 임차료(210-07)	1,687	1,240	1,239	-	1	1,687	1267	1267	1267	1267	-	-	1518
· 유류비(210-08)	3	3	2	-	1	3	3	2	3	2	-	1	3
·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5
· 일반용역비(210-14)	553	574	574	-	-	553	581	581	581	581	-	-	553
· 관리용역비(210-15)	17	17	16	-	1	77	77	76	77	76	-	1	77
· 기타운영비(210-16)	1,728	1,979	1,975	-	4	1,728	1,982	1,979	1,982	1,979	-	3	1778
· 국내여비(220-01)	71	145	143	-	2	78	121	121	121	121	-	-	78
· 국외업무여비(220-02)	19	22	22	-	-	19	19	19	19	19	-	-	19
· 사업추진비(240-01)	43	43	43	-	-	43	43	43	43	43	-	-	43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고용부담금(320-09)	6	13	10	-	3	24	24	6	24	6	-	18	16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97	5,197	5,112	-	85	5,283	5,283	5,188	5,283	5,188	-	95	5,109
· 변호사시험	4,826	4,826	4,743	-	83	4,912	4,912	4,819	4,912	4,819	-	93	4,738
- 상용임금 (110-03)	32	32	32	-	-	33	33	30	33	30	-	3	36
- 일용임금(110-04)	134	127	64	-	63	134	134	74	134	74	-	60	79
- 일반수용비 (210-01)	674	772	768	-	4	674	769	767	769	767	-	2	67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	9	5	-	4	9	9	8	9	8	-	1	9
- 특근매식비(210-05)	22	22	22	-	-	22	22	18	22	18	-	4	27
- 임차료(210-07)	1,547	1,100	1,099	-	1	1,547	1127	1127	1127	1127	-	-	1378
- 유류비(210-08)	3	3	2	-	1	3	3	2	3	2	-	1	3
-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5
- 일반용역비(210-14)	523	544	544	-	-	523	551	551	551	551	-	-	523
- 관리용역비(210-15)	17	17	16	-	1	77	77	76	77	76	-	1	77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타운영비(210-16)	1,622	1,872	1,868	-	4	1,621	1,875	1,872	1,875	1,872	-	3	1671	
- 국내여비(220-01)	66	140	138	-	2	73	116	116	116	116	-	-	73	
- 국외여비(220-02)	19	22	22	-	-	19	19	19	19	19	-	-	19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39	39	39	-	-	39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고용부담금(320-09)	6	13	10	-	3	24	24	6	24	6	-	18	16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	2	371	371	369	371	369	-	2	371	
- 일용임금(110-04)	4	4	4	-	-	4	4	4	4	4	-	-	4	
- 일반수용비(21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	2	7	7	5	7	5	-	2	7	
- 특근매식비(210-05)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 임차료(210-07)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	140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기타운영비(210-16)	107	107	107	-	-	107	107	107	107	107	-	-	107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및 사고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 (법조윤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및 제8조(시험의 방법)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변호사시험 :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 1. 최초 변호사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 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16	4,499	5,197	5,283	5,1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변호사시험 실시

: (2025) 4,912백만원 → (2026) 4,912백만원, (조정) 4,738백만 전년대비 174백만원 감액

② 법조윤리시험 실시

: (2025) 371백만원 → (2026) 37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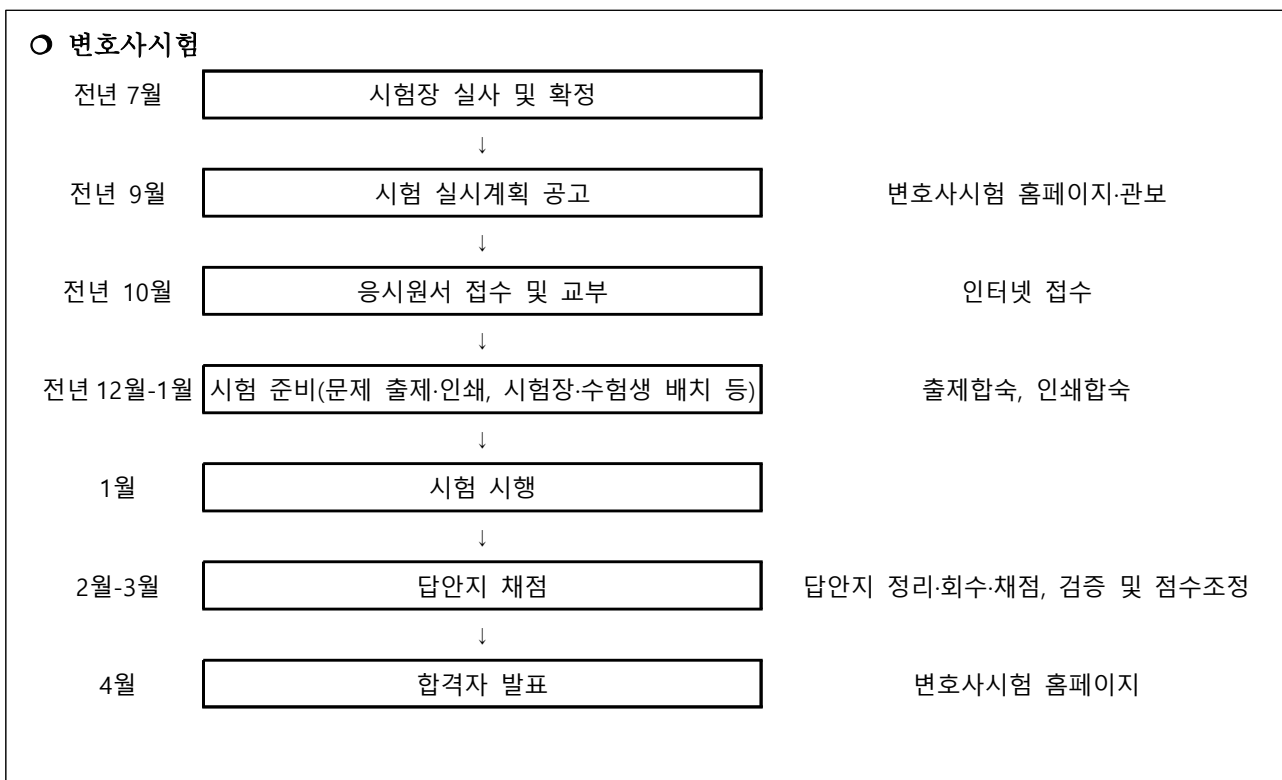
2022	- 2022. 1. 제11회 변호사시험 실시 - 2022. 8.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3	- 2023. 1.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 2023. 8.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4	- 2024. 1.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 - 2024. 8.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5	-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 - 2025. 8.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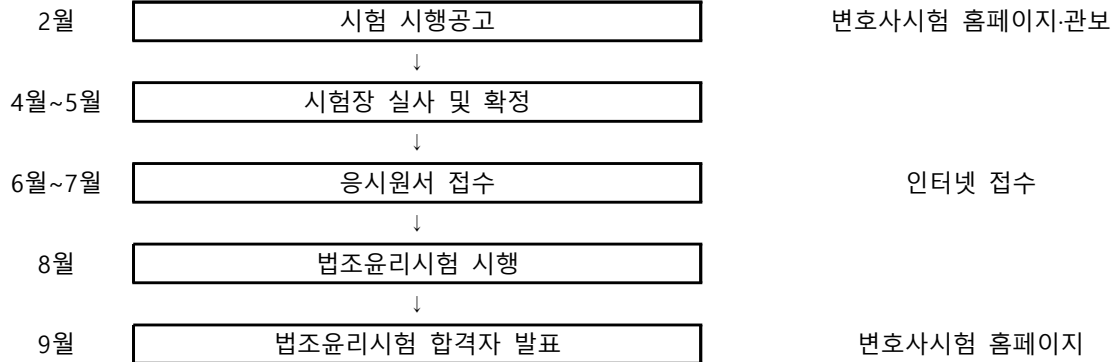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조윤리시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97	5,283	8,357	5,923	5,923	
2025~2029		5,283	5,447	8,926	6,121	6,1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등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50	△34	4,116	-	-	-	4,116	4,074	99.0	99.0	-	42
2023	4,499	-	4,499	-	-	-	4,499	4,439	98.7	98.7	-	60
2024	5,197	-	5,197	-	-	-	5,197	5,112	98.4	98.4	-	85
2025	5,283	-	5,283	-	-	-	5,283	5,188	98.2	98.2	-	9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210-07	43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220-01	국내여비 예산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10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1	300
명칭	법무활동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권영필	홍진희	-
		통일법무과	02-2110-3223	02-2110-3228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719	771	771	774	774	3	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법령 및 통일대비 법률쟁점 심층 연구,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제 통합DB 유지·관리,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를 구체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9조(법무실) 제3항 제22호, 제23호, 제24호

② 추진경위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은 통일추진 시 법무부 및 각 부처의 법률통합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02년 ‘베니스위원회 참여사업’ 목적으로 최초 예산 배정
 - ※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2006. 6. 1.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 2006년부터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로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목적 확대
- 2010. 2. 정부의 대북정책 공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적된 통일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2011년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통합(안) 마련 등을 위한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배정

- 2012. 5.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사업'과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하나의 단위 사업인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으로 통합
- 최근 남북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 및 남북법률통합 방안 수립의 체계화·고도화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1	692	766	771	77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국민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04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300
명칭	법무활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윤구 소장 02-2110-3223	박상도 서기관 02-2110-4804	양동규 사무관 02-2110-4802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68	286	286	296	291	5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 북한인권기록보존 관리시스템(DB) 운영	144	144	135	-	9	174	174	155	174	155	-	19	174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34	134	133	-	1	112	112	97	112	97	-	15	117
○ 비목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 상용임금(110-03)	32	32	32	-	-	33	33	21	33	21	-	12	37
·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 임차료(210-07)	16	16	16	-	-	13	13	13	13	13	-	0	13
·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1	1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1	1	-	0	1
· 관리용역비 (210-15)	128	128	119	-	9	158	158	139	158	139	-	19	158
·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0	2
· 국외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0	20
· 사업추진비 (24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0	13
· 정책연구비 (260-02)	30	30	30	-	-	10	10	10	10	10	-	0	10
· 고용부담금 (320-09)	6	6	6	-	-	6	6	4	6	4	-	2	7
·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0	15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278	278	268	-	10	286	286	252	286	252	-	34	291
· 북한인권기록보존 관리 시스템(DB) 운영	144	144	144	-	9	174	174	155	174	155	-	19	174
-관리용역비 (210-15)	128	128	119	-	9	158	158	139	158	139	-	19	158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2	2	2	-	0	2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0	15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34	134	134	-	1	112	112	97	112	97	-	15	117
-상용임금 (110-03)	32	32	32	-	-	33	33	21	33	21	-	12	37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임차료(210-07)	16	16	16	-	-	13	13	13	13	13	-	0	13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1	1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1	1	1	-	0	1
-국내여비 (220-01)	2	2	2	-	-	2	2	2	2	2	-	0	2
-국외여비 (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0	20
-사업추진비 (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0	11
-정책연구비 (260-02)	30	30	30	-	-	10	10	10	10	10	-	0	10
-고용부담금 (320-09)	6	6	6	-	-	6	6	4	6	4	-	2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증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UN 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북한이탈주민이 진술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DB)에 사건정보를 저장하여 보존·관리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북한에 대한 향후 형사처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와 통일 후 체제 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제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취지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
 - 중점과제
 -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
 - 북한인권자료의 DB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기록 연구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7	239	278	286	2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25) 174백만원 → ('26) 174백만원 (전년 동)
②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25) 112백만원 → ('26) 117백만원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합동워크숍 개최 및 UN 인권관 초청 사랑방 좌담회 등 개최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이관 및 분석·보존 - 미국·일본 북한인권 관련법 번역
2023	-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 등 개최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이관 및 분석·보존 - 법무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직제변경(8.8.) - 법무실 통일법무과 과장(부장검사)을 소장 직무대리로 발령(8.8.) - 청사 재이전(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정부과천청사) 및 현판식 개최
2024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연구용역 2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이관 및 분석·보존 -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개정(7월)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규정집 발간 -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북한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11월)
2025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업무 협력 간담회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이관 및 분석·보존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실무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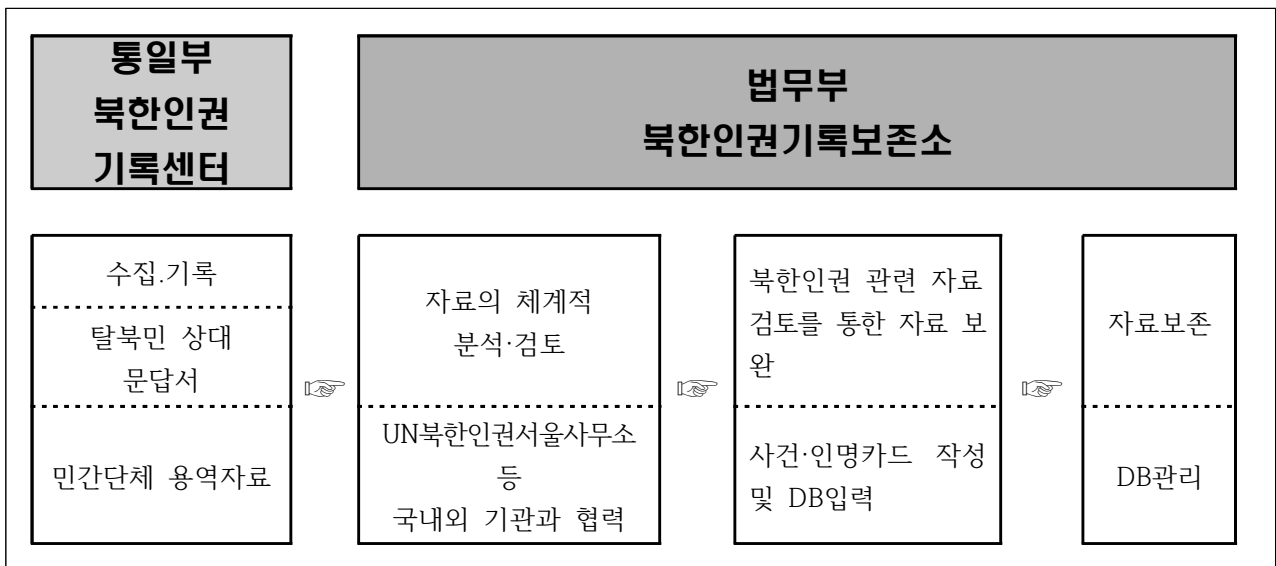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집·보존된 북한인권 자료는 향후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여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 통일 후 체제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78	286	291	291	291	
2025~2029		286	291	291	291	2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를 통해 향후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7	-	237	-	-	-	237	234	98.7	98.7	-	3
2023	239	-	239	-	1	-	239	237	99.2	99.2	-	2
2024	278	-	278	-	-	-	278	268	96.4	96.4	-	10
2025	286	-	286	-	-	-	286	252	88.1	88.1	-	34

※ '23. 8. 기관 이전(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 정부과천청사) 준비 및 출장비 상승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으로 임차료 항목에서 1백만원 전용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23. 8.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예산편성도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24년 예산부터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변경함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률구조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법률구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이병주	김영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법률구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이병주	김영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산정책부	김신 과장	054-810-1143
		대한가정법률상담소	재무·회계	김현옥 과장	02-782-342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부서	고은지 상담위원	02-2697-015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총무과	김상우 부장	02-3476-651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법률구조	64,815	67,337	67,337	71,759	66,602	△735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6 (67,336)	64,337	67,336 (67,336)	-	1	66,602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8 (48)	-	2	50	50	49 (49)	50	49 (49)	-	1	238
· 대한법률구조공단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인건비	64,572	64,572	64,572 (64,572)	-	-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66,457)	-	-	66,470
- 경상비	2,705	2,705	2,646 (2,646)	-	-	2,574	2,574	2,425 (2,425)	2,574	2,425 (2,425)	-	-	2,501
- 사업비	44,479	44,479	37,771 (37,771)	-	-	48,307	48,307	42,045 (42,045)	48,307	42,045 (42,045)	-	-	38,935
- 국고보조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자체수입	48,959	48,959	42,092 (42,092)	-	-	51,968	51,968	45,557 (45,557)	51,968	45,557 (45,557)	-	-	44,018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인건비	1,760	1,760	1,517 (1,517)	-	-	1,812	1,812	1,600 (1,600)	1,812	1,600 (1,600)	-	-	1,875
- 경상비	179	179	123 (123)	-	-	174	174	128 (128)	174	128 (128)	-	-	170
- 사업비	1,914	1,914	1,791 (1,791)	-	-	1,914	1,914	1,688 (1,688)	1,914	1,688 (1,688)	-	-	1,914
- 국고보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자체수입	1,983	1,983	1,561 (1,561)	-	-	1,983	1,983	1,499 (1,499)	1,983	1,499 (1,499)	-	-	1,983
· 기타 법률구조 기구	-	-	-	-	-	-	-	-	-	-	-	-	500
- 인건비	-	-	-	-	-	-	-	-	-	-	-	-	330
- 경상비	-	-	-	-	-	-	-	-	-	-	-	-	18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사업비	-	-	-	-	-	-	-	-	-	-	-	-	1,353
- 국고보조	-	-	-	-	-	-	-	-	-	-	-	-	500
- 자체수입	-	-	-	-	-	-	-	-	-	-	-	-	1,201
○ 비목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6 (67,336)	67,337	67,336 (67,336)	-	1	66,602
· 일반수용비(210-01)	17	18	18 (18)	1	-	17	17	17 (17)	17	17 (17)	-	-	173
· 임차료(210-07)	3	2	2 (2)	△1	-	3	3	3 (3)	3	3 (3)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9 (9)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40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1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64,767	64,767	64,767 (64,767)	-	-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67,287)	-	-	66,3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4,817	64,817	64,815 (64,815)	-	2	67,337	67,337		67,337		-	-	66,602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8 (48)	-	2	50	50	49 (49)	50	49 (49)	-	-	238
- 일반수용비(210-01)	17	18	18 (18)	1	-	17	17	17 (17)	17	17 (17)	-	-	173
- 임차료(210-07)	3	2	2 (2)	△1	-	3	3	3 (3)	3	3 (3)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9 (9)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40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10
· 대한법률구조공단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62,897	62,897	62,897 (62,897)	-	-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65,370)	-	-	63,888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1,870	1,870	1,870 (1,870)	-	-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	-	1,976
· 기타 법률구조 기구	-	-	-	-	-	-	-	-	-	-	-	-	5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	-	-	-	-	-	-	-	-	-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법계몽 및 법교육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가정법률 분야의 법률상담, 조정 화해, 대서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약자의 인권옹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기타 법률구조 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하여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27조【재판받을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국가의 법률구조사업 재원 조달 책무, 법 제2조의 2】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법 제7조 2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 제21조2】

【시·군법원 소재지 공단 지소설치, 법 제10조 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09. 1.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0. 6.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1. 5.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2. 8.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3. 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4. 6. 수원,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25. 7.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

- '09. 7. (1차) 동해·삼척·태백·보령·서천·부여·영주·예천·문경·사천·하동·남해·완도·강진·진도
- '10. 7. (2차) 양구·인제·화천·무주·진안·장수·철원·가평·포천·울진·청송·영양·괴산·진천·음성
- '11. 7. (3차) 정선·평창·횡성·김제·부안·고창·칠곡·성주·고령·합천·함양·산청·고흥·보성·화순
- '12. 7. (4차) 당진·청양·예산·영암·나주·무안·함안·의령·고성
- '13. 7. (5차) 용인·연천·남양주·창녕·영천·청도·영광·보은·서귀포
- '14. 7. (6차) 오산·안성·김해·익산
- '15. 7. (7차) 강화·김포·아산·곡성·함평
- '19. 3. (8차) 구미
- '20. 7. (9차) 파주
- '21. 7. (10차) 경기 광주

- '21. 12.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체계 구축 및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실시

- '22. 7.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실시(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

-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추진

- '23. 6.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4. 7.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체결
- '24. 10.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25. 12.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완료, 서비스 개시('26. 1.)

- 법률구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 '23. 1., 5. 인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을 위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법률구조 실시 · '23. 4.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피해지역 범위를 영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23. 10.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등 법률지원 강화 · '23. 11.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23. 12.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24. 5.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24. 7.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 '24. 10. 소상공인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125%, 매출액 2억이하 → 150%, 3억원) · '25. 7. 중대재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법률지원 확대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법률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2,402	59,795	64,817	67,337	66,60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채불피해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 구조공단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63,888	59.2%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보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76	49.9%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기타 법률구조 기구	보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500	29.4%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 (2025 본예산) 50백만원 → (2026 예산) 238백만원, 188백만원 증액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 본예산) 65,370백만원 → (2026 예산) 63,888백만원, 1,482백만원 감액
③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2025 본예산) 1,917백만원 → (2026 예산) 1,976백만원, 59백만원 증액
④ 기타 법률구조 기구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500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 명)	목표	1,671,620	1,476,334	-	-	-	-	당해 연도 법률상담 + 만가등 법률구조 (단 본예산 증소를 적용)+ 행사법률구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306,307	1,213,730	-	-	-			
	달성도	78.1	82.2	-	-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목표	-	-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에 3% 가산 산출	주요 사회적 취약 계층(장애인·한부모 가족·범죄피해자·소외 임차인·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	-	18,002	-	-			
	달성도	-	-	111.2	-	-			

* 국가의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역량 집중 및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변경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	○ 집단피해자 공익공동소송(전세사기) 법률구조사업 실시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1차년도) 구축
2023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청소년 법문화교육사업 실시
2024	○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2025	○ 인천 개인회생·과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소상공인,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확대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936명 ○ 화상상담 실시 : 388건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총10종/104회/연인원 1,136명 (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재활병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정기 출장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 협조하여 요구조자 법률구조 실시
20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36명 ○ 화상상담 실시 : 793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71건 (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희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20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01명 ○ 화상상담 실시 : 870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68건 (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희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20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6,661명 ○ 화상상담 실시 : 951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72건 (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희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여러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35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AI를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매칭·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26. 1.)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강화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위기와 폐업 위험 상승,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증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률구조 강화
 - ※ ('23) 25,226건 → ('24) 25,484건 → ('25. 6.) 12,978건 사회적 취약계층(소상공인·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 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
-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중대재해현장, 농어촌·산간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법률복지 증진
 - ※ ('23) 출장 127회, 법률상담 774건 → ('24) 출장 107회, 법률상담 625건 → ('25. 6.) 출장 54회, 법률상담 296건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정문제의 다양화에 따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의 소송구조 강화 및 법률분쟁 예방교육 확대
 - ※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온라인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법교육 활성화, ▲미성년후견선임, 비혼부 출생신고, 위탁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
- 국내·외 위기가정 및 귀환이주여성,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와 가정문제의 화해·조정을 통한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무변지역, 도서지역 및 소외 지역의 가정법률 관련 법률구조 확산 지속

<기타 법률구조 기구>

-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월) · (제출) 공단 → 법무부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제출
○ 법률구조사업 예산 편성 및 제출(5월) · (수립) 법률구조 실적, 국정과제 등 검토 · (제출) 공단 → 법무부
↓
사업계획 편성 및 승인신청
○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 ○ 이사회 의결 및 법무부 승인 신청(12월)
↓
법률구조사업 수행
○ 법률구조 절차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보고(월별·분기별·연도별) · 국정과제 등 관리 ○ 공단 업무 자체평가 및 직원 성과관리(반기별)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 감사실의 정기·특별감사 실시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법무부
중기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출
○ 사업 검토 및 제출(1월) · (제출) 법무부 → 기재부
→
←
예산 제출 및 협의·확정
○ (제출 및 협의) 법무부→기획재정부(6·8월) ○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기획재정부→국회(9~12월)
→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12월) · 사업의 적정성, 예산 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
←
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 사업추진 현황의 관리·감독(월 1회) ·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 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총리실 보고(정기·수시) ○ 예산 집행 실적 감독(분기) ·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 ○ 인권구조과 지도점검(수시) ·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 현장 점검 ○ 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 · 법률구조사건 처리 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예납금·보관금 관리 현황, 사건 처리규칙 준수 여부 ○ 결산 승인(익년 4월)

↑

기재부, 국회, 감사원(관리·감독)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4,817	67,697	67,697	57,697	37,697	
2025~2029		67,337	71,759	77,006	82,758	88,9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 등 재무건전성 제고, 인력 누수 보완 방안 마련 등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23.)

○ (최종의견) 우수

보조사업연장평가
(‘25.)

○ (평가결과) 2026년 일정수준 감축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대한법률구조공단>

-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 매칭·상담·접수 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고, 진행과정 및 결과 알림·확인까지 One-Stop으로 해결하여 국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법률복지 실현에 기여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등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로 새 출발의 기회 제공 및 민생안정 기여
-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통해 중대재해현장, 농어촌·산간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법률복지 증진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화상상담 및 출장상담의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무료소송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여 인권보호와 법률복지를 구현
- Post코로나 취약계층, 특히 비대면 접근 취약계층(장애인·노인·중증환자)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종합적인 법률구조서비스 강화
- 무변지역, 오지 등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종합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기타 법률구조 기구>

-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수지차 신규 지원 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예정
-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2023회계연도) : 우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25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일정수준 감축 |
|--|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2)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2,402	-	62,402	-	-	-	62,402	62,402	100.0	100.0	-	-
2023	59,795	-	59,795	-	-	-	59,795	59,795	100.0	100.0	-	-
2024	64,817	-	64,817	-	-	-	64,817	64,815	100.0	100.0	-	2
2025	67,337	-	67,337	-	-	-	67,337	44,590	66.2	66.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2,402	62,402	62,402	62,402	-	60,429	60,429	-	-	100.0
2023	59,795	59,795	59,795	59,795	-	57,827	57,827	-	-	100.0
2024	64,817	64,817	64,817	64,817	-	62,897	62,897	-	2	100.0
2025	67,337	67,337	67,336	67,337	-	67,337	67,336	-	1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 등 재무건전성 제고, 인력 누수 보완 방안 마련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5.)	법률구조 (1131-300)	210-07	1	법률구조 (1131-300)	210-01	국회 지적사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검토를 위해 '24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사·회계 지문 등을 수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일반수용비 예산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김영남	-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53	02-2110-382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785	5,143	5,143	5,718	5,718	575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 인건비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 홍보, 회의, 교육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 특근매식비	4	4	4	-	-	4	4	4	4	4	-	0	5
· 맞춤형 복지비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 홈페이지 유지관리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 출장, 지도점검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 간담회, 사례회의	9	9	9	-	-	9	9	9	9	9	-	0	9
· 연구용역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 퇴직연금, 4대 보험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 비목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 상용임금(110-03)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0	5
·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 관리용역비(210-15)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 국내여비(220-01)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0	9
·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 고용부담금(320-09)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998	4,998	4,785	-	213	5,143	5,143	5,109	5,143	5,109	-	34	5,718
· 인건비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상용임금(110-03)	3,855	3,855	3,737	-	118	3,976	3,976	3,946	3,976	3,946	-	30	4,447
· 홍보, 회의, 교육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0	168
· 특근매식비	4	4	4	-	-	4	4	4	4	4	-	0	5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0	5
· 맞춤형 복지비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복지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33	33	33	-	0	33
· 홈페이지 유지관리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관리용역비(210-15)	48	48	47	-	1	48	48	48	48	48	-	0	48
· 출장, 지도점검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국내여비(220-01)	113	113	88	-	25	113	113	113	113	113	-	0	113
· 간담회, 사례회의	9	9	9	-	-	9	9	9	9	9	-	0	9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0	9
· 연구용역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0	14
· 퇴직연금, 4대 보험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고용부담금(320-09)	754	754	685	-	69	777	777	773	777	773	-	4	8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② 추진경위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 2012. 5. 법률홈닥터 20명 정식채용, 지방자치단체 11개, 사회복지협의회 9개 기관 배치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개에서 40개 기관으로 확대
- 2017.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40개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
- 2018.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18. 5. 법률홈닥터 5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60개에서 65개 기관으로 확대
- 2020. 5.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법정부수습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8.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0.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2. 1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3. 7.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2.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6.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1.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3.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7. '경기·충남·경남·광주전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5. 12. 시군구청·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스톱솔루션센터 등 64개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등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93	4,846	4,998	5,143	5,71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률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본예산) 3,976백만원 → (2026) 4,447백만원, 47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65명 급여 처우개선편 반영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인건비 4,44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6,104	○ 상용임금(110-03) : 3,976,104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건비 (3,976,104천원) · 인건비 : 65명×61,170천원=3,976,104천원	4,446,936	○ 상용임금(110-03) : 4,446,936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건비 (4,446,936천원) · 인건비 : 65명×68,414천원=4,446,936천원

② 운영비

: (2025 본예산) 253백만원 → (2026) 254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증액 요구, 그 외 맞춤형 복지비,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홍보비, 법률정보(Web DB) 서비스 구독료 등 168백만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맞춤형 복지비 33백만원,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3,048	○ 일반수용비(210-01) : 168,317천원 가.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168,317천원) ·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231천원 가. 특근매식비 (4,231천원) · 특근매식비 : 12개월×353천원=4,23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2,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32,500천원) · 맞춤형복지비 : 65명×500천원=32,500천원 ○ 관리운영비(210-15) : 48,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48,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개월×4,000천원=48,000천원	254,048	○ 일반수용비(210-01) : 168,317천원 가.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168,317천원) ·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231천원 가. 특근매식비 (5,231천원) · 특근매식비 : 12개월×436천원=5,23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2,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32,500천원) · 맞춤형복지비 : 65명×500천원=32,500천원 ○ 관리운영비(210-15) : 48,000천원 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48,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개월×4,000천원=48,000천원

③ 출장, 지도점검

: (2025 본예산) 113백만원 → (2026) 11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속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출장 여비 등 11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266	○ 국내여비(220-01) : 113,266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등 (113,266천원) · 출장 여비 : 65개 기관×1,742천원=113,266천원	113,269	○ 국내여비(220-01) : 113,269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등 (113,269천원) · 출장 여비 : 65개 기관×1,743천원=113,269천원

④ 간담회, 사례회의 등

: (2025 본예산) 9백만원 → (2026) 9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정기간담회·권역별 간담회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간담회, 사례회의 등 9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54	○ 사업추진비(240-01) : 9,254천원 가. 간담회, 사례회의 등(9,254천원) · 간담회, 사례회의 : 65개 기관×142천원=9,254천원	9,254	○ 사업추진비(240-01) : 9,254천원 가. 간담회, 사례회의 등(9,254천원) · 간담회, 사례회의 : 65개 기관×142천원=9,254천원

⑤ 연구용역

: (2025 본예산) 14백만원 → (2026) 14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홈닥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비 1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00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14,000천원)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14,000천원=14,000천원	14,000	○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가.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14,000천원)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14,000천원=14,000천원

⑥ 퇴직연금, 4대보험

: (2025 본예산) 777백만원 → (2026) 880백만원, 103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홈닥터 인건비 증액에 따른 퇴직연금 및 4대보험 증액 요구

- (산출) 법률홈닥터 퇴직연금 및 4대보험 88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7,328	○ 고용부담금(320-09) : 777,328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퇴직연금, 4대보험 (777,328천원) · 퇴직연금, 4대보험 : 65명×11,958천원=777,328천원	880,493	○ 고용부담금(320-09) : 880,493천원 가. 법률홈닥터 변호사 퇴직연금, 4대보험 (880,493천원) · 퇴직연금, 4대보험 : 65명×13,546천원=880,49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률상담 37,896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359건, 조력기관 연계 6,790건, 법교육 592건
2023	○ 법률상담 36,26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038건, 조력기관 연계 7,435건, 법교육 560건
2024	○ 법률상담 41,09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871건, 조력기관 연계 9,427건, 법교육 584건
2025	○ 법률상담 39,579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512건, 조력기관 연계 9,279건, 법교육 40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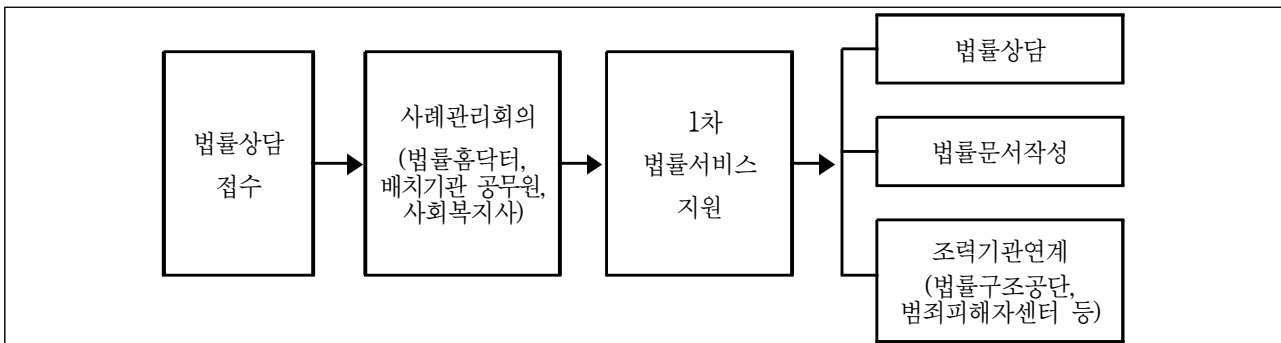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률홈닥터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85	5,143	5,718	5,993	6,331	
2025~2029		5,143	5,718	5,933	6,331	6,7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률홈닥터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 법률홈닥터 사업실적 통계 명확화 필요(예정처, '24결산)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적극적 수시 채용('24년 4회 채용 실시)으로 공석 최소화, '24. 12월 기준 공석 0명
 -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대상인 취약계층 증빙 추가 등 절차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인 취약계층별 지원실적 통계 명확화 방안 마련
 -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대상인 취약계층별 분류 구체화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03	△10	4,693	-	△2	-	4,691	3,981	84.8	84.7	-	710
2023	4,846	-	4,846	-	-	-	4,846	4,030	83.2	83.2	-	816
2024	4,998	-	4,998	-	-	-	4,998	4,785	95.7	95.7	-	213
2025	5,143	-	5,143	-	-	-	5,143	5,109	99	99	-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상용임금에서 국제인권 역량강화 사업의 고용부담금으로 전용(△2백만원) - 추경 편성 사유 : 전 부처 공통 경상경비 절감(△10백만원) - 집행 부진 사유 : 법률홈닥터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 관련 대면상담 자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3	- 집행 부진 사유 : 법률홈닥터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 관련 대면상담 자제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4	- 취약계층별 통계실적 명확화 :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분류 구체화 필요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인권교육 (1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0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인권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서성목	박정순	봉형민
	사업시행주체	인권조사과	2110-3220	2110-3217	2110-3706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인권교육	188	191	192	192	1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4	188	188	-	16	191	191	176	191	176	-	15	192
· 인권감수성훈련	168	154	154	-	14	158	156	143	156	143	-	13	157
· 1:1 맞춤형 교육	24	22	22	-	2	24	24	22	24	22	-	2	23
· 외부강사기관방문 교육	12	12	12	-	-	9	11	11	11	11	-	-	12
○ 비목별 분류(합계)	204	188	188	-	16	191	191	176	191	176	-	15	192
· 일반수용비(210-01)	54	52	52	-	2	54	53	46	53	46	-	7	54
· 특근매식비(210-5)	3	3	3	-	-	3	3	2	3	2	-	1	4
· 임차료(210-07)	91	90	90	-	1	98	99	99	99	99	-	-	98
· 국내여비(220-01)	56	43	43	-	13	36	36	29	36	29	-	7	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4	188	188	-	16	191	191	176	191	176	-	15	192
· 인권감수성훈련	168	154	154	-	14	158	156	143	156	143	-	13	157
-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	-	21	18	13	18	13	-	5	19
- 특근매식비(210-05)	3	3	3	-	-	3	3	2	3	2	-	1	4
- 임차료(210-07)	91	90	90	-	1	98	99	99	99	99	-	-	98
- 국내여비(220-01))	56	43	43	-	13	36	36	29	36	29	-	7	36
· 1:1 맞춤형 교육	24	22	22	-	2	24	24	22	24	22	-	2	23
- 일반수용비(210-01)	24	22	22	-	2	24	24	22	24	22	-	2	23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12	12	12	-	-	9	11	11	11	11	-	-	12
- 일반수용비(210-01)	12	12	12	-	-	9	11	11	11	11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법질서 확립」의 전제 조건인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법무행정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 사전 예방
- (인권감수성훈련) 법무부 소속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렬별 인권강사들을 초빙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차별의 극복, 인권 실천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인권국 자체개발 교재로 2박 3일간 합숙 교육 진행

- (1:1 맞춤형 인권프로그램) 검사·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역할 배우와 모의 피의자신문 진행과정을 영상녹화 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수사 시 인권침해적 언동·태도를 개선하여, 검사 및 수사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1일 과정 교육
- (외부 인권강사 기관방문) 법무부 소속 전 직렬 공무원 중 일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인사 중에 위촉된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으로, 학계·시민사회의 선진적 인권의식을 법무행정 실무에 접목하는 1일 과정 교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06. 5. 법무부의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권국 설립
- 2007. 5. 확정·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은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로, 법집행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 예방하여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도모 위해 사업 실시
- 법집행 작용의 현실과 법무행정 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인권교육 시행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	214	204	191	1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사업 수혜자 : 법무행정·집행 관련 공무원 및 피의자, 수용자, 피해자 등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권감수성훈련

: ('25) 158만원 → ('26) 157백만원(△1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8	○ 인권감수성훈련 : 158백만원 가. 인권감수성훈련 강사료 6.6백만원 • 5회×1백만원 + 4회×0.4백만원 = 6.6백만원 나.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등 기타 비용 13.9백만원 • 24회×0.58백만원 = 13.9백만원 다. 특근매식비 3백만원 • 4명×0.007백만원×95일 = 3백만원 라. 강의실 및 숙소 임차료 98백만원 • 22회×3.15백만원+2회×0.85백만원. = 71백만원 • 24회×0.008백만원×20명×7식 = 27백만원 바. 내부강사, 운영진 여비 36백만원 • 24회×0.19백만원×8명 = 36백만원	158	○ 인권감수성훈련 : 157백만원 가. 인권감수성훈련 강사료 6.8백만원 • 3회×1.2백만원 + 8회×0.4백만원 = 6.8백만원 나.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등 기타 비용 11.2백만원 • 24회×0.47백만원 = 11.2백만원 다. 특근매식비 4백만원 • 4명×0.009백만원×105일 = 4백만원 라. 인권감수성훈련 임차료 98백만원 • 20회×5.09백만원+4회×1.6백만원. = 98백만원 마. 내부강사, 운영진 여비 36백만원 • 24회×0.19백만원×8명 = 36백만원

② 1:1 맞춤형 교육

: ('25) 24백만원 → ('26) 23백만원(△1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	○ 1:1 맞춤형 교육 : 24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22.8백만원 • 12회×1.9백만원 = 22.8백만원 나. 보조자료 구입·인쇄비 등 기타 비용 1.2백만원 • 12회×0.1백만원 = 1.2백만원	23	○ 1:1 맞춤형 교육 : 23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22.8백만원 • 12회×1.8백만원 = 21.8백만원 나. 보조자료 구입·인쇄비 등 기타 비용 1.2백만원 • 12회×0.1백만원 = 1.2백만원

③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25) 9백만원 → ('26) 12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9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9백만원 · 25회×0.36백만원 = 9백만원	9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12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12백만원 · 33회×0.36백만원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권감수성훈련 ·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4회, 42명) · 인권감수성교육(14회/279명) - 1:1 맞춤형 교육(15회, 153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43회, 1,703명)
2023	- 인권감수성훈련 ·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6회, 119명) · 인권감수성교육(19회/470명) - 1:1 맞춤형 교육(16회, 166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3회, 1,544명)
2024	- 인권감수성훈련 ·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5회, 100명) · 인권감수성교육(19회/516명) - 1:1 맞춤형 교육(13회, 155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9회, 1,830명)
2025	- 인권감수성훈련 ·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5회, 79명) · 인권감수성교육(19회/463명) - 1:1 맞춤형 교육(13회, 136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5회, 1,20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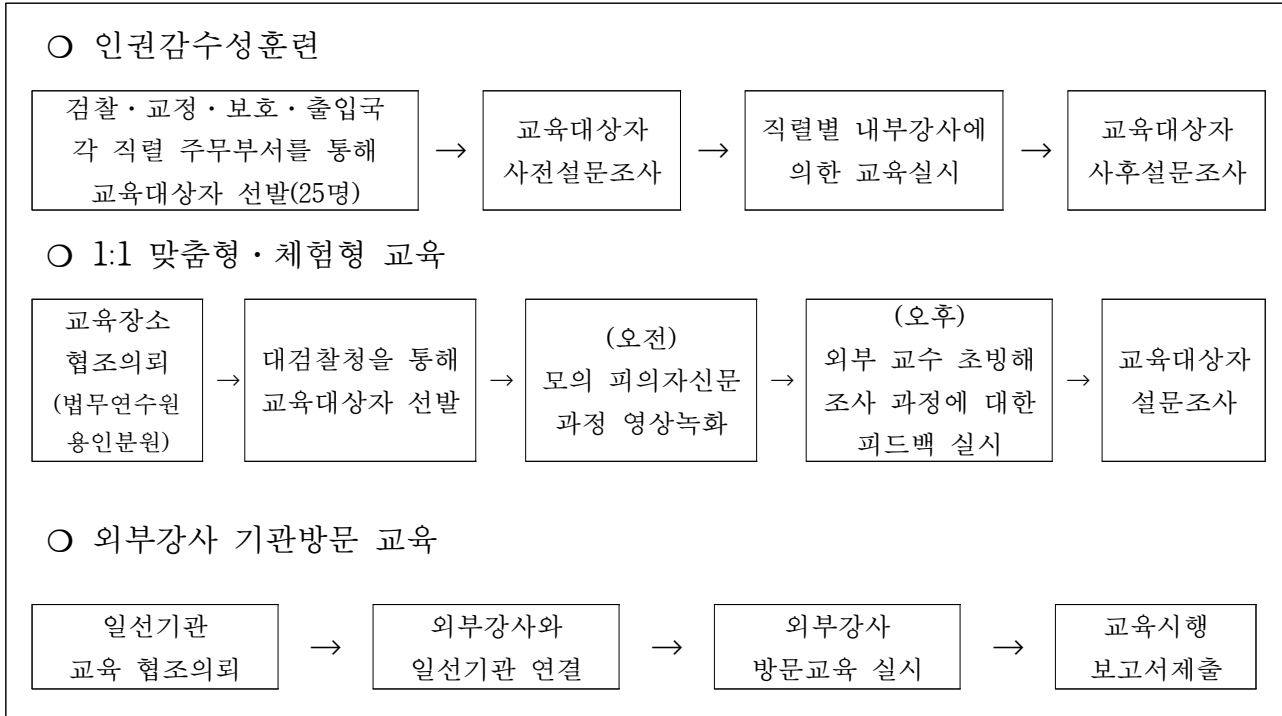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형사상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 인권감수성훈련,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체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191	192	204	204	204	
'26~'30		192	204	214	224	2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니 내실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용으로 교육대상 인원 확대(법사위, 22결산)
 -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집행 개선(법사위, 23결산)
 - 출장자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법사위, 23결산)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 : 계획 대비 실적 충족,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개편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선
 - 2024년 :
 - 인권감수성훈련 임차료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따라 집행 지출관이 집행하도록 개선함
 - 출장자 외 국내여비(교육생 식비) 예산을 임차료 예산으로 비목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핵심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내실화

- 법무부 인권교육의 핵심은 개개인의 인권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감수성 훈련으로서 2박 3일 과정의 체험 및 자기 주도적 참여 학습임
-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은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대화, 토론, 역할극 같은 방법을 이용한 참여·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감수성 교육이 효과적임
- 전체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렬별 강사를 지속적으로 추가 양성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과정을 편성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인권교육의 효율성 및 직무적합성을 제고할 예정

□ ‘1:1 맞춤형·체험형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최초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은 교육대상 검사(3~15년차)를 대상으로 잘못된 언행,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임
- 1:1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신규 임용검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외부강사 기관방문교육’ 지속 실시

-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인사 중에 외부 인권강사를 위촉,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으로 선진적 인권의식을 법무행정 실무에 접목하는 교육임
- 외부 인권강사 홍보 및 기관방문 독려,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집행 실적 목표 달성 노력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4	△15	199	-	-	-	199	153	76.9	76.9	-	46
2023	214	-	214	-	-	-	214	212	99.2	99.2	-	2
2024	204	-	204	-	-	-	204	188	92.2	92.2	-	16
2025	191	-	191	-	-	-	191	176	92.1	92.1	-	1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강사료 및 임차료 등 불용 발생
2023	전액 집행
2024	불용사유 : 예산절감을 위하여 강사 및 운영진 숙박, 출장 최소화
2025	불용사유 : 예산절감을 위해 강사, 운영진 출장 및 숙박 최소화, 수용비 절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024. 9. 국내여비 7백만원을 임차료로 전용
(국회 법사위 :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집행 지적'에 따라)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아동인권 증진 (1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30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아동인권 증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아동인권 증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김윤정	박승혁	박수진
	사업시행주체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7	(02)2110-3648	(02)2110-445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아동인권 증진	241	245	245	245	24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5	245	241	-	4	245	245	241	245	241	-	4	245
·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지원	28	28	24	-	4	28	28	24	28	24	-	4	28
· 아동인권 증진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197	197	197	-	-	197	197	197	197	197	-	-	197
· 아동인권 증진 연구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비목별 분류(합계)	245	245	241	-	4	245	245	241	245	241	-	4	245
· 일 반 수 용 비 (210-01)	155	155	151	-	4	155	155	128	155	128	-	4	155
· 임 차 료 (210-07)	-	-	-	-	-	-	-	23	-	23	-	-	-
· 일 반 용 역 비 (210-14)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정 책 연 구 비 (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5	245	241	-	4	245	245	241	245	241	-	4	245
·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지원	28	28	24	-	4	28	28	24	28	24	-	4	28
- 일 반 수 용 비 (210-01)	28	28	24	-	4	28	28	24	28	24	-	4	28
· 아동인권 증진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197	197	197	-	-	197	197	197	197	197	-	-	197
- 일 반 수 용 비 (210-01)	127	127	127	-	-	127	127	104	127	104	-	-	127
- 임 차 료 (210-07)	-	-	-	-	-	-	-	23	-	23	-	-	-
- 일 반 용 역 비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210-14)													
· 아동인권 증진 연구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정 책 연 구 비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260-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동인권 증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증진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권익 보장 및 인권 증진 도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적절한 처분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의 결정을 위하여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아동학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지원·관리
- (아동인권증진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사법경찰관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방지 및 아동학대 대처 방안, 사법절차상 아동보호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인권 증진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중대아동학대범죄의 지속적 발생 이후 단일 부처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지영역과 사법영역으로 소관 사항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여 '13. 12. 31. 두 법안 국회 통과
- '14. 2.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 대책」 발표
- '14. 9. 시행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현장조치·수사·재판·아동보호절차 등 전문지식 교육 실시
- '16. 3.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마련
- '17. 1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상담·치료 위탁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이수명령을 불이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0.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1. 아동친화적 환경에서의 아동학대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2.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3. 3.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공동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편의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대상자를 아동학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등으로 확대
- '24. 12.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5. 6.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 사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5. 11. 임시조치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8	265	245	245	24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18세 미만의 아동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25) 28백만원 → ('26) 2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사시 검사가 형사사법적 관점뿐만 아닌 지역 내 아동학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건 처분 및 피해 아동 지원시 아동복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84회 × 0.33백만원(2025년) → 84회 × 0.33백만원(2026년)

②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 ('25) 197백만원 → ('26) 19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비용 및 대국민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인쇄물 발간 등)를 위해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교육 소요비용 122백만원(2025년) → 122백만원(2026년)
아동인권증진 홍보물 인쇄비 5백만원(2025년) → 5백만원(2026년)
아동인권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70백만원(2025년) → 70백만원(2026년)

③ 아동인권 증진 연구

: ('25) 20백만원 → ('26) 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등 아동인권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책연구비 20백만원(2025년) → 2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	○ 일반수용비(210-01) : 155,000천원(전년동) 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28,000천원) · 회의 개최비 지원 : 330천원×84회=28,000천원 나. 아동인권 증진 교육(122,000천원) · 교육진행비(강사료 및 대관료 등) : 380천원×320명 다. 아동인권 증진 홍보물 인쇄(5,000천원)	245	○ 일반수용비(210-01) : 155,000천원(전년동) 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28,000천원) · 회의 개최비 지원 : 330천원×84회=28,000천원 나. 아동인권 증진 교육(122,000천원) · 교육진행비(강사료 및 대관료 등) : 186천원×655명 다. 아동인권 증진 홍보물 인쇄(5,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홍보물 인쇄비 : 5,000천원×1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등(7,000천원) ·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3,500천원×2편=7,000천원 ○ 정책연구비(210-40) : 2,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연구(2,000천원) · 연구용역비 : 2,000천원×1회=2,000천원		- 홍보물 인쇄비 : 5,000천원×1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등(7,000천원) ·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3,500천원×2편=7,000천원 ○ 정책연구비(210-40) : 2,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연구(2,000천원) · 연구용역비 : 2,000천원×1회=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88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광고 : 영화관 261관, 온라인(유튜브) 송출 - 피해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진행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411명
2023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72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에드패커, 유튜브) 송출 - 교육기관내 아동학대사건 사례·판례분석,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754명
2024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51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온라인(유튜브) 송출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800명 수료 -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개정 연구
2025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28회 ('25.3분기 집계 기준, 전체 실적은 '26.1월 취합 예정)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온라인(유튜브) 송출 -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연구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817명 수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건관리회의의 경우 회의 개최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시 횟수를 목표로 설정,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권역별 합동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대응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홍보물 인쇄·배포 1회, 동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및 정책연구 추진(연 1회)를 통한 아동인권 증진 방안 지속적으로 발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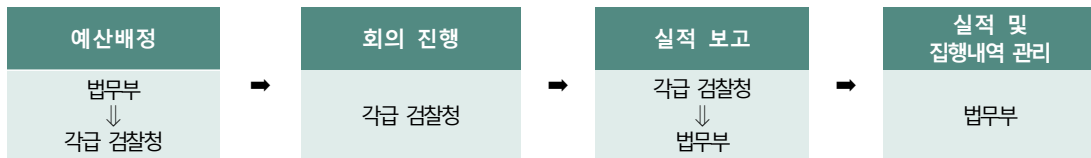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분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등 지역 내 아동학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검찰청의 사건관리회의를 지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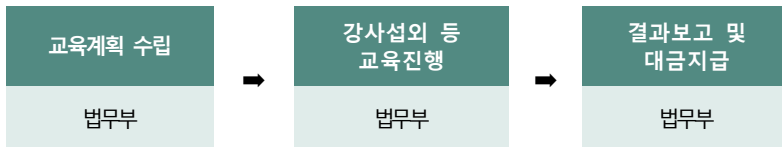
※ 근거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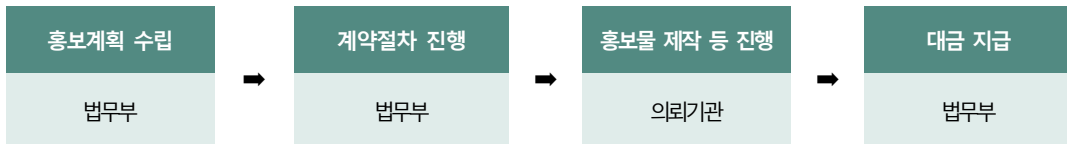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홍보물 인쇄·배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아동인권 증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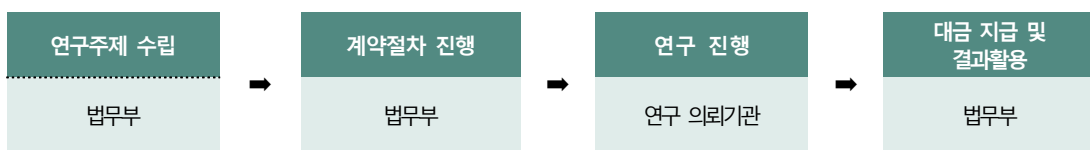


<아동인권 증진 홍보>



- (아동인권 증진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 관련 연구주제·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

<아동인권 증진 연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5	245	245	245	245	
2025~2029		245	245	233	228	2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지침 보강, 예산 불용 방지, 회의실적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자문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법사위, '24결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회의 개최를 독려하고 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회의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 개선할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피해아동 지원 및 가해자 적정 처분을 위해 사건관리회의 예산을 지원하고 실적을 관리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교육 대상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효율적인 교육 추진 예정
-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인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제도 관련 홍보물 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을 대국민 대상 홍보 추진
- (아동인권 증진 연구) 법무·인권정책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방안 등 정책연구를 진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아동인권 증진 연구비 증액 필요성)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적절한 정책방향 수립 및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법제·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 제약상 연구수행은 최소 용역의뢰비로 연간 1회에 한정되고 있어 원활한 정책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연구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아동인권 증진 교육비 비목 추가 필요성)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집합교육의 장소 대관 비용 지출을 위해 임차료 비목의 추가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8	△10	248	-	-	-	248	246	99.1	99.1		2
2023	265	-	265	-	-	-	265	256	96.6	96.6		9
2024	245	-	245	-	-	-	245	241	98.4	98.4	-	4
2025	245	-	245	-	-	-	245	241	98.3	98.3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집행잔액(약 17만원), 교육비 집행잔액(약 70만원)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집행잔액 (약 93만원), 교육비 집행잔액 (약 86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 집행잔액 불용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024회계연도 법사위 결산 지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인권역량강화 (11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감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11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제인권증진	국제인권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인권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노일석	장현주	
	사업시행주체	인권정책과	02-2110-3214	02-2110-3782	
		법무부	인권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제인권역량강화	207	246	-	266	266	20	8.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25	246	225	-	19	266
· 전문위원 및 영 문에디터 채용	170	170	140	-	31	175	175	156	175	156	-	19	195
· 국제인권 유관기 관 연계강화	36	36	35	-	1	36	36	35	36	36	-	-	36
·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 비목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55	246	255	-	19	266
· 상용임금(110-03)	141	141	122	-	19	145	145	128	145	128	-	17	156
· 일 반 수 용 비 (210-01)	6	6	6	-	-	6	6	6	6	6	-	-	6
· 복 리 후 생 비 (210-02)	2	2	2	-	-	2	2	2	2	2	-	-	2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0
· 정 책 연 구 비 (260-02)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 고 용 부 담 금 (320-09)	27	27	16	-	12	28	28	26	28	26	-	2	2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25	245	225	-	19	266
· 전문위원 및 영 문에디터 채용	170	170	140	-	31	175	175	54	175	54	-	-	195
- 상 용 임 금 (110-03)	141	141	122	-	19	145	145	128	145	128	-	17	156
- 복 리 후 생 비 (210-12)	2	2	2	-	-	2	2	2	2	2	-	-	2
- 고 용 부 담 금 (320-09)	27	27	16	-	12	28	28	26	28	26	-	2	28
· 국제인권 유관기 관 연계강화	36	36	35	-	1	36	36	36	36	36	-	-	36
- 일 반 수 용 비 (210-01)	6	6	6	-	6	6	6	6	6	6	-	-	6
- 국 외 업 무 여 비 (220-02)	29	29	29	-	1	30	30	30	30	30	-	-	30
·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 정 책 연 구 비 (260-02)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인권역량강화) 유엔의 대한민국 정책, 법제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가, 우리 국민의 국제인권기구 진정사건 증가 등 국제인권기구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하여, 정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국내인권정책 발전을 도모
-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동 내역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인권법의 법리와 선례에 근거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근로자 2인 및 법률문서 번역역량을 갖춘 민간근로자 1인을 공개 채용하는 것임
-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동 내역사업은 ①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듣고, ②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조약기구의 심의 참가 의무에 따라 현지 심의에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하며, ③인권이사회·포럼 참석 등으로 최신 인권 이슈를 습득하기 위한 것임
- (인권정책개선 연구) 동 사업내역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체계 및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383호) 제3조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진정을 심리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중 4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부처임
- 위 4개 협약은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국내인권상황 심의 수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심리 절차를 둠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기타 인권기구의 조사·질의에 대해서도 위 4개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의 주무부처임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8	226	241	246	26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전문위원 2인 및 영문에디터 1인 인건비
: ('25) 175백만원 → ('26) 195백만원, 증20백만원
- (요구) 국제인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처우개선 분) 증액
- (산출) 상용임금 145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28백만원(2025년)
→ 상용임금 161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2백만원(2026년)
- ②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 강화
: ('25) 36백만원 → ('26) 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운영비 6백만원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심의 참석 의무 수행, 국제인권포럼 등 참석 필요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5년) →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6년)
-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25) 35백만원 → ('26) 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비 35백만원,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연구비 1식 35백만원(2024년) → 연구비 1식 35백만원(2025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	○ 상용임금(110-03) : 145,124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36,084) 나. 명절상여금 (3,300) · 550,000원x3명x2회 다. 급식비 (5,040) · 140,000원x3명x12월 라. 계수조정 (700)	266	○ 상용임금(110-03) : 161,526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42,508) 나. 명절상여금 (13,258) · 2,209,639원x3명x2회 다. 급식비 (5,760) · 160,000원x3명x12월 라. 계수조정 (764)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 3명x500,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 3명x5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28,372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16,682) 나. 퇴직적립금(11,641) 다. 계수조정 (49)		○ 고용부담금(320-09) : 31,970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20,280) 나. 퇴직적립금(11,641) 다. 계수조정 (49)
	○ 일반수용비(210-01) : 6,004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4) · 4회x1,500원		○ 일반수용비(210-01) : 6,004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4) · 4회x1,5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15,000) · 항공료 : 2,444,000원x3명 · 일비 : (\$35x8일x1명)+(\$30x8일x2명) · 숙박비 : (\$223x6일x1명)+(\$176x6일x2명) · 식비 : (\$107x7일x1명)+(\$81x7일x2명) 나. UN 기업과 인권 포럼(15,000) · 항공료 : 2,444,000원x3명 · 일비 : (\$30x8일x3명) · 숙박비 : (\$176x6일x3명) · 식비 : (\$81x7일x3명) 다. 조정재원 (-3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30,000) · 항공료 : (5,000,000원x1명)+(1,900,000원x5명) · 일비 : (\$35x8일x1명)+(\$30x8일x5명) · 숙박비 : (\$223x6일x1명)+(\$176x6일x5명) · 식비 : (\$107x7일x1명)+(\$81x7일x5명) 나. 조정재원 (-62,1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5,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제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기타 국제인권규약 관련 쟁점 검토 다수, 유엔 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절차 이행 연구 및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심의대비 연구 진행
2023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4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숍 개최, 국제기구·단체·협약기구 위원 등 면담, 유엔 특별절차 질의 대응 지원,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유엔 사회권규약 개인진정 결정례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4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및 개인진정 견해 관련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제2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숍 개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안 연구 실시, 제13차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제10차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회의 참석,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5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및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제출, 제3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숍 개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 접근 안내서」 발간,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관련 대응,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기업과 인권 플랫폼 구축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조약기구에 제출되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서한 및 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작성·제출
- 학계·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로(자문·간담회·토론회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유기성 강화
- 국내 인권정책 개선 연구용역 통해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인권 업무 집행 절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 접수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답변 등 작성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답변 내용 감수 및 영문 번역



대한민국 정부 입장 제출 및
사후대응을 통한 국내 인권정책 개선

유엔에서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로 전달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답변이
작성되도록 부처간 협의 등 주도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 강화】
유엔이 파트너로 인정하는 NGO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 소통 등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전문위원·에디터 등 내부 역량 활용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강화】
- 유엔 권고 수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부처간 협업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내역사업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해외 제도, 사례 등 연구(전문위원)
- 유엔 권고 및 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제도 정책 개선 도모

점검 형태	주요 내용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 근거: 유엔총회 결의 60/251 ▶ 모든 UN회원국에 대한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사 ▶ 매 4.5년 마다 심의 ('17년 11월 우리나라 UPR 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사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등) ▶ 정기적으로(약 4년 주기)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 각 조약기구가 우리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실시
특별절차 방문조사	▶ 근거: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예: 19년 한국을 조사한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결의 28/16) ▶ 특별절차: 특정 인권주제 •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UN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 ▶ 각 국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한(communication)을 송부,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련된 평가와 권고를 제출
개인진정절차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등) ▶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인권기구에 특정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 ▶ 진정이 접수되면, 당사국은 진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기구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 견해 및 권고 발표 ※ 양심적 병역거부, 탈북 여종업원 사건 등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인진정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1	246	251	256		
2025~2029		246	273	280	302	3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 정부의 인권상황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질의,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방어적·소극적 답변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받는 심의에 참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 관련 회의, 초럼 등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이민정책개발지원 (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이민정책개발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이민정책 개발지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이민정책개발지원	327	190	190	205	226	36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6	386	327	-	59	190	190	173	190	173	-	17	226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160	160	141	-	19	99	99	98	99	98	-	1	135
· 이민정책개발연구	226	226	186	-	40	91	91	75	91	75	-	16	91
○ 비목별 분류(합계)	386	386	327	-	59	190	190	173	190	173	-	17	226
· 상용임금(110-03)	44	44	32	-	12	45	45	44	45	44	-	1	50
· 복리후생비(210-12)	1	1	0	-	1	1	1	0	1	0	-	1	1
· 일반용역비(210-14)	101	101	99	-	2	38	38	38	38	38	-	-	38
· 국외업무여비(220-02)	91	91	61	-	30	91	91	75	91	75	-	16	91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0	7	7	7	7	7	-	-	7
· 정책연구비(260-02)	135	135	125	-	10	-	-	-	-	-	-	-	-
· 포상금(310-03)	-	-	-	-	-	-	-	-	-	-	-	-	30
· 고용부담금(320-09)	9	9	3	-	6	9	9	8	9	8	-	1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6	386	327	-	59	190	190	173	190	173	-	17	226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160	160	141	-	19	99	99	98	99	98	-	1	135
-상용임금(110-03)	44	44	32	-	12	45	45	44	45	44	-	1	50
-복리후생비(210-12)	1	1	0	-	1	1	1	0	1	0	-	1	1
-일반용역비(210-14)	101	101	99	-	2	38	38	38	38	38	-	-	38
-사업추진비(240-01)	7	7	7	-	0	7	7	7	7	7	-	-	7
-포상금(310-03)	-	-	-	-	-	-	-	-	-	-	-	-	30
-고용부담금(320-09)	9	9	3	-	6	9	9	8	9	8	-	1	10
· 이민정책개발연구	226	226	186	-	40	91	91	75	91	75	-	16	91
-국외업무여비(220-02)	91	91	61	-	30	91	91	75	91	75	-	16	91
-정책연구비(260-02)	135	135	125	-	1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이민정책개발지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해외 이민당국 출입국공무원 간 교환연수 등 국제협력, 선진 우수사례 연구 등 이민정책 개발지원
- (내역사업 1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확산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및 국제 이민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공무원근로자(에디터) 운영
- (내역사업 2 : 이민정책 개발연구)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글로벌 경쟁시대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등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및 제22조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외국인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를 활성화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제역량과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9	390	386	190	22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 ('25) 99 → ('26) 135백만원, 36백만원 증액
- ② 이민정책개발 연구 : ('25) 91 → ('26) 91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조사항목·지수 개발 -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생체정보 등 수집 및 이용방안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2	· 이민행정사례연구 등 행정연수 : 2명, 연수보고서 1건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사업 및 투자 관련 체류제도 분석 -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달조직 운영사례 - 출입국관리직 전문성 제고
2023	· 이민행정사례연구 등 행정연수 : 15명, 연수보고서 4건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연구 -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지역기반 비자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24	· 이민행정사례연구 등 행정연수 : 16명, 연수보고서 4건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총 6회 개최, 609명 참석 - 제1회 서울특별시 외국인정책 담당자 104명 참석(6. 13.) - 제2회 강원·경북·대구 지역 외국인정책 담당자 124명 참석(6. 27.~28.) - 제3회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외국인정책 담당자 129명 참석(9. 26.~27.) - 제4회 부산·울산·경남 지역 외국인정책 담당자 79명 참석(10. 31.~11. 1.) - 제5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외국인정책 담당자 87명 참석(11. 21~22) - 제6회 경기·인천 외국인정책 담당자 86명 참석(12. 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국제이민 협력 공조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출입국관리해외연구 및 출장계획수립(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 → 해외사례 연구 출장자 선발 → 출장 및 과건 명령 → 출장업무수행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법무부 지식마당 등재(직원 공유) → 직원업무 활용 → 성과평가(만족도 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86	190	398	410	422	
2025~2029		190	226	181	177	17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법무부는 이민정책개발 지원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전용되지 않도록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민정책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법무부는 이민정책개발 지원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전용되지 않도록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민 정책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이민정책개발 지원 예산을 연례적('20 ~ '22)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코로나19로 국외 연수과정이 취소되는 등의 국외 여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 '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 해소에 따라 이·전용 없이 편성액 390백만원 중 370백만원 집행(집행율 94.9%)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인구위기, 지방소멸,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당국 간 교환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이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이민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9	-	429	-	△117	-	312	296	69.0	94.8	-	16
2023	390	-	390	-	-	-	390	370	94.9	94.9	-	20
2024	386	-	386	-	-	-	386	327	84.7	84.7	-	59
2025	190	-	190	-	-	-	190	173	91.1	91.1	-	1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직제개편, 임차청사 신규 수급, 기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등 사유로 인한 출입국 외국인관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및 난민통역비 지출 급증에 따른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외업무여비전용 감 81백만원, 일반수용비 전용 감 36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3	○ 불용 : 집행잔액 20백만원
2024	○ 불용 : 연구용역 낙찰차액, 출입국관리 상호교환 프로그램 미진행 등 59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없음 ○ 불용 : 집행잔액 1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이민정책연구원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이민정책 연구원운영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이민정책연구원	경영지원팀	정혜진 팀장	02-3788-80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562	3,455	3,455	4,046	3,786	331	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 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62	2,562	2,562 [2,562]	-	-	3,455	3,455	3,455 [3,415]	3,455	3,455 [3,415]	-	- [40]	3,786
· 연구원 인건비	1,732	1,732	1,732 [1,732]	-	-	1,887	1,887	1,887 [1,845]	1,887	1,887 [1,845]	-	- [42]	1,918
· 연구원 운영비	227	227	227 [227]	-	-	965	965	965 [1,022]	965	965 [1,022]	-	- [-]	462
· 연구사업비 등	603	603	603 [603]	-	-	603	603	603 [548]	603	603 [548]	-	- [55]	1,406
○ 비목별 분류(합계)	2,562	2,562	2,562 [2,562]	-	-	3,455	3,455	3,455 [3,415]	3,455	3,455 [3,415]	-	- [40]	3,786
· 민간경상보조(320-01)	2,562	2,562	2,562 [2,562]	-	-	3,455	3,455	3,455 [3,415]	3,455	3,455 [3,415]	-	- [40]	3,7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62	2,562	2,562 [2,562]	-	-	3,455	3,455	3,455 [3,415]	3,455	3,455 [3,415]	-	- [40]	3,786
· 연구원 인건비	1,732	1,732	1,732 [1,732]	-	-	1,887	1,887	1,887 [1,845]	1,887	1,887 [1,845]	-	- [42]	1,918
- 민간경상보조(320-01)	1,732	1,732	1,732 [1,732]	-	-	1,887	1,887	1,887 [1,845]	1,887	1,887 [1,845]	-	- [42]	1,918
· 연구원 운영비	227	227	227 [227]	-	-	965	965	965 [1,022]	965	965 [1,022]	-	- [-]	462
- 민간경상보조(320-01)	227	227	227 [218]	-	-	965	965	965 [1,022]	965	965 [1,022]	-	- [-]	462
· 연구사업비 등	603	603	603 [603]	-	-	603	603	603 [548]	603	603 [548]	-	- [55]	1,406
- 민간경상보조(320-01)	603	603	603 [603]	-	-	603	603	603 [548]	603	603 [548]	-	- [55]	1,4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국가 간 이주현상을 분석하고 국가·지역 단위 중 장기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 활용, 현안 대응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 연구 및 전문가 교육 등 수행
- (내역사업 1 : 연구원 인건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 수행인력 총 28명(원장 1, 부원장 1, 연구위원 15, 행정원 11)에 인건비 지원
- (내역사업 2 : 연구원 운영비) 이민정책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임차료, 공공요금, 청소용역 및 수용비성 경비와 연구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 지원
- (내역사업 3 : 연구사업비) 이민(외국인유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및 미래예측 등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이민동향과 정책의 조사·연구·분석 등 연구과제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정기간행물·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09.6.30)

◎조약 제219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이주기구(이하 “IOM”이라 한다)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제이주기구의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의지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연구원의 목적, 기능 및 조직,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제2조 기능

1. 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다.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라.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마.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바.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사.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② 추진경위

- '07.11.19. 법무부-국제이주기구-경기도 3자간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
- '09.06.30. 국제기구인 IOM(국제이주기구)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협정체결
- '09.12.17.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 '23.07.19.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제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2조의2)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4	2,268	2,562	3,455	3,78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이민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정책 연구원운영	보조	이민정책 연구원	3,786	100.0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이민 정책연구원) 제6항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연구원 인건비** : ('25) 1,887 → ('26) 1,918백만원, 31백만원 증액
- ② **연구원 운영비** : ('25) 965 → ('26) 462백만원, 503백만원 감액
- ③ **연구사업비** : ('25) 603 → ('26) 1,406백만원, 803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번	년도	국내외	구분	내용
1	2023	국내	정부기관 협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2				(김영선 의원실-매일경제)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 방안 토론회
3				(법무부) 제3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연번	년도	국내외	구분	내용	
4	2024	국제	국내 네트워크 활동	[수탁]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5				(법무부-한국행정학회)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출범식	
6				(제주대학교 외 4개 대학) 난민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7			국제기구 협력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국가인권위원회) 2023 난민포럼	
8				(UNAOC-IOM) 2023 국제 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 심사회	
9				(메지로대학교-니혼대학교) 일본-대만 사회통합 연구자 간담회	
10			해외 유관기관·학자 협력	(한국이민학회-일본이민정책학회)	
11				이민정책연구원-한국이민학회-일본이민정책학회 공동 학술회의	
12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재외한인연구소) 2023 해외석학 초청 콜로키움	
13			기타	[수탁] 라오스 출입국행정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14				(페루 이민청) ODA사업 발굴 협력회의	
15				(파라과이 이민청) 고위급 화상회의	
16				(이민정책연구원-몽골 이민청) MOU 체결	
17				(주한페루대사관) 협력회의(신임대사)	
18			국내	정부기관 협력	(법무부) 제4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19		(경상북도) 본원 방문 간담회			
20		(법무부) 외국인 유입(Inflow) 관련 통계항목 생성 검토			
21		(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예측 모델 구축			
22		(법무부) 법무부 수탁연구 및 연구원 연구과제 데이터 관련 협력			
23		[수탁]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이민정책 포럼			
24		국내 네트워크 활동		'난민 교류와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공유회	
25				유관·MOU 기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27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공동 정책포럼			
28		(서울연구원) 유학생 학업 및 취업 실태조사(2025) 관련 의견 청취			
29		(민간 BC 카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 및 통신 패키지 서비스 관련 협업 방향 논의			
30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조사데이터센터 데이터 세미나			
31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전략기획부 데이터 세미나
32				[수탁] (법무부) 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학술 포럼	
33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민정책연구원 학생실습 운영		
34			(역량강화) 연구직 대상 질적방법론 교육 실시		
35			국제	정부·국제기구 협력	(일본 재류관리청)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36		(IOM 베트남대표부)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37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이민정책 당국자 간담회				
38	(IOM베트남대표부) 공동 이슈브리프 발간 협의				
39	(ADB-IECD-ILO) Roundtable on Labor Migration in Asia 참석/발표				
40	(유엔문명연대-국제이주기구) 2023 국제 청소년 UCC 페스티벌 PLURAL+ 심사회				
41	(OECD) 이주전망 TF 월례 세미나				
42	(OECD) OECD 이주전망TF 킥오프 회의 참여				
43	(OECD) OECD 이주전망TF 2차 회의 참여				
44	(OECD) OECD 이주전망TF 5차 회의 참여				
45	해외기관·학자 협력	(일본 오사카공립대)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4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47		(일본 토요대)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			
48	2025	국내	민간기관 협력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외국인투자이민제도 개선 자문회의(1.17.)	
49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민정책연구원 학생실습 운영(1.13.~2.13.)	
50				지역이민정책연구 네트워크 운영회의(6.13. 6.30)	
51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 및 토론(6.18.)	
52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MOU 체결(7.18.)	
53				(법무부) 비자제한제 심의(3.26.)	
54		정부부처 협력	(법무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관련 협조(1.~4.)		
55			(법무부) 광역형 비자 관련 논의(4.3.)		
			(국회) 이민전담기구 신설 관련 자문(4.10.)		

연번	년도	국내외	구분	내용
56				(법무부) 중국단체관광 무사증제도 도입 관련 논의(4.10, 4.18.)
57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관련 논의(4.22, 4. 30, 5.8, 5.15, 5.23.)
58				(국회) 이민정책 관련 과제 도출 회의(5.30, 6.17.)
59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과의 간담회(2.24.)
60				(법무부)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장과의 간담회(7.29.)
6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민정책 관련 자문 제공(9.11, 9.12., 9.18.)
62				(일본 와세다대) 이민정책 관련 논의(1.17.)
63				(일본 JICA) 국내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관련 연구 간담회(2.28.)
64				(IOM 한국대표부) 협력 방안 논의(3.7, 3.21.)
65				(일본 오사카공립대) 이민정책연구원 방문 간담회(3.20.)
66				(Migration Policy Institute) 온라인 간담회(4.4.)
67				(스웨덴 Delmi) 온라인 간담회(5.14.)
68				(UNHCR) 2025 난민포럼개최(7.25.~7.26.)
69				(IOM한국대표부) 세계이주보고서(WMR) 세미나 공동 주최(8.28.)
70				(ADB-IEO-ILLO) 제15차 라운드테이블 발표 및 참석(9.2.~9.3.)
71				(Mitsubishi UF) Research & Consulting] 간담회(9.4.)
72				(일본재류관리청) 간담회(9.5.)
73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과의 간담회(2.2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 이민협력 관계 형성 및 공동 정책 연구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교류 확대
- 이민자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 IOM 및 기타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아시아 지역 이민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이민 환경의 안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이민정책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승인 → 국고 교부 → 이민정책 연구원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62	3,455	4,288	4,417	4,549	
2025~2029		3,455	3,786	2,770	2,712	2,6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법무부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법무부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4년 예산에는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 중 연구사업비를 403백만원 편성하여 '22년(136백만원) 대비 287백만원 증액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 자문 및 정보교환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사업
- 국·내외 이민관련 법령 및 정책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 이민정책 및 입법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지원 사업
-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기타 전문서적 등 출판물의 발간·보급 사업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24. 4)
 - 연구원의 연구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연구과제 이외에도 자체 연구사업비를 확보하여 연구활동을 폭넓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04	-	2,004	-	-	-	2,004	2,004 [2,003]	100 [100]	100 [100]	-	-
2023	2,268	-	2,268	-	-	-	2,268	2,268 [2,266]	100 [99.9]	100 [99.9]	-	-
2024	2,562	-	2,562	-	-	-	2,562	2,562 [2,562]	100 [100]	100 [100]	-	-
2025	3,455	-	3,455	-	-	-	3,455	3,455 [3,415]	100 [98.8]	100 [98.8]	-	- [4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04	2,004	2,003	2,004	-	2,004	2,003	-	1	99.9
2023	2,268	2,268	2,268	2,268	-	2,268	2,266	-	2	99.9
2024	2,562	2,562	2,562	2,562	-	2,562	2,562	-	-	100
2025	3,455	3,455	3,455	3,455	-	3,455	3,415	-	-	98.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실집행잔액 1백만원
2023	- 불용 : 실집행잔액 2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없음
2025	- 이·전용 내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사업시행주체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법무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50,658	55,163	55,163	66,824	65,441	10,278	1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419	51,831	50,658	-	1,173	55,163	55,636	55,157	55,636	55,157	-	479	65,441
· 공무원근로자 운영	16,519	16,508	16,182	-	327	17,872	16,867	16,729	16,867	16,729	-	138	20,233
· 소속관서 운영경비	29,211	29,634	28,916	-	717	29,264	30,842	30,722	30,843	30,722	-	121	33,231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5,689	5,689	5,560	-	129	8,027	7,927	7,706	7,927	7,706	-	221	11,977
○ 비목별 분류(합계)	51,419	51,831	50,658	-	1,173	55,163	55,636	55,164	55,636	55,164	-	472	65,441
· 상용임금(110-03)	13,526	13,526	13,230	-	296	14,651	14,651	14,549	14,651	14,549	-	102	16,584
· 일용임금(110-04)	46	46	9	-	37	46	46	42	46	42	-	4	48
· 일반수용비(210-01)	516	739	710	-	29	517	601	591	601	591	-	10	801
· 공공요금및 제세(210-02)	5,350	6,042	5,974	-	67	5,350	6,430	6,422	6,430	6,422	-	8	5,650
· 피복비(201-03)	126	116	91	-	25	126	121	105	121	105	-	16	126
· 임차료(210-07)	19,015	18,164	17,966	-	198	19,146	19,551	19,550	19,551	19,550	-	1	20,60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37	3,096	3,018	-	78	2,674	2,989	2,979	2,989	2,979	-	10	3,144
· 복리후생비(210-12)	219	219	216	-	3	231	231	223	231	223	-	8	239
·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85	-	20	105	105	100	105	100	-	5	99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 포상금(310-03)	-	-	-	-	-	-	-	-	-	-	-	-	100
· 구호및교정비(320-06)	1,066	1,066	779	-	286	959	654	572	654	572	-	82	658
· 고용부담금(320-09)	2,648	2,648	2,645	-	3	2,864	1,864	1,851	1,864	1,851	-	13	3,284
· 실시설계비(420-02)	302	302	236	-	67	30	30	25	30	25	-	5	30
· 공사비(420-03)	3,309	3,309	3,260	-	49	6,283	6,283	6,076	6,283	6,076	-	207	8,161
· 감리비(420-04)	17	17	17	-	0	66	66	59	66	59	-	7	52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35
· 자산취득비(430-01)	2,061	2,061	2,047	-	13	1,648	1,548	1,546	1,548	1,546	-	2	3,699
· 무형자산(440-00)	353	353	351	-	2	445	445	444	445	444	-	1	2,10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419	51,831	50,658	-	1,173	55,163	55,636	55,157	55,636	55,157	-	479	65,441
· 공무원근로자 운영	16,519	16,508	16,182	-	327	17,872	16,867	16,729	16,867	16,729	-	138	20,233
-상용임금(110-03)	13,526	13,526	13,230	-	296	14,651	14,651	14,549	14,651	14,549	-	102	16,584
-피복비(201-03)	126	116	91	-	25	126	121	105	121	105	-	16	126
-복리후생비(210-12)	219	219	216	-	3	231	231	223	231	223	-	8	239
-고용부담금(320-09)	2,648	2,648	2,645	-	3	2,864	1,864	1,851	1,864	1,851	-	13	3,284
· 소속관서 운영경비	29,211	29,634	28,916	-	717	29,264	30,842	30,722	30,843	30,722	-	121	33,231
-일용임금(110-04)	46	46	9	-	37	46	46	42	46	42	-	4	48
-일반수용비(210-01)	516	739	710	-	29	517	601	591	601	591	-	10	801
-공공요금제세(210-02)	5,350	6,042	5,974	-	67	5,350	6,430	6,422	6,430	6,422	-	8	5,650
-임차료(210-07)	19,015	18,164	17,966	-	198	19,146	19,551	19,550	19,551	19,550	-	1	20,606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37	3,096	3,018	-	78	2,674	2,989	2,979	2,989	2,979	-	10	3,144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85	-	20	105	105	100	105	100	-	5	99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포상금(310-03)	-	-	-	-	-	-	-	-	-	-	-	-	100
-구호및교정비(320-06)	1,066	1,066	779	-	286	959	654	572	654	572	-	82	658
-무형자산(440-00)	353	353	351	-	2	445	445	444	445	444	-	1	2,103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5,689	5,689	5,560	-	129	8,027	7,927	7,706	7,927	7,706	-	221	11,977
-실시설계비(420-02)	302	302	236	-	67	30	30	25	30	25	-	5	30
-공사비(420-03)	3,309	3,309	3,260	-	49	6,283	6,283	6,076	6,283	6,076	-	207	8,161
-감리비(420-04)	17	17	17	-	-	66	66	59	66	59	-	7	52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	35
-자산취득비(430-01)	2,061	2,061	2,047	-	13	1,648	1,548	1,546	1,548	1,546	-	2	3,6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무원운영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민행정업무 수행
- (내역사업 1 : 공무원근로자 운영) 사무보조 등 소속기관 지원인력 운영
- (내역사업 2 : 소속관서 운영) 45개 소속기관에 대한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시설 관리 및 임차관리비 지출, 기타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통한 출입국업무 지원
- (내역사업 3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45개 소속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개보수,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민원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령)
- ② 추진경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7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843	48,462	51,419	55,163	65,44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5) 17,872 → ('26) 20,233백만원, 2,361백만원 증액
- ② **소속관서 운영경비** : ('25) 29,264 → ('26) 33,231백만원, 3,967백만원 증액
- ③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 ('25) 8,027 → ('26) 11,977백만원, 3,950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단위사업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은 단순 청사 임차료, 청소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본 사업경비에 해당하므로 관리과제 미설정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출입국 45개 소속기관의 시설운영 지원으로 원활한 출입국관리 업무 수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출입국업무 수행으로 출입국자, 체류외국인의 만족도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수요과약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계약 → 시설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예산집행 →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419	55,163	62,843	64,729	66,671	
2025~2029		55,163	65,441	58,500	57,268	55,4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소속 기관의 공공요금 등 운영비 확보로 원활한 이민행정업무 수행
- 폭증하는 체류외국인 수에 걸맞은 출입국기관의 청사신축 및 이전으로 원활한 출입국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843	-	43,843	-	△890	-	42,953	42,164	96.2	98.2	-	789
2023	48,462	-	48,462	-	△1,083	-	47,379	46,406	98.8	97.9	-	973
2024	51,419	-	51,419	-	412	-	51,831	50,658	98.5	97.7	-	1,173
2025	55,163	-	55,163	-	473	-	55,636	55,157	100.0	99.1	-	47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22. 1. 25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 내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692백만원 전용 감 - 불법체류단속 등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한 각종 이송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임차료 118백만원 전용 감 -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원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인보호관리사업으로 385백만원 전용 감 - 직제개편, 업무량 증가 사유 임차청사 신규 수급, 기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등 사유로 인한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민정책개발지원 국외업무여비 등으로부터 165백만원 전용 증 - '22. 10. 1.부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및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 진정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증편으로 인한 공항시설이용료 부족분 등 충당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민간경상보조 등 140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789백만원
2023	○ 전용 -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재개함에 따라 보호수용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급식비, 이송여비, 보호경비대원(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충당을 위해 각각 123백만원, 1,071백만원, 239백만원 전용 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 350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973백만원
2024	○ 불법체류 단속 활동 증가에 따른 국외강제퇴거, 보호이송 등 호송여비 충당을 위해 임차료 전용 감 188백만원, 출입국관서 공공요금 증가분 전용 증 600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1,173백만원

2025	○ '25.6.1.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25.예산 미 반영)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임차료 부족분 전용 증 405백만원(시설운영사업 내 구호및교정비 305백만원, 자산취득비 100백만원 감),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80백만원 전용 증, 시설장비유지비 309백만원 전용 증, 재심통역비 부족분 등 일반수용비 84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47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위 표 참조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1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입대체 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사업시행주체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법무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6,164	9,849	9,849	11,136	10,000	151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57	6,173	6,164	-	9	9,849	9,849	9,534	9,849	9,534	-	315	10,000
· 공무직근로자 운영	1,392	1,392	1,383	-	9	1,498	1,498	1,495	1,498	1,495	-	3	1,649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4,365	4,781	4,781	-	-	8,351	8,351	8,039	8,351	8,039	-	312	8,351
○ 비목별 분류(합계)	5,757	6,173	6,164	-	9	9,849	9,849	9,534	9,849	9,534	-	315	10,000
· 상용임금(110-03)	1,147	1,147	1,138	-	8	1,235	1,235	1,233	1,235	1,233	-	2	1,358
· 일반수용비(210-01)	4,365	4,781	4,781	-	-	8,351	8,351	8,039	8,351	8,039	-	312	8,351
· 복리후생비(210-12)	21	21	21	-	-	22	22	21	22	21	-	1	22
· 고용부담금(320-09)	225	225	224	-	1	241	241	241	241	241	-	-	26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757	6,173	6,164	-	9	9,849	9,849	9,534	9,849	9,534	-	315	10,000
· 공무직근로자 운영	1,392	1,392	1,383	-	9	1,498	1,498	1,495	1,498	1,495	-	3	1,649
-상용임금(110-03)	1,147	1,147	1,138	-	8	1,235	1,235	1,233	1,235	1,233	-	2	1,358
-복리후생비(210-12)	21	21	21	-	-	22	22	21	22	21	-	1	22
-고용부담금(320-09)	225	225	224	-	1	241	241	241	241	241	-	-	269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4,365	4,781	4,781	-	-	8,351	8,351	8,039	8,351	8,039	-	312	8,351
-일반수용비(210-01)	4,365	4,781	4,781	-	-	8,351	8,351	8,039	8,351	8,039	-	312	8,3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선을 통한 신분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 사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운영
- (내역사업 2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위·변조 방지 요소 강화 등 품질과 보안성을 높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을 위해 신분증 발급 전문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발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1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제10호, 제10의2호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② 추진경위

- 2009. 06. 외국인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요소로 인한 위·변조 관련 문제점 지적
- 2009. 10. 전문기관(조폐공사) 위탁발급, 보안성 강화 등 외국인등록증 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1. 0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신설 및 조폐공사 발급 위탁
- 2018. 01. 보안요소를 개선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 2018. 09. 출입국관리법 개정('18. 3. 20.)에 따른 영주증 신규발급에 맞춰 보안 요소가 개선된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 2025. 0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IC칩 삽입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86	4,657	5,757	9,849	10,00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5) 1,498 → ('26) 1,649백만원, 151백만원 증액
- ②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 ('25) 8,351 → ('26) 8,351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동 세부사업은 신분증 발급 등 단순경비 지출 경비로 성과지표 미설정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외국인등록증발급 370,244매
2022	외국인등록증발급 417,979매
2023	외국인등록증발급 707,401매
2024	외국인등록증발급 681,348매
2025	외국인등록증발급 673,799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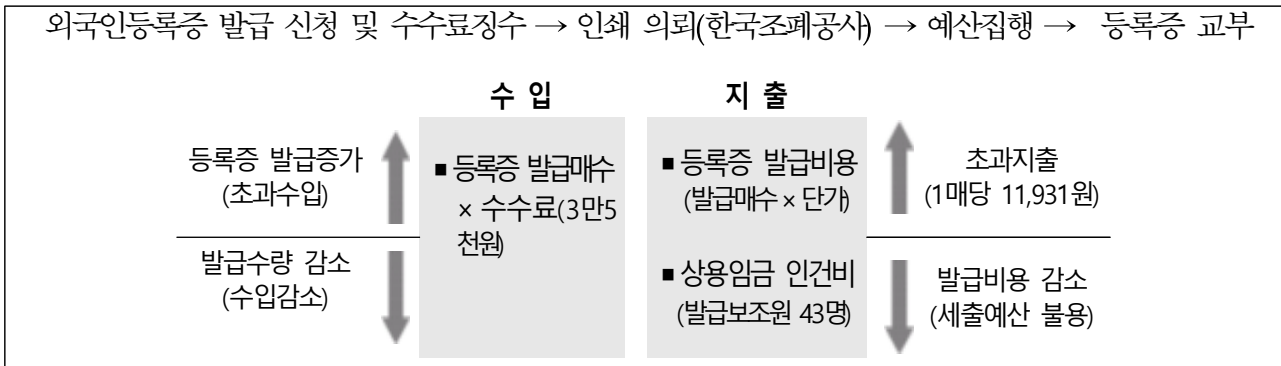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분증 발급 전문기관(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보안요소를 갖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체류편의 제고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757	9,849	9,849	8,849	8,849	
2025~2029		9,849	10,000	9,357	9,160	8,8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신분증 발급 전문기관(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보안요소를 갖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체류편의 제고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986	-	3,986	-	-	-	3,986	3,970	99.6	99.6	-	16
2023	4,657	-	4,657	-	-	-	6,094	6,080	130.6	99.8	-	14
2024	5,757	-	5,757	-	-	-	6,173	6,164	107.1	99.9	-	9
2025	9,849	-	9,849	-	-	-	9,849	9,534	96.8	96.8	-	31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3	○ 초과수입 지출 : 외국인등록증 발급량 급증에 따라 1,437백만원 증 ○ 불용 : 집행잔액 14백만원
2024	○ 초과수입 지출 : 외국인등록증 발급량 급증에 따라 416백만원 증 ○ 불용 : 집행잔액 9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없음 ○ 불용 : 집행잔액 3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신성빈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윤철민	권심택	정진우
		이민정보과	02-2110-4090	02-2110-4096	02-2110-409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4,027	30,410	30,410	46,248	41,015	10,605	3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08	24,608	24,027	-	581	30,410	30,410	30,383	30,410	30,383	-	27	41,015
· 시스템유지보수및유지운영	13,043	13,043	12,646	-	397	14,225	14,225	14,224	14,225	14,224	-	1	14,587
· 업무시스템 임차 등	526	526	526	-	0	465	465	465	465	465	-	-	465
· 시스템개발 및 장비도입	10,547	10,547	10,373	-	174	15,720	15,720	15,694	15,720	15,694	-	26	8,617
· 출입구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0	0	0	-	0	0	0	0	0	0	-	-	17,346
· 외국인 행정 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492	492	482	-	10	0	0	0	0	0	-	-	0
○ 비목별 분류(합계)	24,608	24,608	24,027	-	581	30,410	30,410	30,383	30,410	30,383	-	27	41,01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90	290	290	-	0	290	290	290	290	290	-	-	290
· 임차료(210-07)	236	236	236	-	0	175	175	175	175	175	-	-	175
· 관리용역비(210-15)	13,043	13,043	12,646	-	397	14,225	14,225	14,224	14,225	14,224	-	1	14,587
· 일반연구비(260-01)	3,118	3,118	3,077	-	41	3,025	3,025	3,002	3,025	3,002	-	23	7,576
· 공사비(420-03)	0	0	0	-	0	0	0	0	0	0	-	-	2,865
· 자산취득비(430-01)	7,921	7,921	7,778	-	143	12,695	12,695	12,692	12,695	12,692	-	3	15,5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608	24,608	24,027	-	581	30,410	30,410	30,383	30,410	30,383	-	27	41,015
· 시스템유지보수및유지운영	13,043	13,043	12,646	-	397	14,225	14,225	14,224	14,225	14,224	-	1	14,587
-관리용역비(210-15)	13,043	13,043	12,646	-	397	14,225	14,225	14,224	14,225	14,224	-	1	14,587
· 업무시스템 임차 등	526	526	526	-	0	465	465	465	465	465	-	-	46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90	290	290	-	0	290	290	290	290	290	-	-	290
-임차료(210-07)	236	236	236	-	0	175	175	175	175	175	-	-	175
· 시스템개발 및 장비도입	10,547	10,547	10,373	-	174	15,720	15,720	15,694	15,720	15,694	-	26	8,617
-일반연구비(260-01)	3,118	3,118	3,077	-	41	3,025	3,025	3,002	3,025	3,002	-	23	3,170
-자산취득비(430-01)	7,429	7,429	7,296	-	133	12,695	12,695	12,692	12,695	12,692	-	3	5,447
· 출입구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0	0	0	-	0	0	0	0	0	0 (0)	-	-	17,346
-일반연구비(260-01)	0	0	0	-	0	0	0	0	0	0 (0)	-	-	4,406
-공사비(420-03)	0	0	0	-	0	0	0	0	0	0 (0)	-	-	2,865
-자산취득비(430-01)	0	0	0	-	0	0	0	0	0	0 (0)	-	-	10,075
· 외국인 행정 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492	492	482	-	10	0	0	0	0	0 (0)	-	-	0
-자산취득비(430-01)	492	492	482	-	10	0	0	0	0	0 (0)	-	-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출입국·이민행정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내역사업 1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자동출입국심사대,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등 출입국 업무시스템의 H/W, 상용 S/W에 대한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및 외국인지문 확인시스템, 비자포털시스템, 사회통합정보망,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G4F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장애예방 및 성능개선 등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내역사업 2 : 업무시스템 임차 등) 전자여권판독시스템 교체,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사업,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정보통신망 및 비상심사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분할 지급 및 EDI 이용료
- (내역사업 3 : 시스템개발 및 장비 도입)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등 민원 업무 포털시스템 운영에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국경관리체계 강화, 이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황, 목표모델 분석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내역사업 4 :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청사 이전('26. 예정)에 따라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정보화센터의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 구축 및 시스템 이전 관련 개발·자산취득에 관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항

-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7항

-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2항, 제3항

- (제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항)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항

- 행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년도 예산 국회심사 지적사항*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분산되어 있는 출입국 관련 정보화사업 예산의 통합 편성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사위 부대의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864	25,175	24,608	30,410	41,015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 ('25) 14,224 → ('26) 14,587백만원, 362백만원 증액
- ② 업무시스템 임차 등 : ('25) 465 → ('26) 465백만원, 전년동
- ③ 시스템 개발 및 장비 도입 : ('25) 15,720 → ('26) 8,617백만원, 7,103백만원 감액
- ④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 ('26) 17,346백만원 (신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자동출입국심사대) 26대 교체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2,082,385명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812,038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7,436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21,275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94,041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473,970건
2023	- (자동출입국심사대) 24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2,134,136명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1,927,431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151,813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52,404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15,320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539,332건
2024	- (자동출입국심사대) 24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961,458건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2,325,140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612,890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71,869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45,213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557,967건
2025	-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988,272건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2,317,563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854,471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360,200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61,491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662,927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정부24, 비자 신청 포털 등 **주요 출입국 정보서비스의 속도 향상**으로 내·외국민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외기관의 출입국 규제 요청이 실시간 온라인 전송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당 5분 소요되던 입력 작업이 1분 미만으로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규제 처리 가능
-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챗봇 서비스 통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구현으로 외국인 만족도 향상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자동화로 심사관의 건당 처리속도 단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챗봇 도입으로 유선상담 50% 감소 → 본 사업 통해 유사한 효과 기대
-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 가입 여부, 고용주 체납 사실 조회 등의 구현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난민 관련 국가정황정보 자동수집·번역으로 정보 수집·가공시간 단축 및 난민 심사 속도 대폭 향상
- (1345종합안내센터 시스템 개선)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 교체 및 상담매뉴얼 실시간 업데이트**로 빠르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사업 내 기관별 역할 >		
사업지원	주관기관	계약체결
법무부 이민정보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달청
	전담추진부서	
	서울출입국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인천공항출입국청 정보관리과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608	30,410	30,410	30,410	30,410	
2025~2029		30,410	41,015	29,320	27,369	27,3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22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법사위, 예결위)	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98.5 ○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생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23년은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이월 최소화 및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을 통한 비대면 출입국심사서비스 강화

-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지속적 이용 증가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외국인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노후 자동출입국심사대 지속적 교체 및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법률 규정된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행정안전부 「2021 정부혁신 우수 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성과의 우수성 입증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23년 Skytrax 주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인천공항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수상으로 성과의 우수성 입증(자동출입국심사대 관련)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수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23년 Skytrax 주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인천공항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수상으로 성과의 우수성 입증(자동출입국심사대 관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864	-	17,864	-	-	-	17,864	17,206	96.3	96.3	109	559
2023	25,175	-	25,175	109	-	-	25,184	24,632	97.8	97.0	-	652
2024	24,608	-	24,608	-	-	-	24,608	24,027	97.6	97.6	-	581
2025	30,410	-	30,410	-	-	-	30,410	30,383	99.9	99.9	-	27

☐ 출연·보조사업 등 실행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2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법사위, 예결위) - (지적사항) “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 '23년은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이월 최소화 및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
2023	해당사항 없음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집행잔액 : 2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보호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보호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외국인보호관리	22,226	21,372	21,372	24,700	24,011	2,639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287	22,582	22,226	-	356	21,372	21,428	21,278	21,428	21,278	-	150	24,011
· 공무직근로자 운영	11,809	11,809	11,748	-	61	12,170	12,157	12,150	12,157	12,150	-	7	13,540
· 불법체류외국인수용관리	5,255	5,359	5,325	-	34	5,341	5,341	5,266	5,341	5,266	-	75	5,399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3,075	3,266	3,027	-	239	3,209	3,279	3,244	3,280	3,244	-	36	3,237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2,148	2,148	2,126	-	22	652	652	618	652	618	-	34	-
· 외국인보호위원회운영	-	-	-	-	-	-	-	-	-	-	-	-	1,835
○ 비목별 분류(합계)	22,287	22,582	22,226	-	356	21,372	21,428	21,278	21,428	21,278	-	150	24,011
· 상용임금(110-03)	9,676	9,676	9,620	-	56	9,981	9,981	9,980	9,981	9,980	-	1	11,103
· 일반수용비(210-01)	914	1,018	1,000	-	18	914	914	903	914	903	-	11	1,76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43
· 피복비(210-03)	86	86	85	-	1	86	72	72	72	72	-	-	86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23
· 임차료(210-07)	-	-	-	-	-	-	-	-	-	-	-	-	444
· 유류비(210-08)	-	-	-	-	-	-	-	-	-	-	-	-	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20
· 복리후생비(210-12)	153	153	149	-	4	152	152	151	152	151	-	1	152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9
· 국내여비(220-01)	333	521	503	-	18	366	510	497	510	497	-	13	582
· 국외업무여비(220-02)	18	21	20	-	1	18	88	87	88	87	-	1	18
·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0	42	42	42	42	42	-	-	82
·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	-	-	-	-	-	-	37
· 특정업무경비(250-03)	2,582	2,582	2,391	-	191	2,683	2,567	2,547	2,567	2,547	-	20	2,675
· 일반연구비(260-01)	27	27	0	-	27	27	-	-	-	-	-	-	13
· 포상금(310-03)	-	-	-	-	-	-	-	-	-	-	-	-	50
· 기타보전금(310-04)	73	73	71	-	2	73	73	71	73	71	-	2	73
· 구호및교정비(320-06)	4,341	4,341	4,325	-	16	4,427	4,427	4,363	4,427	4,363	-	64	4,527
· 고용부담금(320-09)	1,895	1,895	1,893	-	2	1,951	1,951	1,947	1,951	1,947	-	4	2,198
· 실시설계비(420-02)	80	80	61	-	19	32	32	31	32	31	-	1	-
· 공사비(420-03)	1,885	1,885	1,885	-	0	539	539	507	539	507	-	32	-
· 감리비(420-04)	43	43	41	-	2	8	8	8	8	8	-	-	-
· 자산취득비(430-01)	140	140	140	-	0	73	73	73	73	73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287	22,582	22,226	-	356	21,372	21,428	21,278	21,428	21,278	-	150	24,011
· 공무직근로자 운영	11,809	11,810	11,748	-	61	12,170	12,157	12,150	12,157	12,150	-	7	13,540
-상용임금(110-03)	9,676	9,676	9,620	-	56	9,981	9,981	9,980	9,981	9,980	-	1	11,103
-피복비(201-03)	86	86	85	-	1	86	72	72	72	72	-	-	86
-복리후생비(210-12)	153	153	149	-	4	152	152	151	152	151	-	1	152
-고용부담금(320-09)	1,895	1,895	1,893	-	2	1,951	1,951	1,947	1,951	1,947	-	4	2,198
· 불법체류외국인수용관리	5,255	5,359	5,325	-	34	5,341	5,341	5,266	5,341	5,266	-	75	5,399
-일반수용비(210-01)	914	1,018	1,000	-	18	914	914	903	914	903	-	11	872
-구호및교정비(320-06)	4,341	4,341	4,325	-	16	4,427	4,427	4,363	4,427	4,363	-	64	4,527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3,075	3,266	3,027	-	239	3,209	3,279	3,244	3,280	3,244	-	36	3,237
-국내여비(220-01)	333	521	503	-	18	366	510	497	510	497	-	13	366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국외업무여비(220-02)	18	21	20	-	1	18	88	87	88	87	-	1	18
-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0	42	42	42	42	42	-	-	42
- 특정업무경비(250-03)	2,582	2,582	2,391	-	191	2,683	2,567	2,547	2,567	2,547	-	20	2,675
- 일반연구비(260-01)	27	27	0	-	27	27	-	-	-	-	-	-	13
- 포상금(310-03)	-	-	-	-	-	-	-	-	-	-	-	-	50
- 기타보전금(310-04)	73	73	71	-	2	73	73	71	73	71	-	2	73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2,148	2,148	2,126	-	22	652	652	618	652	618	-	34	-
- 실시설계비(420-02)	80	80	61	-	19	32	32	31	32	31	-	1	-
- 공사비(420-03)	1,885	1,885	1,885	-	0	539	539	507	539	507	-	32	-
- 감리비(420-04)	43	43	41	-	2	8	8	8	8	8	-	-	-
- 자산취득비(430-01)	140	140	140	-	0	73	73	73	73	73	-	-	-
· 외국인보호위원회운영	-	-	-	-	-	-	-	-	-	-	-	-	1,835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889
- 공공요금제세(210-02)	-	-	-	-	-	-	-	-	-	-	-	-	43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23
- 임차료(210-07)	-	-	-	-	-	-	-	-	-	-	-	-	444
- 유류비(210-08)	-	-	-	-	-	-	-	-	-	-	-	-	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20
- 기타운영비(210-16)	-	-	-	-	-	-	-	-	-	-	-	-	9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216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40
-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	-	-	-	-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보호관리)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내역사업 1 : 공무원근로자 운영) 보호경비대원, 운전원, 조리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을 고용하여 출입국기관 외국인 보호업무 지원
- (내역사업 2 :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단속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급식·의료 등 수용관리 및 적정처우 후 강제퇴거 집행
- (내역사업 3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보호외국인 강제퇴거를 위한 국내 및 국외호송, 출입국소송 업무 수행,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회의 등 전국 29개 보호시설운영 출입국기관에서 범법외국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내역사업 4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전국 29개 보호시설의 개보수로 원활한 보호관리

업무수행 지원, '24년 인권친화적 외국인보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안적(개방형) 보호시설 리모델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 보강 추진

- (내역사업 5 :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신규) 외국인보호(인신구급) 처분에 대하여 독립적, 중립적으로 심의, 구체화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25.6.1. 신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의4 등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② 추진경위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퇴거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더불어 외국인 보호처분에 대한 심의·구제 및 보호외국인 적정 처우 등 외국인 인권보호도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7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200	19,736	22,287	21,372	24,01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무원 근로자 운영 : ('25) 12,170 → ('26) 13,540백만원, 1,370백만원 증액
- ②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 ('25) 5,341 → ('26) 5,399백만원, 58백만원 증액
- ③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 ('25) 3,209 → ('26) 3,237백만원, 28백만원 증액
- ④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25) 652 → ('26) 0, 순감
- ⑤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26) 1,835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보호 연인원 : 420,240명, 일평균 보호인원 : 1,151명
2022	보호 연인원 : 471,523명, 일평균 보호인원 : 1,291명
2023	보호 연인원 : 443,867명, 일평균 보호인원 : 1,216명
2024	보호 연인원 : 481,181명, 일평균 보호인원 : 1,315명
2025	보호 연인원 : 454,115명, 일평균 보호인원 : 1,24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법체류 주요 유발요인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 유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추진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 서민 일자리 대표업종에 대한 기획단속 및 특별단속지정, 광역단속팀 추가 신설·인원 확대 등 단속시스템 개선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불법고용 억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와의 협력 강화, 불법고용주 처벌 수위 상향 등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으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 외국인보호(인신구금) 처분에 대한 독립적, 중립적 심의·구제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대법원, 변협 등 추천 외부 전문가 등 다수 참여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운영, 적정 수준의 보호외국인 처우 등을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계획 수립(출입국관리법 46조) →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 단속(출입국관리법 제18조,21조,47조,81조)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실 및 보호소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63조) → 강제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2,287	21,372	22,167	22,832	23,517	
2025~2029		21,372	24,011	21,367	20,918	20,2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국회 결산 시정 요구사항(예결위)	법무부는 향후 국내 인구 구성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에도 노력할 것	
- '22년 국회 결산 시정 요구사항(공통)	의무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90.2 ○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성과목표 또한 달성했으나, 성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실적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는 향후 국내 인구 구성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에도 노력할 것	▪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자제하고 아동 및 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는 출국명령제도 또는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 보호 기간을 최소화하여 아동 인권 보장 - 불가피하게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거나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보호시설 내 동반생활을 허가한 경우, 반드시 특별보호방을 배정하고 특별보호방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보호방이 있는 보호시설로 보호장소 변경 ▪ 보호시설(12개소) 내 17개 특별보호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시행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서울청, 춘천사무소, 화성보호소 특별보호방 개선 공사 시행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의무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주 일정 시간 의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인력 확보('24년 11월 고용, 매주 수요일 오후 진료) ▪ 의무관 채용을 위해 채용 계획을 지속 수립·공고 예정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급여 등 의무관 처우개선 및 공중보건 의사 배정을 협의하는 등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추진
 - 불법체류자 증가로 국민과의 일자리 갈등, 외국인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보호처분에 대한 독립적·중립적 심의·구제, 보호외국인 적정 처우 등 인권 보호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보호외국인 1인 평균 보호기간 하향으로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운영(화성외국인보호소) 관련 언론 홍보 등 성과 우수성 입증 준수함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보호외국인 1인 평균 보호기간 하향으로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보호외국인 1인 평균 보호기간 줄어들어 사업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성과를 입증할 실적이 부족함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예산 집행) 사업 집행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개선 필요
 - (성과 지표) 보호외국인 1인 평균 보호기간 하향으로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대외 실적 부족으로 관련 분야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200	-	18,200	-	△152	-	18,048	17,891	98.3	99.1	-	157
2023	19,736	-	19,736	-	1,497	-	21,233	20,977	106.3	98.8	-	256
2024	22,287	-	22,287	-	295	-	22,582	22,226	99.7	98.4	-	356
2025	21,372	-	21,372	-	56	-	21,428	21,278	99.6	99.3	-	15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22. 1. 25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 내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390백만원 전용 감 - 체류외국인 대상 전자우편서비스(우체국 e-그린)를 통한 등기우편 발송 확대 등 우편 발송 총량 증가, 공용차량 신규 정수 및 차량 교체에 따른 보험료 증가, 기타 환경개선 등 각종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80백만원 이용 감 - 불법체류단속 등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한 각종 이송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사업에서 118백만원 전용 증 -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사업 상용임금에서 385백만원 전용 증 - 직제개편, 업무량 증가 사유 임차청사 신규 수급, 기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등 사유로 인한 관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인보호관리 특정업무경비에서 105백만원 전용 감 - 난민통역비 지출 급증에 따른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인보호관리 일반연구비에서 10백만원 전용 감 -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질서 유지 및 시설안전을 위한 국비강제퇴거 소요 증가에 따른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기타보전금에서 30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157백만원
2023	○ 전용 - 불법체류 등 사유로 보호 수용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송여비 123백만원, 급식비 등 1,213백만원, 수용비성 경비 78백만원, 공무원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239백만원 전용 증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78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256백만원
2024	○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외 강제퇴거, 보호소 이송 등 호송여비 소요 증가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증 188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356백만원
2025	○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외 강제퇴거, 보호소 이송 등 호송여비 소요 증가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및 국내여비 전용 증 214백만원, 보호관리사업 내 특정업무경비 및 일반연구비 감 144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15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위 표 참조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이민자조기 적응프로그램 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최문정	박병건	이민우
		이민통합과	02-2110-4140	02-2110-4146	02-2110-4152
	사업시행주체	한국이민재단 (중앙거점운영기관)	교육국장	김 찬 기	02-2643-6576
		이민정책연구원	교육팀장	박 민 정	02-3788-80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4,787	17,639	17,639	20,022	21,579	3,940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27	15,320	14,787	-	533	17,639	17,033	16,380	17,033	16,380	-	653	21,579	
· 공무원근로자 운영	1,308	1,308	1,290	-	18	1,458	1,458	1,443	1,458	1,443	-	15	1,629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13,155	13,048	12,533	-	515	14,262	13,656	13,305	13,656	13,305	-	351	16,389	
· 이주민자조적응프로그램	964	964	964 [964]	-	0	1,919	1,919	1,632 [1,632]	1,919	1,632 [1,632]	-	287 [287]	3,561	
○ 비목별 분류(합계)	15,427	15,320	14,787	-	533	17,639	17,033	16,380	17,033	16,380	-	653	21,579	
· 상용임금(110-03)	1,081	1,081	1,065	-	17	1,205	1,205	1,204	1,205	1,204	-	1	1,346	
· 일반수용비(210-01)	3,122	2,986	2,796	-	190	3,382	3,052	2,979	3,052	2,979	-	73	3,85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49	111	-	38	149	128	127	128	127	-	1	149	
· 임차료(210-07)	240	261	222	-	38	310	236	236	236	236	-	-	34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9	130	130	-	0	119	130	130	130	130	-	-	100	
· 복리후생비(210-12)	16	16	15	-	1	17	17	17	17	17	-	-	17	
· 일반운영비(210-14)	6,284	6,284	6,254	-	30	2,223	2,223	2,119	2,223	2,119	-	104	2,223	
· 기타운영비(210-16)	596	596	596	-	0	596	596	587	596	587	-	9	596	
· 국내여비(220-01)	32	32	17	-	15	32	32	13	32	13	-	19	32	
· 국외업무여비(220-02)	67	64	43	-	21	67	67	64	67	64	-	3	67	
· 사업추진비(240-01)	51	51	51	-	0	51	51	51	51	51	-	-	51	
· 특정업무경비(250-03)	266	266	255	-	11	266	266	254	266	254	-	12	266	
· 일반연구비(260-01)	162	162	162	-	0	162	162	162	162	162	-	-	162	
· 정책연구비(260-02)	1,171	1,171	1,169	-	2	782	782	761	782	761	-	21	746	
· 포상금(310-03)	-	-	-	-	-	-	-	-	-	-	-	-	50	
· 기타보전금(310-04)	568	568	515	-	53	917	725	656	725	656	-	69	917	
· 민간경상보조(320-01)	964	964	964 [964]	-	0	1,919	1,919	1,632 [1,632]	1,919	1,632 [1,632]	-	287	5,58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4,372	4,372	4,364	4,372	4,364	-	8	4,464	
· 구호및교정비(320-06)	216	216	174	-	42	216	216	200	216	200	-	16	216	
· 고용부담금(320-09)	211	211	210	-	1	236	236	222	236	222	-	14	266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133	133	133 [93]	133	133 [93]	-	- [40]	133	
· 자산취득비(430-01)	-	-	-	-	-	485	485	470	485	470	-	15	-	
· 무형자산(440-00)	112	112	38	-	74	-	-	-	-	-	-	-	-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427	15,320	14,787	-	533	17,639	17,033	16,380	17,033	16,380	-	653	21,579
· 공무직근로자 운영	1,308	1,308	1,290	-	18	1,458	1,458	1,443	1,458	1,443	-	15	1,629
- 상용임금(110-03)	1,081	1,081	1,065	-	17	1,205	1,205	1,204	1,205	1,204	-	1	1,346
- 복리후생비(210-12)	16	16	15	-	1	17	17	17	17	17	-	-	17
- 고용부담금(320-09)	211	211	210	-	1	236	236	222	236	222	-	14	266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3,155	13,048	12,533	-	515	14,262	13,656	13,305	13,656	13,305	-	351	16,389
- 일반수용비(210-01)	3,122	2,986	2,796	-	190	3,382	3,052	2,979	3,052	2,979	-	73	3,85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49	111	-	38	149	128	127	128	127	-	1	149
- 임차료(210-07)	240	261	222	-	38	310	236	236	236	236	-	-	34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9	130	130	-	0	119	130	130	130	130	-	-	100
- 일반운영비(210-14)	6,284	6,284	6,254	-	30	2,223	2,223	2,119	2,223	2,119	-	104	2,223
- 기타운영비(210-16)	596	596	596	-	0	596	596	587	596	587	-	9	596
- 국내여비(220-01)	32	32	17	-	15	32	32	13	32	13	-	19	32
- 국외업무여비(220-02)	67	64	43	-	20	67	67	64	67	64	-	3	67
- 사업추진비(240-01)	51	51	51	-	0	51	51	51	51	51	-	-	51
- 특정업무경비(250-03)	266	266	255	-	12	266	266	254	266	254	-	12	266
- 일반연구비(260-01)	162	162	162	-	0	162	162	162	162	162	-	-	162
- 정책연구비(260-02)	1,171	1,171	1,169	-	2	782	782	761	782	761	-	21	746
- 포상금(310-03)	-	-	-	-	-	-	-	-	-	-	-	-	50
- 기타보전금(310-04)	568	568	515	-	53	917	725	656	725	656	-	69	917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2,02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4,372	4,372	4,364	4,372	4,364	-	8	4,464
- 구호및교정비(320-06)	216	216	174	-	42	216	216	200	216	200	-	16	216
- 자차단체경상보조(330-01)	-	-	-	-	-	133	133	133	133	133	-	-	133
- 자산취득비(430-01)	-	-	-	-	-	485	485	470	485	470	-	15	-
- 무형자산(440-00)	112	112	38	-	74	-	-	-	-	-	-	-	-
· 이민국적응프로그램	964	964	964	-	0	1,919	1,919	1,632	1,919	1,632	-	287	3,561
- 민간경상보조(320-01)	964	964	964	-	0	1,919	1,919	1,632	1,919	1,632	-	287	3,5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 등 체류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지원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사회통합지원 업무보조원 등 고용하여 출입국업무 지원
- (내역사업 2 : 사회통합업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제도 운영, 난민신청자 지원, 세계인의날 행사, 기타 우수인재 창업 및 외국인투자자 지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지원

- (내역사업 3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제21조(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세계인의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 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13. 7. 난민법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569	14,026	15,427	17,639	21,579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보조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3,561 백만원	100.0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5) 1,458 → ('26) 1,629백만원, 171백만원 증액
 ②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 ('25) 14,262 → ('26) 16,389백만원, 2,127백만원 증액
 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25) 1,919 → ('26) 3,561백만원, 1,642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5. 20.) 개최,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상호문화이해 교육에 '21년도 6,831명 수강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민자 미담사례집을 제작,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 - 중앙-지방정부 간 체계적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반기별 정례 개최 - 조기적응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 교재 개편, 기존 교재 내용을 현행화하고 입학, 지원 상담 기관 정보 제공내용 등 포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에서 '21년도 한 해 동안 총 289만 건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1339) 등 19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 지원

2022	- 사회통합프로그램 상설 평가로 평가 수요를 분산시켜 대규모 집합평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CBT(컴퓨터 기반시험)평가 실시(3월) -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3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자문 및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 참여 -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대사관 배포(3월), 강사역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6월), 유학생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6월) - 중앙-지방정부 간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이민 정책추진을 위한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4월)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자 미담사례집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 (5월) - 공무원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제19기, 제20기 '이민정책의 이해 과정' 교육 운영 (5월, 8월) - 영주·귀화자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고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권리·의무 등 시민 교육과 지역 특화형 시민참여 교육을 위해 '영주·귀화자 맞춤형 시민교육' 실시 (7월)
2023	-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근무처 무단 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23년 4월부터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총 9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1회 교육 실시 -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신규 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9월), 교재 내용 최신화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5종* 교재 개편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연예인, 계절근로자 - 인구 소멸 대책으로 고려인 동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제천시와 협업하여 고려인 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11월) - '21년 개발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9월) ※ 외국인 밀집 지역 등 희망 지자체(9개 지역)를 선정하여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진행 - K-point 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 확대 및 평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명 CBT센터에 이은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설 (11월) -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 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전국 198개 지자체에 총 1,200권 배포 (12월)
2024	-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3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자문 및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진행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에 계절근로자, 외국인력, 재정착난민을 참여대상에 포함, 맞춤형 교육 실시 ※ 계절근로자 18개 지자체 834명, 조선업체 6회 156명, 재정착난민 3회 14명 참여 - 중앙-지방정부 간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5월, 9월)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자 미담사례집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 (5월) -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직무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23기, 제24기 '이민정책의 이해 과정' 교육 운영 (7월, 11월)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이민자 관련현황을 조사, 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정도를 지수 산출 및 지자체 대상 정책컨설팅 실시(12월) * 정기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 발의(24. 11.)

2025	- 기존 법무부 지침으로 지정·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5.8.)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동포 전담 사회통합기관으로 지정 - 국내 동포 체류 실태조사 실시('25.8.~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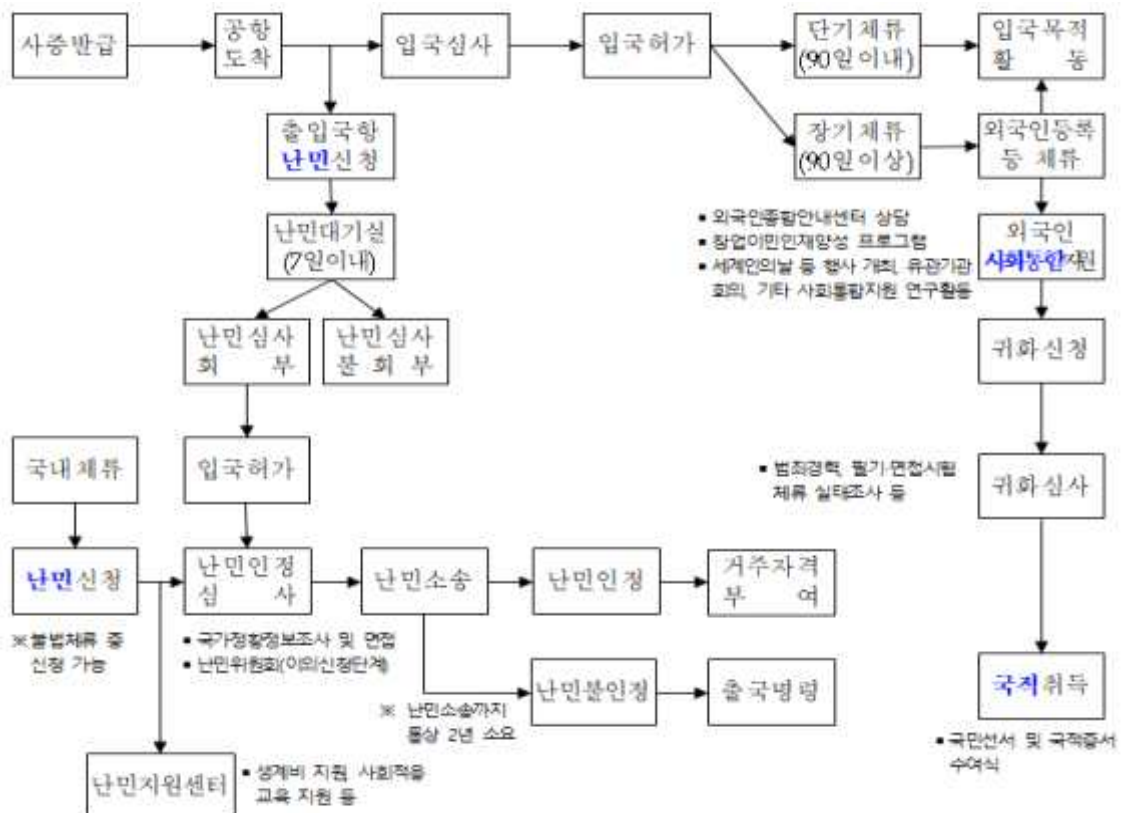
- 외국인의 입국 초기 원활한 사회 적응 및 기초생활정보 취득,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가치 및 준법정신 함양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존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및 사회통합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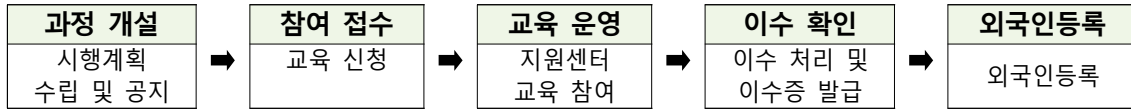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사업 일반(법무부 직접 집행)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427	17,639	17,775	18,309	18,858	
2025~2029		17,639	21,579	18,404	18,017	17,4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96.3
-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입 등 성과가 우수함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및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정책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이용자 만족도 상승으로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 관련 외신 홍보 및 외교부 공공외교 창의상 수상 등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도입인원이 증가하여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숙련기능인력 도입 위한 관계부처 협업, 미얀마 재정착 난민에 대한 의료,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도입인원이 증가하여 성과지표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협업, UN의 난민사업 긍정 평가 등을 통해 성과 우수성 입증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569	△411	14,158	-	798	-	14,956	14,746 [14,746]	104.2	98.6	-	210
2023	14,026	-	14,026	-	△414	-	13,612	13,274 [13,274]	94.6	97.5	-	338
2024	15,427	-	15,427	-	△107	-	15,320	14,787 [14,787]	95.9	96.5	-	533
2025	17,639	-	17,639	-	△606	-	17,033	16,380	92.9	96.2	-	65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53	1,053	1,030	1,030	-	1,030	1,030	-	-	97.8
2023	1,059	1,059	1,059	1,059	-	1,059	1,059	-	-	100.0
2024	964	964	964	964	-	964	964	-	-	100.0
2025	1,919	1,919	1,342	1,342	-	1,342	1,342	-	-	69.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22. 1. 25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 내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108백만원 전용 증 - 체류외국인 대상 전자우편서비스(우체국 e-그린)를 통한 등기우편 발송 확대 등 우편 발송 총량 증가, 공용차량 신규 정수 및 차량 교체에 따른 보험료 증가, 기타 환경개선 등 각종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342백만원 이용 감 - 난민통역비 지출 급증에 따른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민정책개발지원 일반수용비 등 67백만원 전용 증 -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질서 유지 및 시설안전을 위한 국비강제퇴거 소요 증가에 따른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기타보전금에서 30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210백만원
2023	○ 전용 -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급식비 등 구호및교정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42백만원 전용 감 -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72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332백만원
2024	○ 이·전용 해당없음
2025	○ 전용 -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수용·호송경비, 출입국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등 충당을 위해 494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65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위 표 참조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2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4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종철	신하균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 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최문정	주도현	박기형
		이민통합과	02-2110-4140	02-2110-4146	02-2110-4150
	사업시행주체	한국이민재단	교육국장	김 찬 기	02-2643-657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720	13,909	13,909	14,229	13,955	46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등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 비목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 일반수용비(210-01)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439	10,439	-	-	-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754	10,754	10,720 [10,719]	-	34	13,909	13,874	13,601	13,874	13,601	-	273	13,955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439	10,439	10,439 [10,438]	-	0	13,594	13,594	13,322	13,594	13,322	-	272	13,640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 일반수용비(210-01)	315	315	281	-	34	315	280	279	280	279	-	1	3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 1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 지원
- (내역사업 2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82	10,532	10,754	13,909	13,95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민간위탁(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5) 13,594 → ('26) 13,640백만원, 46백만원 증액
 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 ('25) 315 → ('26) 315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37.3	53.7	53.8	54.6	56.1	교육 유료화, 정주 외국인 참여자의 증가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 (54.5%)에서 3%p 상향한 56.1%를 목표로 설정함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실적	51.1	53.6	54.3	55.7	-			
	달성도	137.0	99.8	10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참여자 수가 전년 대비 37.7% 증가, 55,234명 참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 강의 영상콘텐츠를 53개 차시로 새로이 제작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자의 자기학습 기반 마련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업하여 3개 추가 외국어 자막 제공 ○ 아프간 내전 등 사태로 긴급히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관계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
2022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의 교육 효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참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사전평가와 귀화융합평가에 컴퓨터기반평가(CBT) 도입 ○ 이민자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시민교육 과정에 도로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공단 협업) 추가 ○ 제2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 및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위촉된 멘토단을 활용하여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 적응 멘토 교육 실시
2023	○ 외국인력과 산업현장(조선업)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조기 정착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 ※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 인력 중 총 988명 (상반기 427명 실시, 하반기 561명 예정) 선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15시간) 및 초급단계(100시간) 시범교육 실시 - 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외국인이 일터에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 이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숙련된 기술을 조기에 익히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일터에서 국민과 서로 협력자적 동료관계를 형성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함을 물론 조선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문항 개발(5~11월)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참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기반 평가(CBT) 센터 추가 개소 ○ 인구 소멸 대책으로 고려인 동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제천시와 협업하여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1월) ○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이민자 대상 '마약예방교육' 시범 실시(11월)
2024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연중) ※ 전국 17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386회 실시, 7,244명 참여 ○ 조선업종 등 산업체 종사 외국인력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연중)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체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7월) ○ 지난 6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 의 안전한 경제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에 '산업안전 보건교육' 신설 (9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대상, 한국어 구술능력 함양을 위한 별도 과정 (구술능력심화반) 개설 (9월) ○ 교육참여자 책임성 강화, 교육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품질 개선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기반 마련 * 교육수수료 고시('24. 9.), 결제시스템 구축('24. 12.), 유료화 시행('25. 1.) ○ '이민자 멘토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단이 학교내 한국어 학급을 찾아가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멘토링 특강 실시 (11월) ○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12월)
2025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일부 유료화(단계당 약 10만원 외국인 자부담 신설, '25.1.) ○ 숙련기능인력(E-7-4)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편성, 운영('25.1.) ○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인권 및 안전교육 등 시민 교육 확대('25.9.) ○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공모 제1차 시범사업 실시('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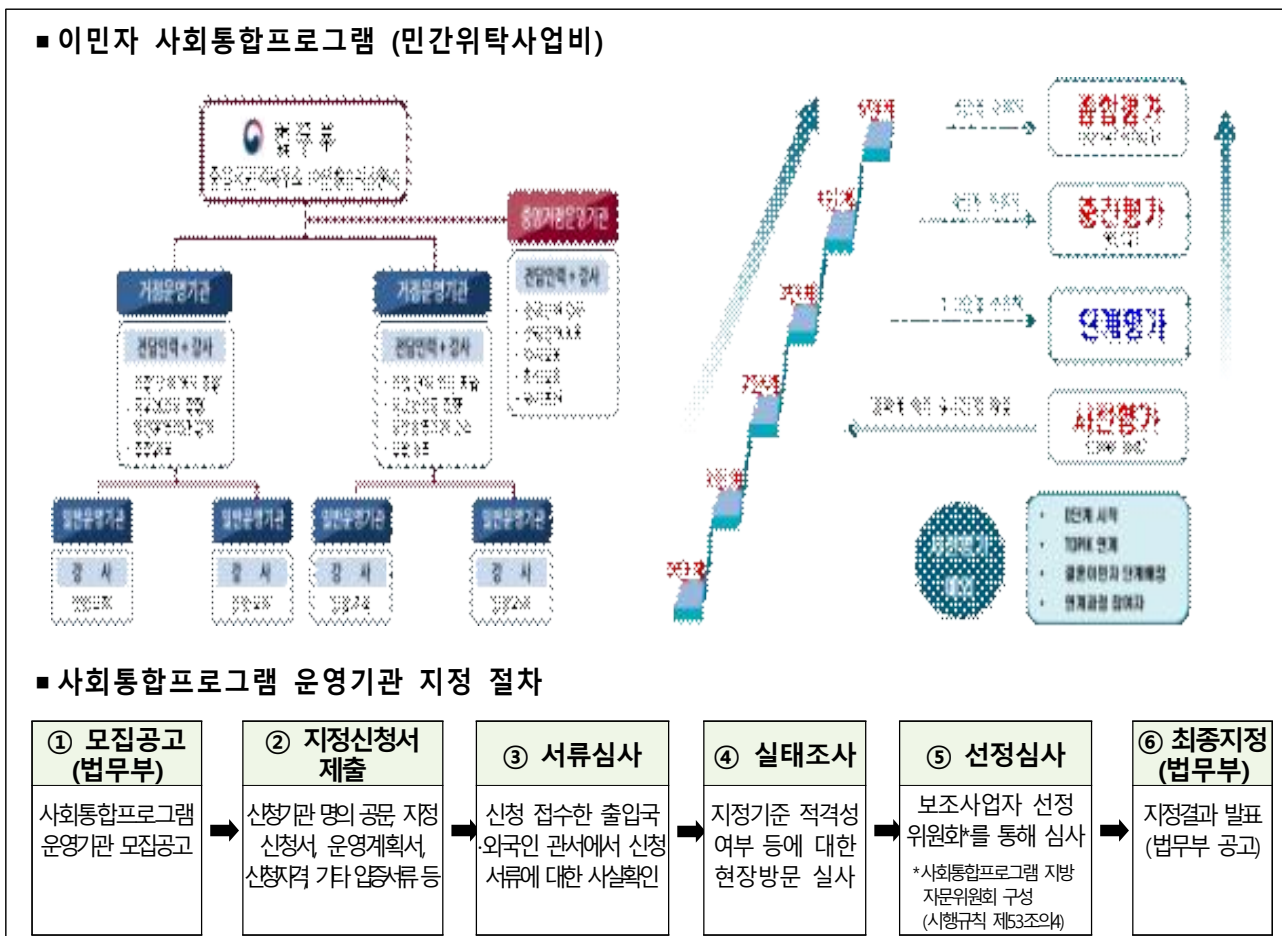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이민자의 장기체류단계에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헌법가치, 준법정신, 한국어와 한국문화·사회 등 기본소양을 함양하게 하여 국민과의 사회통합에 기여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 재난·안전, 소비자권리, 범죄 등에 취약하기 쉬운 이민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조속한 사회적응 지원
- 국제결혼 전(前) 단계에서 제도, 배우자 현지문화, 국제결혼 사례 등 정보제공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754	13,909	13,715	13,989	10,000	
2025~2029		13,909	13,955	13,257	12,978	12,5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95.5
-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산업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우수함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류·귀화 시 사회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이민자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국가의 사회적 갈등 비용 예방, 경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계자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23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혜택 강화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역대 최고 기록 등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예산 집행) 연례적 이전용 부채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 (성과 우수성)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482	-	10,482	-	△161	-	10,321	10,305	98.3	99.8	-	16
2023	10,532	-	10,532	-	-	-	10,532	10,511	99.8	99.8	-	21
2024	10,754	-	10,754	-	-	-	10,754	10,720	99.7	99.7	-	-
2025	13,909	-	13,909	-	△35	-	13,874	13,601	97.8	98.0	-	2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22. 1. 25 시행)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 내 기타보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6백만원 전용 감 - 전기요금 단가 인상, 인천공항 등 국제선 증편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110백만원 전용 감 - 난민통역비 지출 급증에 따른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25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3	○ 불용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없음
2025	○ 불용 : 집행잔액 27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청시설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청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검찰청시설운영	80,128	82,703	82,703	84,755	83,131	428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41	80,450	80,128	-	322	82,703	80,546	79,670	80,546	79,670	-	876	83,1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찰청사 공무원 운영) 전국 67개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청소, 시설, 조경)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전국 67개 검찰청의 시설 환경 개선, 통신 및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청사 기능 유지 지원, 노후 검찰청사 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긴급상황 대비 위한 비상대기소 확보, 순환 근무 원칙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 관사 보증금 지급 등
- (검찰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검찰청사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구)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② 추진경위

- 검찰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 2007년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개편 시 기본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095	81,894	82,041	82,703	83,13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 (2025 본예산) 28,594 → (2026 예산) 31,524백만원, 2,930백만원 증액
- ② 검찰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 : (2025 본예산) 50,922백만원 → (2026 예산) 48,321백만원, 2,601백만원 감액
- ③ 검찰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 (2025 본예산) 3,187백만원 → (2026 예산) 3,286백만원, 99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노후 청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
 - 민원인에 대한 편의 증진 및 근무 환경개선
 - 청사 내 안정적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독립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조성
 - 청사 보안 강화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화된 검찰청사에 대한 방수 등 시설환경 개선
 - 내진설계 미비된 검찰청사의 내진성능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
 - 순환 근무에 따른 지방 근무 검찰공무원 숙소 제공 및 비상대기 장소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관리·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검찰청사 신·증축 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류 등 제반소요를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청사의 신축·증축 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2년 예산 국회 심사시 검찰청 보안시설 및 출입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299백만원) 반영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095	-	74,095	84	1,368	-	75,547	75,104	101.4	99.4	-	443
2023	81,894	-	81,894	-	△572	-	81,322	80,975	98.9	99.6	205	142
2024	82,041	-	82,041	205	△1,796	-	80,450	80,128	97.7	99.6	-	322
2025	82,703	-	82,703	-	△2,157	-	80,546	79,670	96.3	98.9	-	8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상용임금 부족으로 700백만원 내역 증, 668백만원 전용 증, 집행 잔액 443백만원 불용(서울남부지검 어린이집 신축공사 착공 예정일 연기 등 건축공정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159백만원 등)
2023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1,415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987백만원 전용 감, 실시설계비,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142백만원 불용,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일정 지연으로 공사비 205백만원 이월
2024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325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36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578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421백만원 전용 증, 집행 잔액 876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6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71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5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사 업 명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591	7,957	7,957	7,957	7,937	△20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24	7,718	7,591	-	127	7,957	7,358	7,351	7,358	7,351	-	7	7,9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조약 교섭 및 체결 회담, 국제공조수사,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회의, 자금추적 관련 수사공조 등 업무를 위한 여비 및 경비 지원
-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해외 은닉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
- (국외훈련 지원) 검사 장·단기 국외훈련 및 선진신문기법 전문 교육팀 연수를 위한 여비 및 정착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② 추진경위

<검찰국외훈련>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8년
- 추진배경

- 법무·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 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 수요 증가

<국제형사협력지원>

- 1988. 8. 5. 범죄인도법 제정
- 1991. 3. 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 2003. 12. 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정
- 2005. 12. 14.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09. 11.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개정
- 2010. 3. 31.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11. 4. 15.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91	7,873	7,924	7,957	7,93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①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 (2025 본예산) 2,856 → (2026 예산) 2,846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 ② 국외도피 범죄수익 환수 : (2025 본예산) 118 → (2026 예산) 108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 ③ 국외훈련 지원 : (2025 본예산) 4,983 → (2026 예산) 4,983백만원, 전년동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외훈련 연도별 실적

2019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18명
2020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12명
2021	장기 해외훈련 58명, 단기 해외훈련 17명
2022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21명
2023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20명
2024	장기 해외훈련 52명, 단기 해외훈련 14명

- 국제형사사법공조 연도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외국에 대한 요청	160건	240건	320건	375건	420건	741건	1,043건	1,065건	1,117건
외국의 요청 접수	137건	160건	195건	235건	202건	285건	207건	206건	194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교류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
- 고도화·전문화되는 사이버범죄 및 초국가적 국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국제형사협력체계 강화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기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국외훈련
 - 검찰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국제회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 범죄인 인도
 - 해외도주 범죄인 인터폴 수배→ 소재지 확인→ 인도청구서 작성→ 외교부 송부→ 해당국 외교부 경유 법무부 송부→ 검사의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심사→ 법원의 결정→ 범죄인 호송
- 국제수형자 이송
 - 수형자가 선고국 또는 집행국에 이송 희망의사 표시→ 이송 희망의사 접수국이 상대국에 이송절차 요청→ 선고국 및 집행국이 각각 이송심사절차 진행→ 선고국 및 집행국 이송승인 완료시 이송 실시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검사 국외훈련 대상국가 다변화 및 학자금 지원한도 설정 검토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검사 파견부담금 지급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방식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WIPO 측의 수용 곤란 입장 확인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14	-	8,004	-	-	-	8,004	7,625	95.3	95.3	-	379
2023	7,873	-	7,873	-	△ 290	-	7,583	7,582	96.3	100.0	-	-
2024	7,924	-	7,924	-	△ 206	-	7,718	7,591	95.8	98.4	-	127
2025	7,957	-	7,957	-	△ 599	-	7,358	7,351	92.4	99.9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2 한인검사협회 총회」 대신 소규모 교류프로그램으로 계획 변경·집행으로 일반용역비 145백만원, '22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번역료 예산 198백만원 등 불용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증, 2백만원 내역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국내여비 부족으로 109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9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14	109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1	4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7	2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2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사업시행주체	검찰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과학수사인프라구축	9,883	12,097	12,250	12,250	11,410	△687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21	9,908	9,883	-	25	12,097	11,699	11,549	11,699	11,549	-	150	11,4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수사활동 지원) 성범죄자 성호르몬 감정관 운용, DNA 감식, 법생물감식, 법화학 감정, 문서감정, 심리분석, 음성분석, 영상분석, 현장감식, 데이터분석 등 새로운 과학 수사기법 개발, 연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제반 경비 지원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공판중심주의 강화, 범죄의 지능화·첨단화 등으로 과학 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감식업무 수행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감정장비 도입·유지보수 및 관련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경비 지원
- (국제 과학수사협력 지원) 국제 과학수사협력 및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학회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및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07.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조사팀 구성, 영상녹화조사 관련 증거 방법 다양화 연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개정 및 영상 녹화 지침마련, 영상녹화조사실 전국청 조기 설치 추진
- 2010. 7.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DNA 신원 확인정보 DB 구축 시작

- 2011. 4. 부산고검 내 법화학분석팀 설치 후 부산·경남권 법화학감정 지원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 2015. 12.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성범죄약물 검사기관으로 대검찰청 지정
- 2016. 3. 법생물 DNA 바코드 시스템 개발 운영
- 2016. 12. 국무총리 소속 DNA-DB 관리위원회에서 DNA-DB 수록에 사용되는 분석 마커의 수를 기존 13개에서 20개로 확대 심의의결
- 2019. 1.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약물치료 집행 복약검사 실시
- 2020. 8.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자격요건면제 절차개선 관련, 결혼이민 자격 심사시 대검찰청에서 친자관계확인용 DNA검사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50	9,336	11,021	12,097	11,41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2025 추정) 12,250백만원 → (2026 예산) 11,410백만원, △687백만원
- ① 과학수사활동지원 : (2025 추정) 4,982백만원 → (2026 예산) 4,954백만원, △28백만원
- ② 과학수사활동지원 : (2025 본예산) 6,950백만원 → (2026 예산) 6,134백만원, △817백만원
- ③ 국제과학수사협력지원 : (2025 본예산) 317백만원 → (2026 예산) 322백만원, 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105,694건
2023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116,830건
2024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98,568건
2025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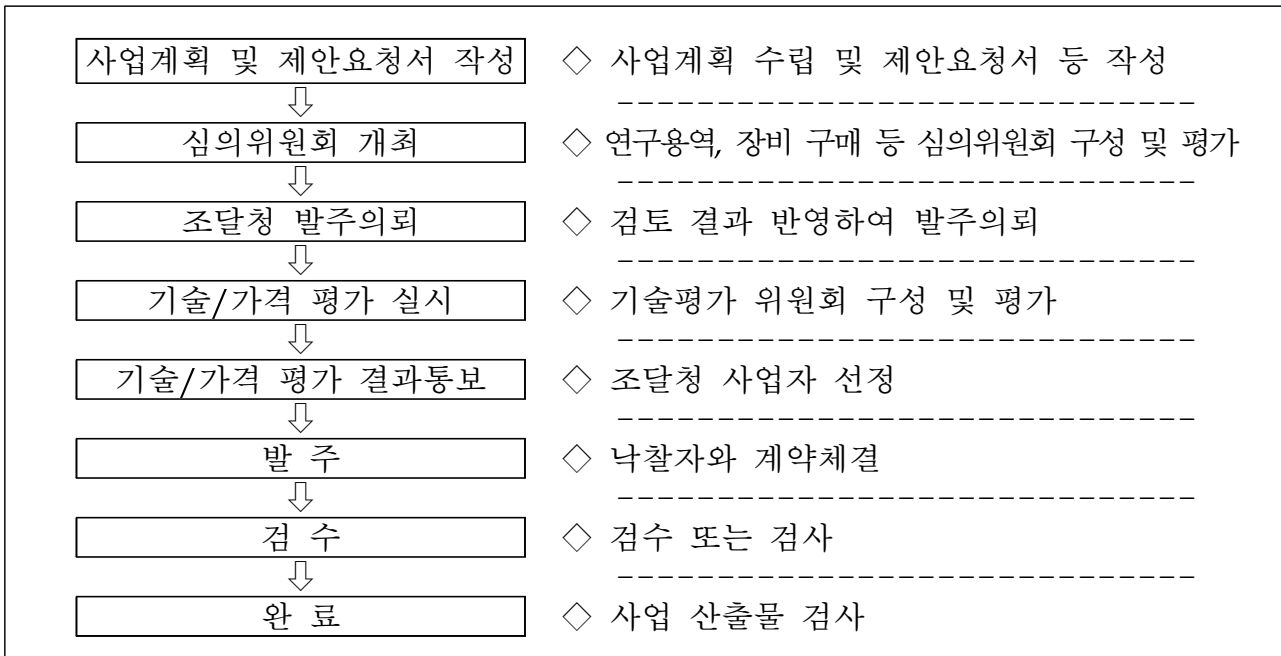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구축 추진
- 증거분석기법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전문성 제고로 연구분석 역량 강화
- 감정결과 검증 및 차별성 있는 복수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 국제공인시험기관 유지관리 및 추가인정 신청
- 영상녹화 시스템 구축 정착 및 내실화 추진
- 최첨단 과학수사장비 확충을 통한 새로운 감정·감식 기법 개발, 국제기준에 맞는 감정능력 확보로 전문화·첨단화된 과학수사 조직으로 변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영상녹화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상녹화제도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구축 및 진술증거 취득의 객관성을 보장하여 공판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으로 인해 영상녹화조사 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영상녹화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등을 상시 최적화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우수검사 선정 및 격려, 우수 활용사례 발굴 등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영상녹화 장비의 고장 및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영상녹화장비 교체를 지양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장비 구매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검토할 방침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676	-	8,650	-	△82	-	8,568	8,143	94.1	95.0	-	425
2023	9,336	-	9,336	-	△280	-	9,056	8,797	94.2	97.1	97	161
2024	11,021	-	11,021	97	△1,210	-	10,005	9,979	90.5	99.7	-	25
2025	12,097	153	12,250	-	△551	-	11,699	11,549	94.3	98.7	-	1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82백만원 전용 감 - 수리소요 감소, 임차 할인,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미집행,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시설장 비유지비 143백만원, 임차료 17백만원, 일반연구비 10백만원, 재료비 10백만원, 자산취득비 208백만원 등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8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 임차 할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임차료 3백만원, 자산취득비 98백만원, 일반연구비 14백만원 등 불용
2024	-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일반연구비 20백만원 등 25백만원 불용
2025	- 공공요금 부족으로 421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30백만원 전용 감,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5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71	검찰청 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50	검찰청 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7	3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9	9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국제형사협력지원(ODA) (1333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3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형사 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사업시행주체	검찰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제형사협력지원	2,689	2,509	-	2,509	2,128	△381	△1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01	2,699	2,689	-	10	2,509	2,509	2,498	2,509	2,498	-	11	2,1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마약퇴치지원) 개발도상국(ODA 수원국)에 대한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통해 마약 통제역량 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 (국제부담금 지원)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파견 검사 부담금 및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부담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② 추진경위

- 2009년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협력기금으로 필리핀 마약퇴치지원사업 수행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와 협의)
 - 검찰수사관 2명 출장 보내 8개월간 지원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
- 2012년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을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예산 배정받아 사업 재개(※ 필리핀은 2015년까지 Drug-Free ASEAN을 추진)
- 2013년 서남아시아 중 가장 취약한 방글라데시를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 사업 수행
 - ※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CPS 정책협약에서 방글라데시 정부(DNC : 마약통제기관)로부터 마약퇴치지원 사업 요청
- 2014년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까지 지원사업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수행
 - ※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조정센터(CARICC) 사무국으로부터 한국 검찰 주도의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로 회원국가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요청(2013. 2.)

- 2015년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에 지원사업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수행
 - ※ CARICC 회원국인 타지키스탄에서 마약퇴치지원사업을 요청하였고, 타지키스탄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편, 헤로인의 90%이상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면서, 인접국가인 타지키스탄 등을 거쳐 세계 각지로 공급되고 있는 곳임
- 2016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산 헤로인의 주요 경유국이자 마약단속 역량이 가장 열악한 키르기스스탄 지원
 - ※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산 헤로인의 30% 이상의 경유지, 일부 헤로인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어 청소년까지 사용층이 확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 부족, 대검 마약과에 마약퇴치지원 요청
- 2017년 각종 마약류의 밀수입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전반적인 마약단속 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으로 효율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지원
- 2018년 동남아 국가중 마약류 밀조 및 밀매가 심각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접하고 있으나, 인프라·장비 부족으로 마약류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라오스 지원
- 2019년 마약류 밀매와 남용이 만연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마약류가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캄보디아 지원
- 2020년 신종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감식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효율적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법화학 감정 역량 강화 지원
- 2021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접하고 있어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반면 통제역량이 부족하고, 국내로의 마약류 밀반입 및 도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라오스 지원
- 2022년 아시아 마약류 유통의 주요 경유국으로 마약류 사범, 마약류 압수량 증가 등 자국의 마약류 문제에 대해 인프라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이 증가 추세인 캄보디아 지원
- 2023년 필로폰, LSD 등 마약류 압수량 증가,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연관된 마약류 범죄 급증 및 젊은 층의 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사장비, 인적 역량 부족으로 마약류 통제 역량이 미흡한 몽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9	2,509	2,701	2,509	2,12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형사협력지원

① 국제 마약퇴치 지원 : (2025 본예산) 381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381백만원 감액

② 국제부담금 지원 : (2025 본예산) 2,128백만원 → (2026 예산) 2,12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캄보디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3	- 몽골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4	- 인도네시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5	- 키르기스스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검사 파견,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활동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ODA 사업의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과 마약수사사업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국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각 사업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물품 중 마약수사 특화 장비의 낮은 비중으로 인한 ODA 사업 효과성 저하('22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마약수사 특화장비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23년에 진행 중인 'ODA 몽골 마약퇴치 지원사업'부터 마약수사특화 장비의 비중을 높였고 향후 ODA 사업 진행 시에도, 일반 수사장비 및 사무장비의 비중을 낮추고 마약수사특화 장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음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09	-	2,509	-	-	-	2,509	2,480	98.8	98.8	-	29
2023	2,509	-	2,509	-	-	-	2,509	2,492	99.3	99.3	-	17
2024	2,701	-	2,701	-	△2	-	2,699	2,689	99.6	99.6	-	10
2025	2,509	-	2,509	-	-	-	2,509	2,498	99.6	99.6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29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2024	- 검찰국외훈련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2백만원 내역변경 감 - 일반수용비 5백만원, 국제부담금 1백만원 등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6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사업시행주체	검찰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178	19,187	23,967	31,688	31,381	12,194	63.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457	25,274	25,178	-	96	19,187	24,096	23,445	24,096	23,445	-	651	31,3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찰업무지원 인력 운영) 전국 67개 검찰청 사무국 등 수사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사무원, 전화상담원)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검찰업무지원) 검사, 검찰수사관의 수사 및 범죄관계 정보자료 수집, 수사업무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인력 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채용 지원, 승진시험 및 직종개편 시험 관리 지원, 검사·수사관 심리 상담 등 인력 관리 지원
- (감찰활동 강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서울고검의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인권감독 강화) 검찰 내 인권업무 지휘체계 일원화하고,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인권업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정책·제도 발굴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양성평등 강화)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상담·조사, 처리 절차 등 양성 평등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동법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2.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선발
- 2013. 11.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통한 검사 전문화 추진
- 2018. 3. 전문분야별 중점검찰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전문검사에 의한 사건처리 시스템 마련 및 검사 전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2022. 1.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통한 수사관 전문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276	25,743	25,457	23,967	31,38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검찰업무지원 인력 운영 : (2025 본예산) 9,631 → (2026 예산) 10,909백만원, 1,278백만원 증액
- ② 검찰업무지원 : (2025 추정) 8,565 → (2026 예산) 14,222백만원, 5,657백만원 증액
- ③ 인력 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 (2025 본예산) 3,665 → (2026 예산) 4,209백만원, 544백만원 증액
- ④ 감찰활동 강화 : (2025 추정) 938 → (2026 예산) 882백만원, 56백만원 감액
- ⑤ 인권감독 강화 : (2025 본예산) 1,017 → (2026 예산) 1,010백만원, 7백만원 감액
- ⑥ 양성평등 강화 : (2025 본예산) 150 → (2026 예산) 150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16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커뮤니티·연구모임 지원 - 블록체인&AI 커뮤니티 신설 - 제9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1급 1개 분야 1명 인증, 2급 20개 분야 24명 인증) - 제7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월) (※ 공인전문수사관 2급 17개 분야 49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전문서적 구입 비용 지원 - 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강제집행 실무 연구회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4, 10월)
2022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15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3회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커뮤니티 지원 - 제10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2급 19개 분야 22명 인증) -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3개 분야 3명 인증, 2급 15개 분야 25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전문서적 구입 비용 지원 - 초급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강제집행 실무 연구회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2023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17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6회 지원 -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1급 1개 분야 1명 인증, 2급 20개 분야 23명 인증) - 제10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2개 분야 2명 인증, 2급 14개 분야 29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전문서적 구입 비용 지원 - 초급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검사·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EBS play+ 서비스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2024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9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6회 지원 - 제12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2급 21개 분야 34명 인증) - 제10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2개 분야 2명 인증, 2급 14개 분야 29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자료집 발간 비용 지원 - 초임검사 역량강화 연구모임 지원 - 검사·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EBS play+ 서비스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발생의 원인 및 추이분석,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등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지도
- 검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업무별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검찰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속 수행
-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검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검찰의 역할, 조직과 기능,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연구·수립 기능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검사 및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실시 필요('22 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교육기간을 축소(2박 3일→1박 2일)하는 대신 교육대상자의 규모를 확대(연간 6회 이상, 회당 50여 명)하는 등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795	△519	24,276	45	△1,304	-	23,017	22,531	92.8	97.9	74	412
2023	25,743	-	25,743	74	△116	-	25,702	25,645	99.6	99.8	-	57
2024	25,457	-	25,457	-	△183	-	25,274	25,178	98.9	99.6	49	96
2025	19,187		23,967	49	80	-	24,096	23,445	97.8	97.3	-	65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상용임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304백만원 전용 감 - 공무직 휴직 증가 및 초과근무 감소로 상용임금 281백만원, 고용부담금 44백만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출장 감소로 유류비 58백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16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 일반연구비 36백만원, 일반용역비 13백만원 등 집행잔액 57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83백만원 전용 감 - 다음연도 이월 49백만원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109백만원 전용 증, 집행 잔액 65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16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14	109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20-01	국내여비 부족

사 업 명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1333 - 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7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1,756	2,400	-	2,200	2,200	△ 200	△ 8.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00	1,800	1,756	-	44	2,400	2,400	2,361	2,400	2,361	-	39	2,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첨단기술융합형차세대Forensic기술연구개발)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지능화·대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과학수사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인권보호 및 형사사법체계의 건전성 제고
-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융합형포렌식기술개발)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첨단분석 과학기법/장비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시대 변화에 적합한 검찰 업무 환경 확보 하고, NGS, 이동형 디바이스 등 첨단 분석과학기법/장비 기술을 활용한 ①신종 합성법에 의한 필로폰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마약지문감정 고도화 연구 개발, ②정신질환 범죄 등 ‘묻지마 범죄’ 감소를 위한 이동형 신속검사 시스템 구축 연구, ③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1ng 수준 (기준 20ng) DNA 분석 MPS system 구축기술 확보 연구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6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② 추진경위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획(2018. 9.)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용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4. 12.)을 통해 기획 보고서 작성연구 수행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사업 시작(2020. 4.)
- ‘과학수사 연구개발(R&D) 협의회 구성(안)’ 수립 및 운영(2020. 10.)
-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020. 12.)
- 법과학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연구(2021. 12.)
- 검찰의 Forensic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획연구(2022. 12.)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종료(2023. 12.)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작(2024.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800	2,400	2,2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① 첨단디지털기술융합형차세대Forensic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080백만원 → (2026 예산) 880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 ②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용합형포렌식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320백만원 → (2026 예산) 1,320백만원, 전년동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첨단 디지털기술 융합형 Forensic 기술개발 ☒ 메타바코딩 및 AI기술 융합 기반 혼합물 원료물질 식별 및 DNA탐지기술 개발 - 식물/마약식물 혼합물에 대한 판별 및 실무적용을 위한 실험 및 분석 매뉴얼 작성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Beyond DNA Barcoding: Advancing Forensic Investigations with DNA Metabarcoding Technology, 9th International Barcode Of Life Conference (2024.9.5.)	포스터
		2. Application of DNA Metabarcoding for the Detection of Biological Ingredients in Lactobacillus Products, 2024 한국미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024.10.31.)	포스터
	☒ 클라우드 시스템포렌식을 위한 서비스/크리덴셜 탐지 및 데이터 추출/분석기법 개발 - 자동화된 서비스 식별 도구 개발 및 SaaS 6종, DaaS 1종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PoC 개발 - 수집, 조사, 분석, 보고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포렌식 절차 제공, 체계적인 수사 설계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LEX-GNN: Label-Exploring Graph Neural Network for Accurate Fraud Detectio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2024.10.21.)	구두
	☒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 딥보이스 50시간 수집 - 딥보이스 탐지 베이스라인 시스템 설계 (동일 오류율 2% 이하)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음성 딥페이크 탐지 현황' 특강, 한국음성학회 ('24.10.19.) 2. M-Conformer: A Conformer-based audio deepfake detection system with hierarchical pooling and multi-level classification token aggregation methods", 한국음향학회 (2024.10.30.~11.1.)	구두 구두
○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 - 메신저, 이메일 등 클라우드·웹 기반 기술유출 아티팩트 및 유출패턴 정규화 - 기술유출 사건의 유출 기법 및 파일 유출 경로를 판별할 수 있는 정규화된 패턴 도출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기술유출 동향 분석 및 향후 연구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2024.11.26.)	구두
	학술발표	2. 코드 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 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학술발표	3. 슬랙 협업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 융합형 차세대 포렌식 기술개발 ○ 첨단기술의 활용성 및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고도화 연구 - 기존 PCR 시스템 성능비교를 통한 1 ng 미만 DNA 분석용 MPS 시험법 설계 ○ GC/LC-MS/MS 계량분석 연계 기반 마약지문 감정기법 고도화 및 글로벌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 대기압 GC-HRMS 및 LC-MS/MS 메트암페타민 프로파일링 조건 확보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동남아시아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합성동향 및 메트암페타민 불순물 지문분석 현황, 제16회 아시아 포렌식네트워크, (2024. 8. 26)	구두
	학술발표	2. 2024년 메트암페타민 합성 및 마약지문 동향, 2024 UNODC 마약포렌식 법과학회의 (2024. 9. 10)	구두
○ 이동형 분석 디바이스 기반 약물치료 명령 준수여부 판별기법 개발 - 약물치료 대상 보호관찰자 관리에 적합한 이동형 분석 디바이스 설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세사업 명	기대 효과
첨단 디지털기술 융합형 Forensic 기술개발	-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및 크리덴셜 식별·추출·정제 관련 기술 획득 및 모듈 개발 - 메타바코딩, AI를 이용한 혼합물 분석법 개발에 따른 천연물 유래 마약류 혼합 불법식품 차단 - 페이크 보이스 탐지 기술 획득 및 딥러닝 기반 페이크보이스 탐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음성 합성·변조 기술 기반 피싱범죄 차단 - 아티팩트 자동추출 기술 획득 및 개발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따른 국가 경제 영속적 성장
첨단 분석과학기법/장비 융합형 포렌식 기술개발	- 1 ng 미만 DNA 분석 가능 MPS system 구축 및 DNA 메틸화와 SNP 분석의 동시분석법 개발을 따른 사건현장 신원 불특정 장기 미제 사건 해결 - P2NP, MAPA, nitrostyrene 유래 필로폰 불순물 정보 획득을 통한 신종 합성법에 의한 필로폰 유입 차단 - 이동형 신속 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범죄 등 '문지마 범죄' 효율적 대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 10. 6, 대검찰청)에 따른 대검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도			
절차 (지침 조항)	과제 담당	사업 담당	예산집행
과제 발굴 계획수립 과제선정 (11, 12조)	사전조사기 획연구 → 기술수요 조사	과제 제안 공모/ 제안 검토	
	[신규과제 기획] 2. 시험 및 용역연구 신규기획 3.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보고, 제출 6. 신규과제 제안서 발표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1. 신규과제 발굴 계획 수립, 수요조사 4. 취합, 신규제안서검토 5.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7. 과제선정 결과보고	[기타] 8. 예산편성 계획 반영
계획서 평가, 심의 (13, 23-25조)	[수행과제 계획서 작성] 1. 시험/용역연구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4. 과제수행계획 발표	[계획서 심의위원회] 2. 평가위원회 구성 3. 계획서 평가 실시 5. 평가결과 담당자 통보 및 결과보고	[기타] 6. 평가위원 수당 지급

시험연구 수행 (26, 27조)	[시험연구 착수] 2. 연구보조원 채용 3. 시험연구 착수보고	[R&D 추진계획 보고] → ← 1. 취합 및 보고	
용역연구 조달 공고/ 연구자 선정 (14~19조)	[용역연구 제안요청] 1.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3. 내부 보고	[조달발주 지원] → ← 2. 공고 및 평가기준, 예산 산출근거 검토	[조달발주 의뢰] 4. 운영지원과 조달발주 의뢰 ※ 공고(40일), 재공고(10일)
	[주관연구기관 선정] 1. 조달 진행 2. 기술평가 개최 협의, 연구계획서, 과제설명 7.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협의안 운지과/조달청 송부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 ← 3. 기술평가 위원 구성 4. 기술평가 실시 5. 기술평가 결과 통보	[기타] 6. 평가위원 수당 지급
계약			[용역연구 계약의뢰]
과제진행 및 진도관리 (20~22조, 29조)	[용역연구 착수] 1. 보완된 계획서 및 착수계 수령 (계약 후 10일 이내) 2. 착수보고회의 개최 4. 선금지급 접수, 의뢰 6. 중간보고 등 과제관리 ※ 연구비 변경 신청	[진도관리] → ← 3. IRIS SIMS 과제 입력 ※ 연구비 변경 검토	[기타] 5. 선금지급 지급
	[시험연구 수행] 3. 시험연구 중간 보고 ※ 과제 내용 변경 신청	[진도관리] 1. IRIS SIMS 과제 입력 ※ 과제 내용 변경 검토	[기타] 2. 재료비 등 지출
결과평가 (23~28조)	[과제 종료, 결과평가] 1. 결과평가회 개최 협의 3. 연구보고서 초안 수령 6.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	[용역연구 및 시험연구 결과평가 심의위원회] → ← 2. 과제평가단 구성 4. 최종평가 실시	[기타] 5. 평가위원 수당 지출 7. 정산 - 용역연구: ①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등 성과품 및 증빙서류 수령 ② 연구비 정산 및 지출 내역 검토

			③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급 지급 - 시험연구: ① 연구결과보고서 및 시험연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성과관리 (40점)	○ 성과활용계획서 작성 ○ 성과 입력	→ ○ 예산/결산/자료 관리 ○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 출	○ 연구과제 예산/결 산자료 제공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800	-	1,800	-	-	-	1,800	1,756	97.5	97.5	-	44
2025	2,400	-	2,400	-	-	-	2,400	2,361	98.4	98.4	-	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외부 전문 연구기관이 보유한 개발자 및 장비 활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과제 추진을 위해, 'IT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 과제를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150백만원 전용 - 시험연구원의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관련 인건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4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39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6,312	33,339	33,339	33,314	29,633	△3,706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39	36,839	36,312	-	527	33,339	33,339	0	33,339	0	-	553	29,6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으로 수사역량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 강화 지원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검찰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검찰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지원
-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20068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64호)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 제20897호)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9호)

② 추진경위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전산화 사업 추진
- 2000. 수사정보, 전자결재, 통계시스템 구축
- 2001. 지식관리, 정보보호, 도서관리, 선거사법, 송무시스템 등 구축

- 2002. 주전산기 교체 및 형사사법정보망, 형집행시스템 등 구축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 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04.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출입국사범 등 WEB 방식 재구축
- 2005. 압수물관리, 출국금지 구축 및 지식관리, 홈페이지 재구축
- 2006. 주전산기 교체 통합사건 웹기반 조회·검색시스템 구축
- 2007. 정부업무관리, 국가기록관리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08. 영상물관리시스템,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등 구축
- 2009.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구축
- 2010.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2.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EA시스템 개선
- 201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메신저 재구축사업, 양형시스템 개선사업,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등
- 20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검찰지식포털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등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전화 녹취시스템 고도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 20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보안 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특수기록관 운영시스템 개발,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재개발, 검찰 국가 형사사법기록관 구축,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9.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윈도우10 호환성 확보, 일선 검찰청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2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일선 검찰청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검찰 정보통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 202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양형시스템 개선,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 20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3.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업무포털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이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4.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종이기록 전자화 추진 및 일선 검찰청 전자화 장비 도입, 차세대 검찰통계시스템 구축, 전국 미설치 검찰청 화상회의시스템 확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778	31,164	36,839	33,339	29,63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 ('25) 1,564백만원 → ('26) 142백만원, △1,422백만원 감액
- ②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 ('25) 9,561백만원 → ('26) 7,425백만원, △2,136백만원 감액
- ③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 ('25) 3,774백만원 → ('26) 1,973백만원, △1,801백만원 감액
- ④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 ('25) 18,440백만원 → ('26) 20,093백만원, 1,653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개선 등 기능 고도화 ○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 라이선스 추가 도입, 녹화영상 서버 저장 기능 구현 등 ○ 업무·인터넷망 분리 - 부산고검 등 3개청의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 검찰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대구서부지청 등 5개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아날로그 교환기를 교체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성 확보
2023	○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및 검찰업무포탈시스템 호환성 확보 - ActiveX 제거 및 다양한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확보 ○ 업무·인터넷망 분리 - 울산지검 등 5개청의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202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대응,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검찰통계시스템 재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검찰 통계 체계 마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화상회의시스템 미설치청 중 5개청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 지원,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검찰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성을 강화 - ITSM(서비스관리)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사용자 요청사항 및 문의에 대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202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25년 10월 MS사의 윈도우10 보안 지원 중단 대비 윈도우11 전환 작업을 통해 노후 시스템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 전국 검찰청 업무·인터넷 네트워크를 분리, 검찰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위협하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해킹메일을 차단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중요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보장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검·경간 범죄통계원표 항목 개선안 반영하여 「범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검찰 데이터 정확성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검찰공무원의 다양한 인사정보와 독자적인 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검찰청 업무·인터넷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대검찰청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등 작성
↓		
②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자체 평가	대검찰청	자체 평가팀 구성 사업 타당성 검토
↓		
③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외부 평가	대검찰청	외부 자문위원 제안요청서 검토
↓		
④ 조달청 계약의뢰	대검찰청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계약의뢰
↓		
⑤ 기술평가 실시	대검찰청	조달청 사업자 선정
↓		
⑥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대검찰청	사업추진
↓		
⑦ 사업진행 중간평가	대검찰청	사업추진 과정별 중간평가 실시
↓		
⑧ 검수	대검찰청	사업 산출물 검사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평가년도	예산 (억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 고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023	311.6	92.1(보통)	
	2024	368.3	96.7(보통)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778	-	32,778	340	-	-	33,118	32,496	99.1	98.1	-	622
2023	31,164	-	31,164	-	-	-	31,164	30,811	98.9	98.9	-	353
2024	36,839	-	36,839	-	-	-	36,839	36,312	98.6	98.6	-	527
2025	33,339	-	33,339	-	-	-	33,339	32,786	98.3	98.3	-	55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및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검찰 네트워크 분리 사업 및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공사비를 사업 내 전용. 비목 조정 시, 사업대상 추가 가능하여 전용 진행,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622백만원 불용
2023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353백만원 불용
2024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27백만원 불용
2025	- 일반연구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5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334-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업무정보화	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침단범죄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침단범죄및디지털 수사(정보화)	10,070	9,861	143	12,580	12,285	2,424	2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19	10,419	10,070	-	349	0	0	0	0	0	-	239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첨단범죄수사 운영 및 지원)** 범죄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수사·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첨단범죄 관련 수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 수사 및 공판에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원본성·무결성 등 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 수사·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확정 시까지 디지털 수사지원 절차관리, 증거관리, 증거분석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것임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디지털 증거의 다양화, 대량화 추세에 따라 다종·대량 디지털증거 통합분석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 수사·조사기관의 신속·능동적인 대응, 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국가 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 서비스 개선)** 급속하게 지능화 되고 있는 신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AI기반의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게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이에 따른 장비 증설 및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솔루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연장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법률 제17511호)
-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 검찰청법(법률 제15522호)

② 추진경위

- 1996. 7. 1.자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2개청(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 전담수사반 설치
- 1997. 4. 4개청(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컴퓨터 증거자료 분석시스템 연구개발(1차) 사업완료
- 1998. 5개청(인천,수원,청주,전주,창원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1999. '컴퓨터 데이터 복구·분석시스템' 개발
- 2000.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교육 개설·운영
- 2001. '기업회계자료 분석을 위한 수사지원시스템' 개발
- 2002-2003.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 개발
- 2003-2004. '자금추적 보조프로그램',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프로그램', '수사자료 관리 시스템', '인터넷이용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개발
- 2005. '인터넷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청정기법을 활용한 손상된 하드디스크 복구 기술', '디지털포렌식분석물 관리시스템' 개발
- 2006. '수사질의어시스템', '손상된 한글 파일의 복구기술',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DEAS2) 1차' 개발
- 2007.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DEAS2) 2차',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 1차(DFIS)' 개발
- 2008.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신설, 부산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전자금융거래 로그분석', '자금추적 보조프로그램(Tracer) 고도화' 연구
- 2009. 대구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상용프로그램 암호해독 기법', 'ERP 데이터 베이스 압수분석체계' 연구 등
- 2010. 광주고검 및 대전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CFT10'(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DB Log 분석도구'(KIST 공동) 개발
- 2011. 인천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전국 검찰 디지털수사망 1단계 구축, 디지털 수사지원시스템(D-Net망) 기능 강화
- 2011.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사이버범죄수사단 창설
- 2012. 피압수자의 참관권 보장을 위한 참관인실 설치, 수원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 2012. 6.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 시스템 구축

- 2012.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2차 2단계 사업,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시범 구축
- 2013. 전국디지털수사망시스템 개통,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위탁교육 실시,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1차 구축
- 2013.12.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시스템 2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4.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1차), 안티포렌식대응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축 (1차), 디지털증거데이터팩 국가표준(KSX1220) 제정
- 2014. 12.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시스템 3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5.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4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4.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설치,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2차) 구축
- 2015.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2차), ASIC기반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BEYOND A) 구축
- 2016. '상용 응용프로그램의 암호화 방식 연구', 'IoT사용정보 수집방법 및 사건증거 활용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v3.0) 개발,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3차) 구축,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도입 완료
- 2016.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5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7. '응용프로그램 파일시스템 연구', 'Secure Boot Chain연구' 등 연구, 모바일 포렌식도구(MFA) 기능개선,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4차) 구축,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17.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6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8.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7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9. 12. 사이버수사과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발 1차 사업 완료
- 2018. '안드로이드 기기 내부의 취약점 연구'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4.0) 기능개선 및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백업센터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디지털수사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 2019. '제1기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양성과정' 개설,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의 플래싱 도구 활용 방안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4.5)기능개선 및 고도화, 주요포털 이메일압수도구(eFA) 개발,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확장
- 2020.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비서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행방법 특허 등록,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취득

- 2020. 악성코드분석시스템 고도화(동적분석 및 시각화 사업)
- 2021. 'Vehicle AVN 동기화 데이터 수집 및 EDR 분석기법 연구', 'Surface Web 기반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확대 연구'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5.1) 기능 개선, 주요 포털 이메일포렌식도구(eFA) 분석기능 개선,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 목적 암호해독용 장비 추가 구축
- 2022. 'dm-crypt류 기반 암호화 기법 연구',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고성능병렬 처리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 2022. 12. 사이버수사과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 2023.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데이터 획득 분석 복호화 기법 연구', 'PC기반 협업툴 데이터 구조 분석 및 획득 기법 연구',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휘발성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 행위 연관 데이터 획득 및 분석기법 연구', '압축파일 암호탐지기법 고도화 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 2023. 7. 서울동부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23. 11.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 시스템 구축·운영
- 2023. 12.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불법 영상 수집기능 및 동영상 동일성 비교 기능 고도화 완료
- 2024.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 OS 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및 교재 개발',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 '자체 개발 모바일포렌식 도구(MFA) 구조개선 및 메신저분석 기능 고도화'
- 2024. 7. 제주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24. 12.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불법 영상 수집기능 강화 및 가상자산 주소조회 시스템 고도화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01	9,774	10,419	10,004	12,28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2025 추경) 10,004백만원 → (2026 예산) 12,285백만원, 2,281백만원 증액
- ① 첨단범죄수사 운영 및 지원 : (2025 추경) 2,751백만원 → (2026 예산) 2,637백만원, 114백만원 감액
- ②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 (2025) 4,035백만원 → (2026 예산) 6,323백만원, 2,288백만원 증액
- ③ 첨단범죄 수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 (2025) 2,855백만원 → (2026 예산) 2,513백만원, 342백만원 감액
- ④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서비스 개선 : (2025) 0백만원 → (2026 예산) 449백만원, 449백만원 순증
- ⑤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구축 : (2025) 363백만원 → (2026 예산) 363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dm-crypt류 기반 암호화 기법 연구 ○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 고성능 병렬처리 구조 개선 방안 연구 ○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특화교육 국내 87명, 국외 10명 ○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고도화(독자서버 구축 및 안면인식을 통한 탐지기능 고도화)

2023	○ PC기반 협업 톨 데이터 구조 분석 및 획득 기법 연구 ○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 휘발성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 행위 연관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법 연구 ○ 압축파일 암호탐지기법 고도화 방안 연구 ○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데이터 획득, 분석, 복호화 기법 연구 ○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진행 ○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고도화(탐지 기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2024	○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이종 OS 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 ○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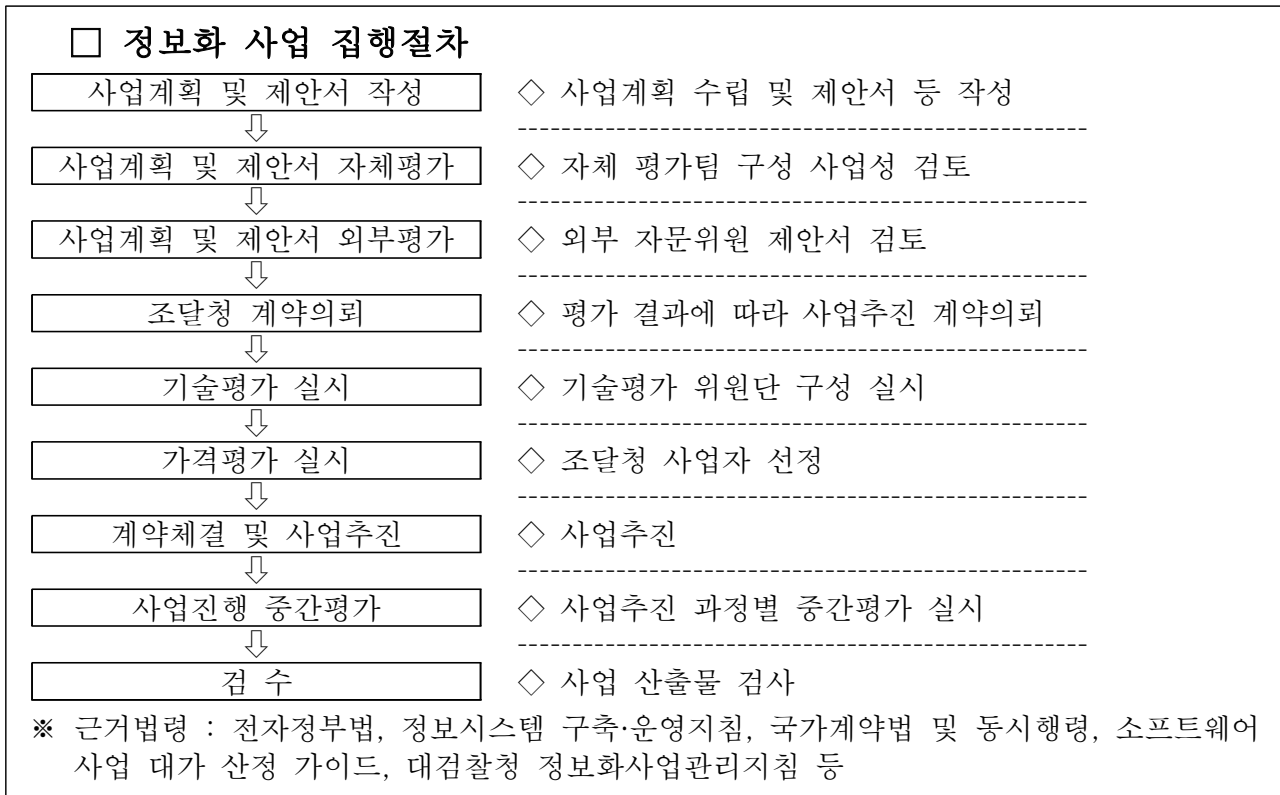
- 디지털포렌식 지원 역량 강화

- '22. 하반기부터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포렌식 거점청을 신설하여 현장지원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증거수집을 통한 사건처리 기대
-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 및 참여 확대에 의해 폭증한 참관수요에 대응하여 참관실을 추가 설치하여 참관이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참여권 보장을 통해 인권강화에 기여
- 디지털수사시스템의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증거관리 역량 안정적 유지
- 지속적인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을 통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 및 대응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감정, 정밀분석 역량 유지·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지적사항)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시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계약업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 (조치사항) 2025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체결 완료(2025. 4. 21.)하였으며,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가 전제되므로 '26년도 예산 확보 추진 등 대안 마련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919	△18	10,901	118	-	-	11,019	10,547	96.8	95.7	81	391
2023	9,774	-	9,774	81	-	-	9,855	9,524	97.4	96.6	-	249
2024	10,419	-	10,419	-	-	-	10,419	10,070	96.7	96.7	-	349
2025	9,861	143	10,004	-	-	-	10,004	9,765	97.6	97.6	-	2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COVID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생산 차질 및 해당 장비의 소요 시점 및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연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118백만원 이월, 낙찰차액 및 집행액 391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사이버범죄 증거분석 하드웨어 도구 구매와 관련하여, 조달청 1차 공고시 25개 업체의 순차적 입찰 포기로 인해 재공고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PC 원자재 수입 및 제조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81백만원 이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49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9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9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1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형사부 등 수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형사부 등 수사지원	84,934	47,838	85,664	88,975	87,824	39,986	83.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475	85,131	84,934	145	52	47,838	85,128	80,983	84,983	80,983	65	4,082	87,8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사보조인력 운영) 전국 검찰청 형사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사무원 및 속기사)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수사활동 일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활동비, 유관기관 협의회 등 개최 경비, 부·과 수사활동비 등 수사 및 현장수사 활동 경비 지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 (디지털포렌식 지원)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팀 운영 지원 사업
- (호송 인치 업무) 호송 인치 업무 제반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② 추진경위

- 법질서 확립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범죄 수사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553	85,894	86,475	85,664	87,82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수사보조인력 운영 : ('25 본예산) 24,143 → ('26 예산) 27,653백만원, 3,510백만원 증액
- ② 수사활동 일반 : ('25 추경) 60,840 → ('26 예산) 59,490백만원, 1,350백만원 감액
- ③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 ('25 본예산) 339 → ('26 예산) 339백만원, 전년 동
- ④ 호송·인치 업무 지원 : ('25 본예산) 342 → ('26 예산) 342백만원, 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검찰 수사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영장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영장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의 신청에 의해 개최되는데 신청 건수가 적어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2년 780백만원, '23년 200백만원, '24년 133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당장 집행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경찰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7,425	△1,872	85,553	86	△1,921	-	83,718	81,791	95.6	97.7	5	1,922
2023	85,894	-	85,894	5	△628	-	85,270	85,223	99.2	99.9	37	10
2024	86,475	-	86,475	37	△1,381	-	85,131	84,934	98.2	99.8	145	52
2025	47,838	37,826	85,664	145	△681	-	85,128	80,983	94.5	95.1	65	4,08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상용임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921백만원 전용 감, 일반연구비 5백만원 이월, 공무원 휴직 증가 및 초과근무 감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유류비 등 집행잔액 1,922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28백만원 전용 감, 고용부담금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31백만원 이용,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용역 계약금 지급 연기로 6백만원 이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74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360백만원 전용 증,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구호및교정비 9백만원, 일반연구비 2백만원 등 집행잔액 52백만원 불용,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일반연구비 145백만원 이월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81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부족으로 2,126백만원 사업 내 전용,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일반연구비 65백만원 이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4,08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110-03	500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420-03	200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9.12)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430-01	400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10-07	19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110-03	650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9)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110-03	357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320-09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110-03	1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 지원(1335-301)	310-04	4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공공수사 (1335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2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공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공공수사	3,002	1,346	3,246	3,406	2,982	1,636	12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76	3,003	3,002	-	1	1,346	3,246	2,287	3,246	2,287	-	959	2,9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수사 지원) 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서의 공공수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공공수사활동 경비) 공공수사에 필요한 여비,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지원
-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유공자 및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등

② 추진경위

- 국가안보위해사범 척결
- 선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 중대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
- 임금채불 등 노동사범 단속
- 불법집단행동 등 반법치행위 근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71	3,109	3,276	3,246	2,9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공수사 지원 : ('25 본예산) 522 → ('26 예산) 528백만원, 6백만원 증액
- ② 공공수사활동 경비 : ('25 추정) 2,467 → ('26 예산) 2,197백만원, 270백만원 감액
- ③ 포상금 지급 : ('25 본예산) 258 → ('26 예산) 25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죄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92,458	94,861	78,742	60,559	58,464	53,040	59,532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선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신중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 임금체불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중대재해 사건 및 산업재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 불법 집단행동 수사역량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근 집행률 저조한 추이를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을 감액(2024년 45,121천원 → 2025년 13,621천원)하였으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41	△70	4,371	-	22	-	4,393	4,387	100.4	99.9	-	7
2023	3,109	-	3,109	-	-	-	3,109	3,106	99.9	99.9	-	3
2024	3,276	-	3,276	-	△273	-	3,003	3,002	91.6	100.0	-	1
2025	1,346	1,900	3,246	-	-	-	3,246	2,287	70.5	70.5	-	9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3	-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73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5	-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959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공공수사 (1335-302)	210-12	21	공공수사 (1335-302)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공공수사 (1335-302)	310-03	168	공공수사 (1335-302)	210-02	공공요금 부족

사 업 명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3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513	9,918	14,456	16,203	13,768	3,850	38.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44	14,533	14,513	-	20	9,918	13,923	12,753	13,923	12,753	-	1,170	13,7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 지원)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활동 지원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지원 관련 홍보 동영상 및 자료 제작, 범죄신고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 지원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간담회, 책자발간 비용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금융·증권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국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엄정 대응 필요성 증대
- 국민생활침해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단 등 구성·운영 필요
-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해 선제적·체계적 수사 및 정보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지원 필요
- 특사경 성과지표 분석인자를 개선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자원 효율적 배분, 특사경의 적극적 교육 지원 및 특사경 협의체 개최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10	12,549	14,644	14,456	13,76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지원 : ('25 추정) 13,950 → ('26 예산) 13,262백만원, 688백만원 감액
- ②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 ('25 본예산) 276 → ('26 예산) 276백만원, 전년동
- ③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 ('25 본예산) 230 → ('26 예산) 23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흉악사범 등	54,697	1,301	67,334	975	87,789	1,091	48,263	1,164	75,415	1,07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형태에 맞춰 조직폭력사범의 폭력단체등 구성·활동, 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산업을 중점 단속하여 조직범죄를 척결,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 단순 게임장 업주뿐만 아니라 게임을 제공한 본사 및 환전업자까지 수사하여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재발, 사회 확산 방지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하고, 대검 및 필리핀 현지 출장 검찰수사관과의 신속한 수사 공조를 통한 해외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 범죄인 송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기여
- 서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각종 범법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적인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도모
-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의 적극적인 색출 및 엄벌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하고, 필리핀에 파견된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 중
 - 현재 중국 정부에 검찰 수사관 파견을 위하여 주중대사 법무협력관, 한·중 수사협의회 등 여러 소통채널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 검찰수사관 파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중
 - ※ '23. 4. 주중대사 법무협력관,公安部 국제합작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 파견 제안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미온적 응답 회신
 - ※ '24. 12. 26. 개최 예정인 한·중 수사협의회 정기실무회의 의제 중국 파견 의견서 제출 완료

-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추적 중 마약, 도박 범죄 조직이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도피사범 발견시 해당 범죄 조직 등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중
- ※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을 통한 첩보, 인지사건 현지 탐문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121	△411	11,710	-	△148	-	11,562	11,524	98.4	99.7	-	38
2023	12,549	-	12,549	-	△70	-	12,479	12,474	99.4	100.0	-	5
2024	14,644	-	14,644	-	△111	-	14,533	14,513	99.1	99.9	-	20
2025	9,918	4,538	14,456	-	△533	-	13,923	12,753	88.2	91.6	-	1,1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48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38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7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20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33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17백만원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1,17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310-04	17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마약수사 (1335 - 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4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마약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마약수사	7,600	7,823	9,584	11,511	10,621	2,798	3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4	7,707	7,600	-	107	7,823	9,523	8,878	9,523	8,878	-	645	10,6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약사범 수사 지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4대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지원, 마약류 유통조직 정보수집 활동 지원, 첨단 마약수사장비 구입, 마약수사활동 차량 지원 등 수사활동 지원, 국제마약조직 공조수사 지원, 기타 수사요원 교육비, 수사여비, 마약수사 활동비, 국외마약 반입 적발·단속 등을 위한 주요공항·항만 검찰 마약수사 분실 설치 운영 사용료 및 임차료 등 지원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지원) 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준비, 회의장 임차, 사업추진비 등 경비 지원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 운영 지원)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re for combating drug crimes, 아시아 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② 추진경위

-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팀 신설, 전국 10개 주요 공항·항만에 검찰 마약분실 설치·운영
-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용 지속적인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 전국 34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통합수사체제 전환

- 2002. 2. 대검찰청 산하에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합동분석팀」 설치·운영, 국제 마약공급조직 국내 침투 강력 차단
- 2009. 3. 공항, 항만 관할 거점청에 인력 재배치하여 전국 36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 2010. 10. 마약류공급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와 아태지역 마약 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0.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0. 10. 마약류공급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와 아태 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0.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1. 5. 마약류공급국가(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1.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2. 9.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공식 출범(회원국 : 아세안 8개국) 및 창립 총회 개최를 통한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 활성화(회원국 전용 전산망 개설 및 운영) 및 실질적인 공조 수사 체제 구축
- 2013. 4. 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태국 방콕)을 통해 홈페이지 활성화 및 한·태국간 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논의(강제송환 실제 사례 발표), 실무자 팀워크 강화 훈련 실시
- 2013. 7.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마약통제 역량강화 일환으로 마약퇴치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한 지역 사무소간 정보 공유 등 협력분위기 조성, 필리핀 마약청 (PDEA) 수사관 교육·훈련 및 장비지원을 통한 단속 능력 향상
- 2014. 5. 필리핀 비사얀 지역 4개 지부에 대하여 단속 장비 지원 직원 교육·훈련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및 아·태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조수사 활성화
- 2014. 9. 아·태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제 2차 정기총회 개최하여 운영 방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얀마 새로 회원국 가입(회원국 : 아세안 9개국) 하여 회원국 확대되어 대검찰청이 마약분야 국제공조를 주도
- 2014. 10. 부산에서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정보교환, 중국도피 한국인 마약사범 강제송환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향 위한 한·중 업무협약 체결 및 제1차 한·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 2015. 9.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타지키스탄과 실질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앙아시아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5. 1~12. APICC 회원국과 실질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중국 등에 도피중인 한국인 필로폰 밀수사범 5명 강제 송환

- 2016. 5. APICC 회원기관인 캄보디아 마약청을 대상으로 마약통제역량강화 지원 사업 수행, 수사지원장비 및 현지 워크숍 개최
- 2016. 9. 제3차 APICC 정기총회를 통해 APICC의 활동사항과 APICC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토의
- 2016. APICC와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등 국외도피 마약사범 5명 강제송환
- 2016. 12.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단속 활동 강화
- 2016. 12. 마약류 판매 등 광고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7. 6. 3. 시행)
- 2017. 6.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 전개(43명 단속, 광고게시물 등 7,890건 차단·삭제)
- 2017. 9. 회원 19개국 및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제27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성공적 개최
- 2017.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및 인터넷 마약류 거래 지속적 단속 및 감시 강화
- 2017. 12. 전국 6대 강력부 설치 지점(각 1대) 및 인천공항(2대)에 마약류 탐지기 8대 구입·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마약류 탐지 및 수사개시 가능
- 2018. 6. 「마약류범죄 수사 매뉴얼」 발간·배포하여 마약류 통제배달 및 위장거래 등 수사의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정비
- 2018. 9.~12. 마약류사범 재범 감소를 위하여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TF’ 구성 및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에서 치료·재활 개선방안 확정
- 2018. 10.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라 ‘SNS 이용 마약류 판매 사범 수사기법’ 전파하여 수사 역량 강화
- 2018. 12. 수사사례 및 기법 교류 등을 통하여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
- 2019. 1.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사람중심’의 치료·재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 2019. 8.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밀수 및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단속 주력 위한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운영,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20. 2. 검찰 처분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별 맞춤형 조건 부과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시행
- 2020. 5.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국가정보원, 태국마약청과 공조로 태국 현지에서 국제범죄조직 두목 ‘아시아 마약왕’ 검거 후 송환[언론보도]

- 2020. 8. 수사 노하우 및 사례를 집대성한 「다크웹 마약수사실무」, 「사이버 마약범죄 수사실무」 제작·배포하여 마약수사관 수사역량 강화
- 2020. 11.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검찰 마약수사관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간 공조수사로 적극 대응
- 2021. 5. 태국발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 및 국내 태국인 마약사범 대응을 위해 태국 마약청으로부터 수사관 1명을 파견 받아 대검찰청에서 합동 근무 실시
- 2021. 8. 태국 마약청에 수사장비와 감시장비를 지원하여 태국 마약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태 공조수사망 강화
- 2021. 11. 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간 공조수사 체계 유지
- 2021. 1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통한 마약대금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전문교육 실시하여 가상화폐 수사능력 향상
- 2021. 12. 라오스 마약청에 수사장비 지원 및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 설치하여 라오스 마약통제 역량 강화,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 2022. 2. 베트남公安部 및 국정원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입(약 404kg) 사건 주범 검거 후 국내 송환(2심 징역 30년)
- 2022. 8.~9.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수사역량 향상 워크숍 개최
- 2022. 8.~9. 태국 마약청장 일행 대검찰청 초청하여 세관, 해경 등 유관기관 방문 및 마약류 밀수입 사전 차단 방안 등 공조수사 방안 협의
- 2022. 9. 한-태간 실시간 정보 교류 등 마약류 공조수사를 위해 태국 마약청 수사관 1명 대검찰청 합동근무 실시
- 2022. 9. 미국 마약단속국(DEA) 산하 LA 마약수사 TF팀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산지검 방문하여 미국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수사상황 및 향후 공조방안 등 논의
- 2022. 10.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설치 계획 수립
- 2022. 10. 태국 마약청에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 수사장비 지원하여 태국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 등 한-태 간 긴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
- 2022. 11. 마약류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하여 마약밀수 범죄의 업무 효율성 및 수사역량 강화
- 2022. 12. 미국 DEA 극동지역 본부장 일행 대검찰청 방문하여 미국발 마약류 밀수입 사건 및 검찰-DEA 간 공조 현황 등 공유하고 향후 공조 수사 방안 등 협의
- 2023. 2.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을 통해 ❶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❷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❸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 전개
- 2023. 2.~12. E-drug 시스템(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완료
- 2023. 3.~10.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태국 마약청에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파견, 실시간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마약사범 4명
검거 및 국내송환

- 2023. 4.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전국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
- 2023. 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1차 회의 개최(검찰,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교육부, 식약처), ❶ 수사·단속 분야, ❷ 치료·재활 분야, ❸ 교육·홍보 분야 등 범정부의 수사·행정역량 총결집
- 2023. 5.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급증하는 마약범죄 대응방안 논의
- 2023. 5.~7. 베트남의公安부 마약통제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장비 지원하여 베트남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 국간 공조 체계 강화
- 2023. 5.~11. 몽골 마약청에 마약류 적외선 분광기 등 마약 단속 특화 장비 지원, 몽골 마약관계관의 국내 초청 연수·현지에서의 마약퇴치 캠페인·워크숍 개최하여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등 몽골의 마약류 퇴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및 국제 공조 네트워크 강화
- 2023. 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 개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
- 2023. 6. 전국 마약전담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3. 6. 마약류범죄 엄중 처벌을 위해 검찰의 「마약류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시행
- 2023. 6.~12. 대검 - 과기정통부 업무협의를 통해, 「다중 영상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 위한 AI기술 개발」 R&D 과제 제출·최종 확정
- 2023. 8.~12.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추적 역량 강화 교육 총 3회 실시
- 2023. 10.~12.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대검 마약과에 파견받아,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동시 수사 진행 등 실시간 공조체계 공고화
- 2023. 11. APICC 정기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공조 방안 강구, 주요 마약류 유입 국가 마약 수사기관들과의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수사정보 교환, 밀수범에 대한 추적단서 제공 등 협력방안 논의
- 2023. 1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 미국, 아·태, 유럽 등 22 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 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성공적으로 개최
- 2023. 1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엄단,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MOU 협약) 강화

- 2024. 1.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검 마약과 '정보분석팀' 설치,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류 불법 유통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024. 1.~4.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대검 마약과에 파견받아,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동시 수사 진행 등 실시간 공조체계 공고화
- 2024. 1.~12.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 2024. 2.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취급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신설
- 2024. 2.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의료용 마약범죄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4. 2.~12. 검찰은 국내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전분야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
- 2024. 2.~12. 전국 청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해 추적수사 용역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상화폐 범죄 총력 대응
- 2024. 3.~5.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의료용 마약범죄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4. 3.~12. 전국 청에 마약수사용 임차차량 지원하여, 마약사범 검거 활동 등 지원
- 2024. 4.~5.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추적 역량 강화 교육 총 2회 실시
- 2024. 4.~12. 「다중 영상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 위한 AI기술 개발」 R&D 과제 1차년도 수행
- 2024. 4.~12. 국내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및 태국 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 등을 위한 공조수사를 위해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하여, 4명 검거 및 2명 국내송환
- 2024. 5.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논의
- 2024. 5.~8.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 대상으로 APICC 수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드론, 은닉형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지원하여, 말레이시아 내 마약범죄 단속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유입 마약류 사전차단 효과 가능성 증대
- 2024. 5.~11. 인도네시아 마약위원회를 대상으로 ODA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실시, 이를 통해 토지측량용 드론 등을 지원하여, 야생대마 문제가 심각한 인도네시아 마약범죄 단속에 크게 공헌,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마약범죄 심각성 인식을 제고
- 2024. 8. 대검 마약과에서 운영 중인 「마약사범 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마약사범 DB 강화, 마약사범 검색을 통한 공범 및 상선 추적 편의성·효율성 확대 추진
- 2024. 9.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일선청 마약수사 현황 및 마약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마약범죄 총력 대응방안 수립 및 전파

- 2024. 10. 제5차 APICC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ASEAN 10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마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각국의 마약범죄 수사성과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
- 2024. 10. 마약류 유통범죄 집중 수사를 위해 수원지점에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 신설
- 2024. 1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책공보국장 등 6개 국제기구, 북미, 아·태, 유럽 등 28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14개 유관기관 등 총 250명의 마약 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성공적으로 개최
- 2024. 10.~12. 전국 청에 마약수사 현장 위장복을 지원하여, 마약수사관의 마약수사 활동 지원
- 2024. 12. 마약수사 현장에서 신속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첨단 수사장비(휴대용 마약류 탐지기, 알약계수기 등) 도입
- 2024. 12. 한국-태국 마약범죄 실시간 공조수사를 위한 태국 마약청 수사관 대검 파견근무 실시하여, 원활한 태국발 마약밀수 사건 대응체제 가동
- 2024. 12. 「마약류범죄 수사 매뉴얼」 발간·배포하여 최신 마약수사 기법, 영장 양식, 주요 판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마약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19	4,857	8,204	9,584	10,62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마약사범 수사 지원 : (25 추경) 9,177 → (26 예산) 10,222백만원, 1,045백만원 증액
- ②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 (25 본예산) 138 → (26 예산) 138백만원, 전년동
- ③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운영 : (25 본예산) 269 → (26 예산) 261백만원, 8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마약류사범 수사현황

[단위(구속) : 명]

구분 \ 마약류	건	명	구속
2021	12,407	16,153	2,197
2022	14,696	18,395	2,196
2023	22,300	27,611	3,422
2024	18,422	23,022	3,058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검찰 주도로 국가 마약 단속 역량을 결집, 특히 국제마약조직 등이 개입된 중대·조직적 마약류 밀수범죄에 수사역량 집중하여 국내 유입단계에서 차단
- 검찰 마약수사관 및 마약류 유입국 수사관의 상호파견 추진하여 협력을 통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 국외 도피 마약류사범 송환, 마약류 국내유입 사전 차단 등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
-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 맞춤형 치료·상담 기회 제공하는 중독판별검사 시행하여 재범율 감소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APICC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기존에는 비공개 회원제(APICC 회원국 마약관계관)로 홈페이지를 운영 해왔으나, '25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전국민 대상 공개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APICC의 주요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85	△66	4,319	-	△12	-	4,307	4,261	98.7	98.9	-	46
2023	4,857	-	4,857	-	△9	-	4,848	4,839	99.6	99.8	-	9
2024	8,204	-	8,204	-	△497	-	7,707	7,600	92.6	98.6	-	107
2025	7,823	1,761	9,584	-	△61	-	9,523	8,878	92.6	93.2	-	6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2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46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9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97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107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공공요금 부족으로 255백만원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64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9.12)	마약수사 (1335-304)	430-01	100	마약수사 (1335-304)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마약수사 (1335-304)	210-03	31	마약수사 (1335-304)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마약수사 (1335-304)	210-14	5	마약수사 (1335-304)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마약수사 (1335-304)	310-03	120	마약수사 (1335-304)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2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310-04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 - 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5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3,328	2,760	3,702	3,946	3,856	1,096	39.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81	3,331	3,328	-	3	2,760	3,672	3,332	3,672	3,332	-	340	3,8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진술분석관 운영) 사건관계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 및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지원)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음란물사범),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사범 수사 및 피해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등

② 추진경위

○ 성폭력·성매매 범죄 일소를 위한 능동적 대처

- 전국 모든 검찰청에 여성·아동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영장청구, 형사처분, 피해아동 지원 등 전 과정 책임수사를 통한 아동학대범죄 대응 전문적 수사체계 구축
- '18. 05. 성폭력 등 무죄사례 연구 TF팀 구성·운영('18. 5. ~)
- '20. 1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적극 청구 지시
- '21. 3.~11. 일선 청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 '21. 7.~11. 성폭력·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제정 TF 운영
- '21. 11.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배포

- '22. 2. 스토킹·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22. 6.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22. 6. 2022년도 상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 7.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 '22. 9.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 '22. 9. 2022년도 하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22. 10. 중요 민생침해범죄(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엄정 대응 지시
- '22. 10.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적극 청구 지시
- '22. 11. 성매매사범 처리기준 준수 지시
- '22. 11.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2. 12.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위한 전담검사 지정
- '22. 12.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설치
- '23. 1.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23. 3.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 '23. 3. 2023년도 상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3. 5.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23. 6. 검·경 협업 DNA 분석으로 장기미제 성폭력 범죄 엄단
- '23. 9.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 '23. 11.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3. 11. 2023년도 하반기 저년차검사 여성·아동분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3. 12. 2023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14. 9.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아동학대 관련 사건처리 기준 제정·시행
- '16. 7. 선진국의 아동학대 법령체계, 선고형 등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6. 11. 아동학대사건 범죄·처분 유형별 세분화된 사건처리 기준 개정·시행
- '16. 12. 아동학대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준 마련 시행
- '20. 6.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임시조치 실효 관련 피해자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21. 12. 가정폭력,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책자 배포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사경 협력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 '22. 5.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 '22.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2. 10.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22. 10. 피해자지원 업무 담당자 법무 연수원 교육 실시
- '22. 3. ~ 11. 10개 지검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30개 지청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
- '22. 12.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 제작·배포
- '23. 7.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전파
- '23. 9.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처분시 유의사항 전파
- '23. 11. 양육비이행법위반 사건처리기준 전파
- '23. 12.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교육감 의견 청취 절차 안내
- '23. 12. 「아동학대범죄 대응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23. 12. 사회적 취약 계층 법률지원 위해 협업체계 구축(「대검찰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3. 12. 서울서부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리모델링, 30개 검찰청에 장애인 보조기구 배치 등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 정비

○ 소년사범·학교폭력 엄정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 '15. 5.~12. 최근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성과분석 및 근절방안 연구 용역 실시
- '16. 12.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수정 등 「소년사건 처리지침」 개정·시행
- '17. 4. 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강화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과정」 확대 시행' 일선 청 협조 요청
- '17. 11. 「소년범죄 대책 TF」 운영('17. 11. ~ '18. 4.)을 통해 소년 형사사법체계 및 소년사건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방안 등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1. 6. 「소년사건처리지침」 개정 및 일선 청 전파
- '21. 11. 전국 검찰청 및 소년보호기관(11개)과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실시
- '22.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 요청」 일선청 업무연락 실시
- '22. 7. 「전국 소년전담검사 워크숍」 개최하여 우수 사례공유, 제도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검사 전문화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22. 8.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 초빙강연회를 통해 소년업무 전문화 강화 및 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 '22. 9. 전국 지검 소년전담검사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 및 소년위탁보호기관 방문 프로그램 실시
- '22. 11. 「보호관찰소 등 결정 전 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 처리 지침(대검 예규)」 개정·시행
- '22. 연중 소년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적극 발굴·전파 지속 전개
- '23. 2. 상반기 전담검사(소년 분야) 지정·운영 현황 점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49	4,290	3,481	3,702	3,85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진술분석관 운영 : (2025 본예산) 1,153 → (2026 예산) 1,347백만원, 194백만원 증액
- 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지원 : (2025 추경) 2,549 → (2026 예산) 2,509백만원, 40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최근 5년간 성범죄 등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성폭력사범	38,380	1,548	37,590	1,735	47,143	1,873	43,796	2,017	37,091	1,748
보건위해사범	34,658	223	48,773	94	70,354	90	31,544	112	58,304	120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청소년 폭력, 부정식품사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 사회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피해자 재화를 위한 심리·예술 치료,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심리·예술치료사 확보 및 전문가 명단을 현행화하여 본 제도를 전국 청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단계적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관련, 매월 실적 파악 및 집행 독려, 시·도 교육청 대상 제도 홍보, 교사 자문료 증액, 소년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시행, '23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대폭 개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49	-	3,849	-	△20	-	3,829	3,775	98.1	98.6	-	54
2023	4,290	-	4,290	-	△44	-	4,246	4,244	98.9	100.0	-	1
2024	3,481	-	3,481	-	△150	-	3,331	3,328	95.6	99.9	-	3
2025	2,760	942	3,702	-	△30	-	3,672	3,332	90.0	90.7	-	34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불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0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54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4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 전용·불용 내역 및 사유 : 소액의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50백만원 전용 감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30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34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6)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1335-305)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6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6,193	4,858	6,124	6,203	5,998	1,140	23.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52	6,201	6,193	-	7	4,858	6,033	5,738	6,033	5,738	-	295	5,9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지원) 공기업 등 공공시스템 전반의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권력형 비리 및 공무원의 공적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엄단 등 공공부문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 지원
-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증거자료 수집, 증거분석을 위한 자금추적 및 회계 분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등

② 추진경위

-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상시적·전국적 단속 전개하고, 범 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여 부패행위의 동기를 근원적 으로 차단
- 부정부패수사 전문인력 양성, 회계분석팀, 자금추적팀 등을 일선청 수사지원 및 교 육에 적극 활용하여 수사역량 강화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 건의하여 부패 유발 원인 차단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을 통한 합동 단속 실시 등 부패사범에 적극 대응
- 금융증권·지식재산권 등 중점검찰청 및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구조적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01	6,307	6,252	6,124	5,99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지원 : ('25 추정) 5,284 → ('26 예산) 5,158백만원, 126백만원 감액
- ②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 ('25 본예산) 840 → ('26 예산) 84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입찰담합·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국고를 잠먹는 재정범죄, 지방토착세력과 유착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사발주,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이익 수수행위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해

수사하여 2024. 1. ~ 12.까지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사범 15명 단속,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비리 사범 177명 단속(10명 구속),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 비리 사범 75명 단속(11명 구속)하는 등 구조적·고질적 민관유착 비리 척결

구분	불공정거래				국가재정비리				지역토착비리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단속(명)	17	26	61	15	60	80	66	177	123	51	82	75
구속(명)	-	2	3	-	6	15	11	10	39	13	26	11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부정부패 단속시스템 강화
-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 보조금, 자료상, 역외탈세 등 국가재정 누수 범죄 수사 지속 추진
- 민관유착 비리 지속 단속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업기밀유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죄율이 타 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전담검사·수사관 확대지정, 유관기관 협력강화, 전문가(특허심사관) 추가 파견배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술유출범죄 전문가를 양성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통해 무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220	△119	6,101	-	△56	-	6,045	6,012	98.5	99.5	-	33
2023	6,307	-	6,307	-	△42	-	6,265	6,263	99.3	100.0	-	2
2024	6,252	-	6,252	-	△51	-	6,201	6,193	99.1	99.9	-	7
2025	4,858	1,266	6,124		△91		6,033	5,738	93.7	95.1	-	29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6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33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2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9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29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10-07	2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21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1335-306)	310-04	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 (1337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판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사업시행주체	검찰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공판활동지원	2,034	1,265	2,037	2,169	1,992	727	5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37	2,035	2,034	-	1	1,265	2,037	1,592	2,037	1,592	-	445	1,9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유지 지원)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2021. 9.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 2022.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소유지 활동의 중요성 증대
- 2022. 8.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75	2,561	2,037	1,265	1,99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소유지 지원 : (2025 추경) 1,892 → (2026 예산) 1,878백만원, 14백만원 감액
 ②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 (2025 본예산) 145 → (2026 예산) 114백만원, 31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2021	2022	2023	2024
구공판 건수	170,433	169,047	180,602	179,01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사건 공판 수행 능력 강화로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대응 철저
-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법무부는 향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증거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공판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공소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일반 수용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였고, '21. 예산액 8,900만원 중 81,885,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0%로서 전년 집행율 56.1% 대비 35.9%p 증가
 - 세부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공판검사 역량 강화 집합교육, 회의 개최 및 공소유지 전문지원 TF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그 외에도 각 청 수요에 따라, 공판수행매뉴얼 등 책자 제작, 제도개선 등 공판수행 검사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75	-	2,165	-	-	2,165	2,161	99.8	99.8	-	4	4
2023	2,561	-	2,561	-	△10	-	2,551	2,551	99.6	100.0	-	-
2024	2,037	-	2,037	-	△2	-	2,035	2,034	99.9	99.9	-	1
2025	1,265	772	2,037	-	-	-	2,037	1,592	78.2	78.2	-	4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내역 및 사유 :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백만원 전용 감
2025	- 집행잔액 44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사업시행주체	검찰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7,221	6,648	7,262	6,796	6,620	△ 28	△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 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62	7,252	7,221	-	31	6,648	7,190	7,079	7,190	7,079	-	111	6,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집행 일반) 기록물관리시스템 RFID 태그 구입, 형 집행요원 활동비 등 형 집행부서 일반 활동 지원
- (자유형 집행) 재판에 의해 징역형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추적, 검거하여 형을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구속(형)집행정지자 관찰여비, 보석 석방자 시찰여비 지원
- (재산형 집행) 재판에 의해 벌금, 추징 및 몰수금, 과태료 등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벌금 등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대상자를 추적 및 검거하여 벌금 등을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등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범죄수익 추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적, 환수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반 운영비, 수사여비, 유관기관 회의, 활동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② 추진경위

- 2018. 1.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2018. 7.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제도 시행
- 2018. 2.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자의 재심사건 관련 집행 방안 송부
- 2018. 4. 재산형집행 검찰수사관 위해 방지 방안 마련
- 2018. 4. 유효기간 만료된 형집행장 갱신 및 지명수배입력 철저 지시
- 2018. 5. 환자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시행
- 2018. 6. 맞춤형 문자 전송을 활용한 재산형집행 우수사례 전파
- 2018. 7. 벌금형 집행유예 조정, 관리 지시
- 2018. 8. ~ 9. 공판송무부장 주재 수도권 지검 집행과 직원 간담회 개최
- 2018. 11. 정식재판청권회복 인용결정시 지연석방 방지 방안 송부
- 2019. 1. 재산형집행 업무편람(증보 9판) 및 전자북(e-book) 배부 및 활용 지시
- 2019. 3. 노역장유치집행 종결처리 지연 개선 방안 송부
- 2019. 7. 벌금수배자 신병인수 관련 유의사항 재시달
- 2019. 10. 형집행장 발부 및 관리 철저 재지시
- 2019. 10. 벌과금 수탁조정 시기 등 지시사항 송부
- 2020. 1.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배정 및 지급
- 2020. 2. 재판형집행 평가방법 개선
- 2020. 2. 재산형집행시스템 유치집행 종결처리 누락 점검 지시
- 2020. 2.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벌금집행 탄력적 운용 지침」 시달
- 2020. 3. 재산형집행 질의응답·우수집행 사례집 배부 및 활용 지시
- 2020. 4.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적극 청구 지시
- 2020. 7. 지명수배 해제누락 일제점검 결과 유의사항 시달
- 2020.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출국금지 업무처리 지시
- 2020. 10. 주요 선진국 재산형집행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책자 배부
- 2020. 11. 형집행장 및 주요 죄명 16개 외국어 번역문 배부
- 2020. 1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재산형집행 업무 지시사항 전파
- 2020. 12. 벌금미납 지명수배 입력 연기 지시
- 2020. 12. 코로나19 관련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해제 등 긴급 지시
- 2021. 1.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시행
- 2021.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벌금 분납신청 공동이용정보 적극 활용지시
- 2021.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벌금 사회봉사신청 공동이용정보 적극 활용지시
- 2021. 4. 노역수형 무능력 벌금미납자 분납·납부연기 절차 개선사항 알림
- 2021. 5. 고액벌과금 등 집행 촉탁 관련 지시
- 2021. 7. 전자예금압류 긴급해제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 2021. 8.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시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원칙 변경 통보
- 2021. 8.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비대면 업무처리 방안 활용 안내
- 2021. 8. 벌금 사회봉사 및 분납 등 홍보 포스터 배부 및 조치 안내
- 2021. 9. 벌과금 납부고지서 안내문 개선 알림
- 2021. 10.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공제 방식 변경 지시
- 2021. 8. 실행선고 피고인 국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정지) 검토 지시
- 2022. 6. 각급 검찰청 중형 선고 등 ‘주요 사건’ 중심으로 자유형 미집행자 집중 검거기간 지정 및 검거활동 실시
- 2022. 6. 재산형 집행불능 업무처리 관리 철저
- 2022. 7. 추정보전된 제3자 재산 소송 관련 단기제척기간 유의사항 시달
- 2022. 8. 빈곤·취약계층 벌과금 집행방안 개선에 따른 업무 요청사항 전파
- 2022. 12.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불출석 피고인 검거 활성화 방안’ 시행
- 2023. 2. 고액벌과금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및 지역별 거점 검찰청인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집행과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
- 2023. 3. 자유형 집행 담당 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지원 예산 적극 사용 독려
- 2023. 3. ‘인권친화적 재산형집행절차 개선안’ 시행,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 도입
- 2023. 3.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과료 지명수배 입력 지시
- 2023. 3. 벌금미납자 검거 시 유의사항 전파
- 2023. 3. ~ 12. 대검 통합사무감사 시 집행과 감사관 주재 일선청 집행과 직원 간담회 개최
- 2023. 6. 벌과금 환급채권 강제집행 관련 유의사항 전달
- 2023. 6. 「자유형집행 업무 편람」 개정3판 배포
- 2023. 7. 미납자 요청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 가능 여부 전파
- 2023. 7. 취소·실효된 벌금형 집행유예 본조정 결과 점검 지시
- 2023. 8. 유치집행 및 사회봉사집행 종결처리 누락 점검 지시
- 2023. 8.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에 따른 조치사항 전파(형집행장이 발부된 모든 벌금, 과료 사건 지명수배 입력, 매월 3회 이상 검거활동 위한 현장출장 이행)
- 2023. 9. 「가상자산 강제집행 매뉴얼」 제작·일선청 배포, 법무연수원 재산형집행 실무 교육과정에 ‘가상자산 강제집행 실무’ 과목 신설

<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운영 >

- 2018. 2.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 2018. 5. 유럽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연례총회(CARIN) 참석
- 2018. 6. 범죄수익 환수 전담 수사관 교육
- 2018. 6.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 2018. 8.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회의 참석

- 2018.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8. 10. ~ 2018. 12.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 검사 T/F 회의 개최
- 2018. 10. ~ 2018. 12.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 수사관 T/F 회의 개최
- 2018. 11. 재산 국외도피 법령 개정 T/F 회의 개최
- 2018. 12. OECD 뇌물방지협약회의 참석
- 2018. 12.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홍보 웹툰 제작
- 2018. 12. (주)네이버와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공익 배너 홍보 후원 협약 체결
- 2019. 2. 문체부 국가전광판(약 117기)를 통한 '범죄수익신고 포상금' 홍보 실시
- 2019. 3. 일선청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39명) 및 수사관(27명) 교육 실시
- 2019.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추가 개정안 시행
- 2019. 6. 범죄수익환수 업무 유관기관, 특사경 대상 환수 교육 실시
- 2019. 8.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 시행
- 2019. 11. 미국 법무부 범죄수익환수부서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 2019. 11. 제6회 ARIN-AP 범죄수익환수 연수 참석
- 2020. 1. 제31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최종 상호평가 총회 참석
- 2020. 7.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2020. 9. 사경 추정보전 신청권 신설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 2020. 11.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 2020. 12.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차 고도화 사업 완료
- 2021. 4. LH 부동산 투기사건 일선청 범죄수익환수 지원
- 2021. 7. 수원·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확대 운영
- 2021. 8.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21. 12.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정보자원 설치 완료
- 2022. 2. 서울남부·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 확대 운영
- 2022. 4.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및 권역별 사용자 교육 실시
- 2022. 5.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시행
- 2022. 8. 대전·광주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 확대 운영
- 2022. 9. 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건 예시기록 발간·배포
- 2022. 9.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찾아가는 교육 실시(검사·수사관 1,770명 대상)
- 2022. 9.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22. 10. 범죄수익환수 실적평가 개선 방안 시행
- 2022. 10.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총회 참석
- 2022. 10.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제2주기 이행점검 수검국 현장실사 참석
- 2022. 1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 제출
- 2023. 1.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화상 교육
- 2023. 3. 범죄수익환수 업무 개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검사·검찰수사관 대상) 제작

- 2023. 3.~4.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 2023. 4.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등 대검찰청 방문 및 검찰총장 예방
- 2023. 4.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개통
- 2023. 4.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 실시
- 2023. 4. 범죄수익환수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배포
- 2023. 5. 제7기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검찰수사관 집합교육) 실시
- 2023. 6.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 지도방문 실시(서울중앙지검 등 5개청 환부대상 사건 처리 실적 점검 등)
- 2023. 6.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ISF) 실무 동영상 강의 제작
- 2023. 6.~11. 독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및 실무 사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정책연구 수행
- 2023. 7.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고검권역별 집합교육
- 2023. 7. 서울중앙지검 등 10개청 대상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 방안 시범 시행
- 2023. 9. 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 2023. 9. 범죄수익환수 우수사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검찰수사관 대상) 제작
- 2023. 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합동회의(프랑스 리옹) 참석
- 2023. 10.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 실시
- 2023. 10. 서울서부지검 등 2개청 대상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 방안 확대 시행
- 2023. 11. 범죄수익환수 TF 회의(춘천지검 및 경기 소재 지청 등 9개청 환수전담검사 대상)
- 2023. 11.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 지도방문 실시(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환부대상사건 절차 개시 지도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2023. 12. 제8기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검찰수사관 집합교육) 실시
- 2024. 1. 가상자산 범죄수익환수 실무교육(수도권 소재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유관업무 담당직원 대상, 가상자산 몰수·추정보전 절차 및 집행 실무사례 교육)
- 2024.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260	7,300	7,262	6,648	6,62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형집행일반 : (2025 추경) 1,042 → (2026 예산) 961백만원, 81백만원 감액
- ② 자유형집행 : (2025 추경) 338 → (2026 예산) 330백만원, 8백만원 감액
- ③ 재산형집행 : (2025 본예산) 5,033 → (2026 예산) 4,370백만원, 663백만원 감액
- ④ 범죄수익 추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 : (2025 추경) 850 → (2026 예산) 960백만원, 110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범죄수익환수실적 2,542건 5,491억원
2018	범죄수익환수실적 3,247건 2조 4,390억원
2019	범죄수익환수실적 3,833건 1조 1,357억원
2020	범죄수익환수실적 3,481건 2조 9,438억원
2021	범죄수익환수실적 3,445건 5조 9,748억원
2022	범죄수익환수실적 4,534건 3조 4,484억원
2023	범죄수익환수실적 6,123건 7조 3,639억원
2024	범죄수익환수실적 6,983건 9조 370억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산형 집행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집행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실효성 있는 집행기법 및 우수집행 사례 등을 다수 수록

한 재산형집행 업무편람 증보판 발간 등을 통한 벌과금 집행 실무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 벌과금 미납자 예금 채권에 대한 전자압류 강화, 강제 집행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강제집행 강화, e-pros 재산형집행공유망 활성화 추진 등 벌과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화 및 집행기법 공유 활성화로 벌과금 집행실적 제고
- 벌과금미납자 검거 호송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집행 환경 개선 및 적극적인 집행 활동을 통한 재산형 집행실적 제고
-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비대면 처리방안, 벌금 사회봉사 신청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상향, 사회봉사 및 분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포스터 제작, 벌과금 안내문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노역유치 집행을 최소화하여 가족관계,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회복귀 촉진 기대
- 시효완성 전 현장출장 등 적극적인 집행활동을 전개하여 형식적인 시효연장으로 인한 국가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 강화
- 주취자 또는 건강이상자에 대하여 직권 분납 허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검거된 미납자의 공제처리 방식을 인권친화적인 방향(검거당일 환형유치액 공제)으로 변경하여 벌금미납자의 인권보호에 기여
- 검거수사관 체력단련지원을 통해 검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형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엄정한 국가 형벌권 실현
-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지침 제·개정 및 시행’을 통해 특정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범죄피해자 구제 기대
- 일선청 범죄수익환수반을 협업형 범죄수익환수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범죄수익의 국고귀속 증대 및 범죄피해재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환부 기대
-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찾아가는 교육(검찰 전 구성원 교육)’, ‘범죄수익환수 타겟형 교육(검사 집합교육)’,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수사관 집합교육)’, ‘범죄수익환수 사이버교육(검사·수사관 교육)’ 등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전국 검찰청 구성원들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관련 지식 고양
-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관련자료 활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260	△410	7,850	185	△117	-	7,919	7,731	98.5	97.6	111	77
2023	7,300	-	7,300	111	-	-	7,380	7,379	101.1	100.0	-	-
2024	7,262	-	7,262	-	△10	-	7,252	7,221	99.4	99.6	-	31
2025	6,648	614	7,262	-	△72	-	7,190	7,079	97.5	98.5	-	1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포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88백만원 전용 감 - 코로나19관련 국외업무여비 37백만원 등 77백만원 불용, 조달계약 업체 단일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 사업 착수 시기 지연, 신규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기간 확보 필요하여 일반연구비 111백만원 이월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7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72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보상금 지급의원수 (1337-301)	310-03	4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보상금 지급의원수 (1337-301)	210-01	1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보상금 지급의원수 (1337-301)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형사보상 (1337 - 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2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보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보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형사보상	77,219	42,000	-	44,000	44,000	2,000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00	77,225	77,219	-	6	42,000	127,454	127,454	127,454	127,454	-	-	4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사보상금 등 지급)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1958년 형사보상법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 개시
- 2008년 무죄비용 보상제도 도입
- 무죄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적정 지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 유지 및 증대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 등 보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00	40,000	40,000	42,000	44,0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형사보상금 등 지급 : (2025 본예산) 42,000백만원 → (2026 예산) 44,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보상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시 실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형사보상 기록 송부 지연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형사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4년 400억원 → '25년 420억원
 - 향후에도 형사보상금 부족분을 타 세부사업 예산에서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13. 7.경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죄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추진 권고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는 일선청에 「형사보상 신청기록 신속 송부 이행 여부 점검지시」 및 「'형사보상신청'기록 신속 송부 지시」 공문을 시행하여 검찰에서의 신속한 기록송부체계를 확립함
 - 또한, 형사보상 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형사보상 신청기록에 대한 법원 송부 지연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 향후에도 형사보상 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000	-	40,000	-	2,323	-	42,323	42,323	105.8	100.0	-	-
2023	40,000	-	40,000	-	16,852	-	56,852	56,851	142.1	100.0	-	-
2024	40,000	-	40,000	-	37,225	-	77,225	77,219	193.0	100.0	-	6
2025	42,000	-	42,000	-	42,554	42,900	127,454	127,454	303.5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269백만원 전용 증, 54백만원 이용 증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202백만원 전용 증, 14,650백만원 이용 증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882백만원 전용 증, 31,343백만원 이용 증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2,554백만원 전용 증, 42,900백만원 예비비 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02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5.28.)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6.18.)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0,0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9.17.)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9.17.)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10-01	2,9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내역 변경 (2025.12.23.)	형집행맞춤서비스지원 (1337-301)	310-03	4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6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검찰국의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1	4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검찰국의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7	2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7	3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9	9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인민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인민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16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110-03	1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310-04	4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2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310-04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사회악질범죄수사 (1335-305)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사회악질범죄수사 (1335-305)	21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사회악질범죄수사 (1335-305)	310-04	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210-01	1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사법 정비 (1338-300)	210-01	9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사법 정비 (1338-300)	210-07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전용 (2025.12.23.)	형사법 정비 (1338-300)	26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13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5	9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국기본경비(총액) (7011-204)	110-04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본경비(총액) (7018-202)	110-04	6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본경비(총액) (7018-202)	210-06	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 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본경비(총액) (7018-202)	210-12	35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16	4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50-02	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7	2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8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12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430-01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형사법정비 (1338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검찰활동	형사사법선진화	형사법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법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검찰국
		검찰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형사법정비	337	349	349	349	34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9	339	337	-	2	349	227	218	227	218	-	9	3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사법 정비 연구 지원) 형벌 종류 간소화 등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실체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해외 사법자료 번역 등 각종 연구 지원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다양한 연구자료 활용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각종 회의, 세미나 등 연구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형사실체법 정비과제 법무부 위임
- 2006. 8. 30. 대통령 지시시행(50개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비전 2030추진지시)
- 2007. 법무부 비전 2030 중심과제

② 추진경위

- 2016. 12.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2017. 8.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2018. 5.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 제·개정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2020. 5. 낙태죄 개정 형법 개정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1. 7. 형사법(고유법 분야)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1. 7. 형사법(성범죄 분야)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가정폭력 분야)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디지털 압수수색 절차 분야)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간이공판절차 분야)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2022. 1.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 1. 디지털 압수수색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법 자문회의의 개최

- 2022. 2. 구속·체포영장 집행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대상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등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2022. 6. 위헌결정된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아동 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22. 1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22. 10.), 공포
- 2022. 1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및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 제출
- 2023. 6.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장소를 기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2023. 6.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정·시행
- 2023. 7.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확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시행(일부 조항은 '24. 1. 시행)
- 2023. 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행
- 2023. 8.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
- 2023. 10.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신문장소 특례 규정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
- 2023. 10.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23. 8. ~ 9.) 및 국회 제출
- 2023. 11.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 각종 수사기한 정비,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경 협력 활성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2023. 12.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24. 1.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 2024. 1.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24. 2.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2024. 7.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2024. 7.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24. 10.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저장·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
- 2024.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의 전자 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 2024. 10.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행(‘25. 1.)
- 2024. 11.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추진, 법사위 1소위 통과
- 2024. 11.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시행 예정(‘25. 6.)
- 2024년, 형사 관계 법령 제·개정 및 국정과제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1	소년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합리화 방안 연구
2	형법상 재산죄의 친족상도례 조항 개선 방안 연구
3	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범 억제 방안 연구
4	대규모 사기범죄 처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5	수사기관별 수사절차 및 권한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6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노동분쟁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수사사법절차 개선방안

- 2024. 7.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선방안 논의(총 11회)

회의일시	회의명
2024. 7. 22.	형사사법특위 1차 전체회의
2024. 7. 22.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1차 회의
2024. 8. 12.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2차 회의

2024. 8. 21.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1차 회의
2024. 9. 6.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3차 회의
2024. 9. 20.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2차 회의
2024. 10. 16.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4차 회의
2024. 10. 18.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3차 회의
2024. 10. 31.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화상 회의
2024. 11. 13.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5차 회의
2024. 11. 22.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4차 회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2	350	349	349	34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형사법정비 : (2025 본예산) 349백만원 → (2026 예산) 349백만원, 전년동
- ① 형사법 정비 연구 지원 : (2025 본예산) 296백만원 → (2026 예산) 296백만원, 전년동
- ②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2025 본예산) 53백만원 → (2026 예산) 53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실적								
	달성도	122.5	115.4	-	-	-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실적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및 회의 총 6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2. 2.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본 교부를 의무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2022. 1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22. 1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및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2022. 2.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2022.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명을 포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체에 해양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3. 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행 · 2023. 10.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2023. 10.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23. 8. ~ 9.) 및 국회 제출
2024	- 형사사법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총 11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4. 1.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 2024. 1.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25년)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흡기소지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의원입법, '23. 8.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2024. 7.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2024. 7.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24. 10.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저장·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 · 2024. 10.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행('25. 1.) · 2024. 11.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추진, 법사위 1소위 통과 · 2024. 11.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중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시행 예정('25. 6.)
2025	- 형사실체법 정비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지속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실체법 정비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감액	추경(A)									
2022	292	-	292	-	-	-	292	275	94.2	94.2	-	17
2023	350	-	350	-	△108	-	242	237	67.8	98.1	-	5
2024	349	-	349	-	△10	-	339	337	96.6	99.4	-	2
2025	349	-	349	-	△122	-	227	218	62.5	96.0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14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8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22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1	9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7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6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사 업 명						
교도소행정지원 (1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도소행정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교정본부
		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도소행정지원	48,089	51,516	-	53,152	52,918	1,402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515	48,817	48,090	-	727	51,517	51,416	51,242	51,416	51,242	-	174	52,918
· 교정기관 행정지원	8,296	8,013	7,301	-	712	9,620	9,621	9,562	9,621	9,562	-	60	8,076
· 공무원 처우개선	27,384	27,968	27,953	-	15	29,533	29,433	29,319	29,433	29,319	-	114	32,183
· 민간이전 사업	12,835	12,835	12,835	-	-	12,363	12,363	12,363	12,363	12,363	-	-	12,659
○ 비목별 분류(합계)	48,515	48,817	48,080	-	727	51,517	51,416	51,242	51,416	51,242	-	174	52,918
· 상용임금(110-03)	23,664	23,258	23,258	-	-	24,409	25,009	24,992	25,009	24,992	-	17	26,570
· 일반수용비(210-01)	2,913	2,619	2,525	-	94	3,598	3,614	3,609	3,614	3,609	-	5	1,43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69	469	-	-	469	458	451	458	451	-	7	469
· 피복비(210-03)	48	45	45	-	-	48	48	48	48	48	-	0	48
· 임차료(210-07)	531	545	545	-	-	531	525	525	525	525	-	0	53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79
· 복리후생비(210-12)	352	344	334	-	10	352	352	339	352	339	-	13	352
· 일반용역비(210-14)	-	-	-	-	-	298	298	297	298	297	-	1	2,540
· 국내여비(220-01)	406	406	399	-	7	447	447	446	447	446	-	1	447
· 국외여비(220-02)	100	100	100	-	-	100	100	99	100	99	-	1	100
·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496	496	496	-	0	496
· 정책연구비(260-02)	-	-	-	-	-	300	300	290	300	290	-	10	100
· 포상금(310-03)	-	-	-	-	-	-	-	-	-	-	-	-	695
· 민간위탁사업(320-02)	2,302	2,302	2,302	-	-	2,345	2,345	2,345	2,345	2,345	-	0	2,419
· 법정민간대행(320-08)	10,533	10,533	10,533	-	-	10,018	10,018	10,018	10,018	10,018	-	0	10,240
· 고용부담금(320-09)	3,368	4,366	4,362	-	5	4,772	4,072	3,988	4,072	3,988	-	84	5,260
· 공사비(420-03)	1,516	1,516	1,014	-	502	1,516	1,516	1,485	1,516	1,485	-	31	572
·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709	-	109	1,818	1,818	1,814	1,818	1,814	-	4	5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515	48,816	48,089	-	727	51,517	51,416	51,242	51,416	51,242	-	174	52,918
· 교정기관 행정지원	8,296	8,013	7,301	-	712	9,620	9,621	9,562	9,621	9,562	-	60	8,076
-일반수용비(210-01)	2,913	2,619	2,525	-	94	3,598	3,614	3,609	3,614	3,609	-	5	1,43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69	469	-	-	469	458	451	458	451	-	7	469
-피복비(210-03)	48	45	45	-	-	48	48	48	48	48	-	0	48
-임차료(210-07)	531	545	545	-	-	531	525	525	525	525	-	0	531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79
-일반용역비(210-14)	-	-	-	-	-	298	298	297	298	297	-	1	2,540
-국내여비(220-01)	405	405	398	-	7	447	447	446	447	446	-	1	447
-국외여비(220-02)	100	100	100	-	-	100	100	99	100	99	-	1	100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496	496	496	-	-	496
-정책연구비(260-02)	-	-	-	-	-	300	300	290	300	290	-	10	100
-포상금(310-03)	-	-	-	-	-	-	-	-	-	-	-	-	695
-공사비(420-03)	1,516	1,516	1,014	-	502	1,516	1,516	1,485	1,516	1485	-	31	572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709	-	109	1,818	1,818	1,814	1,818	1,814	-	4	566
· 공무원 처우개선	27,384	27,968	27,953	-	15	29,533	29,432	29,321	29,432	29,321	-	114	32,183
-상용임금(110-03)	23,664	23,258	23,258	-	-	24,409	25,009	24,992	25,009	24,992	-	17	26,570
-복리후생비(210-12)	352	344	334	-	10	352	352	339	352	339	-	13	352
-고용부담금(320-09)	3,368	4,366	4,361	-	5	4,772	4,072	3,988	4,072	3,988	-	84	5,261
· 민간이전 사업	12,835	12,835	12,835	-	-	12,363	12,363	12,363	12,363	12,363	-	-	12,659
-민간위탁사업(320-02)	2,302	2,302	2,302	-	-	2,345	2,345	2,345	2,345	2,345	-	-	2,419
-법정민간대행(320-08)	10,533	10,533	10,533	-	-	10,018	10,018	10,018	10,018	10,018	-	-	10,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운영)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복지비, 고용부담금 등 지원
- (직원근무 지원) 야근자 건강검진, 행사시설 임차, 여비(국내·외), 사업추진비 등 지원
- (민간시설 운영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 지원) 교정기관 신축이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156	46,644	48,515	51,516	52,918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어린이집)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공무원, 수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영교도소	보조	재단법인 아가페	10,240	9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행정지원

: ('25) 9,620백만원 → ('26) 8,076백만원, 1,544백만원 감액

② 공무원 처우개선

: ('25) 29,533백만원 → ('26) 32,183백만원, 2,650백만원 증액

③ 민간 이전 사업

: ('25) 12,363백만원 → ('26) 12,659백만원, 296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건 수 및 수용인원의 증 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 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범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			
	달성도	115.3	114.6	113.3	-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수)	목표	4.85	4.85	지표변 경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 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3	4.84	-	-	-			
	달성도	96.6	99.8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9회차 총 1,028명 실시, 직원정신건강 외부전문 상담 902명 총 4,096회 실시
2023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8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 교정공무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총 5,877명 실시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 결과 총 7,050명 실시
2024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 결과 총 8,398명 실시
2025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일환으로 아태본부장 회의 개최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 결과 총 7,722명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10. 12. 개정한 민영교도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교정교화 효과 제고 및 민간
경영기법·교화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교정처우의 선진화 도모
-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
양성평등 정책 부응
- '18년부터 교정본부(심리치료과)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및 수용자 자살
또는 자살기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겪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전문상담 등 실시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유지 및 업무역량 강화

- 교정관련 국제회의,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515	51,516	51,516	51,516	51,516	
2025~2029		51,516	52,223	52,223	52,223	52,2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2년도 법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공무원의 국·내외 직무교육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근무역량 향상 도모
- 교정기관 직원식당 조리원 등 상용직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 등 교정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
-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도입 및 수용자 재범방지 효과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156	△58	42,098	2,720	2,650	-	44,818	44,041	104.6	98.3		777
2023	46,644	-	46,644		854	-	47,498	47,406	101.6	99.8		92
2024	48,515	-	48,515		301	-	48,816	48,090	99.1	98.5		727
2025	51,516	-	51,516	-	△100	-	51,416	51,416	99.5	99.7	-	17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직장어린이집 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93	2,193	2,192	2,193	-	2,193	2,192	-	1	99.9
2023	2,303	2,303	2,303	2,303	-	2,303	2,303	-	-	100.0
2024	2,302	2,302	2,302	2,302	-	2,302	2,302			100.0
2025	2,345	2,345	2,345	2,345	-	2,345	2,345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방역비용 일반수용비 부족, 코로나19 간호인력채용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650백만원 인건비에서 이용, 불용액 777백만원은 집행잔액 - 제2차 추정 사업추진비 58백만원 감
2023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400백만원 전용, 외부 의료시설 입원 전 수용자 및 계호직원에 대한 사전 PCR검사 요구에 따른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증, 불용액 92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998백만원 전용 증, 교정공무원 호송여비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5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연말 집행예정액 등을 감안 700백만원 이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코로나19 방역비용 일반수용비 부족, 코로나19 간호인력채용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650백만원 인건비에서 이용, 불용액 777백만원은 집행잔액 - 제2차 추정 사업추진비 58백만원 감
2023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400백만원 전용, 외부 의료시설 입원 전 수용자 및 계호직원에 대한 사전 PCR검사 요구에 따른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증, 불용액 92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998백만원 전용 증, 교정공무원 호송여비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5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연말 집행예정액 등을 감안 700백만원 이용 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93,098	85,596	-	98,328	91,557	5,961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19	80,096	77,444	-	2,897	91,557
· 교정시설 유지관리	12,487	12,487	12,480	-	7	14,330	14,330	14,329	14,330	14,329	-	2	14,330
·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67,658	56,458	6,429	4,772	45,730	50158	49,292	43,730	43,108	-	867	54,290
· 교정장비 현대화	24,258	24,258	24,160	91	7	25,536	22,128	20,100	22,036	20,008	-	2,028	22,937
○ 비목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19	80,096	77,444	-	2,897	91,557
· 일반수용비(210-01)	1,166	1,171	1,171	-	-	1,327	1,327	1,326	1,327	1,326	-	1	2,11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21	11,316	11,309	-	7	13,011	13,011	13,010	13,011	13,010	-	1	13,522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26	126	41	126	41	-	85	61
· 실시설계비 (420-02)	3,150	3,715	2,170		1,545	3,150	1,150	1,077	1,150	1,077	-	73	1,866
· 공사비(420-03)	60,156	63,024	53,826	6,277	2,922	41,611	48,011	47,750	41,733	41,716	-	262	50,737
· 감리비(420-04)	633	769	360	146	263	680	704	353	558	208	-	350	608
· 시설부대비(420-05)	150	150	102	5	43	163	167	70	163	66	-	97	171
· 자산취득비(430-01)	24,258	24,258	24,160	92	6	25,528	22,120	20,092	22,028	20,000	-	2,028	22,4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19	80,096	77,444	-	2,897	91,557
· 교정시설 유지관리	12,487	12,487	12,480	-	7	14,330	14,330	14,329	14,330	14,329	-	2	14,330
-일반수용비(210-01)	1,166	1,171	1,171	-	-	1,319	1,319	1,318	1,319	1,318	-	1	1,31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21	11,316	11,309	-	7	13,011	13,011	13,011	13,011	13,011	-	1	13,011
·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67,658	56,457	6,429	4,772	45,730	50,158	49,292	43,730	43,108	-	867	54,29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336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511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26	126	41	126	41	-	86	61
-실시설계비 (420-02)	3,150	3,714	2,169		1,545	3,150	1,150	1,077	1,150	1,077	-	73	1,866
-공사비(420-03)	60,156	63,025	53,826	6,278	2,921	41,611	48,011	47,750	41,733	41,716	-	126	50,737
-감리비(420-04)	633	769	360	146	263	680	703	354	558	208	-	349	608
-시설부대비(420-05)	150	150	102	5	43	163	168	70	163	66	-	97	171
· 교정장비 현대화	24,258	24,258	24,160	91	7	25,536	22,128	20,100	22,036	20,008	-	2,028	22,937
-일반수용비(210-01)	-	-	-	-	-	8	8	8	8	8	-	-	464
-자산취득비(430-01))	24,258	24,258	24,160	91	7	25,528	22,120	20,092	22,028	20,000	-	2,028	22,4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정시설 유지 관리) 교정시설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환경설비 유지관리, 수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교정시설 개선 공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 관련 공사비 지원
- (교정시설 장비 개선) 교정시설 호송차량 구입, 방역장비 등 장비 개선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 ② 추진경위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정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제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108	107,682	100,834	85,596	91,557

- 기타: 특이사항 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유지 관리 : ('25) 14,330백만원 → ('26) 14,330백만원, 전년동
②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 ('25) 45,730백만원 → ('26) 54,290백만원, 8,560백만원 증액
③ 각종 장비·차량 교체 경비 지원 : ('25) 25,536백만원 → ('26) 22,937백만원, 2,599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 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일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목표	105.8	104.3	지표 변경	-		- 지표변경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 / 수용정원 * 100	자체 통계 (법무부 교정통계 시스템)
	실적	104.3	113.3	-	-				
	달성도	101.4	91.4	-	-				
수용환경 개선공사 만족도(점)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수용환경 개선 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개선공사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수용자 100명당 연간 청원 건수(건)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연간 청원건수)÷(연평균1일 수용인원)}×100명	교정통계 보고서 (매년, 교정본부)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수용거실 바닥 전기판넬 설치 공사 ▪ 여성수용동 수용거실 증축 ▪ 수용동 화장실 방수 및 타일공사 ▪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2023	▪ 전국 교정기관 실외 근무자실 설치 ▪ 여성수용동 수용공간 확충 ▪ 교정시설 내진 보강 설계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
2024	▪ 수용동 수용공간 확충 ▪ 교정시설 내진 보강 공사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
2025	▪ 수용동 수용공간 확충 ▪ 교정시설 내진 보강 공사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화복 등 각종 소방장비를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 마약 반입 차단 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완전 차단
-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으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안전 제고
- 전국 교정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향상 도모
- 노후화된 의료·취사·세탁 등 수용관리 필수 장비 교체를 통한 수용자 인권 및 처우 향상
-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개소 보강
- 석면자재 철거를 통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안전 제고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확대로 수용자 외부교통권 향상 및 가족관계 회복에 따른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834	85,596	85,596	85,596	85,596	
2025~2029		85,596	91,017	91,017	91,017	91,0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22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24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22회계연도 결산)	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정원 확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①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① 2025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시 기본조사설계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가 필요한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음 ②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에 노력하겠음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해예방 지원
- 수용거실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 등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 개소 보강
- 절수기, 종량제봉투 압축기 등 설비 구축으로 공공요금 절약 노력 지속
- 교정시설의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진단·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6,108	-	106,108	11,990	△ 900	-	117,198	111,777	105.3	95.4	1,231	4,190
2023	107,682	-	107,682	1,231	△ 4,700	-	104,213	94,303	87.6	90.5	6,807	3,102
2024	100,834	-	100,834	6,807	△ 3,238	-	104,404	93,097	92.3	89.2	6,520	4,786
2025	85,596	-	85,596	6,520	△ 5,500	-	86,616	83,720	97.8	96.7	-	2,7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 비용이 증가로 2,000백만원 이용 증,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3,0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4,190백만원은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 1,231백만원 이월
2023	- 불용액 3,102백만원은 집행잔액,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시설 내 수용공간 확충사업의 용역기간 부족, 대규모 계속공사 사업 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 6,807백만원 이월
2024	- 상용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직 인원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각각 592백만원·2,646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1,000백만원, 자산취득비 3,500백만원 전용 감, 출입국 관서 공공요금 부족으로 1,000백만원 이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4,777	17,241	-	15,034	14,926	△2,315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380	14,926
·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95	12,385	12,063	-	322	14,772	14,122	13,875	14,122	13,875	-	245	14,745
·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948	2,398	-	550	2,438	2,438	2,304	2,438	2,304	-	134	150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 비목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380	14,926
· 일반수용비(210-01)	2,347	2,201	2,133	-	68	2,574	2,081	2,081	2,081	2,081	-	-	2,57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68	918	916	-	2	840	840	838	840	838	-	1	840
· 피복비(210-03)	2,055	1,798	1,798	-	-	2,222	2,072	2,068	2,072	2,068	-	4	1,930
· 급식비(210-04)	6,722	6,090	5,951	-	139	7,650	7,549	7,457	7,549	7,457	-	93	7,915
· 유류비(210-08)	218	243	243	-	-	239	239	117	239	117	-	122	23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2	415	415	-	-	441	535	534	535	534	-	-	441
· 기타운영비(210-16)	110	147	146	-	1	121	121	120	121	120	-	1	121
· 국내여비(220-01)	208	208	118	-	90	233	233	227	233	227	-	6	233
· 손실보상금(310-01)	17	19	15	-	4	76	82	68	82	68	-	14	76
· 기타보전금(310-04)	348	346	328	-	18	376	370	365	370	365	-	5	376
· 설계비(420-02)	207	207	55	-	152	103	103	16	103	16	-	87	-
· 공사비(420-03)	2,702	2,702	2,335	-	367	2,316	2,316	2,288	2,316	2,288	-	28	150
· 감리비(420-04)	39	39	8	-	31	19	19	0	19	0	-	19	-
· 자산취득비(430-01)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380	14,926
·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95	12,385	12,063	-	322	14,772	14,122	13,875	14,122	13,875	-	245	14,745
-일반수용비(210-01)	2,347	2,201	2,133	-	68	2,574	2,081	2,081	2,081	2,081	-	-	2,57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68	918	916	-	2	840	840	838	840	838	-	1	840
-피복비(210-03)	2,055	1,798	1,798	-	-	2,222	2,072	2,068	2,072	2,068	-	4	1,930
-급식비(210-04)	6,722	6,090	5,951	-	139	7650	7549	7,457	7,549	7,457	-	92	7,915
-유류비(210-08)	218	243	243	-	-	239	239	117	239	117	-	122	239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2	415	415	-	-	441	535	534	535	534	-	-	441
-기타운영비(210-16)	110	147	146	-	1	121	121	120	121	120	-	1	121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국내여비(220-01)	208	208	118	-	90	233	233	227	233	227	-	6	233
-손실보상금(310-01)	17	19	15	-	4	76	82	68	82	68	-	14	76
-기타보전금(310-04)	348	346	328	-	18	376	370	365	370	365	-	5	376
·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948	2,398	-	550	2,438	2,438	2,304	2,438	2,304	-	134	150
-설계비(420-02)	207	207	55	-	152	103	103	16	103	16	-	87	-
-공사비(420-03)	2,702	2,702	2,335	-	367	2,316	2,316	2,288	2,316	2,288	-	28	150
-감리비(420-04)	39	39	8	-	31	19	19	0	19	0	-	19	-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자산취득비(430-01)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체복무 운영비)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대체복무 시설개선 등)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업무지 등 개보수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대체복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복무 지원을 위해 '19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177	14,575	16,459	17,241	14,926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대체복무요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대체복무 운영경비 지원
: ('25) 14,772백만원 → ('26) 14,745백만원, 27백만원 감액
- ② 대체복무 시설개선
: ('25) 2,438백만원 → ('26) 150백만원, 2,288백만원 감액
- ③ 대체복무 생활관 등 물품구입
: ('24) 31백만원 → ('25요구) 3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체복무요원 1,047명
2023	- 대체복무요원 1,355명
2024	- 대체복무요원 1,574명
2025	- 대체복무요원 1,64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게 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459	17,241	17,241	17,241	17,241	
2025~2029		17,241	14,926	14,926	14,926	14,9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대체복무시설 4개소 개청 완료하였음. 2025년 제주(교) 등 3개소, 2026년 대구(교) 등 2개소 개청 예정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30년까지 34개 교정기관에서 대체복무역 1,903명 복무 예정임
- 대체복무 예비군 운영 : 2024년 160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최대 3,800여명이 예비군 복무 이행 예정
 - ※ 전국 16개 기관 분산 시행, 업무는 기존 대체복무요원 업무와 동일
- 대체복무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경비교도대원이 사용하던 막사 공간 리모델링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 리모델링 실시 및 증축 신축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854	323	18,177	126	△420	-	17,883	16,996	93.5	95.0	-	888
2023	14,575	-	14,575	-	△975	-	13,600	13,287	91.2	97.7	-	313
2024	16,459	-	16,459	-	-	-	15,649	14,777	89.8	94.4	-	872
2025	17,241	-	17,241	-	△650	-	16,591	16,210	94.0	97.7	-	38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회 추경 급식비 323백만원 증 ▪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25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888백만원은 공사완료 후 4대 보험료 정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공사비, 감리비 등 불용 및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2023	▪ 수용인원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감,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10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 등으로 외부 병원진료 등 출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호송여비 부족으로 810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50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99,909	290,348	-	306,074	302,342	11,994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194	302,342
· 수용관리 직접경비	132,426	144,835	144,833	-	2	146,512	158,208	158,115	158,208	158,115	-	2	154,447
· 수용관리 간접경비	134,114	151,596	151,595	-	1	141,019	152,023	151,925	152,023	151,925	-	190	145,078
· 수용자 호송경비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경비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 비목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194	302,342
· 일반수용비(210-01)	8,544	8,392	8,390	-	2	9,087	8,283	8,282	8,283	8,282	-	-	9,29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1,125	147,937	147,936	-	1	137,917	148,062	147,966	148,062	147,966	-	97	142,363
· 유류비(210-08)	2,203	2,873	2,873	-	-	2,203	3,062	3,061	3,062	3,061	-	1	1,929
· 국내여비(220-01)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 구호및교정비(320-06)	123,882	136,443	136,443	-	-	137,425	149,925	149,833	149,925	149,833	-	93	145,151
· 공사비(420-03)	786	786	786	-	-	786	786	785	786	785	-	1	786
· 자산취득비(430-01)	-	-	-	-	-	113	113	113	113	113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194	302,342
· 수용관리 직접경비	132,426	144,835	144,833	-	2	146,512	158,208	158,115	158,208	158,115	-	93	154,447
-일반수용비(210-01)	8,544	8,392	8,390	-	2	9,087	8,283	8,282	8,283	8,282	-	-	9,296
-구호및교정비(320-06)	123,882	136,443	136,443	-	-	137,425	149,925	149,833	149,925	149,833	-	93	145,151
· 수용관리 간접경비	134,114	151,596	151,595	-	1	141,019	152,023	151,925	152,023	151,925	-	101	145,07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1,125	147,937	147,936	-	1	137,917	148,062	147,966	148,062	147,966	-	99	142,363
-유류비(210-08)	2,203	2,873	2,873	-	-	2,203	3,062	3,061	3,062	3,061	-	1	1,929
-공사비(420-03)	786	786	786	-	-	786	786	785	786	785	-	1	786
-자산취득비(430-01)	-	-	-	-	-	113	113	113	113	113	-	-	-
· 수용자 호송경비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국내여비(220-01)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 수용자 사회봉사 등 경비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관리비)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및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 지원
- (공공요금 등 지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0,940	252,286	269,102	290,348	302,342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① 수용관리 직접경비(급식비, 피복비, 소모성물품 등) 증액
: ('25) 146,512백만원 → ('26) 154,447백만원, 7,935백만원 증액 |
| ② 수용관리 간접경비(공공요금, 건강보험예탁금, 공사비 등) 증액
: ('25) 141,019백만원 → ('26) 145,078백만원, 4,059백만원 증액 |
| ③ 수용자 호송여비 지원 : ('25) 2,806백만원 → ('26) 2,806백만원, 전년동 |
| ④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지원 : ('25) 11백만원 → ('26) 11백만원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 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 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수용자 100명당 연간 청원 건수(건)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text{연간 청원건수}) \div (\text{연평균 1일 수용인원})] \times 100\}$ 명	교정통계 보고서 (매년, 교정본부)
	실적	-	-	-	-				
	달성도	-	-	-	-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진료실적 증감률/수용인원 증감률 $\times 100$	기관별 의료처우 실시율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외부병원 진료(41,423명), 건강검진(38,062명), 원격 화상진료(39,957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4,802원 전년대비 2.0% 증)
2023	- 외부병원 진료(48,349명), 건강검진(41,512명), 원격 화상진료(49,129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4,994원 전년대비 4.0% 증)
2024	- 외부병원 진료(49,175명), 건강검진(44,776명), 원격 화상진료(49,868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5,094원 전년대비 2.0% 증)
2025	- 외부병원 진료(42,730명), 건강검진(44,122명), 원격 화상진료(47,314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5,326원 전년대비 2.4% 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용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및 외부병원을 활용한 건강검진 실시로 수용자 처우 향상
- 만성적인 의무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원격화상진료 지속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물가상승률 수준의 급식단가 인상으로 수용자 급식 개선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소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적정 예산 확보 주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9,102	290,348	290,348	290,348	290,348	
2025~2029		290,348	302,342	302,342	302,342	302,3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23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 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 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4회계연도 결산	①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검토보고) ④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① 엔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수용인원 및 공공 요금 단가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공 요금을 이·전용하였음. 다만, 교정시설 수용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② 외부 정신과 전문의 교정시설 파견 등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체계 구축 및 교정기관 내 진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국가지급의약품 품목 간소화 등 의료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음 ③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통계에 마약성진통제·기타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추가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지원단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 모니터링 및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있음 ④ 가석방 적극 시행 등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수용자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급량비·피복비·의료비 등 수용관리 비용과 건강보험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률과 예산편성 기준 수용인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0,940	△ 277	240,663	-	32,795	-	273,458	273,235	113.5	99.9	-	223
2023	252,286	-	252,286	-	30,881	-	283,167	283,066	112.2	100.0	-	101
2024	269,102		269,102	-	30,991	-	300,093	299,909	111.4	99.9	-	184
2025	290,348		290,348	-	23,050	-	313,398	313,204	107.9	99.9	-	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방위적인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비용 증가 및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률과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하나 예산 사정으로 적게 반영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폭증 등으로 27,045백만원 이용 중,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4,500백만원 전용 중
2023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100백만원 이용 중,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000백만원 이용 중,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160백만원 이용 중·3,400백만원 전용 중,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중·130백만원 사업 내 전용,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1,500백만원 전용 중·1,000백만원 사업 내 전용 - 불용액 101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915백만원 이용 중,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830백만원 이용 중,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1,100백만원 전용 중,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2,646백만원 전용 중,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사업 내 내역변경 - 불용액 184백만원은 집행잔액
2025	-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2,200백만원 이용 중,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7,530백만원, 의료비 4,976백만원 이용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정교화 (15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교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복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정교화	11,319	11,457	-	13,173	13,260	1,803	1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100	11,457	11,257	11,243	11,257	11,243	-	15	13,260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590	9,084	8,998	-	85	9,712	9,514	9,506	9,514	9,506	-	9	11,374
·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1,824	1,831	1,815	-	15	1,239	1,237	1235	1,237	1235	-	2	1,380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 비목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100	11,457	11,257	11,243	11,257	11,243	-	15	13,260
· 일반수용비(210-01)	7,338	6,832	6,749	-	82	7,338	7,140	7,137	7,140	7,137	-	4	8,55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15	214	-	-	208	206	206	206	206	-	-	208
· 일반연구비(260-01)	-	-	-	-	-	630	630	629	630	629	-	1	-
· 정보보안비(280-00)	571	571	568	-	3	676	676	676	676	676	-	-	848
·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 공사비(420-03)	1,616	1,616	1,601	-	15	1,031	1,031	1,029	1,031	1,029	-	2	1,172
· 자산취득비(430-01)	1,681	1,681	1,681	-	-	1,068	1,068	1,064	1,068	1,064	-	4	1,9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100	11,457	11,257	11,243	11,257	11,243	-	15	13,260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590	9,084	8,998	-	85	9,712	9,514	9,506	9,514	9,506	-	9	11,374
-일반수용비(210-01)	7,338	6,832	6,749	-	82	7,338	7,140	7,137	7,140	7,137	-	4	8,559
-일반연구비(260-01)	-	-	-	-	-	630	630	629	630	629	-	1	-
-정보보안비(280-00)	571	571	568	-	3	676	676	676	676	676	-	-	848
-자산취득비(430-01)	1,681	1,681	1,681	-	-	1,068	1,068	1,064	1,068	1,064	-	4	1,967
·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1,824	1,831	1,815	-	15	1,239	1,237	1,235	1,237	1,235	-	2	1,38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15	214	-	-	208	206	206	206	206	-	-	208
-공사비(420-03)	1,616	1,616	1,601	-	15	1,031	1,031	1,029	1,031	1,029	-	2	1,172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 지원
- (교화시설 및 장비 개선) 노후 교화시설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5조, 제58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의 범죄성 제거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4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73	10,537	11,920	11,457	13,260

- 기타: 특이사항 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 ('25) 9,712백만원 → ('26) 11,374백만원, 1,662백만원 증액
②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 ('25) 1,239백만원 → ('26) 1,380백만원, 141백만원 증액
③ 무의탁 출소자 지원 : ('25) 506백만원 → ('26) 50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 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 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관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범 인원 / REPI-4~5등급 관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중 가족접견 실시율(%)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가족접견 참여 수용자 /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수 x100	법무부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심리치료(성폭력 2,783명, 마약류 1,092명(단기교육 440명 포함), 알코올 768명, 정신질환자 245명, 아동학대 54명, 우울특화 88명, 스토킹 21명 등 4,898명) 실시 - 집중인성교육 5,720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097명, 가족접견 1,454명) - 엄마인 수행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55명 165회 녹음 실시
2023	- 심리치료(성폭력 3,040명, 정신질환자 308명, 아동학대 99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117명 등 5,934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936명, 마약류 중독예방 1,286명, 알코올 918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운영 - 집중인성교육 6,955명 실시 - 설치 공간 부족 등 5개 교정기관을 제외한 전국 49개 교정기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완료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057명, 가족만남의 시간 2,588명, 가족만남의 집 859명) - 엄마인 수행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47명 141회 녹음 실시
2024	- 심리치료(성폭력 3,000명, 정신질환자 273명, 아동학대 96명, 우울특화 104명, 스토킹 369명 등 4,179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1327명, 마약류 중독예방 1,388명, 알코올 1,000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운영 - 집중인성교육 7,426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397명, 가족만남의 시간 3,199명, 가족만남의 집 1,662명) - 엄마인 수행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1명 93회 녹음 실시
2025	- 심리치료(성폭력 2,788명, 정신질환자 150명, 아동학대 100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433명 등 3,840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1,453명, 마약류 중독예방 4,714명, 알코올 921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운영 - 집중인성교육 6,958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442명, 가족만남의 시간 2,701명, 가족만남의 집 1,538명) - 엄마인 수행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5명 105회 녹음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완비 등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로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통한 출소 후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 성폭력 사범·중독사범 등 재범방지 교육 강화 및 분류센터·정신보건센터·심리치료센터 등 전문 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개별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범죄성을 순화, 출소 후 재범률 감소
-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교육 강화 및 회복이음 과정을 신설하여 출소 후 단약 지속을 유도하여 출소 후 재범률 감소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 12월	의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920	11,457	11,457	11,457	11,457	
2025~2029		11,457	12,900	12,900	12,900	12,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귀휴 실적이 2023년 대비 30.9% 증가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실적이 85.7% 증가하는 등 사회적 처우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음. ‘가족누리통합솔루션’을 시범실시하여 타 가족의 사생활침해 등 우려가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 향후 2025년에도 가족상담이 포함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귀휴+가족사랑캠프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2023회계연도 결산)
 - 상담전담 직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및 심리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등 기관별 특성, 심리치료 수요에 따라 구성인력 충원·배치하고, 교정 현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세밀한 진단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상담 적극 실시하고, 향후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진·개선 계획임(2024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사범에 대한 실효적 교육을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선진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
- 특히, ‘13년부터는 전 수형자 대상의 ‘일률적 공통 학과교육, 취·창업교육’ 중심에서 재범우려가 높은 성폭력사범, 사이코패스(정신질환자), 학교폭력범, 마약사범 등 수용자 특성별 맞춤형 ‘중독·재활 인성교육’으로 전환·확대
-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예방, 수사, 재활)에 발맞춰 교정시설 내 마약, 스토킹 등 범죄 수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보통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을 제고 노력을 통해 종국에는 98.3%의 집행을 달성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사업 목정이 명확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행 발표 이후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교정교화 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 99.0%의 집행을 달성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호송차량 유류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부 내역변경이 있었으나 예산집행을 제고를 통해 집행을 99.1%를 달성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491	△1,018	9,473	19	△2,500	-	6,992	6,870	72.5	98.3	-	122
2023	10,537	-	10,537	-	△800	-	9,737	9,638	91.5	99.0	-	99
2024	11,920	-	11,920	-	△500	-	11,421	11,319	95.0	99.1	-	100
2025	11,457	-	11,457	-	△200	-	11,257	11,246	98.2	99.9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회 추경 △1,018 - 수용자 코로나19 방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2,000백만원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의 일반수용비로 내역변경 2,000백만원 감
2023	- 수용자 및 계호직원 PCR 검사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3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호송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전용 감
2025	- 수용인원 급증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6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5,028	17,373	17,373	19,554	19,554	2,181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 청사시설 유지관리	7,231	7,079	6,757	-	322	8,412	8,306	8,060	8,306	8,060	-	246	10,368	
· 임차청사 지원	3,684	4,138	4,138	-	-	3,749	4,118	4,118	4,118	4,118	-	-	3,749	
· 공무원 인력지원	2,239	2,230	2,012	-	218	2,333	2,244	2,089	2,244	2,089	-	155	2,505	
· 청사 운영관리	2,414	2,120	2,120	-	-	2,879	2,625	2,625	2,625	2,625	-	-	2,932	
○ 비목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 상용임금(110-03)	1,836	1,836	1,637	-	199	1,915	1,915	1,790	1,915	1,790	-	125	2,054	
· 일반수용비(210-01)	484	288	288	-	-	572	484	484	484	484	-	-	592	
· 공공요금(210-02)	1,627	1,369	1,369	-	-	1,653	1,393	1,393	1,393	1,393	-	-	1,653	
· 임차료(210-07)	2,540	2,994	2,994	-	-	2,605	2,974	2,974	2,974	2,974	-	-	2,60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9	997	988	-	9	401	295	295	295	295	-	-	969	
· 복리후생비(210-12)	44	35	34	-	1	44	35	32	35	32	-	3	44	
· 관리용역비(210-15)	303	463	463	-	-	654	748	748	748	748	-	-	687	
· 고용부담금(320-09)	359	359	341	-	18	374	294	267	294	267	-	27	407	
· 실시설계비(420-02)	462	462	360	-	102	754	754	724	754	724	-	30	281	
· 공사비(420-03)	3,465	3,465	3,350	-	115	5,894	5,875	5,659	5,875	5,659	-	216	8,134	
· 감리비(420-04)	28	28	25	-	3	48	67	67	67	67	-	-	25	
· 자산취득비(430-01)	2,127	2,127	2,034	-	93	1,315	1,315	1,315	1,315	1,315	-	-	959	
· 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1,144	1,144	1,144	-	-	1,1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 청사시설 유지관리	7,231	7,079	6,757	-	322	8,412	8,306	8,060	8,306	8,060	-	246	10,36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9	997	988	-	9	401	295	295	295	295	-	-	969	
- 실시설계비(420-02)	462	462	360	-	102	754	754	724	754	724	-	30	281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공사비(420-03)	3,465	3,465	3,350	-	115	5,894	5,875	5,659	5,875	5,659	-	216	8,134
- 감리비(420-04)	28	28	25	-	3	48	67	67	67	67	-	-	25
- 자산취득비(430-01)	2,127	2,127	2,034	-	93	1,315	1,315	1,315	1,315	1,315	-	-	959
· 임차청사 지원	3,684	4,138	4,138	-	-	3,749	4,118	4,118	4,118	4,118	-	-	3,749
- 임차료(210-07)	2,540	2,994	2,994	-	-	2,605	2,974	2,974	2,974	2,974	-	-	2,605
- 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1,144	1,144	1,144	-	-	1,144
· 공무원 인력지원	2,239	2,230	2,012	-	218	2,333	2,244	2,089	2,244	2,089	-	155	2,505
- 상용임금(110-03)	1,836	1,836	1,637	-	199	1,915	1,915	1,790	1,915	1,790	-	125	2,054
- 복리후생비(210-12)	44	35	34	-	1	44	35	32	35	32	-	3	44
- 고용부담금(320-09)	359	359	341	-	18	374	294	267	294	267	-	27	407
· 청사 운영관리	2,414	2,120	2,120	-	-	2,879	2,625	2,625	2,625	2,625	-	-	2,932
- 일반수용비(210-01)	484	288	288	-	-	572	484	484	484	484	-	-	592
- 공공요금(210-02)	1,627	1,369	1,369	-	-	1,653	1,393	1,393	1,393	1,393	-	-	1,653
- 관리용역비(210-15)	303	463	463	-	-	654	748	748	748	748	-	-	6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 및 개선비 지원
- (임차청사 지원)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 (공무직 인력지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의 환경미화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청사 운영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소년보호기관(29개 기관)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73.~74. 서울소년원 등 9개 소년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1. 1. 보호국 신설
 - 2007. 7.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6개 센터 설치
 - 1942~현재, 소년원(10개), 소년분류심사원(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18개)
- 보호관찰기관(66개 기관)
 - 1989. 7. 전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1989~현재 보호관찰소(18개), 보호관찰지소(40개), 위치추적관제센터(2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6개)
- 국립법무병원(2개 기관)
 - 1987. 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40	12,313	15,568	17,373	19,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 사업 수혜자 : 97개 기관 시설 이용자(보호관찰대상자, 수용자,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범죄예방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 (2025 예산) 8,412백만원 → (2026 예산) 10,368백만원, 1,956백만원 증액

- (요구) 연례적 시설 개보수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확대, 산불 등 화재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비로 재투자 요구
- (산출) 내진보강 및 화재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 7,294백만원 증액
신·증축 청사 이전 기반공사 및 집기류 구입 등 511백만원 증액
노후청사 현대화 등 시설물 개보수 5,849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1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 보호관찰소 58기관×3,453천원 = 200백만원 · 소년원 등 14기관×1,135천원×13512월 = 191백만원 나. 증축 청사 유지보수 10백만원 ○ 건설비(420-00) : 6,696백만원 가. 노후 청사 현대화(소방,배관·냉난방 설비 교체 등) · 보호관찰소 12기관×66,667천원 = 800백만원 · 소년원 등 6기관×125,000천원 = 750백만원 나. 석면제거 공사 등 · 소년원 등 4기관×110,000천원 = 440백만원 다. 비상대기소 개보수 954백만원 라.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 보호관찰소 등 3기관×361,333천원 = 1,084백만원 마. 내진 구조설계 및 보강공사 · 47개소×53,128천원 = 2,497백만원 바. 기존 시설개선 공사 등 17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15백만원 가. 사무기기, 보안장비 구입 등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12,319천원 = 88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가구 등 구입 428백만원	10,36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969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 보호기관 72기관×790천원 = 57백만원 나. 내진성능평가 등 912백만원 ○ 건설비(420-00) : 8,440백만원 가. 화재대비 소방 등 시설물 보강 · 보호기관 18기관×88,667천원 = 1,455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 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37백만원 다. 내진 구조설계 및 보강공사 · 88개소×76,681천원 = 6,74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59백만원 가. 사무기기, 보안장비, 재난장비(소방, 화재, 배수펌프) 구입 등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9,611천원 = 692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가구 등 구입 267백만원 · 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67백만원

②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지원

: (2025 예산) 3,749백만원 → (2026 예산) 3,749백만원, 전년동

- (요구)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임차료 2,605백만원, 보증금 1,14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③ 공무원 인력지원

: (2025 예산) 2,333백만원 → (2026 예산) 2,505백만원, 172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처우개선분 반영한 인건비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원 88명 처우개선분(3.8%) 반영한 상용임금 139백만원, 고용부담금 33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33	○ 상용임금(110-03) : 1,915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2,298천원×12월 = 77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 57명×1,471천원×12월 = 1,006백만원 다.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 3명×3,801천원×12월 = 137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500천원 = 1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 60명×500천원 =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7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28명 • 보험료 및 퇴직금 148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60명 • 보험료 및 퇴직금 226백만원	2,505	○ 상용임금(110-03) : 2,05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2,485천원×12월 = 835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 57명×1,539천원×12월 = 1,053백만원 다.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 3명×4,611천원×12월 = 16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500천원 = 1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 60명×500천원 =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06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28명 • 보험료 및 퇴직금 16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60명 • 보험료 및 퇴직금 242백만원

④ 청사 운영관리

: (2025 예산) 2,879백만원 → (2026 예산) 2,932백만원, 53백만원 증액

- (요구) 산·증축청사 이전과 관련, 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관리용역비 증액 요구
- (산출) 산·증축청사 이전비 등 수용비 20백만원 증액, 관리용역비 33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79	○ 일반수용비(210-01) : 57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52기관×180천원×12월 = 112백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52기관×551천원×1회 = 29백만원 다. 2.3중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34기관×3,300천원×2회 = 224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19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8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54백만원 가. 소년원 등 - 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 시설관리비 등 402백만원	2,932	○ 일반수용비(210-01) : 59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54기관×201천원×12월 = 130백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54기관×551천원×1회 = 32백만원 다. 2.3중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36기관×3,750천원×2회 = 270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40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2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87백만원 가. 소년원 등 - 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등 - 시설관리비 등 435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소년원 청사 및 생활관 도장 등 개선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3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국립법무병원 스프링클러 공사 등 개선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4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보호기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5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내진보강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근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내진보강 사업의 단계적 시행, 산불 등 화재 대비 옥외소화전 구축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 임차청사 운영 및 공무원 인력 지원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568	17,373	17,373	15,373	15,373	
2025~2029		17,373	32,229	33,196	34,192	35,2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보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청사 확보, 시설·장비의 현대화 추진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940	-	10,940	-	-	-	10,940	9,900	90.5	90.5	639	401
2023	12,313	-	12,313	639	180	-	13,132	12,592	102.3	95.9	-	540
2024	15,568	-	15,568	-	-	-	15,568	15,028	96.5	96.5	-	540
2025	17,373	-	17,373	-	△ 80	-	17,293	16,892	97.2	97.7	-	40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 대구청소년비행센터 공사 지연으로 639백만원 이월 - 불용 :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96백만원, 낙찰차액 305백만원 등 401백만원
2023	- 전용 :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180백만원 증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원 인건비 336백만원, 낙찰차액 203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4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원 인건비 218백만원, 낙찰차액 115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5	- 이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80백만원 감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원 인건비 155백만원, 낙찰차액 216백만원 등 40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5.12.18.)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631-304)	320-09	8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16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5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김충섭	서상목	김재인
		범죄예방 디지털정책팀	02-2110-3144	02-2110-3335	02-2110-3781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최효석 선임연구원	042-869-779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877	2,000	2,000	3,000	3,000	1,000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77	877	877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3,000
- 강력범죄 재범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745	745	745	-	-	1,600	1,600	1,600	1,600	1,600	-	-	2,600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132	132	132	-	-	400	400	400	400	400	-	-	400
○ 비목별 분류(합계)	877	877	877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3,00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877	877	877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3,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77	877	877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3,000
- 강력범죄 재범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745	745	745	-	-	1,600	1,600	1,600	1,600	1,600	-	-	2,60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745	745	745	-	-	1,600	1,600	1,600	1,600	1,600	-	-	2,600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132	132	132	-	-	400	400	400	400	400	-	-	40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32	132	132	-	-	400	400	400	400	400	-	-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R&D)

- (목적)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 (내용)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4년간(2024~2027년) 개발 계획
 -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각종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를 실시간 예측하여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AI 기술을 개발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재범 예측 AI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전자감독 시스템에 분산되어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여 AI의 학습을 돕는 통합시스템(DB)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활용 사회문제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 경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위해 R&D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 AI 등 혁신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구축 추진

- (새정부 공약) B-1-3-2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정과제) 정책-12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법무부 주요 핵심 추진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재범 방지 체계구축)

- 주요 추진 내역

- 범죄예방정책 분야 국가R&D사업 추진기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2. 4. ~ 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1:1 매칭 사업추진('22. 11. ~)
- 사업 공동 기획 및 예산 확보('22. 11. ~ '23. 12.)
- '24년 신규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24. 2. ~ 4.)
- '24년 신규 연구과제 협약체결 및 1차년도 연구 개시('24. 4. ~ 12.)
-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24. 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 기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77	2,000	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 (관리) 한국연구재단 →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출연	-	2,600	10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출연	-	4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강력범죄 재범 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 (2025) 1,600 → (2026) 2,6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재범 예측 AI의 안정적인 성능 구현을 위한 3차 년도 핵심 과업 개발비 2,600백만원 편성
- (산출) 1개 과제(계속) × 2,600백만 × 12/12월 = 2,6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600백만원 가.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1,600백만원) - 1,600백만원 = 1과제×1,600백만원×12/12개월	2,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600백만원 가.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2,600백만원) - 2,600백만원 = 1과제×2,600백만원×12/12개월

②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 (2025) 400 → (2026) 4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자감독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성능 검증 등을 위해 3차 년도 핵심 과업 개발비 400백만원 편성
- (산출) 1개 과제(계속) × 400백만 × 12/12월 = 4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백만원 가. 전자감독 데이터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400백만원) - 400백만원 = 1과제×400백만원×12/12개월	4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백만원 가. 전자감독 데이터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400백만원) - 400백만원 = 1과제×400백만원×12/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자감독 대상자 수(명)	목표	-	-	신규	10	50	- 재범위험도 분석을 위해 3년 이내 재범자 기준 고위험군 선정 - 재범시나리오에 근거(유형별)하여 연차별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고위험군 대상자 수의 합 - 측정방법 : 평가위원 적정성 검토	연차 보고서, 제3자 전문가평가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일탈탐지 및 재범위험 인식률(%)	목표	-	-	신규	80	85	- 전자감독 데이터의 특수성 및 실증 DB를 고려하여 성능 목표 순차 상향 ※ 교정 재범 예측지표의 재범 위험성 예측력 : 75.4%	- 측정산식 : 성능평가 지표(F1-score) 활용 - 측정방법 : 자체 DB(24년·실증 DB(25년)) 활용하여 시험	연차 보고서 시험 결과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자감독 정형화 DB 규모(%)	목표	-	-	신규	50	100	- 전체 감독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AI 모델 개발단계에 따라서 정형화 DB 구축 목표 순차 설정 26년이 정형화 최종 연도이므로 100%로 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 정형화 목표 건수 대 완료 건수의 비율	연차 보고서, 수집 DB
	실적	-	-	-	-	-			
	달성도	-	-	-	-	-			
현장 만족도(점)	목표	-	-	신규	-	85	- 실증 단계(26년)에서 실제 서비스 수요자인 실무자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 실증 적용 시기 및 활용성을 고려 연차별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 \frac{\sum(\text{응답자의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값} / \text{응답자 수})}{\text{조사항목 수}}$ - 측정 방법 : 실무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20명 이상)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현장 적용도(%)	목표	-	-	신규	-	80	- 기존의 시스템(전자감독)과 연동 및 현장 적용 점검 - 실 환경 적용 수준을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 \frac{\sum(\text{U-Guard 시스템 적용 기술 건수}) / \text{기술 개발 건수}}{100}$ - 측정방법 : U-Guard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제 적용되는 기술 수준 측정	연차 보고서, 시험 결과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 '24년 신규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24. 2. ~ 4.) · '24년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24. 4.~) ·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24. 12.)
2025	· 2차년도 연구결과 중간보고('25. 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자감독지능화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2029년 이후부터, 30%의 재범감소를 통해 연간 54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 기대 ○ 2019년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건수는 90건(성폭력 80건, 유괴 1건, 살인 3건, 강도 7건)으로 총 1,818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추정 * 특정범죄별 사회적 비용은 성폭력(5.7억원), 미성년자 유괴(848.6억원), 살인(170억원), 강도(0.5억원)으로, 범죄별 사회적 비용을 실제 발생한 재범건수와 곱하여 총계 산출 * 미국 HunchLab(시카고) 범죄예측시스템의 강력범죄(총기, 살인) 감소 효과인 30% 기준 ○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속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기획	법무부·과기정통부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 기획 보고서 작성
②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 요구서(RFP) 포함
③ 과제신청·접수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연구재단 : 접수
④ 과제선정·평가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 결과 확정(과기정통부)
⑤ 협약체결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⑥ 진도관리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 점검 등)
⑦ 최종 검토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연구 결과 최종 검토(최종 평가 등)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 활용(기술이전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77	2,000	2,000	2,000	-	
2025~2029		2,000	5,350	4,462	750	7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개인일상기반 공통 일탈탐지 모델 개발	개인특화형 일탈탐지 모델 개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실시간 재범위험 정도 분석	시스템 시범 운용 및 실증
전자감독 데이터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정형화 DB 생성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정형화 DB 생성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대규모 학습 데이터 구축 전자감독 시스템 연동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877	-	877	-	-	-	877	877	100.0	100.0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877	-	877	877	-	877	877	-	-	100.0
2025	2,000	-	2,000	2,000	-	2,000	2,0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1)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필수 제출)
-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 (필요성) ①전자감독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②재범사건의 고도·지능화로 발생하는 전자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인력 중심 전자감독 관리 체계에서 지능형 전자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전자감독 제도 시행(2008년) 이후 대상 사범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건 규모 및 인적·물적 관리비용이 꾸준히 증가
 - * 성폭력('08년), 유괴('09년), 살인('10년), 강도('14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가석방('20년), 스토킹('24년)



- 위치정보 및 준수사항 위반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 시스템은 주거지 인근, 출퇴근길 등 일상 경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범상황 감지에 한계
 - ※ 성폭력 재범의 55.3%가 주거지 1km 이내에서 발생



2. 사업내용

- (개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상 상황, 위치 패턴의 변화와 재범 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개발

내역사업	내용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데이터 ^[1] 의 융합·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를 실시간 예측하여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AI 기술을 개발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재범 예측 AI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감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여 AI의 학습을 돕는 통합시스템(DB)을 구축

[1] 위치, 범죄정보, 일상변화를 알 수 있는 면담 기록 등 보호관찰관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

- (규모) 2024~2027년, 총 283억 기획(법무부·과기정통부 예산 공동 분담)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	2026 정부안
법무부	8.77억 원	20억 원	30억 원
과기정통부	8억 원	20억 원	20억 원

- (개발 계획) 연구개발4개년 계획에 따라 AI 핵심기술 순차 개발

구분	연도	내용
기반 마련	2024	재범요인 선정, 이상 상황 탐지 초기모델 개발
고도화	2025	이상 상황 및 이상 위치 복합추론 기술 개발
	2026	재범 예측 AI 모델 개발, 기존 시스템과 연동
검증	2027	실제 현장에서의 시범 운용, 성능 보완 및 평가

- (수행주체) 공동주관 법무부·과기정통부 → 사업관리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연구기관	내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 총괄, 재범 예측 AI 모델 개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 선정, 데이터 분석
(주)엔텔스	AI 모델을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과 연계·통합
(주)YM-나을텍	AI의 학습을 위한 전자감독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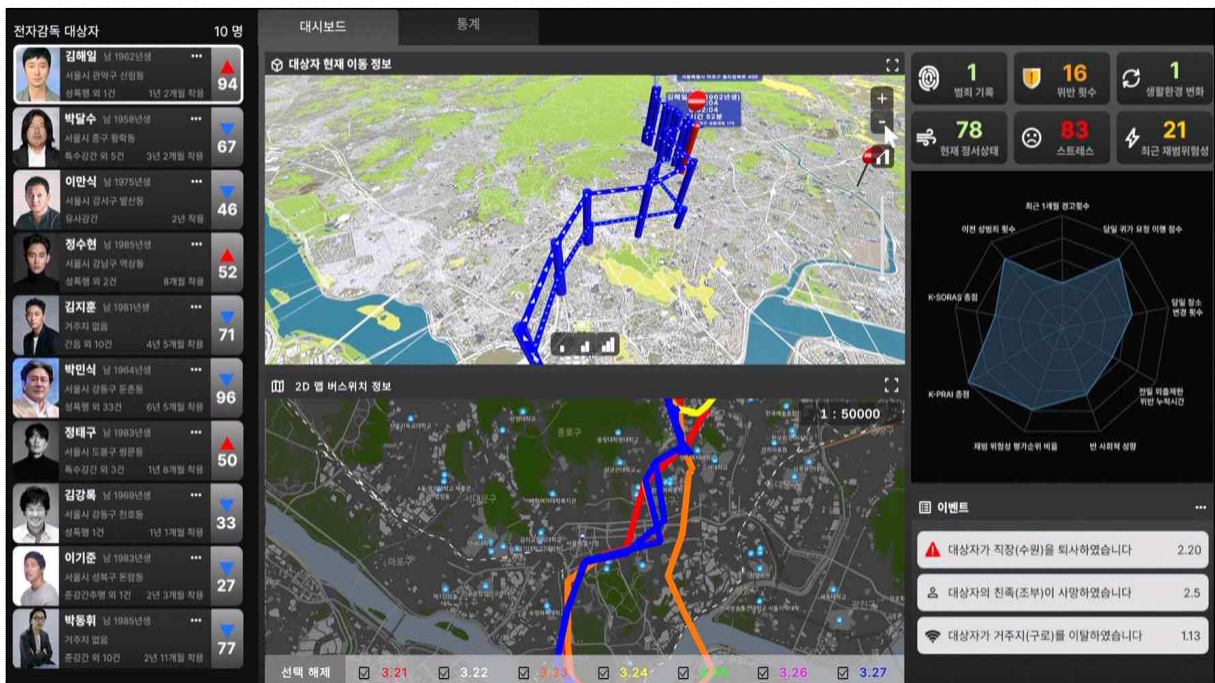
3. 활용방안

- (실무 운용 방안) 위치추적시스템과 연동, 재범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된 대상자에 대해 AI가 실시간 경보 알람 → 보호관찰관 조기 대응(연락, 출동)

〈기술 적용 예시〉

- 공장 근로자였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평소 집과 공장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실직 후 며칠간 야간에 유흥가를 거쳐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배회함
- 재범 예측 AI가 대상자의 위치 패턴, 범죄정보, 일상 변화를 알 수 있는 면담 기록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 증가를 알림 → 조기 개입으로 범죄 예방

※ 시스템 운영 화면 개발 예시



I. 추진 배경

□ 필요성

- 전자감독 대상자 급증*으로 인력 중심 감시·대응체계의 한계 도달
* 매년 300명 수준 증가(연평균 11.32%), 재범건수도 연평균 4.5% 증가
 - 지능·다양화된 재범상황*의 예방 및 국민의 범죄 불안 해소를 위한 획기적 범죄예방 기술 필요
* 성폭력 재범의 55.3%가 주거지 1km 이내에서 발생하는 등 단순 위치정보 수집만으로는 재범 상황(시도) 감지에 한계
- ⇒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AI 전자감독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추진 경과

- 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추진기획(2022.4.)
-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022.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공동사업 추진(2022.11.~)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 기획추진(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 2022.11.~2023.4.)
- 2024년 사업예산 1,677백만원(과기정통부 800백만원, 법무부 877백만원) 확정(2023.12.)
- 2024년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2024.4~)

I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시도를 사전에 차단·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

□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

- (기간) 총 4년(2024.~2027.)
- (규모) 2개 단위과제, 총 283억원 기획(2025년 : 40억원 반영)

구분		2025년 예산 (백만원)
세부	내역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RFP : 개인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개발)	3,200 (과기부 1,600, 법무부 1,600)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RFP : 전자감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800 (과기부 400, 법무부 400)
합계		4,000

-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자감독 데이터의 분석과 그에 따른 통합 DB 구축을 위한 2개 연구과제 지원

□ 사업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 (법무부/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 계획 수립, 예산 확보·지원 등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사업기획·광고,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지급, 사업 및 성과 관리 등
- (주관 연구기관) 세부 연구내용 중 외부 전문 연구 분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추진

III. 사업 세부 추진계획

□ 목표 및 비전

- 선제적 예방 중심의 예측적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Preemptive Electronic Monitoring) 및 실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지능형 전자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추진전략 및 내용

-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측위 정보, 개인 특성, 생활상 범죄 유발 요인 변화, 이전 범죄 수법의 특성 등의 융합분석을 통해 개인별 재범위험도를 평가하는 AI 기반 개인 일상모델 개발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전자감독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 정형화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측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별 전자감독 데이터로 관리하는 통합 정형 DB를 구축

□ 기대효과

- (기술) 수동 감시 한계 극복으로 보호관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재범징후 감지 예측 및 판단 근거 확보
- (사회)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 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체계 확립
- (경제) 재범 억제 강화로 인한 피해 감소,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감 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 기대

※ 기술 적용 전후 전자감독 업무 비교

IV. 2024년 주요 실적

□ 법무부 국가 R&D 수행체계 마련

- 전자감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을 위한 법무부-과기정통부 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
- 기획 단계부터 소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협업체계 구축
 -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법무부+과기정통부)

□ 범죄예측 분석 플랫폼 개발 추진

- 재범 방지 전자감독 플랫폼 개발을 위해 2개 신규 과제 선정 및 R&D 추진
- 3개 영역(연구 계획, 역량, 성과 활용) 평가로 2과제 선정(2024.4)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주)엔텔스
전자감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YM-나을텍	

- 과제 선정 後 연구진-수요 부처 간 성과 목표 검토회의 개최
 - ※ 연구진과 수요부처 간 성과목표 협의·조정(수요부처 의견 반영) 후 협약체결
- 연구성과의 성공적 도출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진-수요 부처 간 향후 연구추진 방식 및 성과 활용계획 논의 후 과제 수행 반영

V. 2025년 추진 계획

□ 계속 과제 지원 및 성과 관리 추진

- (계속 과제 지원) 선정 과제 1차 년도(2024년) 개발 종료에 따른 2차 년도(2025년) 연구비 지급
- (성과 관리) 목표 달성과 현장 실증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수요처 간 지속적 소통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
 - (소통 강화) 연구개발기관과 수요 부처(법무부) 간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연구성과 현장 실증 및 활용 제고

□ 단계평가 실시

- 2024년 선정 과제 1단계 종료(2024.~2025.)에 따른 평가 실시
 - 2025년 연말 실시 예정으로 2개 과제에 대한 2024~2025년 개발 내용 평가

사 업 명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원생수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생 수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	-	-
(출원생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배세환 주무관	02-2110-3915
	사업시행주체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국	장철승 팀장	070-7455-610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소년원생수용	26,152	26,971	26,971	29,183	29,183	2,212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887	26,767	26,152	-	615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 교 육과정 운영 등	9,486	9,671	9,366	-	305	9,058	9,071	8,979	9,071	8,979	-	92	9,383
· 구호및교정비 지원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 공무원 등 인력지원	8,917	8,611	8,302	-	308	9,275	8,966	8,833	8,966	8,833	-	133	10,739
· 출원생 자립지원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 비목별 분류(합계)	26,887	26,767	26,152	-	615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 상용임금(110-03)	6,713	6,713	6,471	-	241	7,014	7,014	6,952	7,014	6,952	-	62	8,055
· 일용임금(110-04)	803	803	788	-	15	803	803	794	803	794	-	9	999
· 일반수용비(210-01)	1,373	1,438	1,438	-	-	1,409	1,461	1,461	1,461	1,461	-	-	1,815
· 공공요금(210-02)	1,116	1,298	1,298	-	-	1,196	1,226	1,226	1,226	1,226	-	-	1,196
· 피복비(210-03)	52	52	52	-	-	52	30	30	30	30	-	-	52
· 유류비(210-08)	199	199	199	-	-	201	201	201	201	201	-	-	201
· 시설장비유자비(210-09)	431	431	431	-	-	460	415	415	415	415	-	-	460
· 재료비(210-11)	338	276	276	-	-	338	336	336	336	336	-	-	588
· 복리후생비(210-12)	86	80	76	-	4	87	73	73	73	73	-	-	90
· 국내여비(220-01)	153	153	153	-	-	158	158	158	158	158	-	-	158
· 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57	57	57	-	-	57
· 특정업무경비(250-03)	590	590	476	-	114	586	586	539	586	539	-	47	582
· 일반연구비(260-01)	119	119	57	-	62	119	119	115	119	115	-	4	119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포상금(310-03)	-	-	-	-	-	-	-	-	-	-	-	-	52
· 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5	5	5	-	-	5
· 민간경상보조(320-01)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 구호및교정비(320-06)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고용부담금(320-09)	1,315	1,015	967	-	48	1,371	1,076	1,014	1,076	1,014	-	62	1,595	
· 실시설계비(420-02)	99	99	91	-	8	70	70	69	70	69	-	1	70	
· 공사비(420-03)	3,523	3,523	3,412	-	111	3,004	3,004	2,970	3,004	2,970	-	34	3,093	
· 감리비(420-04)	21	21	11	-	10	20	20	17	20	17	-	3	20	
· 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90	-	-	1,363	1,363	1,360	1,363	1,360	-	3	895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26,887	26,766	26,152	-	-	26,971	26,971	26,745	26,971	26,745	-	225	29,183	
· 교육과정 운영 등	9,486	9,671	9,366	-	305	9,058	9,071	8,979	9,071	8,979	-	92	9,383	
-일반수용비(210-01)	1,373	1,438	1,438	-	-	1,409	1,461	1,461	1,461	1,461	-	-	1,815	
-공공요금(210-02)	1,116	1,298	1,298	-	-	1,196	1,226	1,226	1,226	1,226	-	-	1,196	
-피복비(210-03)	52	52	52	-	-	52	30	30	30	30	-	-	52	
-유류비(210-08)	199	199	199	-	-	201	201	201	201	201	-	-	201	
-사설장비유자비(210-09)	431	431	431	-	-	460	415	415	415	415	-	-	460	
-재료비(210-11)	338	276	276	-	-	338	336	336	336	336	-	-	588	
-국내여비(220-01)	153	153	153	-	-	158	158	158	158	158	-	-	158	
-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57	57	57	-	-	57	
-특정업무경비(250-03)	590	590	476	-	114	586	586	539	586	539	-	47	582	
-일반연구비(260-01)	119	119	57	-	62	119	119	115	119	115	-	4	119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포상금(310-03)	-	-	-	-	-	-	-	-	-	-	-	-	52	
-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5	5	5	-	-	5	
-실시설계비(420-02)	99	99	91	-	8	70	70	69	70	69	-	1	70	
-공사비(420-03)	3,523	3,523	3,412	-	111	3,004	3,004	2,970	3,004	2,970	-	34	3,093	
-감리비(420-04)	21	21	11	-	10	20	20	17	20	17	-	3	20	
-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90	-	-	1,363	1,363	1,360	1,363	1,360	-	3	895	
· 구호및교정비 지원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구호및교정비(320-06)	5,672	5,672	5,671	-	1	5,758	6,053	6,053	6,053	6,053	-	-	6,097	
· 공무원 등 인력지원	8,917	8,611	8,302	-	308	9,275	8,966	8,833	8,966	8,833	-	133	10,739	
-상용임금(110-03)	6,713	6,713	6,471	-	241	7,014	7,014	6,952	7,014	6,952	-	62	8,055	
-일용임금(110-04)	803	803	788	-	15	803	803	794	803	794	-	9	999	
-복리후생비(210-12)	86	80	76	-	4	87	73	73	73	73	-	-	90	
-고용부담금(320-09)	1,315	1,015	967	-	48	1,371	1,076	1,014	1,076	1,014	-	62	1,595	
· 출원생 자립지원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민간경상보조(320-01)	2,812	2,812	2,812	-	-	2,880	2,880	2,880	2,880	2,880	-	-	2,9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년원생수용)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등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 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등)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의료재활교육과정, 인성교육과정 등 보호소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경비 지원
- (구호 및 교정비 지원) 소년원생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및 귀주여비 등 정상적 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소년원생에 대한 감호업무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특수교사) 및 검정고시 지도 등 유급강사 인건비 지원
- (출원생 자립지원)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법률 제17505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제21214호)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39호)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8.12. 소년원법 전문 개정(학교설치 근거 마련)
- 1989. 7. 소년원, 학교교육과정 설치
- 1990. 3. 소년원, 초·중·고등학교 개교
- 1997. 1. 소년원 복수명칭 사용(소년원,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에서 법률 제명 변경)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안양, 대전소년원)
- 2009. 7. 청주소년원 개청(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18	25,217	26,887	26,971	29,183

- 기타: 소년보호기관 11개(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보조사업기관 10개
(청소년자립생활관 8개, 창업비전센터 2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원생 자립지원	보조	한국소년 보호협회	2,964	10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25 예산) 9,058백만원 → (2026 예산) 9,383백만원, 325백만원 증액

- (요구) 생활실 개보수 등 우선순위 조정하여, 재범고위험 소년범죄 대응(인성·교과, 직업훈련, 가족기능회복) 예산 및
풍수해 등 재난대응 시설·장비 보강 예산 요구
- (산출) 소년원생 직업훈련 확대 304백만원 증액, 인성교육 등 교재비 203백만원 증액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 750백만원 증액, 포상금 52백만원 신설
재난대응 등 시설물·장비 등 보강 1,867백만원 증액, 생활실 개보수 등 2,850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58	○ 일반수용비(210-01) : 1,409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1기관×29,280천원 = 322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 11기관×78,502천원 = 864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1기관×7,600천원 = 84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1기관×6,483천원 = 71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1기관×9,062천원×12월 = 1,196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1기관×18,273천원 = 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1기관×39,182천원 = 431백만원 나. 여위탁전담시설 운영 29백만원 ○ 재료비(210-11) : 33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23과정×1,225천원×12월 = 338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57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6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2명×60천원×12월 = 549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7백만원 ○ 연구비(260-00) : 13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과제×9,120천원 = 11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건설비(420-00) : 3,094백만원 가. 소년원 기반시설(각종 설비 등) 현대화 2,154백만원 나. 여위탁 전담시설 기반시설 공사 등 350백만원 다. 야간학습실 조성 10기관×50,000천원 = 500백만원 라. 설계 및 감리비 9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3백만원 가. 취사, 의료,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890백만원 나. 여위탁 전담시설 가구 구입 등 333백만원 다. 야간학습실 학습도구 구입 140백만원	9,383	○ 일반수용비(210-01) : 1,815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1기관×37,832천원 = 416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등 · 11기관×108,874천원 = 1,198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1기관×4,673천원 = 56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1기관×6,970천원 = 7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1기관×9,062천원×12월 = 1,196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1기관×18,273천원 = 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1기관×39,182천원 = 431백만원 나. 여위탁전담시설 운영 29백만원 ○ 재료비(210-11) : 58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10기관×4,900천원×12월 = 588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57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2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2명×60천원×12월 = 549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3백만원 ○ 연구비(260-00) : 13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과제×9,120천원 = 11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포상금(310-03) : 52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건설비(420-00) : 3,183백만원 가. 소년원 재난대비 시설 보강 등 2,443백만원 나. 소년원 교육관 등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500백만원 다. 고가수조 및 수전 설비 등 150백 라. 설계 및 감리비 9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895백만원 가. 취사, 직훈,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676백만원 나. 재난 대비 장비 구입 등 169백만원 다. 면회장, 생활실 등 집기류 50백만원

② 소년원생 구호 및 교정비 지원

: (2025 예산) 5,758백만원 → (2026 예산) 6,097백만원, 339백만원 증액

- (요구) 소년원생 수용정원 1,350명에 대한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로, 급식비 단가(8,476원→8,679원) 인상 및 편성인원을 1,405명으로 확대 요구
- (산출) 급량비 339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58	○ 구호및교정비(320-06) : 5,758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4,605백만원 • 소년원생 급식비 1,350명×8,476원×365일 = 4,177백만원 • 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368백만원 • 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60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735백만원 • 건강관리공단예탁금 294백만원 • 일반의료비 등 426백만원 • 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18백만원 • 피복비 395백만원 • 귀주여비 23백만원	6,097	○ 구호및교정비(320-06) : 6,097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4,911백만원 • 소년원생 급식비 1,405명×8,679원×365일 = 4,451백만원 • 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379백만원 • 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81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747백만원 • 건강관리공단예탁금 294백만원 • 일반의료비 등 438백만원 • 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38백만원 • 피복비 414백만원 • 귀주여비 24백만원

③ 공무원 등 인력지원

: (2025 예산) 9,275백만원 → (2026 예산) 10,739백만원, 1,464백만원 증액

- (요구) 감호실무관 위험수당 신설 및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 및 직업훈련 외부강사 10명 증원 요구,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감호실무관 등 공무원 7명 증원 요구
- (산출) 감호실무관(149명) 위험수당신설(4만원)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감호실무관 등 공무원(180명) 상용임금 1,041백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3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24백만원 증액
소년원생 직업훈련 외부강사비 196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75	○ 상용임금(110-02) : 7,014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9명×3,772천원×12월 = 860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 144명×3,370천원×12월 = 5,823백만원 다. 특수교사 • 10명×2,758천원×12월 = 331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803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 23명×41천원×40시간×12월 = 453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7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73명×500천원 = 8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371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173명×660.5천원×12월=1,371백만원	10,739	○ 상용임금(110-02) : 8,055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9명×4,224천원×12월 = 963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 149명×3,713천원×12월 = 6,639백만원 다. 특수교사 • 10명×3,042천원×12월 = 365백만원 라. 운전원 • 2명×3,667천원×12월 = 88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99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 33명×41천원×40시간×12월 = 649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0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80명×500천원 = 9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595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180명×738.4천원×12월=1,595백만원

④ 출원생 자립지원

: (2025 예산) 2,880백만원 → (2026 예산) 2,964백만원, 84백만원 증액

- (요구)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내 입주생 급식비 단가(6,555원→6,712원), 생활지도사 등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요구
- (산출) 자립생활관 입주생 급식비 7백만원 증액,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77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0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698백만원 · 인건비 32명×3,406천원×12월 = 1,308백만원 · 사업비 8기관×4,061천원×12월 = 390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985백만원 · 인건비 16명×3,636천원×12월 = 698백만원 · 사업비 5과정×4,777천원×12월 = 287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97백만원 · 인건비 3명×3,367천원×12월 = 121백만원 · 사업비 2과정×3,171천원×12월 = 76백만원	2,964	○ 민간경상보조(320-01) : 2,964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753백만원 · 인건비 32명×3,531천원×12월 = 1,356백만원 · 사업비 8기관×4,135천원×12월 = 397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009백만원 · 인건비 16명×3,760천원×12월 = 722백만원 · 사업비 5과정×4,777천원×12월 = 287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202백만원 · 인건비 3명×3,500천원×12월 = 126백만원 · 사업비 2과정×3,171천원×12월 = 7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비행원인 진단 및 특성화교육 - 분류심사 3,661명, 외부경시대회입상 168명, 상급학교진학 121명, 검정고시 253명, 편입학 376명, 졸업장취득 91명, 자격취득 2,937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25명, 기능자격취득 844명, 기능경기대회입상 70명 ○ 개방처우 9명, 봉사활동 32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309명, 가족사랑캠프·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6건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1,398명, 후견인지정 4명, 멘토링결연 234명, 자립생활관 연계 8명, 장학금지급 343명(141,45만원)
2023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인성교육 - 분류심사 4,2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96명, 상급학교진학 114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410명, 졸업장취득 98명, 자격취득 2,500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55명, 기능자격취득 852명, 기능경기대회입상 63명 ○ 체험학습 168명, 봉사활동 17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724명, 가족사랑캠프·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4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69명, 구인업체방문 1명, 산업체현장실습 56명, 멘토링결연 218명, 자립생활관 연계 45명, 장학금지급 366명(13,909만원)

2024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인성교육 - 분류심사 4,744명, 외부경시대회입상 67명, 상급학교진학 151명, 검정고시 310명, 편입학 721명, 졸업장취득 129명, 자격취득 3,842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90명, 기능자격취득 1,108명, 기능경기대회입상 97명 ○ 체험학습 666명, 봉사활동 22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533명, 가족사랑캠프·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73명 ○ 사회복지 지원 - 취업알선 76명, 구인업체방문 0명, 산업체현장실습 90명, 멘토링결연 367명, 자립생활관 연계 55명, 장학금지급 207명(9,449만원)
2025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인성교육 - 분류심사 4,8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144명, 상급학교진학 165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638명, 졸업장취득 149명, 자격취득 4,179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87명, 기능자격취득 1,364명, 기능경기대회입상 82명 ○ 체험학습 564명, 봉사활동 464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702명, 가족사랑캠프·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51명 ○ 사회복지 지원 - 취업알선 96명, 구인업체방문 3명, 산업체현장실습 83명, 멘토링결연 492명, 자립생활관 연계 62명, 장학금지급 309명(13,42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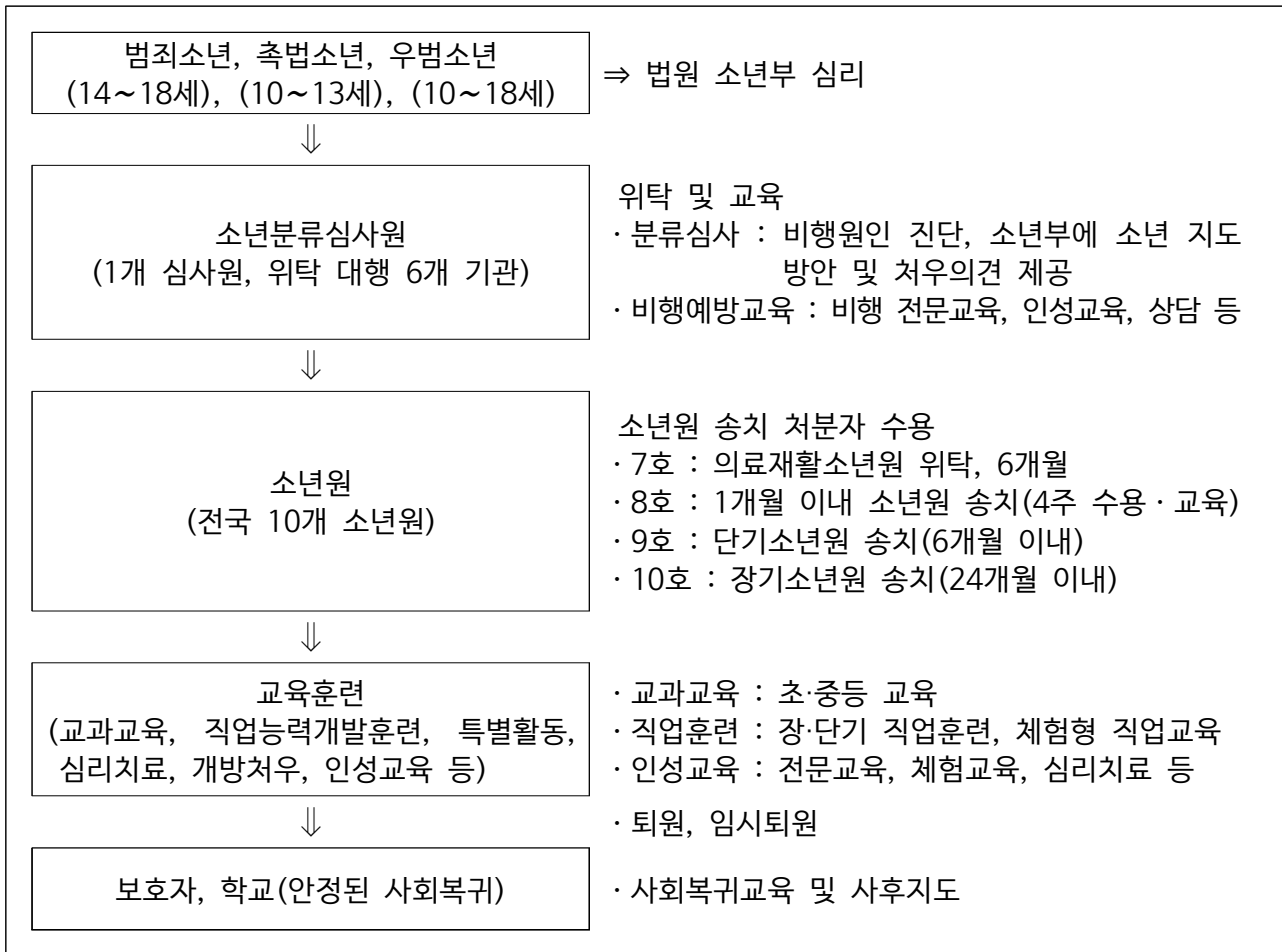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위탁 전담시설 개청(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으로 여위탁생 수용 과밀 해소 및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보호소년등 구성원 간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용환경 구축을 통해 소년원 교정교육 효과 제고
- 보호소년의 인성·교과·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학습결손 회복 및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 역량 형성
- 보호소년의 결손유형을 분석, 가정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 등 맞춤형처우를 제공하여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실현
- 보호소년 정신건강증진프로세스 운영, 위탁소년 비행원인 진단 및 정신질환 선별 검사 강화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 정신건강서비스 개입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887	26,971	26,971	25,971	23,971	
2025~2029		26,971	30,832	31,757	32,710	33,69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5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등	여자 위탁소년 전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주·야 교대로 수용소년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근로자 7명 충원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증액 필요	
	최근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급식비 지출 증가로 피복비, 의료비 등 구호 및 교정비 내 타 내역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소년원생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용환경 유지를 위한 구호 및 교정비 편성 인원 160명 확대(1,350명 → 1,510명)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번	일자	매체	내 용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여위탁소년 전담시설 공무원 인력 충원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공무원 7명 인건비, 337백만원)
-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구호및교정비 증액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55명분 확대, 238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선호도를 반영한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 강화 등 교정교육 효과 제고
-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체계적인 처우(치료)제공 및 무의탁 소년원생의 자립지원 강화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 노후 소년원 시설 현대화 및 시설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24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518	△145	23,373	-	-	-	23,373	22,411	95.9	95.9	-	962
2023	25,217	-	25,217	-	-	-	25,217	24,565	97.4	97.4	-	652
2024	26,887	-	26,887	-	△120	-	26,767	26,152	97.3	97.7	-	615
2025	26,971	-	26,971	-	-	-	26,971	26,745	99.2	99.2	-	2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155	3,155	3,155	3,155	-	3,155	2,806	-	349	88.9
2023	3,051	3,051	3,051	3,051	-	3,051	3,051	-	-	100
2024	2,812	2,812	2,812	2,812	-	2,812	2,812	-	-	100
2025	2,880	2,880	2,880	2,880	-	2,880	2,88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일반수용비 등 145백만원 추경 감액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345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236백만원, 구호 및 교정비 237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77백만원, 일반연구비 64백만원 등 962백만원
2023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379백만원, 특경비 86백만원, 연구용역비 56백만원 등 652백만원
2024	- 전용 : 공공요금 30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등 309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15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114백만원, 일반연구비 62백만원 등 615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등 124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9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47백만원, 일반연구비 4백만원 등 2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청소년 비행예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청소년비행예방	5,056	5,577	5,577	5,985	5,656	79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47	5,397	5,056	-	341	5,577	5,527	5,415	5,527	5,415	-	112	5,656
· 교육과정 운영	2,078	2,080	1,997	-	84	2,183	2,141	2,131	2,141	2,131	-	10	2,183
· 공무원 등 인력지원	1,691	1,690	1,505	-	186	1,716	1,716	1,614	1,716	1,614	-	102	1,795
· 임차청사 지원	1,678	1,625	1,554	-	71	1,678	1,670	1,670	1,670	1,670	-	-	1,678
○ 비목별 분류(합계)	5,447	5,397	5,056	-	341	5,577	5,527	5,415	5,527	5,415	-	112	5,656
· 상용임금(110-03)	589	589	588	-	2	608	608	581	608	581	-	27	673
· 일용임금(110-04)	980	980	803	-	177	980	980	946	980	946	-	34	980
· 일반수용비(210-01)	697	705	705	-	-	802	812	812	812	812	-	-	802
· 공공요금(210-02)	357	383	383	-	-	357	361	359	361	359	-	2	357
· 임차료(210-07)	1,578	1,525	1,454	-	71	1,578	1,570	1,570	1,570	1,570	-	-	1,57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8	476	476	-	-	458	452	452	452	452	-	-	458
· 복리후생비(210-12)	9	8	7	-	1	9	9	7	9	7	-	2	9
· 국내여비(220-01)	206	156	143	-	13	206	156	156	156	156	-	-	206
· 사업추진비(240-01)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기타보전금(310-04)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 구호및교정비(320-06)	199	199	131	-	69	199	199	191	199	191	-	8	199
· 고용부담금(320-09)	113	113	107	-	6	119	119	80	119	80	-	39	133
· 공사비(420-03)	60	60	58	-	2	60	60	60	60	60	-	-	60
·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5,447	5,397	5,056	-	341	5,577	5,527	5,415	5,527	5,415	-	112	5,656
· 교육과정 운영	2,078	2,080	1,997	-	84	2,183	2,141	2,131	2,141	2,131	-	10	2,183
- 일반수용비(210-01)	697	705	705	-	-	802	812	812	812	812	-	-	802
- 공공요금(210-02)	357	383	383	-	-	357	361	359	361	359	-	2	35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8	476	476	-	-	458	452	452	452	452	-	-	458
- 국내여비(220-01)	206	156	143	-	13	206	156	156	156	156	-	-	206
- 사업추진비(240-01)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기타보전금(310-04)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 구호및교정비(320-06)	199	199	131	-	69	199	199	191	199	191	-	8	199
- 공사비(420-03)	60	60	58	-	2	60	60	60	60	60	-	-	60
-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공무원 등 인력지원	1,691	1,690	1,505	-	186	1,716	1,716	1,614	1,716	1,614	-	102	1,795
- 상용임금(110-03)	589	589	588	-	2	608	608	581	608	581	-	27	673
- 일용임금(110-04)	980	980	803	-	177	980	980	946	980	946	-	34	980
- 복리후생비(210-12)	9	8	7	-	1	9	9	7	9	7	-	2	9
- 고용부담금(320-09)	113	113	107	-	6	119	119	80	119	80	-	39	133
· 임차청사 지원	1,678	1,625	1,554	-	71	1,678	1,670	1,670	1,670	1,670	-	-	1,678
- 임차료(210-07)	1,578	1,525	1,454	-	71	1,578	1,570	1,570	1,570	1,570	-	-	1,578
-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소년비행예방)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비행유형별 비행예방전문교육 등을 통해 비행성향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교육과정 운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구호 및 교정비 등 제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의 외부 체험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공무직 운전인력 및 유급강사 인건비 지원
- (임차청사 지원) 국유청사가 없는 지역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예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법률 제15757호) 제67조2 (비행예방정책)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제15754호) 제42조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② 추진경위

- 2003. 7. 상담조사제도 도입

※ 상담조사제도 : 청소년비행예방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법원이 청소년비행예방 센터에 교육 및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 2007. 7. 부산, 창원, 광주, 안산, 청주, 대전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07.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등 부적응학생 대안 교육 위탁기관 지정
- 2012. 6.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3.11.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4.12. 부산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6. 5. 제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개시(제주소녀원 병설, 비직제)
- 2017. 4.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대전솔로몬로파크와 분리·개청)
- 2020. 9. 천안, 의정부 등 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50	5,820	5,447	5,577	5,656

- 기타: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사업 수혜자 : 위기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비행예방 교육과정 운영 등

: (2025 예산) 2,183백만원 → (2026 예산) 2,18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구호 및 교정비 등 제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비행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육운영 경비 등 1,436백만원
구호 및 교정비 199백만원
비행예방센터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 등 54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83	○ 일반수용비(210-01) : 802백만원 가. 성폭력예방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비 · 18기관×22,111천원 = 398백만원 나. 교재, 전산, 사무용품 구입비 등 · 18기관×13,833천원 = 249백만원 다. 초기비행청소년 상담강화 멘토링 운영비 50백만원 라.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정신진단 검사비 · 18기관×5,833천원 = 10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57백만원 가. 전기료, 전화요금 등 18기관×1,653천원 ×12월 = 35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58백만원 가.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18기관×3,780천원 = 68백만원 나. 임차청사 관리비 13기관×2,500천원×12월 = 390백만원 ○ 여비(220-01) : 206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 출장비 · 18기관×495천원×12월 = 107백만원 나. 직원전문교육 출장비 등 9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4백만원 가. 법원, 학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 18기관×1,887천원 = 3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7백만원 가. 프로그램 우수이수자 시상 · 18기관×948천원 = 17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199백만원 가. 교육대상자 급식비 · 1,580명×7천원×18기관 = 199백만원 ○ 공사비(420-03) : 60백만원 가. 청사 및 교육장 시설 개보수비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백만원 가. 교육장 집기류 구입비 등 · 18기관×1,666천원 = 30백만원	2,183	○ 일반수용비(210-01) : 802백만원 가. 성폭력예방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비 · 18기관×22,111천원 = 398백만원 나. 교재, 전산, 사무용품 구입비 등 · 18기관×13,833천원 = 249백만원 다. 초기비행청소년 상담강화 멘토링 운영비 50백만원 라.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정신진단 검사비 · 18기관×5,833천원 = 10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57백만원 가. 전기료, 전화요금 등 18기관×1,653천원 ×12월 = 35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58백만원 가.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18기관×3,780천원 = 68백만원 나. 임차청사 관리비 13기관×2,500천원×12월 = 390백만원 ○ 여비(220-01) : 206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 출장비 · 18기관×495천원×12월 = 107백만원 나. 직원전문교육 출장비 등 9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4백만원 가. 법원, 학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 18기관×1,887천원 = 3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7백만원 가. 프로그램 우수이수자 시상 · 18기관×948천원 = 17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199백만원 가. 교육대상자 급식비 · 1,228명×9천원×18기관 = 199백만원 ○ 공사비(420-03) : 60백만원 가. 청사 및 교육장 시설 개보수비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백만원 가. 교육장 집기류 구입비 등 · 18기관×1,666천원 = 30백만원

② 공무직 등 인력지원

: (2025 예산) 1,716백만원 → (2026 예산) 1,795백만원, 79백만원 증액

- (요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의 외부 체험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공무직 운전원 처우 개선분 요구
- (산출) 운전 공무직 17명의 상용임금 65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14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6	○ 상용임금(110-02) : 608백만원 가. 운전원 • 17명×2,980천원×12월 = 608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80백만원 가. 인성교육 등 유급강사료 • 18기관×4,537천원×12월 = 98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7명×500천원 = 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19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17명×583천원×12월=119백만원	1,795	○ 상용임금(110-02) : 673백만원 가. 운전원 • 17명×3,299천원×12월 = 673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80백만원 가. 인성교육 등 유급강사료 • 18기관×4,537천원×12월 = 98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7명×500천원 = 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33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17명×652천원×12월=133백만원

③ 임차청사 지원

: (2025 예산) 1,678백만원 → (2026 예산) 1,678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유청사가 없는 지역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예산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3기관 임차료 1,578백만원, 보증금 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8	○ 임차료(210-07) : 1,578백만원 가. 월 임차료 • 13기관×10,115천원×12월 = 1,578백만원 ○ 보증금(210-07) : 100백만원 가. 보증금 인상분 • 4기관×25,000천원 = 100백만원	1,678	○ 임차료(210-07) : 1,578백만원 가. 월 임차료 • 13기관×10,115천원×12월 = 1,578백만원 ○ 보증금(210-07) : 100백만원 가. 보증금 인상분 • 4기관×25,000천원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5,835명, 대안교육 22,369명 - 상담조사 3,51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24,181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5,234명

2023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5,893명, 대안교육 22,386명 - 상담조사 3,761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11,051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4,730명
2024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2,503명, 대안교육 12,449명 - 상담조사 3,19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94,177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3,864명
2025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5,813명, 대안교육 14,767명 - 상담조사 3,50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24,433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4,1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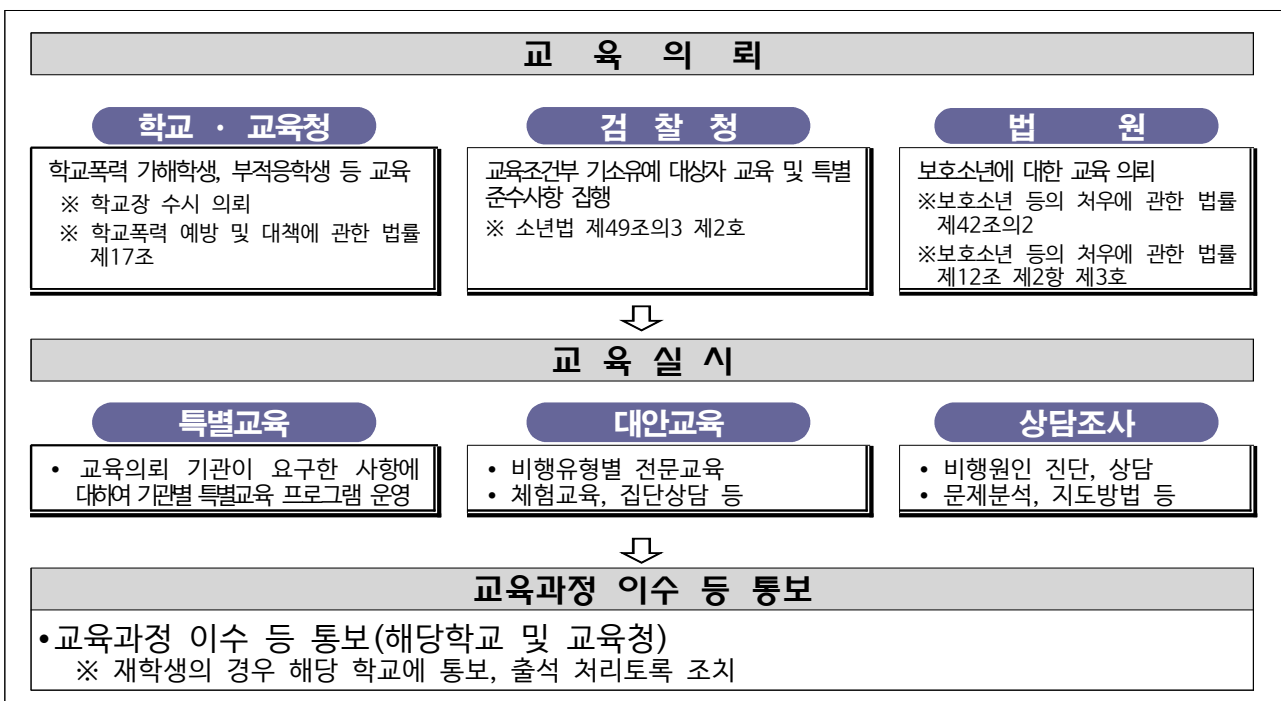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활성화를 통해 비행 예방 및 상습 비행자로의 전이 차단
- 위기·취약 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활성화, 자녀-부모 동반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가정의 보호기능 강화
- 정신질환, 도박·마약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상담·치료 전문기관 연계 등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학교·사회적응력 향상
- 학교·검찰·법원의뢰 교육생 대상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선별 및 치료기관 연계 등 조기 개입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447	5,577	5,447	5,373	5,447	
2025~2029		5,577	5,772	5,945	6,124	6,3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비행진단 및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등을 통해 초기 비행예방 기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750	-	5,750	-	-	-	5,750	5,169	89.9	89.9	-	581
2023	5,820	-	5,820	-	-	-	5,820	5,373	92.3	92.3	-	267
2024	5,447	-	5,447	-	△50	-	5,397	5,056	92.8	93.7	-	341
2025	5,577	-	5,577	-	△50	-	5,527	5,415	97.1	97.8	-	1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유급강사료 210백만원, 구호 및 교정비 214백만원, 국내여비 72백만원 등 581백만원
2023	- 불용 : 유급강사료 111백만원, 구호및교정비 31백만원, 무형자산 57백만원 등 267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유급강사료 177백만원, 구호및교정비 69백만원, 임차료 71백만원 등 341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68백만원, 유급강사료 34백만원, 구호및교정비 8백만원 등 11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1.20.)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220-01	50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갱생보호활동 (1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갱생보호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9.9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갱생보호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2	02-2110-3574	02-2110-3577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재정기획부	김두현 팀장	054-421-052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갱생보호활동	47,789	46,856	46,856	51,830	48,468	1,612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인건비	22,673	22,673	22,673	-	-	23,518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경상비	358	358	358	-	-	341	341	341	341	341	-	-	538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사업비	28,816	28,816	26,945	-	335	26,694	26,694	22,412	26,694	22,412	2,205	-	26,895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3,916	-	-	△5,452	△5,452	△3,375	△5,452	△3,375	-	-	△5,452
· 민간갱생보호법인	1,729	1,729	1,729	-	-	1,755	1,755	1,755	1,755	1,755	-	-	1,827
○ 비목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 민간경상보조 (320-01)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인건비	22,673	22,673	22,673	-	-	23,518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경상비	358	358	358	-	-	341	341	341	341	341	-	-	538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사업비	28,816	28,816	26,945	-	335	26,694	26,694	22,412	26,694	22,412	2,205	-	26,895
·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3,916	-	-	△5,452	△5,452	△3,375	△5,452	△3,375	-	-	△5,452
· 민간갱생보호법인	1,729	1,729	1,729	-	-	1,755	1,755	1,755	1,755	1,755	-	-	1,8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갱생보호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53. 3. 사)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갱생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00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 2022.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 출소자 등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수행
- ※ 민간갱보 허가 : 한국교회('85. 6.), 세계교회('96. 4.), 담안선교회('97. 3.), 빠스카('97. 11.), 양지뜸('04. 12.), 뷰티플라이프('07. 4.), 열린낙원('07. 4.), 굿라이프('20.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5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505	44,519	48,124	46,856	48,4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갱생보호대상자(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갱생보호활동	보조	한국법무 보호복지 공단 및 민간갱생 보호법인	48,468	89.9 수지차보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9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예산 총괄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 (A)	'26 예산 (B)	증감 (B-A)	%
○ 갯생보호활동 (국고보조금)		46,856	48,468	1,612	3.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0,553	52,093	1,540	3.1
수입	보조금	45,101	46,641	1,540	3.4
	자체자금	5,452	5,452	-	-
지출	인건비	23,518	24,660	1,142	4.9
	경상비	341	538	197	57.8
	사업비	26,694	26,895	201	0.8
■ 민간갯생보호법인		1,755	1,827	72	4.1
수입	보조금	1,755	1,827	72	4.1
지출	사업비	1,755	1,827	72	4.1

② 수입 증감내역

① 국고보조금

: (2025 예산) 46,856백만원 → (2026 예산) 48,468백만원, 1,612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856	○ 국고보조금 : 46,856백만원 가. 갯생보호활동 : 46,856백만원 · 1개 공단 × 45,101,000천원 = 45,101백만원 · 8개 민간갯생보호법인 × 219,275천원 = 1,755백만원	48,468	○ 국고보조금 : 48,468백만원 가. 갯생보호활동 : 48,468백만원 · 1개 공단 × 46,641,000천원 = 46,641백만원 · 8개 민간갯생보호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② 자체자금

: (2025 예산) 5,452백만원 → (2026 예산) 5,452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나. 지원금 : 702백만원 · 1개 공단 × 702,000천원 = 702백만원 다. 차입금 : 562백만원 · 1개 공단 × 562,000천원 = 562백만원 라. 후원금 : 2,100백만원 · 1개 공단 × 2,100,000천원 = 2,100백만원 마. 기타수입 : 1,253백만원 ·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나. 지원금 : 902백만원 · 1개 공단 × 902,000천원 = 902백만원 다. 차입금 : 152백만원 · 1개 공단 × 152,000천원 = 152백만원 라. 후원금 : 2,310백만원 · 1개 공단 × 2,310,000천원 = 2,310백만원 마. 기타수입 : 1,253백만원 ·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③ 지출 증감내역

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 (2025 예산) 23,518백만원 → (2026 예산) 24,660백만원, 1,142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정기 인력 증원(10명, 6개월) 인건비 증액 308백만원

'26년 공통처우 개선분 3.5% 증액 834백만원

- (산출) 24,660백만원

• 398명 × 5,163.4천원 × 12월 = 24,6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518	○ 공단 인건비 : 23,518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3,518백만원 • 388명 × 5,051천원 × 12월 = 23,518백만원	24,660	○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 398명 × 5,163.4천원 × 12월 = 24,660백만원

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 (2025 예산) 341백만원 → (2026 예산) 538백만원, 197백만원 증액

- (요구) 신설기관 운영비 증액 5백만원, 특근매식비 증액 143백만원

증원인력 수반경비 증액 15백, 경상비 여건을 감안한 적정요소 증액 34백

- (산출) 538백만원

• 29개소 × 1,546천원 × 12월 = 53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1	○ 공단 경상비 : 341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341백만원 • 28개소 × 1,015천원 × 12월 = 341백만원	538	○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 29개소 × 1,546천원 × 12월 = 538백만원

③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2025 예산) 26,694백만원 → (2026 예산) 26,895백만원, 201백만원 증액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2025 예산) 4,724백만원 → (2026 예산) 8,377백만원, 3,653백만원 증액

- (요구) 전남기술교육원 신설(3년차) 증액 385백만원, 보호수용시설 확충 증액 4,068백만원

노후 설비 등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감액 800백만원

- (산출) 8,377백만원

• 28개소 × 299,178천원 = 8,37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24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4,724백만원 - 28개소 × 168,714천원 = 4,724백만원	8,377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8,377백만원 - 28개소 × 299,178천원 = 8,377백만원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2025 예산) 21,970백만원 → (2026 예산) 18,518백만원, 3,452백만원 감액

- (요구) 생활지원, 취·창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3,500백만원, '26년 기간직 최저임금 연동소요 증액 33백만원, '26년 급량비 상승에 따른 증액 15백만원

- (산출) 18,518백만원

• 28개소 × 661,357천원 = 18,51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970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21,970백만원 • 28개소 × 784,643천원 = 21,970백만원	18,518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18,518백만원 • 28개소 × 661,357천원 = 18,518백만원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2025 예산) 1,755백만원 → (2026 예산) 1,827백만원, 72백만원 증액

- (요구)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운영비 예산으로 증액 72백만원

- (산출) 1,827백만원

• 8개소 × 234,000천원 = 1,82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55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755백만원 • 8개 민간법인 × 219,375천원 = 1,755백만원	1,827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827백만원 • 8개 민간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자 사회복귀율 (단위: %)	목표	61.5	63.0	63.4	63.6	63.7	최근 3년 평균 실적 및 추세 고려, 전년도 대비 상향된 목표 설정	주요 갱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복귀율 환산 점수 (숙식제공, 주거지원, 취업지원)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자료 표집
	실적	63.0	63.3	63.6	-	-			
	달성도	102.4	100.5	100.3	-	-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 점)	목표	90.9	90.9	90.9	90.9	90.9	사업별 최근 3년 평균 점수 및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결과 점수(PCSI 2.0 모델 적용)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외부 전문 기관 활용)
	실적	89.6	91.4	92.8	-	-			
	달성도	98.6	100.6	10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숙식 제공	긴급 지원	기타 지원	주거 지원	결혼 지원	가족 복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사전 상담	적응력 예측	심리 상담	사후 관리	사회 향상	학업 지원
'24	159,182	1,150	10,227	19,624	682	126	1,921	4,547	5,167	8,044	2	33,143	21,423	18,047	28,383	4,780	2,916
'23	141,508	1,301	10,201	20,668	147	121	1,646	4,389	5,179	7,762	4	38,124	-	16,088	28,008	4,661	3,209
'22	128,072	1,419	9,402	19,163	173	121	1,313	3,995	5,374	7,729	2	31,847	-	14,923	25,310	4,421	2,880
'21	119,589	1,494	8,457	19,609	169	112	974	4,044	5,122	7,019	5	29,467	-	13,816	22,812	4,202	2,287
'20	101,663	1,634	7,619	17,201	235	100	788	4,280	4,659	6,605	2	21,332	-	12,669	19,172	3,716	1,651

【민간갱생보호법인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숙식 제공	상담 자료	재사회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긴급 원호	사전 상담	사후 관리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기타
'24	8,948	431	831	2,725	120	104	204	2,916	471	2	3	1,141
'23	8,710	425	916	2,950	145	141	185	2,176	523	1	9	1,239
'22	7,235	406	707	2,656	160	104	239	1,030	427	0	0	1,506
'21	10,223	383	1,908	5,507	107	112	245	360	272	0	0	1,329
'20	5,131	347	500	2,156	73	68	204	495	268	0	0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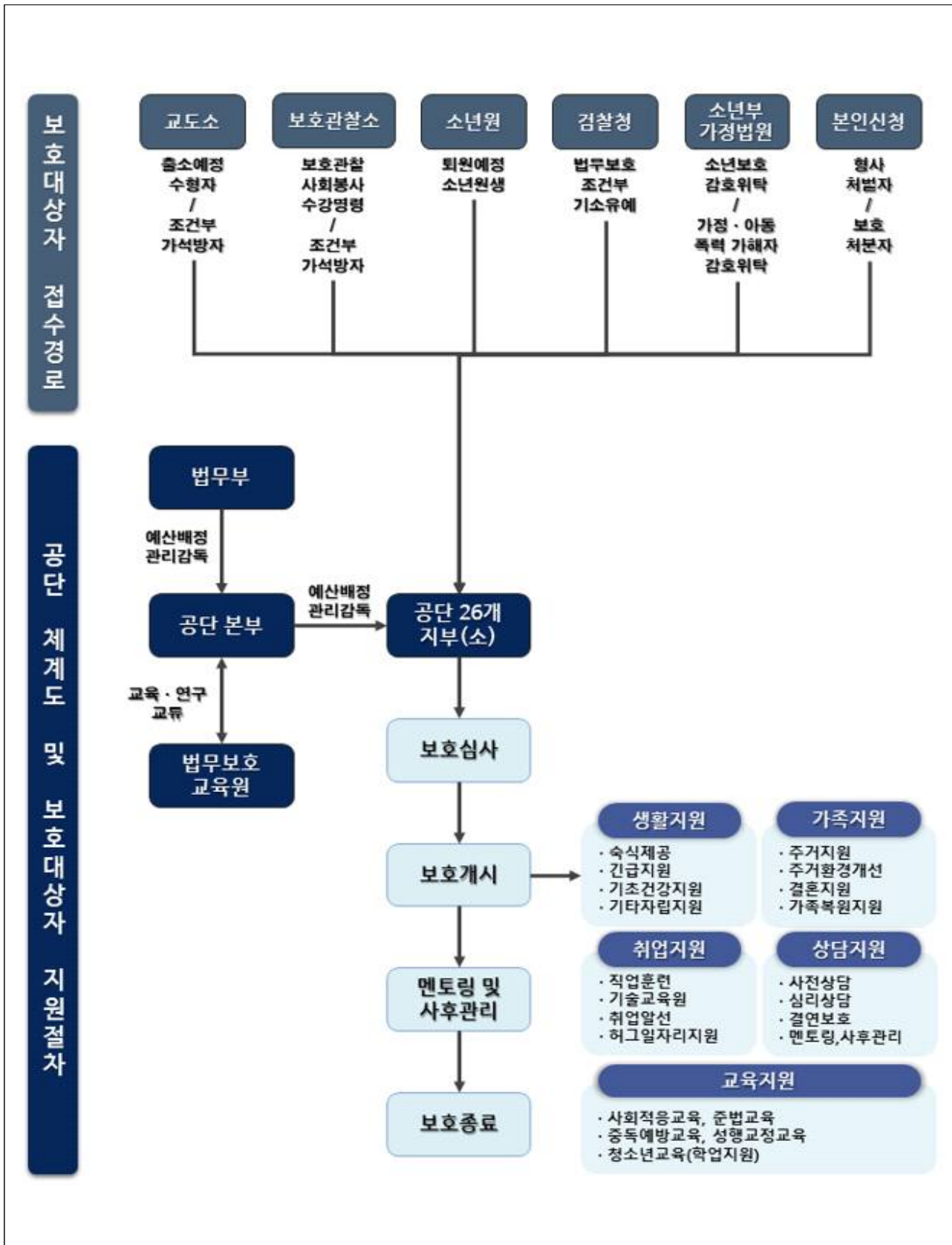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갱생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 특수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성공적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보호수용 및 감호위탁 등 형사정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지원	숙 식 제 공	무연고 보호대상자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해 최대 2년간 숙식, 교육 등을 지원
	긴 급 지 원	질병과 사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 대상자에게 생활비, 통신비,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 초 건 강 지 원	신체·정신적 기초건강을 위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 유도
	기 타 자 립 지 원	의탁알선, 주민등록 재등록,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가족지원	주 거 지 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 거 환 경 개 선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보수로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조성 지원
	결 혼 지 원	사실혼 관계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가 족 친 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
	접 견 지 원	수형자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의 접견 교통비 또는 동행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직 업 훈 련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단 직영훈련 또는 외부 전문 위탁교육 지원
	취 업 알 선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출소자의 취업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허 그 일 자 리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취업 후 적응까지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창 업 지 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상담지원	사 전 상 담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개인별 상담을 통한 출소 후 자립계획 지원
	적 응 력 예 측 검 사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심 리 상 담	갱생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지원
	결 연 보 호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및사후관리	사회적응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위해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상담 지원
교육지원	사 회 적 응 교 육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기초소양, 문화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준 법 교 육	생애주기별 생활 속 기초 법률 상식이 포함된 법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 독 예 방 교 육	마약, 알콜,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 예방 교육 지원
	성 행 교 정 교 육	성행교정이 필요한 대상자(보호수용, 감호위탁 등)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청 소 년 교 육	청소년 대상자 및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학습지도 등 교육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124	46,856	61,961	63,820	65,735	
2025~2029		46,856	48,468	49,922	51,419	52,9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결산('23. 6.) :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효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법사위 결산('24. 6.)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법사위 결산('25. 6.)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정기감사('20. 5.) : 자체수입 예·결산 업무 철저
- 자체평가

평가년도	평균	2022	2023	2024	비고
평가점수	81.2	81.8	82.5	79.3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 번	일 자	매 체	내 용
1	'23. 7. 3.	서울신문	○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뚫다] 기획기사 - “출소자 돌봐야 사회도 안전해져” 보도자료
2	'23. 7. 3.	서울신문	○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뚫다] 기획기사 - “최대 2년간 숙소 주고 상담...추가 범죄 막는 초석” 보도자료
3	'23. 8. 14.	법률신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 범죄자 관련 기획기사 - “재범의 악순환에서 회복의 선순환으로” 보도자료
4	'23. 8. 16.	한경매거진	○ 심리상담직원 인터뷰(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등) 기획보도 - 흉악범들과 기 싸움 즐기는 직업 보도자료
5	'23. 12. 8.	조선일보	○ 조선일보 박은주 LIVE 기획보도 - “범죄가 질병”인 사람을 위한 치료법 보도자료
6	'24. 10. 10.	이데일리	○ 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관련 기사 - 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보도자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조치
▪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실적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 '23. 민간법인 평가지표 개발 완료('23. 11.), '24. 민간법인 평가 실시('24. 4.) ▪ '25년 예산편성부터 보조비목·세목 세분화 반영 완료 ▪ '26년 예산편성부터 직접지출 사업비 확대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각종 법무보호복지사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노력
- 특수 소외·취약 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의 성공적 자립 정착 지원으로 선진 사법복지 구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
 - 평가수행기관 : 기획재정부(평가시기 : '24. 1월~6월)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 71.04점(보통)
 - 평가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평가시기 : '25. 4월~6월)
-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양호
 - 평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평가시기 : '25. 3월~5월)
- 4) 민간갱생보호법인의 2024년 민간법인(8개)평가 결과 : 탁월(2개), 우수(3개), 보통(3개)
 - 평가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평가시기 : '25. 2월~4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4.0(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 등을 위해 지속 노력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 실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로 대체
 -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양호'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505	-	40,505	-	-	-	40,505	40,486	99.9	99.9	-	19
2023	44,519	-	44,519	-	-	-	44,519	44,503	99.9	99.9	-	16
2024	48,124	-	48,124	-	-	-	48,124	47,789	99.3	99.3	-	335
2025	46,856	-	46,856	-	-	-	46,856	44,651	95.3	95.3	2,205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0,505	40,505	40,505	40,505	-	40,505	40,486	-	19	99.9
2023	44,519	44,519	44,519	44,519	-	44,519	44,503	-	16	99.9
2024	48,124	48,124	48,124	48,124	-	48,124	47,789	-	335	99.3
2025	46,856	46,856	46,856	46,856	-	46,856	44,651	2,205	-	95.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경상경비 절감 19백만원
2023	- 불용 : 경상경비 절감 16백만원
2024	- 불용 : 신설기관 건립 토지매입비 절감 335백만원
2025	- 이월 : 전남기술교육원 건축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개시에 따라 계약 지연 및 보증서 발급 불가로 인한 선급금 지급 부적절 등 건립비 이월 2,20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비 이월 2,205백만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6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치료감호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국립법무병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146	12,581	12,581	14,776	14,776	2,195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680	12,680	12,146	-	534	12,581	12,581	12,357	12,581	12,357	-	224	14,776
· 병동시설 유지관리	3,727	3,786	3,571	-	215	3,203	3,233	3,165	3,233	3,165	-	68	5,193
· 구호및교정비 지원	4,343	4,343	4,341	-	2	4,686	4,686	4,686	4,686	4,686	-	-	4,734
· 공무직 인력지원	1,546	1,540	1,254	-	286	1,594	1,594	1,478	1,594	1,478	-	116	1,744
· 병동 운영 관리	3,064	3,013	2,982	-	31	3,099	3,069	3,028	3,069	3,028	-	41	3,105
○ 비목별 분류(합계)	12,680	12,680	12,146	-	534	12,581	12,581	12,357	12,581	12,357	-	224	14,776
· 상용임금(110-03)	1,278	1,278	992	-	286	1,318	1,318	1,207	1,318	1,207	-	111	1,441
· 일반수용비(210-01)	626	640	640	-	-	640	701	701	701	701	-	-	998
· 공공요금(210-02)	752	752	752	-	-	752	752	752	752	752	-	-	652
· 피복비(210-03)	6	6	6	-	-	6	6	6	6	6	-	-	6
· 임차료(210-07)	578	544	544	-	-	578	521	521	521	521	-	-	185
· 유류비(210-08)	595	595	595	-	-	595	595	595	595	595	-	-	595
· 사설장비유자비(210-09)	404	463	456	-	7	404	434	434	434	434	-	-	404
· 재료비(210-1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34
· 복리후생비(210-12)	18	12	12	-	-	18	18	13	18	13	-	5	18
· 관리용역비(210-15)	131	99	99	-	-	131	97	97	97	97	-	-	246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여비(220-02)	22	22	21	-	1	22	22	22	22	22	-	-	22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107	-	30	137	137	96	137	96	-	41	137
· 정책연구비(260-02)	52	52	52	-	-	72	72	72	72	72	-	-	72
· 포상금(310-03)	-	-	-	-	-	-	-	-	-	-	-	-	6
· 기타보전금(310-04)	143	143	143	-	-	143	143	143	143	143	-	-	143
· 구호및교정비(320-06)	4,343	4,343	4,341	-	2	4,686	4,686	4,686	4,686	4,686	-	-	4,734
· 고용부담금(320-09)	250	250	250	-	-	258	258	258	258	258	-	-	285
· 실시설계비(420-02)	82	82	82	-	-	72	72	72	72	72	-	-	72
· 공사비(420-03)	1,850	1,850	1,718	-	132	1,560	1,560	1,492	1,560	1,492	-	68	1,560
· 감리비(420-04)	8	8	-	-	8	8	8	8	8	8	-	-	8
· 자산취득비(430-01)	1,383	1,383	1,315	-	68	1,159	1,159	1,159	1,159	1,159	-	-	3,149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680	12,680	12,146	-	534	12,581	12,581	12,357	12,581	12,357	-	224	14,776
· 병동시설 유지관리	3,727	3,786	3,571	-	215	3,203	3,233	3,165	3,233	3,165	-	68	5,19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4	463	456	-	7	404	434	434	434	434	-	-	404
- 실시설계비(420-02)	82	82	82	-	-	72	72	72	72	72	-	-	72
- 공사비(420-03)	1,850	1,850	1,718	-	132	1,560	1,560	1,492	1,560	1,492	-	68	1,560
- 감리비(420-04)	8	8	-	-	8	8	8	8	8	8	-	-	8
- 자산취득비(430-01)	1,383	1,383	1,315	-	68	1,159	1,159	1,159	1,159	1,159	-	-	3,149
· 구호및교정비 지원	4,343	4,343	4,341	-	2	4,686	4,686	4,686	4,686	4,686	-	-	4,734
- 구호및교정비(320-06)	4,343	4,343	4,341	-	2	4,686	4,686	4,686	4,686	4,686	-	-	4,734
· 공무직 인력지원	1,546	1,540	1,254	-	286	1,594	1,594	1,478	1,594	1,478	-	116	1,744
- 상용임금(110-03)	1,278	1,278	992	-	286	1,318	1,318	1,207	1,318	1,207	-	111	1,441
- 복리후생비(210-12)	18	12	12	-	-	18	18	13	18	13	-	5	18
- 고용부담금(320-09)	250	250	250	-	-	258	258	258	258	258	-	-	285
· 병동 운영관리	3,064	3,013	2,982	-	31	3,099	3,069	3,028	3,069	3,028	-	41	3,105
- 일반수용비(210-01)	626	640	640	-	-	640	701	701	701	701	-	-	998
- 공공요금(210-02)	752	752	752	-	-	752	752	752	752	752	-	-	652
- 피복비(210-03)	6	6	6	-	-	6	6	6	6	6	-	-	6
- 임차료(210-07)	578	544	544	-	-	578	521	521	521	521	-	-	185
- 유류비(210-08)	595	595	595	-	-	595	595	595	595	595	-	-	595
- 재료비(210-1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34
- 관리용역비(210-15)	131	99	99	-	-	131	97	97	97	97	-	-	246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여비(220-02)	22	22	21	-	1	22	22	22	22	22	-	-	22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107	-	30	137	137	96	137	96	-	41	137
- 정책연구비(260-02)	52	52	52	-	-	72	72	72	72	72	-	-	72
- 포상금(310-03)	-	-	-	-	-	-	-	-	-	-	-	-	6
- 기타보전금(310-04)	143	143	143	-	-	143	143	143	143	143	-	-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병동시설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병동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 (구호 및 교정비 지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등 정상적 경비 지원
- (공무직 인력지원) 국립법무병원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임상심리사 및 사회복지사, 청소원, 운전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조리사 등)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병동 운영관리)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 수용 및 의료재활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기타 제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② 추진경위
 - 1987. 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3. 11.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45	11,721	12,680	12,581	14,7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 사업 수혜자 : 치료감호처분 대상자, 정신감정 의뢰 대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병동시설 유지관리

: (2025 예산) 3,203백만원 → (2026 예산) 5,193백만원, 1,990백만원 증액

- (요구) AI 기반 범법 정신질환자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구축(1병동→13개병동 확대) 예산 요구
- (산출) AI 기반 범법 정신질환자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1,990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4백만원 가. 통신·전기·CCTV·전자경비시스템·보일러·가스히트펌프 등 유지 보수비 404백만원 ○ 건설비(420-00) : 1,640백만원 가. 병동 시설 개보수 800백만원 나. 식당 등 기타시설 개보수 8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159백만원 가. 조리장비, 사무가구 구입비 등 182백만원 나. 방호장비 구입 301백만원 다. 발달장애인 재활 시스템 구축 등 163백만원 라. 고화질 CCTV 설비 교체 193백만원 마. 노후 보일러 교체 등 320백만원	5,19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4백만원 가. 통신·전기·CCTV·전자경비시스템·보일러·가스히트펌프 등 유지 보수비 404백만원 ○ 건설비(420-00) : 1,640백만원 가. 병동 시설 개보수 800백만원 나. 재난대비 시설 보강 공사 8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149백만원 가. 조리장비, 사무가구 구입비 등 182백만원 나. 재난대비, 보안장비, 직업훈련 장비 등 구입 864백만원 다. AI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등 2,103백만원

② 구호 및 교정비 지원

: (2025 예산) 4,686백만원 → (2026 예산) 4,734백만원, 48백만원 증액

- (요구)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로 급식비 단가(5,313원→5,441원) 인상 요구
- (산출) 수용자 급량비 48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86	○ 구호및교정비(320-06) : 4,686백만원 가. 수용자 급량비 2,181백만원 · 수용자 급식비 1,022명×5,313원×365일 = 1,982백만원 · 경축일 특식가산 등 199백만원 나. 수용자 의료비 2,383백만원 · 건강관리공단예탁금 383백만원 · 일반의료비 등 2,000백만원 다. 수용자 피복비 122백만원	4,734	○ 구호및교정비(320-06) : 4,734백만원 가. 수용자 급량비 2,229백만원 · 수용자 급식비 1,022명×5,441원×365일 = 2,030백만원 · 경축일 특식가산 등 199백만원 나. 수용자 의료비 2,383백만원 · 건강관리공단예탁금 383백만원 · 일반의료비 등 2,000백만원 다. 수용자 피복비 122백만원

③ 공무직 인력지원

: (2025 예산) 1,594백만원 → (2026 예산) 1,744백만원, 150백만원 증액

- (요구) 감호실무관 10명에 대한 위험수당(4만원) 신설 요구
- (산출) 감호실무관(10명) 위험수당(4만원) 및 처우개선편(3.8%)을 반영한 공무직 근로자(36명), 상용임금 123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7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4	○ 상용임금(110-02) : 1,318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 10명×3,566천원×12월 = 428백만원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 3명×2,282천원×12월 = 82백만원 다. 임상심리사 등 · 13명×3,107천원×12월 = 485백만원 라. 조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 10명×2,692천원×12월 = 32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8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36명×500천원 = 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58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36명×597천원×12월=258백만원	1,744	○ 상용임금(110-02) : 1,441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 10명×3,717천원×12월 = 446백만원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조리사, 청소원 · 16명×2,391천원×12월 = 459백만원 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 8명×4,750천원×12월 = 456백만원 라. 운전원, 사서 · 2명×3,333천원×12월 = 8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8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36명×500천원 = 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85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 36명×660천원×12월=285백만원

④ 병동 운영관리

: (2025 예산) 3,099백만원 → (2026 예산) 3,105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우수직원 포상금 신설 요구
- (산출)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등 2,525백만원, 임상연구비 등 209백만원, 기타 경비 365백만원, 포상금 6백만원 신설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99	○ 일반수용비(210-01) : 639백만원 가.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423백만원 나.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기타경비 167백만원 다.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36백만원 라.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13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52백만원 가. 전기요금 124백만원 나. 상하수도 요금 등 62백만원 다. 집중치료병동 전기요금 등 566백만원 ○ 피복비(210-03) : 6백만원 가. 공무직 근무복 36명×156천원 = 6백만원 ○ 임차료(210-07) : 578백만원 가. 영상의학장비 임차료 등 578백만원 ○ 유류비(210-08) : 595백만원 가. 병동 난방비 등 595백만원 ○ 재료비(210-11) : 14백만원 가. 직업훈련실습재료비 7과정 1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32백만원	3,105	○ 일반수용비(210-01) : 998백만원 가.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628백만원 나.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기타경비 174백만원 다.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46백만원 라.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15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52백만원 가. 전기요금 590백만원 나. 상하수도 요금 등 62백만원 ○ 피복비(210-03) : 6백만원 가. 공무직 근무복 36명×156천원 = 6백만원 ○ 임차료(210-07) : 185백만원 가. 영상의학장비 임차료 등 185백만원 ○ 유류비(210-08) : 595백만원 가. 병동 난방비 등 595백만원 ○ 재료비(210-11) : 34백만원 가. 직업훈련실습재료비 7과정 3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46백만원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88백만원 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처리 44백만원 ○ 여비(220-00) : 26백만원 가. 국내여비 4백만원 나.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국외출장비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5백만원 ○ 연구비(260-00) : 20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7백만원 나. 프로그램개발 정책연구비 52백만원 다. 발달장애인 치료재활 전문프로그램 개발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43백만원 가. 일반근로작업 등 143백만원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194백만원 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처리 52백만원 ○ 여비(220-00) : 26백만원 가. 국내여비 4백만원 나.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국외출장비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5백만원 ○ 연구비(260-00) : 20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7백만원 나. 프로그램개발 정책연구비 72백만원 ○ 포상금(310-03) : 6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6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43백만원 가. 일반근로작업 등 14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평균수용인원 825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중독자에 대한 신약투여 등 치료 ○ 정신감정 174명, 무상외래진료 1,429명, 의료재활치료 1,137명,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3,903명 ○ 제과제빵 등 5개 직종 직업훈련 수료 257명(자격취득 0명)
2023	○ 평균수용인원 814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중독자에 대한 신약투여 등 치료 ○ 정신감정 252명, 무상외래진료 1,300명, 의료재활치료 2,303명,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5,921명 ○ 제과제빵 등 5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620명(자격취득 0명)
2024	○ 평균수용인원 804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중독자에 대한 신약투여 등 치료 ○ 정신감정 185명, 무상외래진료 1,163건, 의료재활치료 2,154건,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6,932명 ○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310명, 수료 214명(자격취득 36명)
2025	○ 평균수용인원 810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 정신감정 209명, 무상외래진료 1,070건, 의료재활치료 2,728건,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6,020명 ○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436명, 수료 227명(자격취득 7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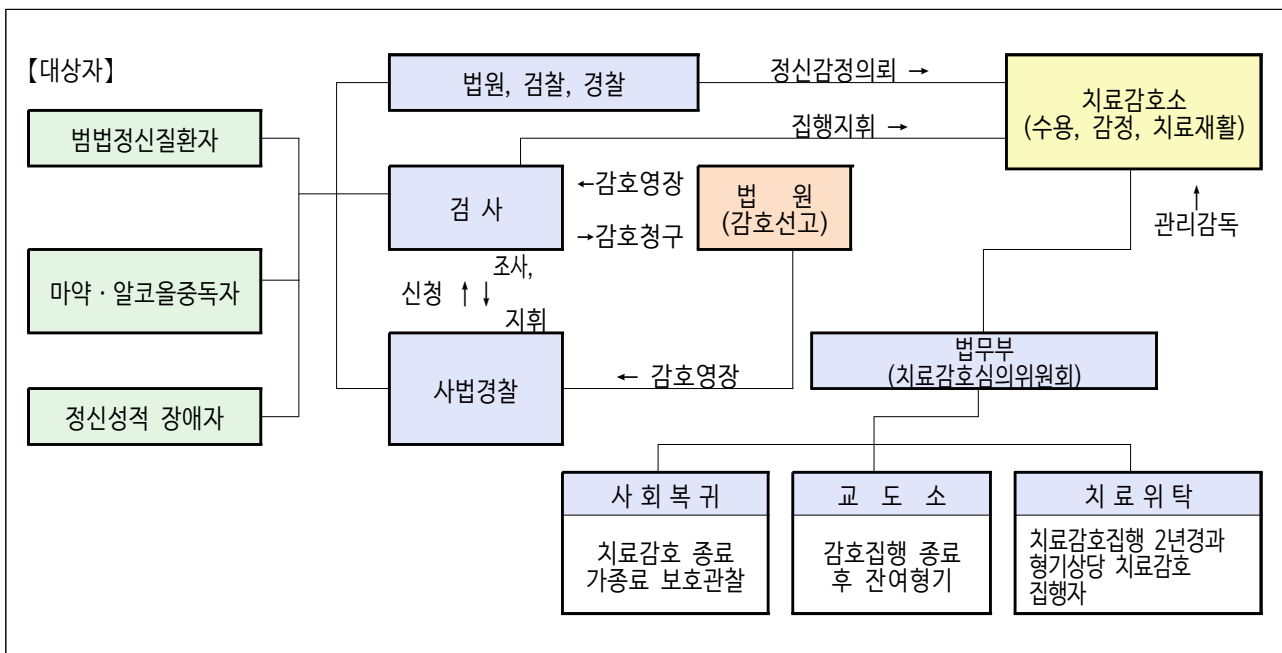
- 민간스카우트 초빙, 퇴직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등 채용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사 확보, 약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인력 결원 발생 시 수시 채용,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로 치료감호 효율성 향상 기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재범 방지(2025년 재입원을 목표 5.4%)

- 직업훈련과목 신설 등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피치료감호자 퇴원 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을 통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법정신 의학 연구 및 뇌과학 연구 등 치료기법 개발에 활용하여 치료효과 제고(촬영 건수 : MRI 2,350건, CT 1,790건)
- AI 행동분석시스템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선진 치료환경 구축을 통해 이상·공격행동이 지속되는 발달장애 및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실시
- 피치료감호자 출원 후에도 국립법무병원 및 전국 5대 국립정신병원에서 무상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2,680	12,581	12,236	11,000	11,000	
2025~2029		12,581	14,659	15,099	15,552	16,01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병동운영 인력 확충 필요	
- '22년 국회 예결위	○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관리체계 전환 필요	
- '22년 국회 국정감사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실시간 연계 미구축	
- '24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및 병동 운영 인력 확충 필요	2022년 소요정원에서 간호사 등 13명 인력 확보 2023년 소요정원에서 간호사 등 13명 인력 확보 - 정신과 의사 확충(2024. 12. 6.8명 → 2025. 12. 9.9명)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관리체계 전환 필요	2024. 8. 발달장애 전문병동 개설·운영 ※ 연구용역 수행 :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실시간 연계 미구축	2023년 관련 예산 확보하여 2023. 12. 구축 완료, 실시간 연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신과 의사 등 인력 확보 및 AI 행동분석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
-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내실화로 피치료감호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845	-	9,845	-	-	-	9,845	9,770	99.2	99.2	-	75
2023	11,721	-	11,721	-	-	-	11,721	11,521	98.3	98.3	-	200
2024	12,680	-	12,680	-	-	-	12,680	12,146	95.8	95.8	-	534
2025	12,581	-	12,581	-	-	-	12,581	12,357	98.2	98.2	-	2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상용임금 62백만원, 일반연구비 8백만원 등 74백만원
2023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11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46백만원 등 200백만원
2024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28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132백만원 등 534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원 인건비 11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68백만원 등 22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보호관찰활동 (16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보호관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보호관찰소	-	-	-

가.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보호관찰활동	16,006	17,102	17,102	19,310	17,682	580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 보호관찰·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	11,135	11,135	10,971	-	165	11,932	11,932	11,699	11,932	11,699	-	233	12,025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877	1,877	1,877	-	-	1,777	1,777	1,750	1,777	1,750	-	27	2,157
· 사업 지원 경비	3,102	3,152	3,152	-	-	3,393	3,455	3,455	3,455	3,455	-	-	3,500
○ 비목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 일반수용비(210-01)	7,159	7,064	7,062	-	2	7,720	7,637	7,631	7,637	7,631	-	6	7,77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5	730	730	-	-	625	647	603	647	603	-	44	645
· 특근매식비(210-05)	78	75	75	-	-	78	113	113	113	113	-	-	97
· 임차료(210-07)	-	-	-	-	-	-	-	-	-	-	-	-	60
· 유류비(210-08)	150	153	153	-	-	150	154	154	154	154	-	-	150
· 재료비(210-11)	175	165	165	-	-	175	197	197	197	197	-	-	17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60
· 국내여비(220-01)	2,908	2,958	2,958	-	-	3,199	3,261	3,261	3,261	3,261	-	-	3,199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67	67	67	-	-	67
· 특정업무경비(250-03)	2,948	2,948	2,786	-	162	2,979	2,979	2,796	2,979	2,796	-	183	2,977
· 정책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 포상금(310-03)	-	-	-	-	-	-	-	-	-	-	-	-	87
· 기타보전금(310-04)	-	-	-	-	-	205	205	205	205	205	-	-	206
· 구호 및 교상비(320-06)	57	57	57	-	-	57	57	57	57	57	-	-	77
· 공사비(420-03)	731	731	731	-	-	531	531	531	531	531	-	-	581
· 자산취득비(430-01)	1,146	1,146	1,146	-	-	1,246	1,246	1,219	1,246	1,219	-	27	1,256
·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114	16,164	15,999	-	165	17,102	17,164	16,905	17,164	16,905	-	259	17,682
· 보호관찰·수감명령·	11,135	11,135	10,971	-	165	11,932	11,932	11,699	11,932	11,699	-	233	12,025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사회봉사명령 집행													
-일반수용비(210-01)	7,159	7,064	7,062	-	2	7,720	7,637	7,631	7,637	7,631	-	6	7,7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5	730	730	-	-	625	647	603	647	603	-	44	645
-특근매식비(210-05)	78	75	75	-	-	78	113	113	113	113	-	-	97
-유류비(210-08)	150	153	153	-	-	150	154	154	154	154	-	-	150
-재료비(210-11)	175	165	165	-	-	175	197	197	197	197	-	-	175
-특정업무경비(250-03)	2,948	2,948	2,786	-	162	2,979	2,979	2,796	2,979	2,796	-	183	2,977
-기타보전금(310-04)	-	-	-	-	-	205	205	205	205	205	-	-	206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877	1,877	1,877	-	-	1,777	1,777	1,750	1,777	1,750	-	27	2,157
-임차료(210-07)	-	-	-	-	-	-	-	-	-	-	-	-	60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60
-공사비(420-03)	731	731	731	-	-	531	531	531	531	531	-	-	581
-자산취득비(430-01)	1,146	1,146	1,146	-	-	1,246	1,246	1,219	1,246	1,219	-	27	1,256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00
· 사업지원경비	3,102	3,152	3,152	-	-	3,393	3,455	3,455	3,455	3,455	-	-	3,500
-국내여비(220-01)	2,908	2,958	2,958	-	-	3,199	3,261	3,261	3,261	3,261	-	-	3,199
-국외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67	67	67	-	-	67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0
-포상금(310-03)	-	-	-	-	-	-	-	-	-	-	-	-	87
-구호및교정비(320-06)	57	57	57	-	-	57	57	57	57	57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소요되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보호관찰 위원 활동 사례금, 직원 매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전국 보호관찰 기관의 시설 운영 및 장비 취득·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지원 경비) 여비, 활동비 등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18. 6. 13.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실시
- '20. 1. 7.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상한액 상향(300만원 →500만원)
- '21. 10. 21. 스토킹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22. 1. 2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제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77	14,002	16,114	17,102	17,6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 기관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 (2025) 11,932백만원 → (2026) 12,025백만원, 93백만원 증액

- (요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관찰 운영 강화 및 전국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집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소년보호관찰 운영 강화 76백만원 증액
특근매식비 지급단가(7→9천원) 인상에 따른 19백만원 증액
보호관찰활동 부서활동비 절감 2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932	○ 일반수용비(210-01) : 7,720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396백만원	11,932	○ 일반수용비(210-01) : 7,775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401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수강명령 집행 3,834백만원 • 58기관×5,509천원×12월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64백만원 • 58기관×1,529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2,426백만원 • 58기관×3,486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2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78백만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78백만원 • 58기관×4명×7천원×4일×12월 ○ 유류비(210-08) :150백만원 ○ 재료비(210-11) : 175백만원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175백만원 • 3,647개×4,000원×12회 ○ 특정업무경비(250-03) : 2,979백만원 가. 보호관찰활동비 2,959백만원 • 1,897명×130천원×12월 나. 부서활동비 :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05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심리치료비) 168백만원 나. 차상위계층(심리치료비, 약제진료비) : 37백만원		나. 수강명령 집행 3,854백만원 • 58기관×5,524천원×12월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84백만원 • 58기관×1,557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2,436백만원 • 58기관×3,5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4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97백만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97백만원 • 58기관×4명×9천원×3.87일×12월 ○ 유류비(210-08) :150백만원 ○ 재료비(210-11) : 175백만원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175백만원 • 3,647개×4,000원×12회 ○ 특정업무경비(250-03) : 2,977백만원 가. 보호관찰활동비 2,959백만원 • 1,897명×130천원×12월 나. 부서활동비 : 18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06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심리치료비) 108백만원 나. 차상위계층 및 위기상황자 등 (심리치료비, 약제진료비) : 98백만원

②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 (2025) 1,777백만원 → (2026) 2,157백만원, 380백만원 증액

- (요구) 소년사법지원센터(가칭) 시범운영 청사 임차·시설 조성 신규 반영 및 보호관찰소 청사 보수 등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임차, 공간 조성 및 집기 구입 380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77	○ 공사비(320-06) : 531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531백만원 • 58기관×763천원×12월 ○ 자산취득비(430-01) : 1,24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46백만원 • 58기관×1,790천원×12월	2,157	○ 임차료(210-07) : 6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임차료 6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관리비 6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 200백만원 가. 소년사법지원센터 청사 보증금 200백만원 ○ 공사비(320-06) : 581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581백만원 • 58기관×834천원×12월 ○ 자산취득비(430-01) : 1,25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56백만원 • 58기관×1,804천원×12월

③ 사업지원경비

: (2025) 3,393백만원 → (2026) 3,500백만원, 107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보호관찰소 사업 지원 경비 전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소년 수강명령 교육생, 구인·유치 대상자 중식지원 20백만원 증액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등 우수직원 포상금 87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93	○ 국내여비(220-01) : 3,199백만원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3,199백만원 · 58기관×4,596천원×12월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 2회×15,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백만원 가. 유관 기관 간담회 경비 등 67백만원 · 58기관×1,157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2과제×20,000천원 - ○ 구호및교정비(320-06) : 57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및 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식비 57백만원	3,500	○ 국내여비(220-01) : 3,199백만원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3,199백만원 · 58기관×4,596천원×12월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 2회×15,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백만원 가. 유관 기관 간담회 경비 등 67백만원 · 58기관×1,157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2과제×20,000천원 ○ 포상금(260-02) : 87백만원 가. 보호관찰 업무 우수직원 등 포상 87백만원 · 58기관×1,5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77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및 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식비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1~'23) 보호관찰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재범률(%)	목표	5.31	5.21				'23년도 재범률 추세치를 '22년도 재범률 실적치(5.22%) 보다 0.01% 낮은 5.21%로 설정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중 재범인원/강력사 범 처우프로그램 실시자)X100	전국 58개 보호 관찰기관 작성한 처우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5.27	5.20						
	달성도	101.7	100.1						
('24년 신규 지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목표	-	신규	5.22	5.15	5.15	최근 3년('22년~'24년) 평균 실적인 5.16% 보다 0.01% 하향된 5.15%로 설정	(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 중 재범인원/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100	보호관찰기관 통계보고서
	실적	5.3	5.2	5.0	-	-			
	달성도	-	-	104.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보호관찰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실시인원)	232,591	266,531	271,523	251,264	244,349
보호관찰	95,861	93,654	94,375	93,366	96,668
사회봉사명령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수감명령	58,582	77,622	84,323	74,457	72,350
기소유예 교육 등	16,139	18,471	22,919	21,522	19,059

○ 조사업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3,176	23,175	22,977	23,688	21,703
판결전조사	1,596	1,618	1,273	1,431	1,373
법원결정전조사	17,813	18,096	18,570	18,039	16,608
검사결정전조사	909	932	527	1,194	682
청구전조사	1,493	1,344	1,490	1,513	1,182
환경조사	1,365	1,185	1,117	1,511	1,858

○ 치료명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실시인원)	1,559	1,614	1,307	1,149	1,131
집행유예	1,378	1,426	1,164	1,022	1,017
선고유예	5	8	9	4	3
기소유예	176	180	134	123	1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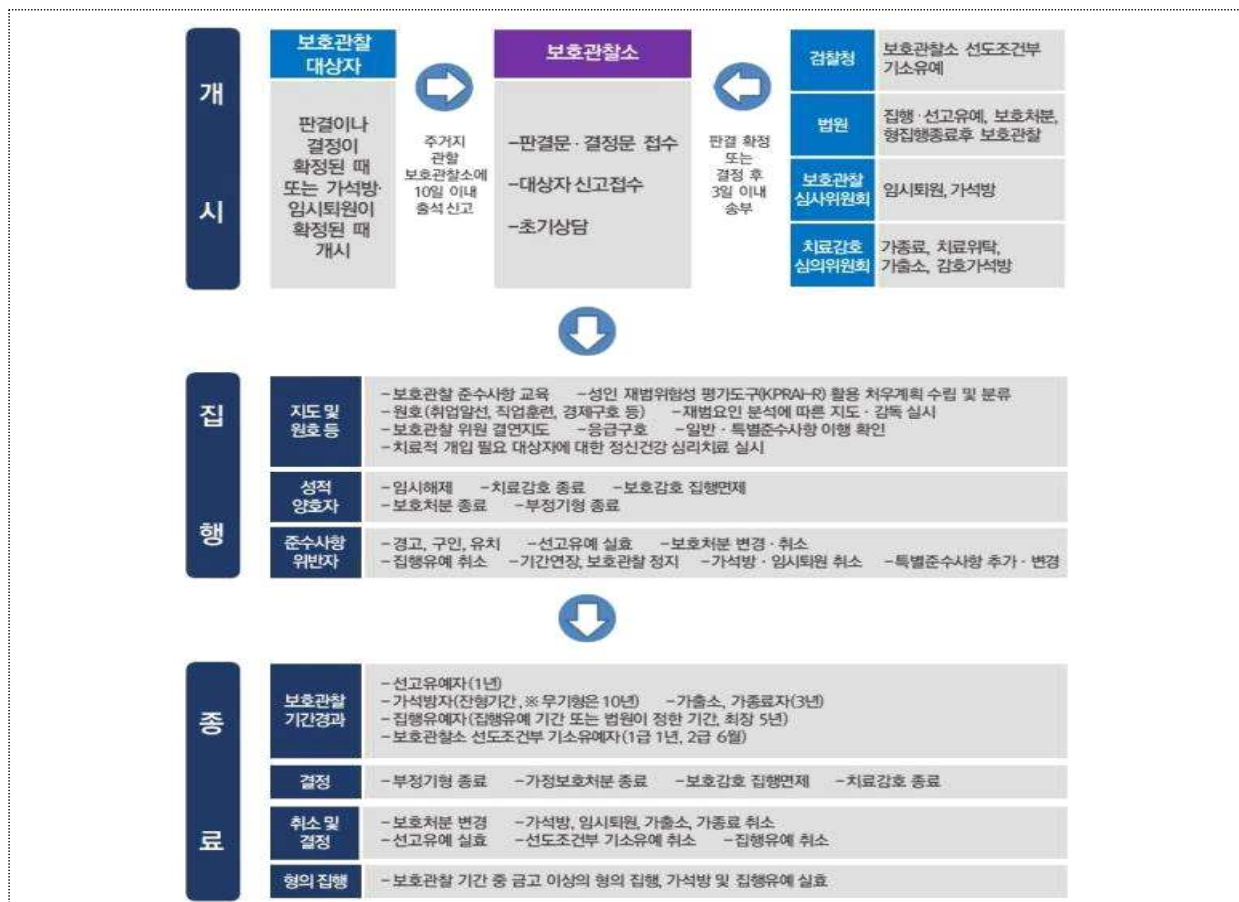
- 기소단계인 선도위탁, 재판단계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이수)명령,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보안처분 성격의 가출소·가중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 스펙트럼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대체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 조사, 신상정보 공개 및 성충동 약물치료, 성구매자·음란물사범 교육·기소유예 선도교육 등 그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획일적인 보호관찰 처우에서

- 벗어나 각각의 범죄에 대응한 개별적 처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지도감독 강화, 범죄 유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원호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범죄인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범별 전담제를 실시, 매뉴얼을 기반으로 범죄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지도감독 기법을 적용하는 등 보호관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일수록 수사·불시 약물검사를 증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하는 등 치료·재활 강화를 통한 재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주취·마약중독·정신질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로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 제공 가능,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주취·마약중독·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114	17,102	16,470	15,470	10,000	
2025~2029		17,102	18,997	19,567	20,154	20,75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적정 예산 과목 편성 필요
 - (조치사항) 치료명령 담당관 간담회 실시 및 치료명령 심리치료비용 국가부담 대상 적극 발굴·지원을 통해 치료명령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 치료명령 심리치료비 예산을 적정 예산 과목(기타보전금)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 추진·집행 필요
 - (조치사항)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자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2027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및 약물검사의 실효성 확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 등을 통해 획기적인 재범 감소 도모
 ※ ('16년) 7.9%, ('18년) 7.2%, ('20년) 7.3%, ('22년) 6.0%, ('23년) 6.7%
-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약물치료·심리치료비 적극 지원
-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농촌일손돕기 등 맞춤형 집행으로 장애인, 노약자, 영세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특성, 범죄유형 및 재범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수강명령 집행으로 범죄성 개선 및 재범 예방
- 법무부 표준 매뉴얼에 근거한 콘텐츠와 워크북 제공을 통해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개입 효과 증진
- 전문적, 과학적 조사업무(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등)로 범죄 원인 파악 및 개별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277	△563	12,714	-	-	-	12,714	12,713	100.0	100.0	-	1
2023	14,002	-	14,002	-	-	-	14,002	13,986	99.9	99.9	-	16
2024	16,114	-	16,114	-	50	-	16,164	15,999	99.3	99.0	-	165
2025	17,102	-	17,102	-	62	-	17,164	16,905	98.8	98.5	-	2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집행 잔액 1백만원
2023	- 불용 : 구호 및 교정비 등 16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특정업무경비 등 165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6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특정업무경비 등 259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 목 코드	
자체 전용 (25.11.20.)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220-01	50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자체 전용 (25.11.20.)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20-01	12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자감독 (16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전자감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자감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전자감독	32,543	36,847	36,847	37,659	37,266	419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427	33,502	32,543	-	959	36,847	36,547	35,878	36,547	35,878	-	746	37,266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9,662	9,653	8,891	-	762	10,082	9,778	9,248	9,778	9,248	-	530	11,212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5,663	5,829	5,826	-	3	6,456	7,077	7,076	7,077	7,076	-	1	6,940	
· 장치 및 시스템 관리	16,061	16,959	16,768	-	191	19,201	18,584	18,456	18,584	18,456	-	127	17,865	
· 사업 지원 경비	1,041	1,061	1,058	-	2	1,109	1,109	1,099	1,109	1,099	-	88	1,249	
○ 비목별 분류(합계)	32,427	33,502	32,543	-	959	36,847	36,547	35,878	36,547	35,878	-	669	37,266	
· 상용임금(110-03)	8,082	8,082	7,654	-	429	8,353	8,353	7,989	8,353	7,989	-	364	9,279	
· 일반수용비(210-01)	1,155	1,355	1,355	-	-	1,716	2,013	2,012	2,013	2,012	-	1	1,716	
· 공공요금및 제세(210-02)	3,721	3,783	3,780	-	3	3,953	4,142	4,142	4,142	4,142	-	-	4,015	
· 피복비(210-03)	275	274	274	-	-	275	275	275	275	275	-	-	661	
· 임차료(210-07)	90	57	57	-	-	90	91	91	91	91	-	-	90	
· 유류비(210-08)	143	152	152	-	-	143	231	231	231	231	-	-	14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9	208	208	-	-	279	325	325	325	325	-	-	315	
· 복리후생비(210-12)	95	86	82	-	3	96	92	75	92	75	-	17	96	
· 관리용역비(210-15)	5,898	5,591	5,485	-	106	6,945	6,328	6,243	6,328	6,243	-	85	6,851	
· 국내여비(220-01)	557	557	556	-	-	613	613	612	613	612	-	-	613	
· 국외업무여비(220-02)	27	27	25	-	2	27	27	27	27	27	-	-	27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39	39	39	-	-	39	
· 특정업무경비(250-03)	339	339	339	-	-	351	351	342	351	342	-	9	491	
· 일반연구비(260-01)	1,130	1,380	1,346	-	34	430	430	389	430	389	-	41	763	
· 정책연구비(260-01)	40	60	60	-	-	40	40	40	40	40	-	-	40	
· 구호 및 교정비(320-06)	39	39	39	-	-	39	39	39	39	39	-	-	39	
· 고용부담금(320-09)	1,485	1,485	1,155	-	330	1,633	1,333	1,184	1,333	1,184	-	149	1,837	
· 자산취득비(430-01)	9,033	9,988	9,937	-	51	11,826	11,826	11,824	11,826	11,824	-	1	10,25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427	33,502	32,543	-	959	36,847	36,547	35,878	36,547	35,878	-	669	37,266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9,662	9,653	8,891	-	762	10,082	9,778	9,248	9,778	9,248	-	530	11,212	
-상용임금(110-03)	8,082	8,082	7,654	-	429	8,353	8,353	7,989	8,353	7,989	-	364	9,279	
-복리후생비(210-12)	95	86	82	-	3	96	92	75	92	75	-	17	96	
-고용부담금(320-09)	1,485	1,485	1,155	-	330	1,633	1,333	1,184	1,333	1,184	-	149	1,837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5,663	5,829	5,826	-	3	6,456	7,077	7,076	7,077	7,076	-	1	6,94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일반수용비(210-01)	1,155	1,355	1,355	-	0	1,716	2,013	2,012	2,013	2,012	-	1	1,716	
-공공요금및제세(210-02)	3,721	3,783	3,780	-	3	3,953	4,142	4,142	4,142	4,142	-	-	4,015	
-피복비(210-03)	275	274	274	-	0	275	275	275	275	275	-	-	661	
-임차료(210-07)	90	57	57	-	0	90	91	91	91	91	-	-	90	
-유류비(210-08)	143	152	152	-	0	143	231	231	231	231	-	-	14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9	208	208	-	0	279	325	325	325	325	-	-	315	
· 장치 및 시스템 관리	16,061	16,959	16,768	-	191	19,201	18,584	18,456	18,584	18,456	-	127	17,865	
-관리용역비(210-15)	5,898	5,591	5,485	-	106	6,945	6,328	6,243	6,328	6,243	-	85	6,851	
-일반연구비(260-01)	1,130	1,380	1,346	-	34	430	430	389	430	389	-	41	763	
-자산취득비(430-01)	9,033	9,988	9,937	-	51	11,826	11,826	11,824	11,826	11,824	-	1	10,251	
· 사업지원경비	1,041	1,061	1,058	-	2	1,109	1,109	1,099	1,109	1,099	-	88	1,249	
-국내여비(220-01)	557	557	556	-	0	613	613	612	613	612	-	-	613	
-국외업무여비(220-02)	27	27	25	-	2	27	27	27	27	27	-	-	27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0	39	39	39	39	39	-	-	39	
-특정업무경비(250-03)	339	339	339	-	0	351	351	342	351	342	-	9	491	
-정책연구비(260-02)	40	60	60	-	0	40	40	40	40	-	-	40	40	
-구호 및 교양비(320-06)	39	39	39	-	0	39	39	39	39	-	-	39	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운영)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운영을 위한 신속대응 요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전담인력(공무직)의 보수,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운영)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요금, 유류비 등 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에 필요한 장치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사업지원경비) 여비, 활동비 등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8.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08. 9.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 '10. 3.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10. 7. 16. 시행)
※ 법률개정으로 살인범 확대, 최근 3년간 소급적용, 부착기간 10년 → 30년 확대 실시
- '10. 7.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11. 7. 24 시행)
- '11. 4.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제도 도입
- '12. 11. 법명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안 국회 통과
- '13. 6. 신상정보 등록 업무 법무부로 일원화(공개 · 고지 업무는 여가부로 일원화) 및 3년 이내('08. 4. 16. ~ '11. 4. 15.)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 '13.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 시행
- '14. 6.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강도죄 추가
- '18. 1.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재심사 절차 마련,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살인·치사죄 등 추가
- '18. 10.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 '19. 4.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보호관찰' 시행
- '20. 8. 일반 가석방 및 보석 허가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1. 6.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
- '23. 10.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4. 0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449	30,677	32,427	36,847	37,22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 기관,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 (2025) 10,081백만원 → (2026) 11,212백만원, 1,130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수당 신설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 (산출) 무도실무관 수당 신설 및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상용임금 926백만원 증액
상용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고용부담금 204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81	○ 상용임금(110-03) : 8,353백만원 가. 전자감독 공무원 · 167명×3,813천원×12월 = 7,641백만원 나. 신상정보등록 공무원 · 24명×2,473천원×12월 = 712백만원	11,212	○ 상용임금(110-03) : 9,279백만원 가. 전자감독 공무원 · 167명×4,205천원×12월 = 8,427백만원 나. 신상정보등록 공무원 · 24명×2,959천원×12월 = 85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6백만원 가.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등록 공무원 96백만원 · 191명×500천원 = 9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6백만원 가.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등록 공무원 96백만원 · 191명×500천원 = 9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633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633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837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837백만원

②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 (2025) 6,456백만원 → (2026) 6,940백만원, 484백만원 증액

- (요구) 전자감독 현장인력 방검복 등 안전장비 지원,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요금 62백만원 증액
전자감독 위험업무 현장인력 방검복·기동용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386백만원 증액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라이선스 갱신) 운영 36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56	○ 일반수용비(210-01) : 1,716백만원 가. 직원 교육비 등 577백만원 나.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비 · 1,312명×70천원×12월 = 1,102백만원 · 149명×82,774원×3월 = 37백만원	6,940	○ 일반수용비(210-01) : 1,716백만원 가. 직원 교육비 등 577백만원 나.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비 · 1,312명×70천원×12월 = 1,102백만원 · 149명×82,774원×3월 = 3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953백만원 가. 전자장치 등 통신료 · 5,729명×33,451원×12월 = 2,300백만원 나. 각종 전기료 및 통신료, 우편료 등 · 60기관×2,296천원×12월 = 1,65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015백만원 가. 전자장치 등 통신료 · 5,729명×33,451원×12월 = 2,300백만원 나. 각종 전기료 및 통신료, 우편료 등 · 60기관×2,381천원×12월 = 1,715백만원
	○ 피복비(210-03) : 275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94명×198천원×2회 = 275백만원		○ 피복비(210-03) : 66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94명×476천원×2회 = 691백만원
	○ 임차료(210-07) : 90백만원 가. 전자발찌 대상자 현장감독 차량 · 9대×10,000천원 = 90백만원		○ 임차료(210-07) : 90백만원 가. 전자발찌 대상자 현장감독 차량 · 9대×10,000천원 = 90백만원
	○ 유류비(210-08) : 143백만원		○ 유류비(210-08) : 14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79백만원 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시설 및 장비 등 보수 27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15백만원 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시설 및 장비 등 보수 315백만원

③ 장치 및 시스템 관리

: (2025) 19,201백만원 → (2026) 17,865백만원, △1,336백만원 감액

- (요구) 범죄자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무부-경찰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 등 증액 및 전자장치 제작·관리 예산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스토킹 등 잠정조치 경찰 112시스템 연계 643백만원 증액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 및 전자장치 운영 866백만원 증액
전자감독 대상자 폭력 행동 등에 대비한 영상녹화장비 등 안전장비 지원 451백만원 증액
시설조성 및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등 3,296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201	○ 관리용역비(210-15) : 6,945백만원 가. 관제센터 유지보수 39백만원 나. 전자감독시스템 유지보수 2,102백만원 다. 전자감독장치 유지보수 4,673백만원 라. 성범죄자 통합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0백만원	17,865	○ 관리용역비(210-15) : 6,851백만원 가. 관제센터 유지보수 39백만원 나. 전자감독시스템 유지보수 2,102백만원 다. 전자감독장치 유지보수 4,673백만원 라.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 유지보수 3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30백만원 가. 위치추적시스템 프로그램 보완 등 43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763백만원 가. 위치추적시스템 프로그램 보완 등 76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1,826백만원 가. 전자감독 장치 구입 · 2,000세트×1,972천원 = 3,944백만원 나. 사무기기 구입 및 장비 교체 등 = 588백만원 다. 위치추적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등 = 5,83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251백만원 가. 전자감독 장치 구입 · 2,420세트×1,972천원 = 4,774백만원 나. 사무기기 구입 및 장비 교체 등 = 588백만원 다. 위치추적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등 = 2,976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라. 1:1 전자감독 및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지원 등= 1,463백만원		라. 1:1 전자감독 및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지원 등= 1,914백만원

④ 사업지원경비

: (2025) 1,109백만원 → (2026) 1,249백만원, 140백만원 증액

- (요구) 흉악범 접촉 환경에 상시 노출된 전자감독 현장인력에 대한 전자감독활동비 증액 및 전자감독 업무지원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전자감독활동비 증액 140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9	○ 국내여비(220-01) : 613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851천원×12월 = 613백만원	1,249	○ 국내여비(220-01) : 613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851천원×12월 = 61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7백만원 가. 국제 보호관찰 학회 등 참석 · 2회×13,703천원 = 27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7백만원 가. 국제 보호관찰 학회 등 참석 · 2회×13,703천원 = 27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9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655천원 = 3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9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655천원 = 39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5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 · 585명×50천원×12월 = 351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9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 · 585명×70천원×12월 = 491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억제 방안 등 · 2과제×20,000천원 = 4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억제 방안 등 · 2과제×20,000천원 = 40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9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회)	목표	-	-	-	-	-	최근 3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평균 심리치료 집행 횟수(3.7회) 보다 약 3% 상향한 3.8회를 목표치로 설정	(당해 연도 심리치료 집행횟수 / 당해 연도말 전자감독 현재원	전국 57개 보호관찰기관에서 반기작성하는 기관평가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022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지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전자감독 실시인원

2021	전자감독 실시인원 10,289명(특정범죄 재범자 74명, 1.65%)
2022	전자감독 실시인원 7,893명(특정범죄 재범자 45명, 0.99%)
2023	전자감독 실시인원 6,820명(특정범죄 재범자 49명, 1.09%)
2024	전자감독 실시인원 6,574명(특정범죄 재범자 43명, 1.00%)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2021	판결문 접수 14,241명(등록 : 105,445명, 공개 : 6,614명, 고지 : 6,355명) ※ 연간 총 191,961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409건
2022	판결문 접수 15,435명(등록 : 116,434명, 공개 : 6,288명, 고지 : 6,050명) ※ 연간 총 222,465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636건
2023	판결문 접수 16,431건(등록 : 126,789건, 공개 : 6,147건, 고지 : 5,931건) ※ 연간 총 251,783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467건
2024	판결문 접수 16,659건(등록 : 128,116건, 공개 : 6,035건, 고지 : 5,856건) ※ 연간 총 296,924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172건

- 성폭력범죄자 약물 치료

2021	· 약물치료 실시인원 40명
2022	· 약물치료 실시인원 42명
2023	· 약물치료 실시인원 35명
2024	· 약물치료 실시인원 4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험군 전담제’ 운영 관련 범죄수법 등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 실시하여 전년 대비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국민 안전 보호
※ 특정범죄 재범률 : 2021년 1.65% → 2022년 0.99% → 2023년 1.09% → 2024년 1.0%
- 정기적 심리치료 전문가 사례회의 실시, 치료기법 공유, 매뉴얼 개발 등 전자감독 심리치료 효과성 향상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근원적인 성행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 기대
※ 2024. 9. 전자감독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T/F 운영, 정기 사례 회의 및 치료기법 공유
- 디지털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체 디지털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늘어나는

디지털분석 준수사항 점점 수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채팅앱 등 SNS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훼손 고위험군’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훼손 방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 확대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획기적 감소

※ 훼손 사건 : 2022년 11건 → 2023년 9건 → 2024년 3건

- 보호관찰소·경찰 모의훈련 강화, 수사실무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훼손 사건 평균 검거 시간 단축(2023년 약 27시간 → 2024년 약 6시간)되는 등 훼손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경찰청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스토킹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

※ 제도 시행 후 총 179건 접수 2025. 7. 31. 기준 현재 47건 집행 중, 피해사례 0건

-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여부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구축(2024. 1.) 및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선(2024. 4.)하여 피해자 보호 효과를 높임

※ 2024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 은상(국무총리상) 수상(전 부처 647개 사례 중 최종 13개 사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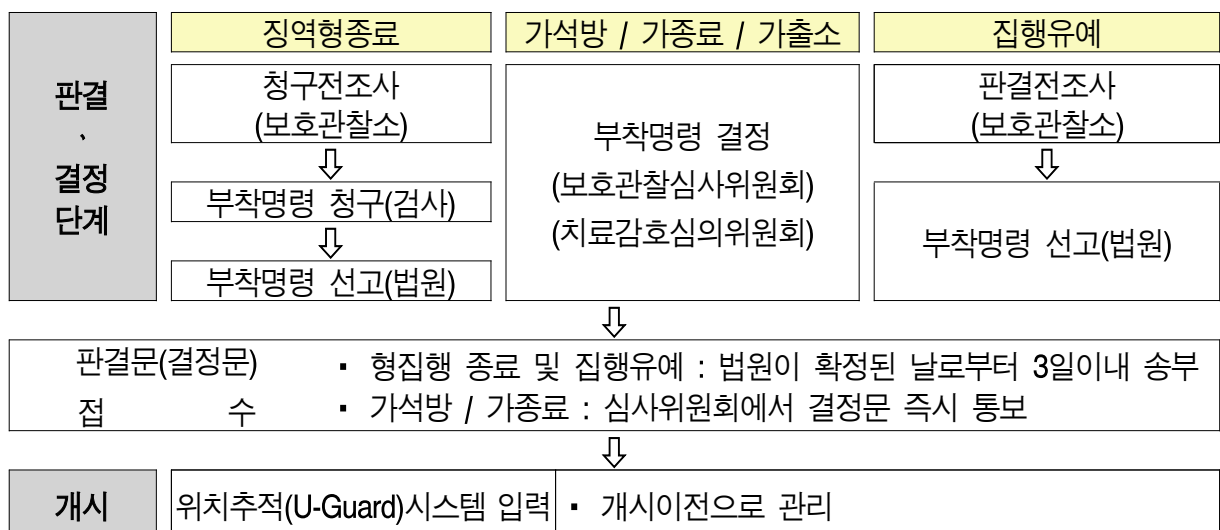
※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및 현장 적용(202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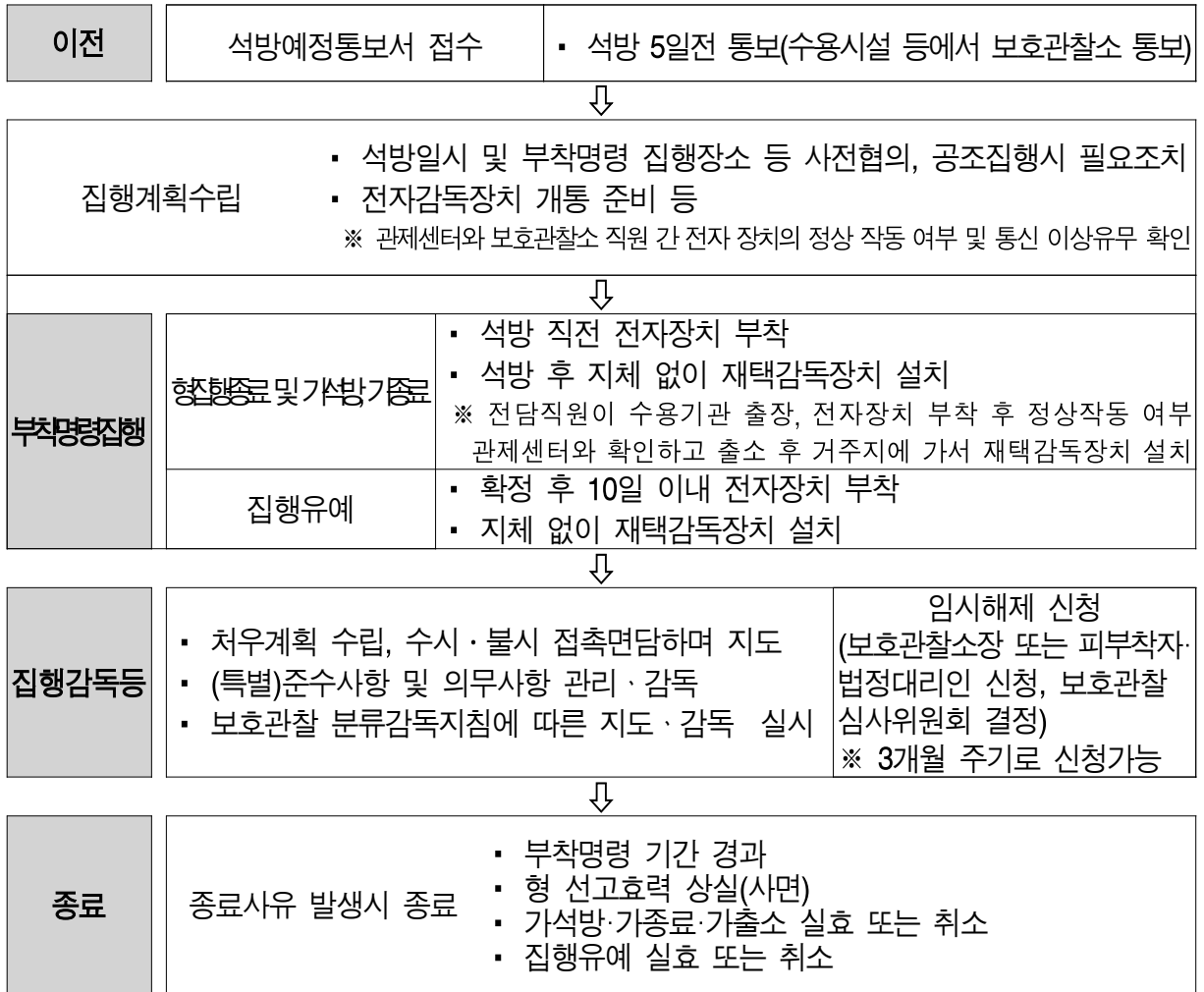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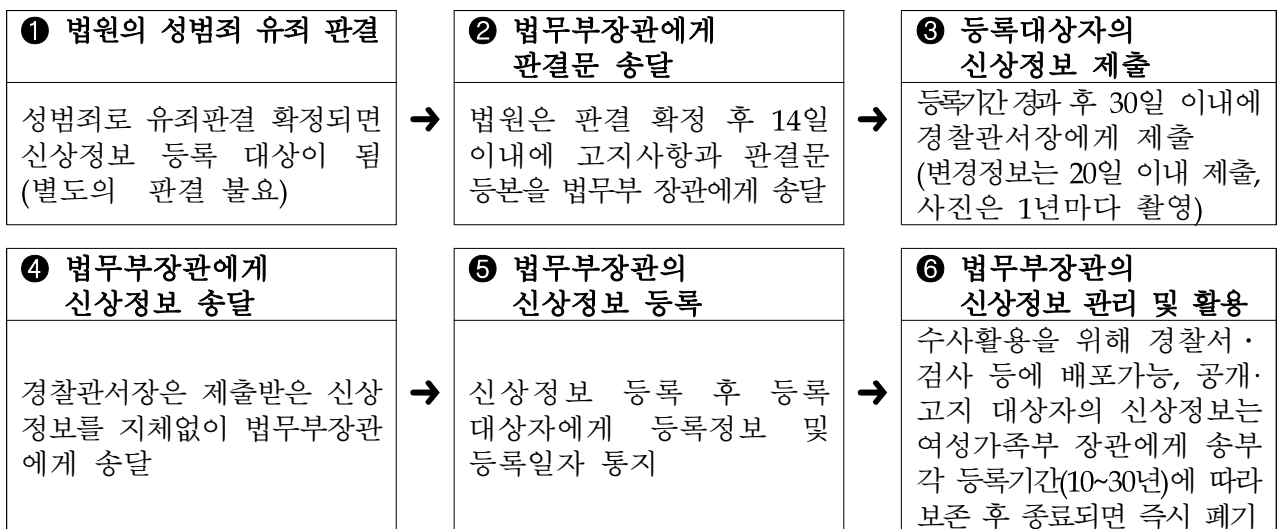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전자감독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 병과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①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② 법원의 치료명령 판결	③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청구 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필요 재범위험성에 대한 청구전 조사 요청 가능	→ 1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 대상자의 동의 불요 ※ 치료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	→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①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②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	③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 ※ 형법상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동의한 자에 한정 검사는 필요적 감정 또는 진단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 청구	→ 1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결정	→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가중료자·가출소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① 감정과 진단	② 치료명령 결정	③ 치료명령 집행
치료감호 집행 중 가중료되거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되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관찰기간(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결정 ※ 대상자 동의 불요	→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427	36,847	35,047	30,000	25,000	
2025~2029		36,847	38,988	40,158	41,363	42,6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 (지적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이 과다한 경우 제작 관리 비용 및 폐기 비용 확대 등 예산 비효율적 집행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적정 수량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부착인원, 재처리 수량, 기관 예비 보유 수량 등을 고려하여 '24. 12. 전자장치 수량 관리 구체적 기준 마련하여 운영 중임, 향후 전자장치 수량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 수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전자감독

- 출소 전부터 사전접견을 통해 범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 출소 후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등 높은 수준의 밀착 관리·감독 등 실효성 높은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 실시
- 전자감독 심리치료 표준 매뉴얼, 사례집 제작·활용 및 정기적 사례회의를 통한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담직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전자감독 심리치료 강화
- 디지털분석 전문가 양성 등 디지털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채팅앱,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 기존 장치보다 크기와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훼손이 어렵도록 성능이 개선된 전자장치 제작 및 보급
- 관제센터와 지자체, 보호관찰소 CCTV 연계 지속 추진 등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수사팀의 지속적인 수사역량 제고 등 수사 대응체계 강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훼손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강화형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 사전 차단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 강화, 시스템 보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
 - ※ 정기적 협의회·모의훈련 실시,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26. 예정)
-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확대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실효적 보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
- 등록정보에 대한 일제점검, 직권정정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확성을 제고함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 성충동 약물치료

- 전담보호관찰관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지도·감독 및 피치료자에 대한 심리치료 확대 등

- 체계적 관리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피치료자의 성공적인 사회 내 정착 도모
- 약물치료 집행 관련 전문가(보호관찰관, 의료진, 심리치료사, 심리생리분석관 등) 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각종 부작용 방지 등 효과적인 성충동 약물치료 방안 모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3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우수
 - '24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우수
- ※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전자감독' 사업 모범사업(23개 부처, 293개 사업 중 6개 사업) 으로 선정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449	-	27,449	981	-	-	28,430	27,907	101.6	98.2	-	523
2023	30,677	-	30,677	-	-	-	30,677	28,783	93.8	93.8	955	939
2024	32,427	-	32,427	955	-	-	33,382	32,545	100.3	97.5	-	957
2025	36,847	-	36,847	-	△300	-	36,547	35,878	97.3	98.2	-	6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354, 자산취득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68 등 집행 잔액 523백만원
2023	- 전용 : 전자발찌 잠금장치 강화 개발 연구비로 185백만원 전용 - 이월 :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시험 운영 및 오류 수정 등으로 제작 예산 955백만원 이월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546,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378 등 집행 잔액 938백만원
2024	- 전용 : 전자장치 기능 개선 연구로 250백만원 전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인식조사 관련 20백만원 전용,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120백만원 전용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759,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89 등 집행 잔액 957백만원
2025	- 전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으로 인한 300백만원 전용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530,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26 등 집행 잔액 66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이용 (25.12.18.)	전자감독 (1635-301)	320-09	30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수용인원 확대에 의한 교정기관 공공요금및제세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6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법무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	6,134	6,277	6,277	6,277	5,678	△599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90	4,707	-	83	4,783	4,753	4,669	4,753	4,669	-	85	4,783
·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4	1,358	1,305	-	52	1,369	1,399	1,368	1,399	1,368	-	31	768
· 사업 지원 경비	123	123	122	-	2	123	111	111	111	111	-	-	127
○ 비목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 상용임금(110-03)	139	139	136	-	3	143	143	139	143	139	-	4	164
· 일반수용비(210-01)	2,856	2,773	2,769	-	4	2,761	2,691	2,687	2,691	2,687	-	5	2,760
· 공공요금및 제세(210-02)	336	248	248	-	-	336	246	246	246	246	-	-	205
·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27	27	27	27	27	-	-	31
·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86	86	86	-	-	8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283	283	-	-	201	321	321	321	321	-	-	201
·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1	3
· 일반용역비(210-14)	1,642	1,712	1,640	-	72	1,642	1,682	1,612	1,682	1,612	-	70	1,642
· 관리용역비(210-15)	129	129	124	-	5	224	224	214	224	214	-	10	224
· 국내여비(220-01)	39	39	39	-	1	39	27	27	27	27	-	-	39
·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37	37	37	-	-	37
· 정책연구비(260-02)	70	90	88	-	2	70	70	70	70	70	-	-	70
· 구호 및 교정비(320-06)	38	38	21	-	17	38	38	25	38	25	-	13	30
· 고용부담금(320-09)	27	27	13	-	13	28	28	15	28	15	-	13	32
· 공사비(420-03)	447	447	429	-	18	447	447	447	447	447	-	-	60
·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173	173	173	173	173	-	-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71	6,271	6,134	-	137	6,277	6,265	6,149	6,265	6,149	-	116	5,678
·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90	4,707	-	83	4,783	4,753	4,669	4,753	4,669	-	85	4,783
· 일반수용비(210-01)	2,856	2,773	2,769	-	4	2,761	2,691	2,687	2,691	2,687	-	5	2,760
·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86	86	86	-	-	86
· 일반용역비(210-14)	1,642	1,712	1,640	-	72	1,642	1,682	1,612	1,682	1,612	-	70	1,642
· 관리용역비(210-15)	129	129	124	-	5	224	224	214	224	214	-	10	224
· 정책연구비(260-02)	70	90	88	-	2	70	70	70	70	70	-	-	70

	2024					2025								2026 예산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4	1,358	1,305	-	52	1,369	1,399	1,368	1,399	1,368	-	31	768	
· 상용임금(110-03)	139	139	136	-	3	143	143	139	143	139	-	4	164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	248	248	-	-	336	246	246	246	246	-	-	20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283	283	-	-	201	321	321	321	321	-	-	201	
·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1	3	
· 구호 및 교정비(320-06)	38	38	21	-	17	38	38	25	38	25	-	13	30	
· 고용부담금(320-09)	27	27	13	-	13	28	28	15	28	15	-	13	32	
· 공사비(420-03)	447	447	429	-	18	447	447	447	447	447	-	-	60	
·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173	173	173	173	173	-	-	73	
- 사업지원경비	123	123	122	-	2	123	111	111	111	111	-	-	127	
·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27	27	27	27	27	-	-	31	
· 국내여비(220-01)	39	39	39	-	1	39	27	27	27	27	-	-	39	
·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9	-	1	20	20	20	20	20	-	-	20	
·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37	37	37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비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솔로몬로파크 운영) 체험형 법교육 시설인 솔로몬로파크의 전시물 교체, 시설 유지 보수,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지원경비) 직원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법교육지원법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법교육지원법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 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②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29.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담당관: 부장검사)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1. 9. 1.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1. 12.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 '12.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전국적 확대
- '13. 9. 1. 어린이 로스쿨 실시
- '14. 11. 19. 제1회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4. 11. 25. 제1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5. 3. 27. 학생자치법정 1,720개 학교 대상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 '16. 2. 3.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 '16. 7. 8.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관
- '17. 10. 2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전남 광양)
- '18. 11. 광주 솔로몬로파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9. 6. ~ 12.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20. 3.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청소년 법·인권 동아리) 실시
- '20. 9.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21. 6. 로-티즌 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 실시
- '21. 6. 청소년 지도자 대상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22. 3. 광주솔로몬로파크 준공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22. 3. ~ 12.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전시체험물 조성
- '23. 3. 1.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 '23. 9. ~ 1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30	7,449	6,271	6,277	5,67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 (2025) 4,783백만원 → (2026) 4,78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질서 캠페인 사업비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83	○ 일반수용비(210-01) 2,761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642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92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다.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62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2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4,783	○ 일반수용비(210-01) 2,760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642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792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다.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62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2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② 솔로몬로파크 운영

: (2025) 1,369백만원 → (2026) 768백만원, △601백만원

- (요구) 공무원 임금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및 솔로몬로파크 체험관 전시물 교체 시설 예산 등 감액

- (산출) 청소원 처우개선에 따른 상용임금 등 25백만원 증액

솔로몬로파크 공공요금, 연수생 식대, 체험관 개·보수 등 절감 626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9	○ 상용임금(110-03) 143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5명×2,391천원×12월=14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 3기관×9,334천원×12월=336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 관리비 9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8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28백만원 가. 공무원 보험료 등 28백만원 ○ 공사비(420-03) 447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447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91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82백만원	768	○ 상용임금(110-03) 164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5명×2,733천원×12월=16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5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 3기관×5,694천원× 12월=20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 관리비 9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0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32백만원 가. 공무원 보험료 등 32백만원 ○ 공사비(420-03) 60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40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33백만원

③ 사업지원경비

: (2025) 123백만원 → (2026) 127백만원, 4백만원 증액

- (요구) 특근매식비 증액 및 법교육·법질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4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	○ 특근매식비(210-05) 2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 기관 업무 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법교육 및 범죄예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127	○ 특근매식비(210-05) 3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 기관 업무 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법교육 및 범죄예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1년 신규 지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준법의식 수준(점)	목표						변경 이전 법의식 향상도의 환산 전 설문조사 점수 중 차원(인자·정서·행동) 영역의 '19년 점수와 최근 5년(15년~19년) 동안의 차원 영역 표준편차 점수를 합산하여 '21년 목표치를 설정	6개 대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법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점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실적								
	달성도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목표						'19년도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실적(22,640명) 대비 14% 증대(3년(17~19년) 동안의 평균 실적(24,570명) 대비 5% 상향된 '20년 목표치보다 2% 상향된 수치인 '21년도 목표치는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한 수치임	학생자치 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등 '20년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 수	자체 통계자료
	실적								
	달성도								

※ 2022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지표 제외됨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사이버 콘텐츠를 업로드한 법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법질서 실천운동 적극 추진 · 법질서 홍보팀 (저스티스 서포터스) : 40개 팀, 185명 등록 ·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법교육 포털 플랫폼 '이로운법' 756,848명 방문 (법교육 영상 214개, 게임형 법교육 40개, 문서형 법교육 1,045개 등재 중) · 기초노동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15개 콘텐츠 개발 및 추가 업로드 예정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90회 (1,170명), 학생자치법교육 113회 (1,170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42회 (4,840명) - 법교육 출장강연 · 아동인권 보장교육 : 1,893회 (67,409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22회 (7,629명) · 학교폭력 예방교육 : 778회 (25,786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705회 (22,529명)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58회 (1,191명) 및 노동법 및 생활범죄 등 다양한 법률 교육 실시 -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법의식 형성을 위한 법교육 실시 · 북한 이탈청소년 법교육 135회 (949명), 이민자 법교육 137회 (3,119명) · 어린이 로스쿨 : 80개 기관 대상 실시 (231회, 969명) · 로티즌 아카데미 : 20회 (279명) -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7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광주솔로몬로파크 준공('22.3.) 및 체험관 전시물 조성 완료('22.12.) - 대전·부산솔로몬로파크 : 체험객수 101,537명, 법연수 참여자 16,167명
2023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사이버 콘텐츠를 업로드한 법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법질서 실천운동 적극 추진 ·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5개 팀, 165명 등록 ·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법교육 포털 플랫폼 '이로운법' 1,428,229명 방문 (법교육 영상 247개, 게임형 법교육 40개, 문서형 법교육 1,051개 등재 중) · 숏츠형 콘텐츠 110편(마약예방 등) 개발 완료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90팀(1,357명), 학생자치법교육 129개교(1,032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42개교 2,077학급(4,840명) · 어린이 로스쿨(80개 센터) 483회(1,115명), 유아법교육 351회(5,156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 마약예방교육 1,495회(74,673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293회(13,405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30회(6,629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675회(26,782명),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502회(22,529명)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동법 및 생활범죄 등 다양한 법률교육 실시 71회(6,221명) -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법의식 형성을 위한 법교육 실시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55회(818명) · 지역아동센터 법 현장체험 견학 실시(20개 센터)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7회, 6,856명) - ‘법과 인권’ 주제의 체험관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 기획·운영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 등과 협약을 통해 체험객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개관 광주솔로몬로파크 안정적 운영 · 법체험관 방문객 60,710명, 법연수프로그램 참여 인원 13,320명 - 도심 속 문화 콘서트 개최 등 신규 개관 로파크 홍보 및 주민 친화 사업 추진, 법무 시설 이미지 제고하고 법교육 기회 마련 · 광주솔로몬로파크 문화로(culture-law) 3회 개최, 총 6,407명 참여 -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장기 법연수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비행 진입 예방,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생 10명(총 32회기), 중·고등학생 10명(총 4회기), 부산지역아동센터 등 190명 실시
2024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 152회(4,984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 마약예방교육 3,089회(170,779명), 도박예방교육 749회(63,756명) 아동인권 보장 교육 263회(33,263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40회(15,317명), 학교폭력 예방 교육 883회(61,452명),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625회(35,240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552회(34,138명), 인권, 기초노동법 및 쉼테드 등 115회(4,009명) -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하여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등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 역할 충실 · 3개 로파크 체험객수 212,214명, 법연수 참여자 26,889명, 법페스티벌 4회 실시, 총 14,443명 참여 -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법교육 실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총 11회기, 연인원 143명)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90팀 (1,365명), 학생자치법교육 148개교 (1,184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35개교 2045학급(4,700명) · 유아법교육 265회(4,386명)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2회, 7,690명) ·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4개 팀, 151명 등록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203회 1,193명 ('24. 11. 기준) -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9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2025. 7. 기준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보이스포싱 등 신종사기범죄 예방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 92회(2,466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 마약예방교육 1,681회(69,672명), 도박예방교육 454회(26,731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124회(9,871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04회(6,795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474회(20,065명),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 223회(9,763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20회(13,799명), 인권, 기초노동법 등 184회(4,640명) ·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교 대상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53회(1,628명) - 이민자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156회(5,744명)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17회(632명) - 법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주민 친화 사업 추진 · 관할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체험 부스 운영하고 학교폭력 등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 인형극 등 공연 ·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하여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등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 역할 충실 · 3개 로파크 체험객수 140,932명, 법연수 참여자 34,355명, 법페스티벌 5회 실시, 총 19,641명 참여 - 사회배려계층 맞춤형 법교육 강화 · 공동생활로 인한 불분명한 타인과의 경계로 성 관련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나를 지키는 네가지 힘」 개발·운영(6회, 113명) · 아동복지시설(대전 소재 성우보육원) 아동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법교육 실시(총 11회기, 연인원 128명) · 결혼이민자 등 법교육, 17개 다문화 가정 대상 1박2일 가족사랑 캠프 진행 (총 166명) -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생 주도의 체험형 법교육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속 지원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62개교 1,966학급(5,240명),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70팀 (1,125명), 학생자치법교육 168개교(1,344명) · 유아법교육 206회(3,445명) - 202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10개 사업지 선정, 관계자 교육, 주민 설명회,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10개 지역 중 1곳 완료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 저스티스 서포터스 : 35개 팀, 161명 등록 · 활동실적 : 9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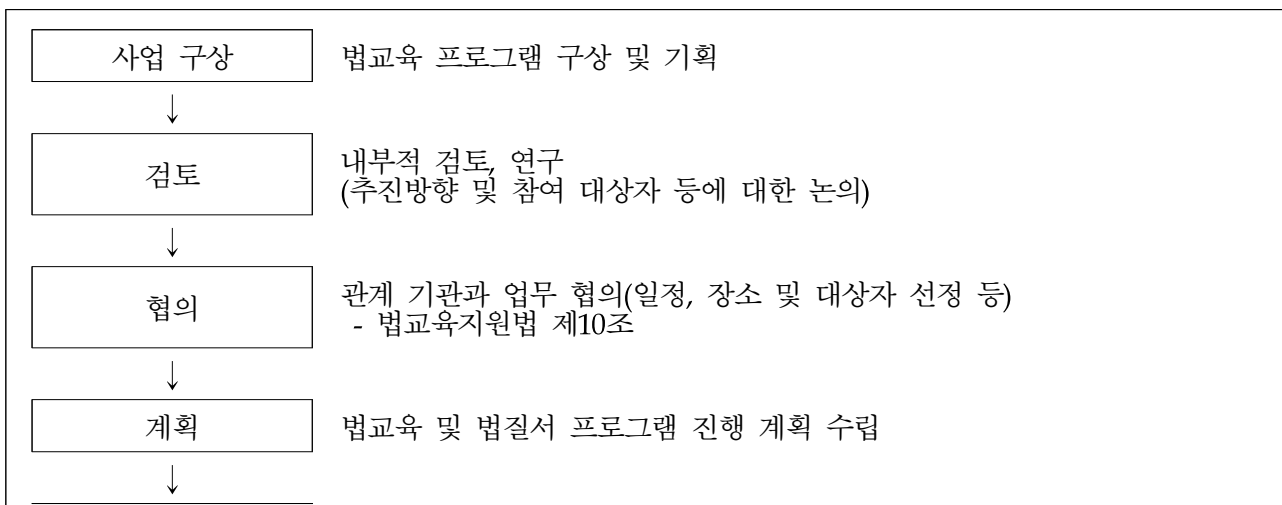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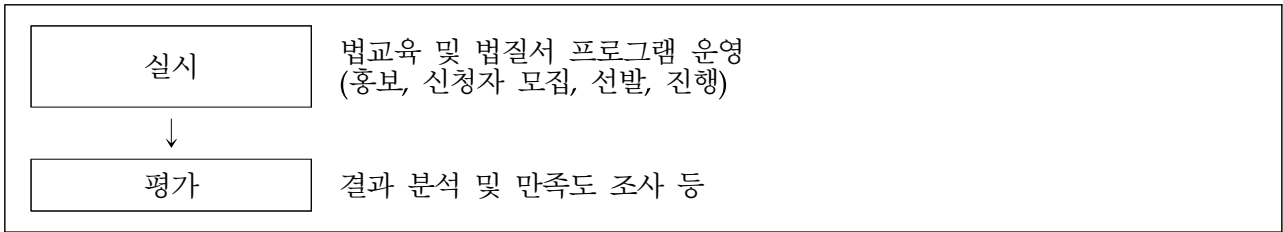
-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법질서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참여형·체험형 법교육 강화
 - ※ 캠프형 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 어린이로스쿨, 행복교실 등
- 강력범죄예방, 마약예방 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 법교육 콘텐츠 개발 등 법교육 강화
- 이민자·탈북·다문화 가족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농어촌, 도서산간 등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민을 고려한 균형이 있는 법교육 정책 추진
- 유아, 학생, 시민 등 전 연령의 국민과 스포츠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법교육 개발 및 법교육 출장 강연 사업 확대
-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법페스티벌’ 및 ‘1박2일 가족캠프’ 등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운영하여 법의식 향상 도모
-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교육을 통해 ‘로티즌 아카데미’ 자체 운영 기반 마련하여 법교육 확산 체계구축하고 군 단위 지역 또는 강사 파견이 어려운 기관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범부처간 협업(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및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 운동(법질서 실천운동+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사업지역 주민 안전 체감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271	6,277	6,859	6,859	6,859	
2025~2029		6,277	6,593	6,791	6,995	7,2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 (지적사항)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관련,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 필요 ▪ (지적사항) 2026년에는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사업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2027년 예산안에 비목을 전환하여 적정 편성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업 진단·평가 및 신규 정책 개발 등 일반범죄예방 기능 강화 - 민간 영역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정립 - 인적·물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법교육 전문성 제고 - 온라인 법체험 공간 개편 - 법체험 시설(솔로몬로파크) 운영 효율화 탐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30	△148	8,282	-	-	-	8,282	7,811	94.3	94.3	-	471
2023	7,449	-	7,449	-	-	-	7,449	7,229	97.0	97.0	-	220
2024	6,271	-	6,271	-	-	-	6,271	6,134	97.8	97.8	-	137
2025	6,277	-	6,277	-	△12	-	6,265	6,149	97.9	98.1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공사비 낙찰차액 등 471백만원
2023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등 220백만원
2024	- 전용 : 범죄예방분야 연구 관련 2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원 보수 및 고용부담금 16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98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37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으로 1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원 보수 및 고용부담금 18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80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1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1.20.)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20-01	12	보호관찰활동 (1635-300)	220-01	정신질환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출장 등 보호관찰소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특별감찰활동 (18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특별감찰관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0
명칭	특별감찰관활동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특별감찰과	김동환 팀장	-	유병현
		운영지원팀	02-728-7231	-	02-728-723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특별감찰활동	546	404		404	40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4	547	546	-	1	404	707	706	707	706	-	-	404
· 사무환경구축및유 지	404	547	546	-	1	404	707	706	707	706	-	-	404
○ 비목별 분류(합계)	404	547	546	-	1	404	707	706	707	706	-	-	40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6	179	178	-	1	116	189	189	189	189	-	-	116
· 임차료(210-07)	288	367	367	-	0	288	517	517	517	517	-	-	288
· 국내여비(220-01)	0	1	1	-	1	0	1	0	1	0	-	-	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4	547	546	-	1	404	707	706	707	706	-	-	404
· 특별감찰활동	404	547	546	-	1	404	707	706	707	706	-	-	40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6	179	178	-	1	116	189	189	189	189	-	-	116
- 임차료(210-07)	288	367	367	-	0	288	517	517	517	517	-	-	288
- 국내여비(220-01)	0	1	1	-	1	0	1	0	1	0	-	-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찰관 활동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특별감찰관법·시행령

② 추진경위

-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이 '14년 3월 18일 제정되었고, 동년 6월 19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9	399	404	404	4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특별감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특별감찰활동

: ('24) 404백만원 → ('25) 404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및 국내여비
- (산출)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7개월분
국회출장 등 국내여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4,0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15,574천원 가. 사무실관리비 등 115,574천원 • 15,643,400원×7개월+6,070,000원 = 115,574천원 ○ 임차료(210-07) : 288,000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288,000천원 • 41,142,800원×7개월 = 28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26천원 가. 출장비 426천원 • 426,000원×1회 = 426,000천원	404,0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15,574천원 가. 사무실관리비 등 115,574천원 • 15,643,400원×7개월+6,070,000원 = 115,574천원 ○ 임차료(210-07) : 288,000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288,000천원 • 41,142,800원×7개월 = 28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26천원 가. 출장비 426천원 • 426,000원×1회 = 426,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특이사항 없음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특이사항 없음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특이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99	-	399	-	127	-	526	519	130.1	98.7	-	7
2023	399	-	399	-	138	-	537	530	132.9	98.8	-	7
2024	404	-	404	-	143	-	547	546	135.1	99.8	-	1
2025	404	-	404	-	303	-	707	706	174.7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409백만원)
2023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127백만원)
2024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138백만원)
2025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30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8.)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210-01	8.3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2	25년 사무실 관리비 집행
		210-02	3.1			
		210-05	2.5			
		210-07	5.1			
		210-12	2.5			
		210-16	3.5			
		250-02	0.8			
		250-02	6		210-07	25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240-02	0.5		220-01	25년 여비 집행
전용 (2025.8.6.)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100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7	25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110-01	20			
전용 (2025.9.12.)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210-01	18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2	25년 사무실 관리비 집행
		210-02	4.3			
		210-05	1.8			
		210-07	4.5			
		210-12	2			
		210-16	3			
		250-02	6			
		240-02	6			
전용 (2025.11.9.)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89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7	25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110-03	16		210-02	25년 사무실 관리비 집행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소관부처	법무연수원 총무과
	사업시행주체	꿈나래어린이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4,776	5,437	5,437	5,611	5,611	174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32	5,032	4,776	-	256	5,437	5,437	5,187	-	250	5,611
· 공무원 운영	3,195	3,195	3,091	-	104	3,392	3,392	3,270	-	122	3,707
· 연수원 시설운영	956	956	929	-	27	1,264	1,264	1,261	-	3	1,264
· 교육생 숙식 지원	841	841	719	-	121	741	741	618	-	123	600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40	40	36	-	4	40	40	38	-	2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운영) 동 내역사업은 교육생 식당 및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한 조리원, 미화원, 기계원 등 공무원 82명의 경직성 인건비임
- (연수원 시설운영) 동 내역사업은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교육생 숙식 지원) 동 내역사업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숙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동 내역사업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 :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99. 7. : 정부 구조 조정 시 시설관리 및 급식 등 민간위탁
- '01. : 급식관리 직영 전환
- '15. 3. : 충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용인·진천 이원화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12	4,705	5,032	5,437	5,611

- 기타 : 공무원직 근로자 총 82명, 부지 총 834,425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보조	꿈나래 어린이집	40	정액보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37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공무원직 운영 : ('25) 3,392백만원 → ('26) 3,707백만원, 315백만원 증액
- ② 연수원 시설운영 : ('25) 1,264백만원 → ('26) 1,264백만원, 전년동
- ③ 교육생 숙식 지원 : ('25) 741백만원 → ('26) 600백만원, 141백만원 감액
- ④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25) 40백만원 → ('26) 4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 건물 93,753㎡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3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 건물 93,753㎡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4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 건물 93,753㎡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5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 건물 93,753㎡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수원 시설 운영관리(방수공사, 노후장비 교체 등)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위생관리 강화 등 급식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생활관 등 시설 제공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612	-	4,612	4,645	4,324	93.8	-	321
2023	4,705	-	4,705	4,691	4,583	97.7	-	108
2024	5,032	-	5,032	5,032	4,776	94.9	-	256
2025	5,437	-	5,437	5,437	5,187	95.4	-	25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 내역변경 33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321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 구입을 위해 '법무· 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으로 14백만원 내역변경 - 세목 조정 사유 : 4백만원, 분리수거장 장소이동 및 지붕설치 공사 감리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08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56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5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5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소관부처	법무연수원 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27	1,577	1,577	1,579	1,579	2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5	1,605	1,427	-	178	1,577	1,577	1,432	-	145	1,579
· 교육운영	916	916	900	-	16	888	888	886	-	2	1,226
· 교육운영 지원	689	689	529	-	160	689	689	546	-	143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
- (교육운영 지원)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 운영 지원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 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환경·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과정 및 2011년 국가송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2	1,745	1,605	1,577	1,579

- 기타: 2025년 집합교육 인원 11,023명, 사이버교육 인원 475,323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① 교육운영 : ('25) 888백만원 → ('26) 1,226백만원, 338백만원 증액 |
| ② 교육운영 지원 : ('25) 689백만원 → ('26) 353백만원, 336백만원 감액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8.9	89.9	90.0	90.5	90.6	최근 3년간	5점척도	교육과정 종료시 설문조사
	실적	91.4	91.6	92.4	92.9	-	실적치 만족도	문항별 평균값	
	달성도	102.8	101.9	102.7	102.7	-	저하 요인을 고려	× 20 (백분을 환산)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타겟형 교육 총 19회, 452명 - 일반직 교육 :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교정 총 230회, 8,288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22회, 1,034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38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659과정, 421,187명
2023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타겟형 교육 총 23회, 456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17회, 8,59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8회, 900명 - 공익법무관 등 기타 교육 : 총 2회, 75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761과정, 499,411명
2024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5회, 543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31회, 9,27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7회, 744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8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86과정, 487,963명
2025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7회, 630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39회, 8,925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8회, 772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4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46과정, 475,323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 사이버교육 H/W, S/W 시스템 구축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
-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법무·검찰 공무원 양성
- '26년 집합교육 목표 12,755명, 사이버 교육 목표 인원 433,09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23회계연도 예산안 법사위, 예결위	'동 사업(5131-301)'에 편성된 '핵심리더 교육생 현장학습 국내여비(220-01)' 예산의 '교육생 현장학습' 집행액이 저조하고, 동 사업(5131-301) 예산과 별도로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사업(7018-254)'에 편성된 일반적 국내출장의 소요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5131-301) 내 국내여비 예산 감액 필요
- '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 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 '26회계연도 예산안 법사위	현재 표절관리 시스템 구축을 '입차료(210-07)'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외훈련 검사 논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49	△47	1,702	1,669	1,593	95.4	-	76
2023	1,745	-	1,745	1,759	1,642	93.3	-	118
2024	1,605	-	1,605	1,605	1,427	88.9	-	178
2025	1,577	-	1,577	1,577	1,432	90.8	-	1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조달 계약 낙찰차액, 비상임연구위원 국가(미국) 검사의 휴직 허가, 비자 발급 등에 따른 위촉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76백만원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인한 33백만원 내역변경
2023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7백만원,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 구입을 위한 내역변경 14백만원
2024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른 집행 개선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178백만원
2025	- 조달 계약 낙찰차액,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51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소관부처	법무연수원 총무과
수입대체경비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18	137	137	137	13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7	137	118	-	19	137	137	135	-	2	137
· 교육 운영	137	137	118	-	19	137	137	135	-	2	1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 운영) 법무부 외 타 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53조
- ②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1	151	137	137	13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관기관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 운영 : ('25) 137백만원 → ('26) 137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1	-	151	151	69	45.7	-	82
2023	151	-	151	151	111	73.5	-	40
2024	137	-	137	137	118	86.1	-	19
2025	137	-	137	137	135	98.5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82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40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51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2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소관부처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	(B-A)/A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002	1,008	1,008	1,008	1,0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	1,008	1,002	-	6	1,008	1,008	999	-	9	1,008
· 교육운영	604	604	603	-	-	604	604	604	-	-	604
· 교육운영 지원	404	404	398	-	6	404	404	395	-	9	4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임관된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강의 등 지원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
- (교육운영) 신임검사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등
- (교육운영 지원) 신임검사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을 위한 교육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0. 8.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요원 선발하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 강의 및 강의교재 발간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 2010년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400~500명을 1, 2차로 나누어 2주간의 일반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진학예정자 중 성적우수자원 180~240명을 선발, 3주간의 심화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12. 4.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신입검사 42명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1년 미만 과정으로 교육 실시
(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45명,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112명, 2019년 118명, 2020년 132명, 2021년 101명, 2022년 89명, 2023년 95명, 2024년 145명 등 현재까지 1,050명 교육 수료)
- 2025. 8. 4.부터 2025. 10. 31.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24명, 2025. 8. 4.부터 2024. 10. 31.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신입검사 25명, 2025. 5. 8.부터 2025. 10. 31.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90명, 법무연수원 제 14기 신입검사 총 139명 교육 진행 중
- ※ 2018년부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통합교육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
2012 ~ 계속(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교육)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64	1,188	1,008	1,008	1,0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신입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교육운영 : ('25) 604백만원→ ('26) 604백만원, 전년동
 ② 교육운영 지원 : ('25) 404백만원 → ('26) 404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8.9	89.9	90.0	90.5	91.8	최근 3년간 실적치 만족도 저하 요인을 고려	5점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 (백분율 환산)	교육과정 종료시 설문조사
	실적	91.4	91.6	92.4	-	-			
	달성도	102.8	101.9	102.7	-	-			
교육 참가자 수 (단위: 명)	목표	-	-	11,000 (신규)	-	-	-	집합교육 실적인원	교육운영시스템 자료 활용
	실적	-	-	11,385	-	-			
	달성도	-	-	103.5	-	-			
교육계획인원 대비 교육실적 달성률 (단위: %)	목표	80.2	80.2	-	-	-	-	집합교육실적 인원 / 교육운영계획 인원	교육운영시스템 자료 활용
	실적	84.9	94.5	-	-	-			
	달성도	105.9	117.8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법무연수원 제10기 신입검사 : 101명 교육 수료 - 2021. 5. 3.~2021. 9. 30. 사법연수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1명 - 2021. 5. 3.~2021. 9. 3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3명 - 2021. 5. 3.~2022. 2.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73명 - 2021. 8. 2.~2022. 2. 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입검사 20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37명 교육 수료 - 2021. 1. 15.~2021. 1. 29. 검찰심화실무실습 246명 - 2021. 7. 12.~2021. 7. 16. 검찰일반실무실습 249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 I 1,8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II 500질(6권 1세트)
2022	○ 법무연수원 제11기 신입검사 : 89명 교육 수료 - 2022. 5. 2.~2022. 9. 30. 사법연수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2명 - 2022. 5. 2.~2022. 9. 3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1명 - 2022. 5. 2.~2023. 2.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69명 - 2022. 8. 1.~2023. 2.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입검사 17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575명 교육 수료 - 2022. 1. 17.~2022. 1. 27. 검찰심화실무실습 254명 - 2022. 7. 11.~2022. 7. 21./ 2022. 7. 18.~ 2022. 7. 28. 검찰일반실무실습 321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 I 1,65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II 420질(6권 1세트)

2023	○ 법무연수원 제12기 신입검사 : 95명 교육 수료 - 2023. 5. 1.~2023. 9. 27. 사법연수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1명 - 2023. 5. 1.~2023. 9. 27.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2명 - 2023. 5. 1.~2024. 1. 5.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76명 - 2023. 8. 1.~2024. 1. 5.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입검사 16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594명 교육 수료 - 2023. 1. 16.~2023. 1. 31. 검찰심화실무실습 257명 - 2023. 7. 10.~2023. 7. 20./ 2023. 7. 17.~ 2023. 7. 27. 검찰일반실무실습 337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 I 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II 360질(6권 1세트)
2024	○ 법무연수원 제13기 신입검사 : 145명 교육 수료 - 2024. 5. 1.~2024. 9. 3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입검사 5명 - 2024. 5. 1.~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93명 - 2024. 8. 2.~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추가) 신입검사 27명 - 2024. 8. 2.~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입검사 20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20명 교육 수료 - 2024. 1. 15.~2024. 1. 25. 검찰심화실무실습 276명 - 2024. 7. 8.~2024. 7. 18./ 2024. 7. 15.~ 2024. 7. 25. 검찰일반실무실습 344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 I 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II 390질(6권 1세트)
2025	○ 법무연수원 제14기 신입검사 : 139명 교육 중 - 2025. 5. 8.~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입검사 90명 - 2025. 8. 4.~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추가) 신입검사 25명 - 2025. 8. 4.~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입검사 24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20명 교육 수료 - 2025. 1. 20.~2025. 2. 7. 검찰심화실무실습 278명 - 2025. 7. 7.~2025. 7. 18./ 2025. 7. 14.~ 2025. 7. 24. 검찰일반실무실습 343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 I 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II 390질(6권 1세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하여 능력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입검사 임용이 시작된 2012년부터 신입검사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로 실무능력 배양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 연구용역 1건 수행, 실습기록 등 교재 10,000부 발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요원 양성 및 검찰 관련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능력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88	△24	1,164	1,164	1,115	95.8	-	49
2023	1,188	-	1,188	1,188	1,180	99.3	-	8
2024	1,008	-	1,008	1,008	1,002	99.4	-	6
2025	1,008	-	1,008	1,008	999	99.1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49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8백만원
2024	- 세목조정 사유 : 6백만원, 신임검사 교육생 통원버스 임차료 부족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6백만원
2025	- 세목조정 사유 : 5백만원, 신임검사 교육생 교육 교재 인쇄비 부족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24)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5131-312)	임차료 (210-07)	5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5131-312)	일반수용비 (210-01)	신임검사 교육생 교육 교재 인쇄비 부족

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상권	손장혁	박채원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111	02-2110-3110	02-2110-310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532	608	608	608	6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8	608	532	-	76	608	608	542	608	542	-	66	608
· 변화관리교육	495	495	443	-	52	495	495	455	495	455	-	40	495
· 제도개선추진	46	46	23	-	23	46	46	26	46	26	-	20	46
· 자문단 운영	67	67	66	-	1	67	67	61	67	61	-	6	67
○ 비목별 분류(합계)	608	608	532	-	76	608	608	542	608	542	-	66	608
· 일반수용비(210-01)	161	161	145	-	16	161	161	150	161	150	-	11	161
· 임차료(210-07)	2	2	2	-	-	2	2	1	2	1	-	1	2
·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6	6	6	6	6	-	-	6
· 일반용역비(210-14)	393	393	356	-	37	393	393	359	393	359	-	34	393
· 국내여비(220-01)	2	2	1	-	1	2	2	1	2	1	-	1	2
· 국외업무여비(220-02)	8	8	-	-	8	8	8	8	8	8	-	-	8
· 사업추진비(240-01)	13	13	10	-	3	13	13	5	13	5	-	8	13
· 포상금(310-03)	23	23	12	-	11	23	23	12	23	12	-	11	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8	608	532	-	76	608	608	542	608	542	-	66	608
· 변화관리교육	495	495	443	-	52	495	495	455	495	455	-	40	495
-일반수용비(210-01)	104	104	89	-	15	104	104	98	104	98	-	6	104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6	6	6	6	6	-	-	6
-일반용역비(210-14)	385	385	348	-	37	385	385	351	385	351	-	34	385
· 제도개선추진	46	46	23	-	23	46	46	26	46	26	-	20	46
-국내여비(220-01)	2	2	1	-	1	2	2	1	2	1	-	1	2

	2024					2025(2025.12월 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국외업무여비(210-02)	8	8	-	-	8	8	8	8	8	8	-	-	8
-사업추진비(210-01)	13	13	10	-	3	13	13	5	13	5	-	8	13
-포상금(310-03)	23	23	12	-	11	23	23	12	23	12	-	11	23
· 자문단 운영	67	67	66	-	1	67	67	61	67	61	-	6	67
-일반수용비(210-01)	57	57	56	-	1	57	57	52	57	52	-	5	57
-임차료(210-07)	2	2	2	-	-	2	2	1	2	1	-	1	2
-일반용역비(210-14)	8	8	8	-	-	8	8	8	8	8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교육)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능력 개발 및 변화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제도개선추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자문단 운영) 청년세대의 인식 및 요구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인사위원회, '04. 10. 2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 공통조직인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설, 운영
 - '05년 ~ 계속, 정부부처 공통 사업(주관:행정안전부)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9	613	608	608	6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및 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법무직원 및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변화관리교육

: (2025 본예산) 495백만원 → (2026 요구) 495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5,000	○ 일반수용비(210-01) : 103,844천원	495,000	○ 일반수용비(210-01) : 103,844천원
	가. 직원교육관련 운영 경비 80,000천원		가. 직원교육관련 운영 경비 80,000천원
	나. 각종 사례집 인쇄비 등 15,000천원		나. 각종 사례집 인쇄비 등 15,000천원
	다. 사무용품구입 등 8,844천원		다. 사무용품구입 등 8,84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0천원
	가.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경비 6,000천원		가.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경비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4,87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4,873천원
	가. 변화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37,000천원		가. 변화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37,000천원
	나. 행사 운영경비 47,873천원		나. 행사 운영경비 47,873천원

② 제도개선추진

: (2025 본예산) 46백만원 → (2026 요구) 46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000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46,000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가. 업무추진 관련 자료 수집 등 2,000천원		가. 업무추진 관련 자료 수집 등 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가. 선진 행정업무 개선 시스템 현지 조사 8,000천원		가. 선진 행정업무 개선 시스템 현지 조사 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9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919천원
	가. 행정개선업무 등 추진경비 12,919천원		가. 행정개선업무 등 추진경비 12,919천원
	○ 포상금(310-03) : 23,364천원		○ 포상금(310-03) : 23,364천원
	가. 업무유공자 포상금 23,364천원		가. 업무유공자 포상금 23,364천원

③ 자문단운영

: (2025 본예산) 67백만원 → (2026 요구) 67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000	○ 일반수용비(210-01) : 57,000천원	67,000	○ 일반수용비(210-01) : 57,000천원
	가. 정책모니터링 24,000천원		가. 정책모니터링 24,000천원
	나. 자문단 회의 22,000천원		나. 자문단 회의 22,000천원
	다. 세미나 개최 11,000천원		다. 세미나 개최 11,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세미나 개최 2,000천원		가. 세미나 개최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000천원
	가. 정책토론회워크숍 8,000천원		가. 정책토론회워크숍 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내부규제 및 각종 제도의 개선 추진 - '22년도 제도개선 아이디어 908건 제안 접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난민(전문)통역인 보조를 위한 사전 고지제도 운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 이민 자격변경 신청자의 체류기간 부여' 등 165건 채택·개선 추진 - '22. 8.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및 활성화' 등 우수사례 8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9,295명 교육 실시
2023	○ 내부규제 및 각종 제도의 개선 추진 - '23년도 제도개선 아이디어 1,031건 제안 접수, '외국인 현금보관증 서식 개선', '장소 변경접견 불허 시 희망일 이전에 시스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 자격변경 신청자의 체류기간 부여' 등 165건 채택·개선 추진 - '23. 8.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등 우수사례 9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8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9,821명 교육 실시
2024	○ 내부규제 및 각종 제도의 개선 추진 - '24년도 제도개선 아이디어 867건 제안 접수, '국적상실자의 고시문 근거조항 변경',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시 유학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자에 대한 체류기간 차등부여' 등 157건 채택·개선 추진 - '24. 8.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우수사례 17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8,605명 교육 실시
2025	○ 내부규제 및 각종 제도의 개선 추진 - '25년도 제도개선 아이디어 789건 제안 접수, '우크라이나 피난동포 체류허가 수수료 통일안 제안', '보호관찰 종료일 기준 명확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민원 서식 현행화' 등 129건 채택·개선 추진 - '25. 8.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 우수사례 8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6,826명 교육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개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소통하는 행정문화 조성
- 창의역량강화, 조직문화향상, 직무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화관리 교육

① 수요조사 → ② 연간 교육계획 수립 → ③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④ 교육업체 선정 및 계약 → ⑤ 교육 실시

○ 제도개선추진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과제 발굴(수시) → ③ 이행상황 점검·평가 → ④ 평가
결과 활용, 공유 및 환류 → ⑤ 기관평가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 자문단 운영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자문단 구성 → ③ 자문단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08	608	547	547	547	
2025~2029		608	608	608	608	6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 개선 추진
-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13	△14	599	-	-	-	599	504	84.1	84.1	-	95
2023	613	-	613	-	-	-	613	462	75.4	75.4	-	151
2024	608	-	608	-	-	-	608	532	87.5	87.5	-	76
2025	608	-	608	-	-	-	608	542	89.1	89.1	-	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집행잔액(코로나19 상황으로 직원교육 일부 미 실시) 및 낙찰차액 95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집행잔액(코로나19 상황으로 직원교육 일부 미 실시) 및 낙찰차액 15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일반용역비 37백만원(낙찰차액), 국외여비 8백만원(코로나19 우려), 포상금 11백만원(집행잔액) 등 불용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일반용역비 34백만원(낙찰차액) 등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7032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유경남 센터장	-	신지혜
		행복민원센터	02-2110-4268	-	02-2110-427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조정(B)	(B-A)	(B-A)/A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94	120	120	1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0	120	94	-	26	120	120	120	97	120	97	-	-	120
○ 비목별 분류(합계)	120	120	94	-	26	120	120	120	97	120	97	-	23	120
· 일반수용비(210-01)	41	5	5	-	-	41	41	8	6	8	6	-	2	41
· 임차료(210-07)	3	3	-	-	3	3	3	-	-	-	-	-	-	3
· 일반용역비(210-14)	14	50	50	-	-	14	14	40	40	40	40	-	-	14
· 기타운영비(210-16)	6	6	6	-	-	6	6	6	5	6	5	-	1	6
· 국내여비(220-01)	8	8	6	-	2	8	8	8	7	8	7	-	1	8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	-	14	14	14	14	-	14	-	-	14	14
· 사업추진비(240-01)	21	21	15	-	6	21	21	21	16	21	16	-	5	21
· 일반연구비(260-01)	13	13	12	-	1	13	13	23	23	23	23	-	-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등을 진행하는 것임
- (각종 연구용역 등) 법무행정 서비스 역량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 및 민원정책 피드백을 추진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 '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6.~10.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13. 12.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2024.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	120	120	120	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 ('25) 93백만원 → ('26 요구) 93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41,100천원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26,000천원) • 200천원×130명=26,000천원 나. 기타 인채비 등(15,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 임차료(210-07) 등 : 38,378천원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41,100천원, 전년동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26,000천원) • 200천원×130명=26,000천원 나. 기타 인채비 등(15,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전년동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 임차료(210-07) 등 : 38,378천원, 전년동

② 각종 연구용역

: ('25) 27백만원 → ('26 요구) 27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0	○ 일반용역비(210-14) 등 : 27,000천원	27,000	○ 일반용역비(210-14) 등 : 27,000천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온라인 4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21개, 개인 50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7,341건 처리 ※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3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20개, 개인 29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6,021건 ※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4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24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4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19개, 개인 33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34,200건 ※ '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5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중 (하반기 추가 예정) - '25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5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상반기 개최) - 민원서비스 분기별 포상(부서 21개, 개인 26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33,000건 ※ '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정책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및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 민원·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사업교육 실시 → ③결과보고 및 분석

[각종 연구용역]

-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계약 체결 → ③사업추진 → ④검사 및 검수 → ⑤사업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4년 국회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목적의 용역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므로 해당 예산을 적정 비목인 일반 연구비(260-01)로 집행할 필요 있음	
	민원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하여 매년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3.3%에 불과한바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 '26년 국회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힐링 워크숍’을 외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실제 추진 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 있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2024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할 필요	「2025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 집행시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 27년도 예산 집행 시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 예정
·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외여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던 바 향후에는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힐링 워크숍’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있음	27년 예산안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용역비, 210-14)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 민원·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	-	120	-	-	-	120	86	71.7	71.7	-	34
2023	120	-	120	-	-	-	120	95	79.2	79.2	-	25
2024	120	-	120	-	-	-	120	94	78.3	78.3	-	26
2025	120	-	120	-	-	-	120	97	81%	81%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2022	- 지적 사항 : 2022년 불용 및 세목변경 사유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15백만 원) → 일반용역비(15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직접 수행·일반수용비 집행하던 민원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비목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비로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34백만 원)
2023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14백만 원) → 일반용역비(14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대상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성에 맞는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25백만 원)
2024	해당없음
2025	- 지적사항 1..일반용역비로 집행한 「2024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할 필요 · 시정사항 : 2025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비용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 2.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 유관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여 국외 출장 장소 섭외 실패에 따른 국외 출장 여비 미집행 · 시정사항 : 26년도 적극적인 해외 방문 기관 섭외로 국외 출장 여비 집행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5년 하반기 예정된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 10,100천원 부족

○ 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에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비용을 조사·연구 관련 용역임에도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할 예정임

※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27년 예산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연구비, 260-01)으로 편성 예정

○ 전용 세부 명세서

(단위: 백만원)

분야-부문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프로그램	단위	세부	목	세목		증	감	
7000					21,105,000	10,100	△10,100	21,105,000
	7032				21,105,000	10,100	△10,100	21,105,000
		301			120,000	10,100	△10,100	120,000
			210		64,500	-	△10,100	54,400
				14	50,033	-	△10,100	39,933
			260		13,000	10,100	-	23,100
				01	13,000	10,100	-	23,100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7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유지중	김범영(서기관)	박길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76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6,205	20,107	20,107	20,436	20,436	329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93	17,993	16,205	-	1,788	20,107	20,107	18,033	20,107	18,033	-	2,074	20,436
· 사회복지무요원	14,025	14,025	12,436	-	1,589	15,983	15,983	14,051	15,983	14,051	-	1,847	16,419
· 청년인턴	3,968	3,968	3,769	-	199	4,124	4,124	3,982	4,124	3,982	-	227	4,017
○ 비목별 분류(합계)	17,993	17,993	16,205	-	1,788	20,107	20,107	18,033	20,107	18,033	-	2,074	20,436
· 상용임금(110-03)	11,484	11,484	10,552	-	932	13,478	13,393	12,066	13,393	12,066	-	1,327	13,478
· 일용임금(110-04)	3,339	3,339	3,260	-	79	3,396	3,478	3,465	3,478	3,465	-	13	3,494
· 일반수용비(210-01)	27	27	25	-	2	195	195	123	195	123	-	72	97
· 공공요금(210-02)	34	34	30	-	4	34	34	20	34	20	-	14	34
· 피복비(210-03)	297	297	154	-	142	290	290	160	290	160	-	130	290
· 급식비(210-04)	1,547	1,547	1,262	-	285	1,527	1,527	1,219	1,527	1,219	-	308	1,963
· 국내여비(220-01)	889	889	573	-	316	806	806	601	806	601	-	205	679
· 고용부담금(320-09)	376	376	348	-	28	381	384	379	384	379	-	5	4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993	17,993	16,205	-	1,788	20,107	20,107	18,033	20,107	18,033	-	2,074	20,436
· 사회복지무요원	14,025	14,025	12,435	-	1,589	15,983	15,898	14,051	15,898	14,051	-	1,847	16,419
- 상용임금(110-03)	11,484	11,484	10,552	-	932	13,478	13,393	12,066	13,393	12,066	-	1,327	13,478
- 공공요금(210-02)	34	34	30	-	4	34	34	20	34	20	-	14	34
- 피복비(210-03)	297	297	154	-	142	290	290	160	290	160	-	130	290
- 급식비(210-04)	1,547	1,547	1,262	-	285	1,527	1,527	1,219	1,527	1,219	-	308	1,963
- 국내여비(220-01)	663	663	437	-	226	654	654	586	654	586	-	68	654
· 청년인턴	3,968	3,968	3,769	-	199	4,124	4,209	3,982	4,209	3,982	-	227	4,017
- 일용임금(110-04)	3,339	3,339	3,260	-	79	3,396	3,478	3,465	3,478	3,465	-	13	3,494
- 일반수용비(210-01)	27	27	25	-	2	195	195	123	195	123	-	72	97
- 국내여비(220-01)	226	226	136	-	90	152	152	15	152	15	-	137	25
- 고용부담금(320-09)	376	376	348	-	28	381	384	379	384	379	-	5	4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부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배치된 사회복지요원 및 청년인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23. 1,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73	10,086	17,993	20,107	20,4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사회복지요원, 청년인턴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회복지요원 운영 (936명 → 전년동)

: ('25) 15,983백만원 → ('26) 16,419백만원, 436백만원 증액

○ 2025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사회복무 요원 15,983	○ 상용임금(110-03) : 13,478백만원 · 보수 : 936명×1,2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백만원 · 단체보험료 : 936명×36천원 ○ 피복비(210-03) : 290백만원 · 피복비 : 936명×309,840원 ○ 급식비(210-04) : 1,527백만원 · 식대 : 936명×7천원×233일 ○ 국내여비(220-01) : 654백만원 · 교통비 : 936명×3천원×233일	사회복무 요원 16,419	○ 상용임금(110-03) : 13,478백만원 · 보수 : 936명×1,2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백만원 · 단체보험료 : 936명×36천원 ○ 피복비(210-03) : 290백만원 · 피복비 : 936명×309,840원 ○ 급식비(210-04) : 1,963백만원 · 식대 : 936명×9천원×233일 ○ 국내여비(220-01) : 654백만원 · 교통비 : 936명×3천원×233일

② 청년인턴 운영 (300명 → 전년동)

: ('25) 4,124백만원 → ('26) 4,017백만원, 107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청년인턴 4,124	○ 일용임금(110-04) : 3,396백만원 · 보수 : A+B - (A) 240명(6월 근무)×10,030원×209시간 - (B) 60명(3월 근무)×10,030원×209시간 ○ 일반수용비(210-01) : 195백만원 · 활동지원비 : 19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52백만원 · 교육 등 출장비 : 15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81백만원 · 4대보험료 : 일용임금×11.22%	청년인턴 4,017	○ 일용임금(110-04) : 3,494백만원 · 보수 : A+B - (A) 240명(6월 근무)×10,320원×209시간 - (B) 60명(3월 근무)×10,320원×209시간 ○ 일반수용비(210-01) : 97백만원 · 활동지원비 : 97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5백만원 · 교육 등 출장비 : 2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01백만원 · 4대보험료 : 일용임금×11.22%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인건비성 경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223	△50	9,173	-	-	-	9,173	8,421	91.8	91.8	-	752
2023	10,086	-	10,086	-	705	-	10,791	10,487	104.0	97.2	-	304
2024	17,993	-	17,993	-	-	-	17,993	16,205	90.1	90.1	-	1,788
2025	20,107	-	20,107	-	-	-	20,107	18,033	89.7	89.7	-	2,07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 軍 처우 개선 기대(보수 인상)에 따라 '23년도 사회복지요원이 대폭 증가(821→897명)하여 법무연수원인건비로부터 705백만원 전용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 청년인턴 근무기간 증가(6개월 근무 인원 증가, 3개월 근무 인원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동일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82백만원 세목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양성평등정책 지원(9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양성평등정책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양성평등 정책지원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지원실	장인자 02-2110-3993	신한현 02-2110-3994	윤영신 02-2110-399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양성평등정책지원	226	233	233	233	213	20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3	233	226	-	7	233	233	213	233	213	-	-	213
· 양성평등교육비	161	161	161	-	-	161	161	142	161	142	-	-	161
· 연구용역	50	50	45	-	5	50	50	49	50	49	-	-	30
· 운영경비 등	22	22	20	-	2	22	22	22	22	22	-	-	22
○ 비목별 분류(합계)	233	233	226	-	7	233	233	213	233	213	-	-	213
· 일반수용비(210-01)	96	96	96	-	-	96	96	94	96	94	-	-	96
· 일반용역비(210-14)	78	78	78	-	-	78	78	61	78	61	-	-	78
· 국내여비(220-01)	6	6	4	-	2	6	6	6	6	6	-	-	6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260-01)	50	50	45	-	5	50	50	49	50	49	-	-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226	-	7	233	233	213	233	213	-	-	213
· 양성평등교육비	161	161	161	-	-	161	161	142	161	142	-	-	161
-일반수용비(210-01)	83	83	83	-	-	83	83	81	83	81	-	-	83
-일반용역비(210-14)	78	78	78	-	-	78	78	61	78	61	-	-	78
· 연구용역	50	50	45	-	5	50	50	49	50	49	-	-	30
-일반연구비(260-01)	50	50	45	-	5	50	50	49	50	49	-	-	30
· 운영경비 등	22	22	20	-	2	22	22	22	22	22	-	-	22
-일반수용비(21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국내여비(220-01)	6	6	4	-	2	6	6	6	6	6	-	-	6
-사업추진비(260-01)	3	3	3	-	-	3	3	3	3	3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성평등교육비) 법무·검찰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인지력 향상
- (연구용역) 부내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연구용역 비용 등을 지원
- (운영경비 등) 부내 양성평등 정책 확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위원회 운영, 출장 여비 및 기타 운영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양성평등 기본이념),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 ② 추진경위
 - '12년도부터 '양성평등교육' 예산 확보하여 교육 실시
 - 조직문화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
 - ※ 법무검찰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 지적 등(20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시)
 - ※ 경직된 조직문화와 소통부재가 법무검찰 조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법률신문 '12. 4. 3.)
 -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제5차 권고 사항('18. 7. 16.)
 - 법무검찰의 여성검사·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립 필요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3	253	233	233	21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양성평등교육비

- : ('25) 161백만원 → ('26 요구) 16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집합교육(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7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	○ 일반수용비(210-01) : 83백만원 가.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 400천원×207회=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78백만원 가. 집합교육(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78백만원) • 330천원×26명×9회=78백만원	161	○ 일반수용비(210-01) : 83백만원 가.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 400천원×207회=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78백만원 가. 집합교육(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78백만원) • 330천원×26명×9회=78백만원

② 연구용역 등

- : ('25) 50백만원 → ('26 요구) 30백만원, △20백만원
- (요구) 정책지원 사업 내 우선순위 및 양성평등 정책의 조직 확산 효과성을 위한 정책 추진 지속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3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가. 법무부 양성평등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50백만원) • 50백만원×1회=50백만원	30	○ 일반연구비(260-01) : 30백만원 가.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30백만원) • 30백만원×1회=30백만원

③ 운영경비 등

- : ('25) 22백만원 → ('26 요구) 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부내 양성평등 의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건조사 등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등 22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	○ 운영경비 등 : 22백만 원 가. 양성평등 행사, 위원회 등 운영(210-01) : 13백만 원 나. 국내여비(220-01) : 6백만 원 다.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240-1) : 3백만 원 • 30천원×20명×5회=3백만원	22	○ 운영경비 등 : 22백만 원 가. 양성평등 행사, 위원회 등 운영(210-01) : 13백만 원 나. 국내여비(220-01) : 6백만 원 다.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240-1) : 3백만 원 • 30천원×20명×5회=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양성평등교육 191회(4,823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13회(280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169회(4,228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9회(315명)
2023	○ 양성평등교육 250회(6,769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0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35회(6,090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6회(429명)
2024	○ 양성평등교육 225회(5,407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0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02회(4,372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14회(785명)
2025	○ 양성평등교육 239회(6,009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1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14회(4,780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16회(978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역량제고를 통하여 양성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한 법무부 정책의 실효성 강화
-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직장 및 가정 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검찰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수립
 - 각 직렬별 양성평등교육 대상 인원 및 횟수 확정
 - 법무연수원(연계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집합교육) 등과 교육일정 등 협의
 - 법무·검찰 양성평등교육계획 수립
- 양성평등교육 시행
 -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운영 1박2일) : 각 직렬별 주무부서 교육 대상자 선발 → 확정 → 교육실시 → 사후설문 조사 →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 교육신청 소속기관에 강사 지원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법무연수원 직무교육과정에 연계하여 교육, 강사 지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양성평등 수준 진단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33	233	213	213	213	
2025~2029		233	213	219	225	2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어 온 법무·검찰 조직의 소통 부재, 권위적·경직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그동안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전무하였는데, 2012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된 2019년부터 교육인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본 교육이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소통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아울러, 조직 내 여성검사, 여성공무원 증가 및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안조직의 특수성(수사·감호·행형·국적 등)으로 양성평등한 의식제고가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방법의 교육이 필요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3	-	253	-	-	-	253	243	96.1	96.1	-	10
2023	253	-	253	-	-	-	253	251	99.2	99.2	-	2
2024	233	-	233	-	-	-	233	226	97.1	97.1	-	7
2025	233	-	233	-	-	-	233	213	91.4	91.4	-	2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10백만원
2023	- 불용 : 2백만원
2024	- 불용 : 7백만원
2025	- 불용 : 2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정보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시은	서종석 서기관	권두현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02-2110-3150	02-2110-3151	02-2110-348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38,272	41,485	-	47,037	44,554	3,069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 법무정보·사이버 보안시스템운영	6,740	6,611	6,548	-	63	6,370	6,243	6,243	6,243	6,243	-	-	5,947	
· 형사사법시스템 (법무부)운영	1,600	1,732	1,732	-	-	-	-	-	-	-	-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운영	1,658	1,658	1,552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 교정정보시스템운영	7,274	7,344	7,291	-	53	6,026	5,952	5,936	5,952	5,936	-	16	4,489	
· 법무정보화기반운영	17,087	17,014	16,429	-	585	16,784	16,587	16,459	16,587	16,459	-	128	16,711	
· 정보화사업(ISP포함)	4,758	4,758	4,720	-	38	10,374	10,831	10,807	10,831	10,807	-	24	15,375	
○ 비목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 상용임금(110-03)	419	419	402	-	17	432	432	431	432	431	-	1	473	
· 일반수용비(210-01)	514	514	507	-	7	525	525	523	525	523	-	2	52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649	5,649	5,595	-	54	5,829	5,657	5,637	5,657	5,637	-	20	6,031	
· 특근매식비(210-05)	23	23	21	-	2	23	23	21	23	21	-	2	29	
· 임차료(210-07)	11,889	11,889	11,443	-	446	8,322	8,286	8,260	8,286	8,260	-	26	6,583	
· 복리후생비(210-12)	7	7	7	-	0	7	7	7	7	7	-	-	7	
· 관리용역비(210-15)	13,301	13,301	13,068	-	233	13,074	12,825	12,805	12,825	12,805	-	20	13,609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0	13	13	13	13	13	-	-	13	
· 국내여비(220-01)	29	29	26	-	3	29	29	27	29	27	-	2	29	
·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3	-	4	17	17	-	17	-	-	17	17	
· 사업추진비(240-01)	40	40	32	-	8	40	40	19	40	19	-	21	40	
· 일반연구비(260-01)	4,758	4,758	4,720	-	38	4,419	4,876	4,857	4,876	4,857	-	19	9,129	
· 고용부담금(320-09)	82	82	64	-	18	85	85	68	85	68	-	17	94	
· 공사비(420-03)	590	590	581	-	9	590	590	582	590	582	-	8	590	
· 자산취득비(430-01)	1,786	1,786	1,780	-	6	8,080	8,080	8,063	8,080	8,063	-	17	7,385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9,117	39,117	38,272	-	845	41,485	41,485	41,313	41,485	41,313	-	172	44,554	
· 법무정보·사이버 보안시스템운영	6,740	6,611	6,548	-	63	6,370	6,243	6,243	6,243	6,243	-	-	5,947	
-임차료(210-07)	1,839	1,842	1,842	-	-	684	679	679	679	679	-	-	340	
-관리용역비(210-15)	4,901	4,769	4,706	-	63	5,686	5,564	5,564	5,564	5,564	-	-	5,607	
· 형사사법시스템 (법무부) 운영	1,600	1,732	1,732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1,600	1,732	1,732	-	-	-	-	-	-	-	-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1,658	1,658	1,552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임차료(210-07)	76	76	76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1,582	1,582	1,476	-	106	1,931	1,872	1,868	1,872	1,868	-	4	2,032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7,274	7,344	7,291	-	53	6,026	5,952	5,936	5,952	5,936	-	16	4,489	
-임차료(210-07)	3,736	3,806	3,806	-	-	2,249	2,243	2,243	2,243	2,243	-	-	338	
-관리용역비(210-15)	3,538	3,538	3,485	-	53	3,777	3,709	3,693	3,709	3,693	-	16	4,151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7,087	17,014	16,429	-	585	16,784	16,587	16,459	16,587	16,459	-	128	16,711	
-상용임금(110-03)	419	419	402	-	17	432	432	431	432	431	-	1	473	
-일반수용비(210-01)	514	514	507	-	7	525	525	523	525	523	-	2	5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649	5,649	5,595	-	54	5,829	5,657	5,637	5,657	5,637	-	20	6,031	
-특근매식비(210-05)	23	23	21	-	2	23	23	21	23	21	-	2	29	
-임차료(210-07)	6,238	6,165	5,719	-	446	5,389	5,364	5,338	5,364	5,338	-	26	4,847	
-복리후생비(210-12)	7	7	7	-	0	7	7	7	7	7	-	-	7	
-관리용역비(210-15)	1,680	1,680	1,669	-	11	1,680	1,680	1,680	1,680	1,680	-	-	1,819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0	13	13	13	13	13	-	-	13	
-국내여비(220-01)	29	29	26	-	3	29	29	27	29	27	-	2	29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3	-	4	17	17	-	17	-	-	17	17	
-사업추진비(240-01)	40	40	32	-	8	40	40	19	40	19	-	21	40	
-고용부담금(320-09)	82	82	64	-	18	85	85	68	85	68	-	17	94	
-공사비(420-03)	590	590	581	-	9	590	590	582	590	582	-	8	590	
-자산취득비(430-01)	1,786	1,786	1,780	-	6	2,125	2,125	2,113	2,125	2,113	-	12	2,197	
· 정보화사업(ISP포함)	4,758	4,758	4,720	-	38	10,374	10,831	10,807	10,831	10,807	-	24	15,375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58	
-일반연구비(260-01)	4,758	4,758	4,720	-	38	4,419	4,876	4,857	4,876	4,857	-	19	9,129	
-자산취득비(430-01)	-	-	-	-	-	5,955	5,955	5,950	5,955	5,950	-	5	5,1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내부포털,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정보, 법무연수원 등) 구축·운영관리 및 소속기관(204개) 전산장비·정보통신망·정보보안 관리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법무정보시스템은 내부포털시스템, 대표홈페이지, e-Learning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법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공통 업무 및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 사이버안전센터는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PC 및 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보안관제)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운영)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국립 법무병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관련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 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관리를 위해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부업무 및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사업은 법무부 본부 및 204개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 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
- (정보화사업(ISP포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 「보호관찰법」, 「보호소년법」, 「형집행법」 등

②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 확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2020. 9월 : 법무부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법무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 등 24개 과제 발굴·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200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197	41,011	39,117	41,485	44,55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외국인, 법무부 및 204개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 (2025) 6,370백만원 → (2026) 5,947백만원, 423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행정 공통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정보시스템 및 PC-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 등을 위해 전년대비 423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법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5,607백만원
사이버보안관제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21년) 사업 기존 임차료 34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70,340	○ 임차료(210-07): 684,000천원 가.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84,000천원)	5,946,381	○ 임차료(210-07): 339,446천원 가.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39,446천원)																																																																																																																								
	○ 관리운영비(210-15): 5,685,940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18,790천원) ·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907,51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8,059백만원 × 11% = 886,490천원 - 법무정보 HW 14,586백만원 × 7% = 1,021,02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660백만원 × 11% = 72,60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92백만원 × 7% = 139,44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712백만원 × 12% = 85,44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32백만원 × 7% = 79,240천원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88,202천원)		○ 관리운영비(210-15): 5,606,935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39,170천원) ·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907,51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7,924백만원 × 11% = 871,640천원 - 법무정보 HW 13,444백만원 × 7% = 941,08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674백만원 × 11% = 74,14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69백만원 × 7% = 137,83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825백만원 × 12% = 99,00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56백만원 × 7% = 80,920천원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88,866천원)																																																																																																																								
	<table><tr><th rowspan="2">기능 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tr><th>규모</th><th>연계 복합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tr><td>18,875</td><td>605,784</td><td>1.153</td><td>1.06</td><td>1.05</td><td>1.00</td><td>1.06</td><td>15,553,749,341</td></tr><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5,553,749,341</td></tr><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21,386,405,344</td></tr><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3,068,949,167</td></tr><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2%인 988백만원 요구</td><td>988,000,000</td></tr></table>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8,875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5,553,749,341	신규 개발원가 합계							15,553,749,34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1,386,405,344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068,949,16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2%인 988백만원 요구							988,000,000	<table><tr><th rowspan="2">기능 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tr><th>규모</th><th>연계 복합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tr><td>23,573</td><td>605,784</td><td>1.153</td><td>1.06</td><td>1.05</td><td>1.00</td><td>1.06</td><td>19,425,087,853</td></tr><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9,425,087,853</td></tr><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26,709,495,798</td></tr><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3,832,812,647</td></tr><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5.8%인 988백만원 요구</td><td>988,000,000</td></tr></table>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3,573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9,425,087,853	신규 개발원가 합계							19,425,087,853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6,709,495,798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832,812,64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5.8%인 988백만원 요구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8,875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5,553,749,341																																																																																																																				
신규 개발원가 합계							15,553,749,34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1,386,405,344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068,949,16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2%인 988백만원 요구							988,000,000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3,573	605,784	1.153	1.06	1.05	1.00	1.06	19,425,087,853																																																																																																																				
신규 개발원가 합계							19,425,087,853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6,709,495,798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3,832,812,64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5.8%인 988백만원 요구							988,000,000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752,894천원) · 20명×7,304천원×12개월 = 1,752,894천원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752,894천원) · 20명×7,304천원×12개월 = 1,752,894천원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11,938천원)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11,938천원)																																																																																																																									

예산

2025년 예산

산출내역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50	605,784	0.8967	1.00	1.00	1.06	1.08	963,887,365
신규 개발원가 합계							963,887,365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25,345,127
유지보수요율 (14.10%)							0.1410
합 계(부가세포함)							186,873,663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9.9%인 112백만원 요구							112,000,000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386,000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3,890	605,784	1.153	0.94	0.95	1.06	1.00	2,571,899,721
신규 개발원가 합계							2,571,899,72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536,362,116
유지보수요율 (13.70%)							0.1370
합 계(부가세포함)							484,481,610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70.9%인 386백만원 요구							386,000,000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984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110	605,784	0.9733	0.88	0.95	1.06	1.06	1,168,597,587
신규 개발원가 합계							1,168,597,58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606,821,682
유지보수요율 (14.05%)							0.1405
합 계(부가세포함)							225,758,446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6.6%인 127,984,000							127,984,000

예산

2026년 예산

산출내역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50	605,784	0.8967	1.00	1.00	1.06	1.08	963,887,365
신규 개발원가 합계							963,887,365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25,345,127
유지보수요율 (14.10%)							0.1410
합 계(부가세포함)							186,873,663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9.9%인 112백만원 요구							112,000,000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386,000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562	605,784	1.153	0.94	0.95	1.06	1.00	3,016,197,051
신규 개발원가 합계							3,016,197,051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4,147,270,945
유지보수요율 (13.70%)							0.1370
합 계(부가세포함)							568,176,119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67.9%인 386백만원 요구							386,000,000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984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543	605,784	0.9733	0.88	0.95	1.06	1.06	2,516,084,757
신규 개발원가 합계							2,516,084,75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459,616,541
유지보수요율 (14.05%)							0.1405
합 계(부가세포함)							486,076,124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3%인 127,984,000							127,984,000

②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931백만원 → (2026) 2,032백만원, 101백만원 증액

- (요구)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01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32백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31,167	○ 관리용역비(210-15): 1,931,167천원							2,031,815	○ 관리용역비(210-15): 2,031,815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15,810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17,158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46,29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45,048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4,997백만원 × 11% = 549,67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5,255백만원 × 11% = 578,05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5,665백만원 × 7% = 396,62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6,671백만원 × 7% = 466,998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9,52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2,11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696백만원 × 11% = 76,5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696백만원 × 11% = 76,5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1,328백만원 × 7% = 92,9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1,365백만원 × 7% = 95,550천원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15,357천원)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14,657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7,578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7,218천원)																																																																																																																														
<table><tr><th rowspan="2">기능 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4">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tr><th>규모</th><th>연계 복합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tr><td>12,564.5</td><td>605,784</td><td>1.1530</td><td>1.06</td><td>1.00</td><td>1.00</td><td>1.06</td><td>9,860,616,012</td></tr><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9,860,616,012</td></tr><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13,558,347,017</td></tr><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1,945,622,797</td></tr><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0.2%인 587백만원 요구</td><td>587,000,000</td></tr></table>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2,564.5	605,784	1.1530	1.06	1.00	1.00	1.06	9,860,616,012	신규 개발원가 합계							9,860,616,012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558,347,017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1,945,622,79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0.2%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table><tr><th rowspan="2">기능 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4">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tr><th>규모</th><th>연계 복합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tr><td>15,204</td><td>605,784</td><td>1.1530</td><td>1.06</td><td>1.00</td><td>1.06</td><td>1.06</td><td>12,648,020,550</td></tr><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2,648,020,550</td></tr><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17,391,028,256</td></tr><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2,495,612,555</td></tr><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3.5%인 587백만원 요구</td><td>587,000,000</td></tr></table>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204	605,784	1.1530	1.06	1.00	1.06	1.06	12,648,020,550	신규 개발원가 합계							12,648,020,550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7,391,028,256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2,495,612,555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3.5%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2,564.5	605,784	1.1530	1.06	1.00	1.00	1.06	9,860,616,012																																																																																																																																
신규 개발원가 합계							9,860,616,012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3,558,347,017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1,945,622,797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0.2%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5,204	605,784	1.1530	1.06	1.00	1.06	1.06	12,648,020,550																																																																																																																																
신규 개발원가 합계							12,648,020,550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17,391,028,256																																																																																																																																
유지보수요율 (14.35%)							0.1435																																																																																																																																
합 계(부가세포함)							2,495,612,555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3.5%인 587백만원 요구							587,000,000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779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439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가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5,735	605,784	1.1530	0.94	0.95	1.00	1.08	3,863,276,056	6,802	605,784	1.1530	0.94	0.95	1.00	1.08	4,582,040,756
	신규 개발원가 합계							3,863,276,056	신규 개발원가 합계							4,582,040,756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5,312,004,57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6,300,306,040
	유지보수요율 (13.40%)							0.1340	유지보수요율 (13.40%)							0.1340
	합 계(부가세포함)							711,808,613	합 계(부가세포함)							844,241,009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2%인 227백만원 요구							227,000,000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9%인 227백만원 요구							227,000,000

③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5) 6,026백만원 → (2026) 4,489백만원, 1,537백만원 감액

- (요구)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537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840백만원
차세대 지능형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기존 임차료 338백만원
유지보수 집행방식 개선 311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26,176	○ 임차료(210-07): 2,249,306천원 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임차료 (1,567,000천원) 나.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임차료 (682,306천원)							4,489,638	○ 임차료(210-07): 337,984천원 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임차료 (337,984천원)								
	○ 관리용역비(210-15): 3,776,870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11,930천원) · 상용SW 유지보수 11,054백만원 × 11% = 1,215,917천원 · HW 유지보수 14,229백만원 × 7% = 996,013천원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56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4,151,654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74,558천원) · 상용SW 유지보수 11,170백만원 × 11% = 1,228,712천원 · HW 유지보수 14,941백만원 × 7% = 1,045,846천원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565,739천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기능 점수	단가(원)	보정 계수				금 액(원)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규모	연계 복합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24,703	605,784	1.1530	1.12	0.95	1.00	1.00		18,358,552,347	30,538	605,784	1.1530	1.12	0.95	1.00	1.00	22,694,954,927
	신규 개발원가 합계								18,358,552,347	신규 개발원가 합계							22,694,954,92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25,243,009,477	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							31,205,563,025
	유지보수요율 (15.00%)								0.15	유지보수요율 (15.00%)							0.15
	합 계(부가세포함)								3,786,451,422	합 계(부가세포함)							4,680,834,454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41.3%인 1,565백만원 요구							1,565,000,000	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3.4%인 1,565백만원 요구							1,565,000,000		
다.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방식 개선 (311,357천원) · '26년 12월 대금(13회차) = 311,357천원																	

④ 법무정보화기반운영

: (2025) 16,784백만원 → (2026) 16,711백만원, 73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부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73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PC 등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8,863백만원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법무정보화 기반운영 7,84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81,588	○ 상용임금(110-03): 431,683천원	16,709,334	○ 상용임금(110-03): 472,399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431,683천원) · 급여: 14명×2,104,000원×12월=355,992천원 · 급식비: 14명×140,000원×12월=23,520천원 · 명절상여금: 14명×550,000원×2회=15,400천원 · 초과근무 수당 등: 36,771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472,399천원) · 급여: 14명×2,267,330원×12월=380,911천원 · 급식비: 14명×140,000원×12월=23,520천원 · 명절상여금: 14명×1,360,350원×2회=38,090천원 · 초과근무 수당 등: 29,878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525,100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 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7명 = 244,800천원 · 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00명 = 55,000천원 · 교육용소모품: 500천원 × 12개기관 = 6,000천원 · 교재비: 10천원 × 1,500권 = 15,000천원 · 교육방송 소모품: 16,000천원 나. 본부 및 203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65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0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 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 (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829,411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144,411천원) · 기존 사용료(5,105,275천원) + 교정민원콜센터 별도정약회선(2회선, 38,000천원) =5,144,411천원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 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 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 회선 증속 (237,600천원) · 2G → 5G 증속 19,800천원×12개월=237,6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3,00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7,000원 × 6일 × 12월 = 23,000천원 ○ 임차료(210-07): 5,388,15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연간 임차료 (4,776,075천원) · '20년 전산장비 구매 = 577,658천원 · '20년 win7대용 PC 구매 = 521,488천원 · '21년 전산장비 구매 = 1,160,400천원 ·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나. '25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610,281천원) · PC(모니터포함): 3,800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3,878천원 · 프린터 등 기타: 156,403천원 ○ 복리후생비(210-12): 7,0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7,000천원) · 14명×500,000원 = 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680,328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680,328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8,728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 근무지내: 20천원 × 27명 × 11일 = 6,100천원 · 근무지외: 60천원 × 44명 × 8일 = 22,56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7,200천원 가. 미주,유럽지역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7,200천원) · 항공료, 식비 등: 4명×4300천원 = 17,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 고용부담금(320-09): 84,394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525,828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 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7명 = 244,800천원 · 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00명 = 55,000천원 · 교육용소모품: 500천원 × 12개기관 = 6,000천원 · 교재비: 10천원 × 1,500권 = 15,000천원 · 교육방송 소모품: 16,000천원 나.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20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4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 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 (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031,425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583,257천원) · 기존 사용료(5,395,677천원, 25년 증속분 포함)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 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 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마. 제주크루즈 회선 증속(187,58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9,16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9,000원 × 6일 × 12월 = 29,160천원 ○ 임차료(210-07): 5,388,15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연간 임차료 (4,253,026천원) · '21년 전산장비 구매 = 1,160,400천원 ·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 '25년 전산장비 구매 = 1,209,112원 나. '26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594,239천원) · PC(모니터포함): 3,805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4,475천원 · 프린터 등 기타: 139,76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7,0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7,000천원) · 14명×500,000원 = 7,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818,72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679,570천원) 나.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방식 개선 (139,156천원) · '26년 12월 대금(13회차) = 139,156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8,580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 근무지내(본부): 20천원 × 6명 × 14일 = 1,680천원 · 근무지내(소속기관): 20천원 × 20명 × 11일 = 4,400천원 · 근무지외(본부): 50천원 × 15명 × 14일 = 10,500천원 · 근무지외(소속기관): 50천원 × 30명 × 8일 = 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6,997천원 가. 미주,유럽지역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6,997천원) · 항공료, 식비 등 : 4명×4249천원 = 16,99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 고용부담금(320-09): 93,555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법무부 소속기관(2027년)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25,195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293,000천원) · PC: 197대×1,100,000원×1.0054 = 218,000천원 · 프린터 등 기타: 75,000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1,832,200천원) ·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136,000천원 · 차세대형사법시스템(법무부) OS(리눅스) 구독료: 37×4,297천원 = 158,000천원 ·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57,000천원		가. 법무부 소속기관(2027년)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96,995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292,656천원) · PC: 197대×1,100,000원×1.0054 = 217,870천원 · 프린터 등 기타: 74,786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1,904,339천원) ·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136,000천원 · 차세대형사법시스템(법무부) 구독료: 48,000천원 ·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57,339천원 · KICS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115,000천원 · 홈페이지 접속대기열 솔루션: 38,000천원

⑤ 정보화사업(ISP포함)

: (2025) 10,374백만원 → (2026) 15,375백만원, 5,001백만원 증액

- (요구)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5,001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백만원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백만원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10,462백만원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386백만원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704백만원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185백만원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53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74,000	○ 일반연구비(260-01): 4,419,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000천원) · 6개기관×47,330천원 = 284,000천원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3,441,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721,000천원 · 사회봉사수감명령·조사 통합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모바일보호관찰시스템 등(개발): 2,720,000천원 다.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ISP (129,000천원) 라.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 3차 사업 (565,000천원) · 개발: (624FP×606천원×보정계수(1.1342848)) + 이윤(20%) + 부가세(10%) = 565,000천원	15,375,000	○ 일반연구비(260-01): 9,129,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000천원) · 6개기관×47,330천원 = 284,000천원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7,064,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350,000천원 ·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개발): 6,714,000천원 다.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1,328,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400,000천원 ·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개발): 928,000천원 라.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268,000천원) · JDK, 최신 출력솔루션, UI/UX 전체 교체, 프레임워크 전환 등
	○ 임차료(210-07) : 0천원		○ 임차료(210-07) : 1,058,000천원 가.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장비 도입): 1,05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955,000천원 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000천원) · 분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내용년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개선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5,13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188,000천원 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000천원) · 분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노후화된 통신, 보안장비 교체 및 이중화 추진 나.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3,398,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HW): 1,880,000천원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인프라 구축(SW): 3,257,000천원		-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장비도입) 다.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536,000천원) -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효력 상실 시스템 교체 라.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436,000천원) -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단위: 점)	목표	99.6	98.9	98.2	95.9	96.2	최근 3년 실적 평균값 93.4('23 년~'25년)보다 3% 상향 반영 하여 '26년 목 표치를 96.2점 으로 설정	(정보자원 관리 수준+정보시스 템 운영 성과 관리 이행수준 +공공앱 운영 성과 이행수준 +중복투자 예 방수준) / 4	행 정 안 전 부 "전자정부 성 과관리 수준진 단" 결과 점수
	실적	99.3	97.4	97.9	-	-			
	달성도	99.7	98.5	10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ISP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BPR/ISP ○ 법무부 기록관시스템 BPR/ISP
2023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1단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
2024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2단계) ○ 대체복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202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3단계)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SP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은 효율적인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업무 비효율 개선 등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법집행 실효성 확보 및 업무 간소화, 조기명령집행 등 재범방지, 인적자원 재분배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 효율성 및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등 행정효율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은 국내 유일 수용기관이자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의료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법·제도, 최신 IT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 분야 AI 기술을 활용해 범법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률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환자 관리 및 종이 업무 등 수작업의 자동화,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로 직원들의 편의성 증대 및 환자 관리 효율화 등 스마트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본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교체 및 이중화 추진을 통해 행정전산망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법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전성 강화할 수 있으며 더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감찰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인 사정활동, 감찰 결과를 안전하게 수집 및 보존하여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원인분석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을 통해 현재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는 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업무의 표준화가 가능하며 방어권 및 사법절차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작업 중심의 업무 방식을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연간 약 94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를 통해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된 보안체계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 계약체결(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117	41,485	41,485	41,485	41,485	
2025~2029		41,485	81,867	59,964	58,178	54,6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 '22년 법사위 '21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 교체 필요
▪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평가년도	예산 (억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 고
법무행정 정보화(정보화)	2023	410	95.6(우수)	
	2024	391	97.5(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 교체 필요	▪ 특별한 사유 없이 내용연수 도과 수량을 초과하여 전산장비를 교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 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 '25년부터는 사업 일정을 상반기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 하여 확정된 리스 계약금액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정보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확충
- 무중단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정화
- 법무정보·교정·범죄예방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대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체계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6개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사회적 가치 반영, 환류 및 개선 노력)중 4개 항목에 대한 배점 항목 만점을 획득, 집행의 효율성 21점 배점 중 20.6, 성과 달성도 40점 중 38점을 획득 하여 36개 평가 사업중 5위를 기록 하며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6개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 성과 우수성, 사회적 가치 반영, 환류 및 개선 노력)중 5개 항목에 대한 배점 항목 만점을 획득, 집행의 효율성 21점 배점 중 20.5을 획득 하여 32개 평가 사업중 7위를 기록 하며 보통 등급 평가를 받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 진행 전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227	△30	38,197	-	1	-	38,198	37,291	97.6	97.6	555	352
2023	41,011	-	41,011	555	-	-	41,566	40,858	99.6	98.3	-	708
2024	39,117	-	39,117	-	-	-	39,117	38,272	97.8	97.8	-	845
2025	41,485	-	41,485	-	-	-	41,485	41,313	99.6	99.6	-	17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147백만원 및 집행잔액 205백만원 - 전용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관련, 감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관리용역비 60백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 - 이월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미종료로 인해 555백만원 사고이월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36백만원 및 집행잔액 372백만원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14백만원 및 집행잔액 631백만원
202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6백만원 및 집행잔액 136백만원 - 전용 : 윈도우11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457백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1.)	법무행정정보 화(정보화)(703 4-500)	210-02	172	법무행정정보 화(정보화)(703 4-500)	260-01	윈도우11 운영체제 전환 사업 추진
		210-07	36			
		210-15	249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대변인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한정진	이동훈	김정현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02-2110-3038 대변인실	02-2110-4342	02-2110-30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54	811	811	848	848	37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36	848
·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383	383	383	-	-	383
· 근로자 인건비	368	368	322	-	-	379	379	343	379	343	-	36	413
·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49	49	49	49	49	-	-	52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36	848
· 상용임금(110-03)	304	304	264	-	-	314	314	291	314	291	-	23	341
·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65	-	-	365	374	374	374	374	-	-	365
·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4
·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3	4	3	-	1	4
· 일반용역비(210-14)	9	9	9	-	-	9	-	-	-	-	-	-	9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포상금(310-03)	9	9	9	-	-	9	9	9	9	9	-	-	9
·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	-	61	61	49	61	49	-	12	6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54	-	-	811	811	775	811	775	-	-	848
·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383	383	383	-	-	383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65	-	-	365	374	374	374	374	-	-	365
-일반용역비(210-14)	9	9	9	-	-	9	-	-	-	-	-	-	9
-포상금(310-03)	9	9	9	-	-	9	9	9	9	9	-	-	9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근로자 인건비	368	368	322	-	-	379	379	343	379	343	-	36	413
-상용임금(110-03)	304	304	264	-	-	314	314	291	314	291	-	23	341
-복리후생비(210-12)	4	4	4	-	-	4	4	3	4	3	-	1	4
-고용부담금(320-09)	60	60	54	-	-	61	61	49	61	49	-	12	68
·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49	49	49	49	49	-	-	52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4
-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행정 대국민 소통 강화)

(홍보사업비) 동 내역사업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근로자 인건비) 법무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홍보업무 운영비)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위한 지원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체류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께 정책시행을 알리지 못하여 법무부 각종 시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고 있음
- * 사업명칭 변경 : '10년 '서민지원·따뜻한 법치 확산' → '13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20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7	807	800	811	8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체류 외국인 등 법무정책 고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홍보사업비

: (2025 본예산) 383백만원 → (2026 요구) 383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주요 법무정책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온·오프라인 홍보 등 365백만원

영상제작 더빙 등 용역 9백만원

SNS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9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	○ 일반수용비(210-01) : 364,933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93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백만원 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 ○ 포상금(310-03) : 9백만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383	○ 일반수용비(210-01) : 364,892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892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백만원 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 ○ 포상금(310-03) : 9백만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② 근로자 인건비

: (2025 본예산) 379백만원 → (2026 요구) 413백만원, 34백만원 증액

- (요구) 홍보콘텐츠 제작 및 모니터링 직원 인건비로 처우개선분 반영 증액

- (산출) 근로자 인건비 341백만원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4백만원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8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9	○ 상용임금(110-03) : 313,812천원 가. 7명×3,736천원×12월 = 313,81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500천원 = 3,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1,351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61,351천원	413	○ 상용임금(110-03) : 341,572천원 가. 7명×4,066천원×12월 = 341,5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500천원 = 3,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7,632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67,632천원

③ 홍보업무 운영비

: (2025 본예산) 49백만원 → (2026 요구) 52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홍보업무 운영경비로 야근자 특근매식비 3백만원 증액

- (산출) 야근자 특근매식비 24백만원

장관 소속기관 방문취재, 영상취재 등 8백만원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20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	○ 특근매식비(210-05) : 21,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52	○ 특근매식비(210-05) : 24,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법무부 신규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개설 · 법무부 주요 정책 소개 시리즈물 “동행” 카드뉴스 제작·홍보 · ‘새 정부 업무 보고’ 홍보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2023	· ‘마약 근절’을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 라디오 광고, 포스터 제작, SNS 등 홍보 · ‘마약 근절’ 기차역·지하철역 전광판 광고 · 연두 업무 보고 등 주요 정책을 카드 뉴스, 웹툰,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2024	· ‘대마 합법 국가 방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캠페인 포스터·배너 제작 후 외교부 협업을 통해 20개국 39개 공관 포스터 및 배너 설치 · 캠페인 관련 콘텐츠 공항철도 및 공항 리무진 內 전광판 광고 · 든든한 안전지킴이 ‘전자감독제도’ 우수사례 모션툰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국민기자단 운영 등
2025	·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국민 실생활 밀접정책 SNS 홍보 · 법무부 주요정책 양방향 소통 활성화 추진 홍보 ·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영상, 카드뉴스 제작하여 홍보 · 국민기자단 운영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와 국민 일반에게 홍보함으로써 국민 인식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무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① 법무정책 중 중점 홍보분야 검토 및 결정
- ② 홍보매체 선정
- ③ 문화체육관광부(대행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 ④ 법무정책 정보 제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54	811	757	757	757	
2025~2029		811	835	860	885	91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조치) 광고효과 제고를 위하여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광고의 경우도 홍보대상에 따라 적합한 매체 선정을 하였음.
‘25년 법사위 ‘24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법무부 유튜브 홍보업무 성과 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조치) 법무정책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설문 이벤트 진행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독자수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튜브 활성화에 더욱 노력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예방 등 법무부 시행 다양한 법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책 전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29	△ 22	807	-	-	-	807	772	95.7	95.7	-	35
2023	807		807	-	-	-	807	750	92.9	92.9	-	57
2024	800		800	-	-	-	800	754	92.9	92.9	-	46
2025	811		811	-	-	-	811	775	95.6	95.6	-	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 행사개최로 인한 용역비(일반용역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세목 조정
2023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 조정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에서 세목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11.28.)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14	9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01	법무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으로 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정보화)(7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사법 공동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영미 단장	오은정	임금미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단	02-2110-3930	02-2110-3934	02-2110-3954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형사사법 공동시스템 운영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정보화)	7,038	2,803	2,803	2,780	2,442	△361	△1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96	7,096	7,038	-	58	2,803	2,803	2,691	2,803	2,691	-	112	2,442
· 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	-	-	-	-	424	424	416	424	416	-	8	124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5,616	5,616	5,612	-	4	1,425	1,425	1,404	1,425	1,404	-	21	1,385
· 소프트웨어연구개발사업	54	54	54	-	-	507	507	479	507	479	-	28	474
· 시스템개선 및 보안강화	1,020	1,020	1,004	-	16	-	-	-	-	-	-	-	-
· 기타 운영비	406	406	368	-	38	447	447	392	447	392	-	55	459
○ 비목별 분류(합계)	7,096	7,096	7,038	-	58	2,803	2,803	2,691	2,803	2,691	-	112	2,442
· 상용임금(110-03)	113	113	99	-	14	117	117	110	117	110	-	7	126
· 일반수용비(210-01)	160	160	160	-	-	160	160	158	160	158	-	2	16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	25	14	-	11	58	58	16	58	16	-	42	58
· 특근매식비(210-05)	10	10	9	-	1	10	10	10	10	10	-	-	10
· 임차료(210-07)	13	13	12	-	1	13	13	12	13	12	-	1	13
· 유류비(210-08)	3	3	0	-	3	1	1	0	1	0	-	1	1
· 복리후생비(210-12)	2	2	1	-	1	2	2	2	2	2	-	-	2
· 관리용역비(210-15)	5,616	5,616	5,612	-	4	1,385	1,385	1,364	1,385	1,364	-	21	1,385
· 기타운영비(210-16)	8	8	8	-	-	8	8	8	8	8	-	-	8
· 국내여비(220-01)	8	8	8	-	-	9	9	9	9	9	-	-	9
· 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	-	20	20	20	20	20	-	-	20
·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	-	2	2	0	2	0	-	2	2
· 일반연구비(260-01)	998	998	982	-	16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22	22	15	-	7	22	22	22	22	22	-	-	25
· 자산취득비(430-01)	76	76	76	-	-	971	971	935	971	935	-	36	598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7,096	7,096	7,038	-	58	2,803	2,803	2,691	2,803	2,691	-	112	2,442
· 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	-	-	-	-	424	424	416	424	416	-	8	124
-자산취득비(430-01)	-	-	-	-	-	424	424	416	424	416	-	8	124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5,616	5,616	5,612	-	4	1,425	1,425	1,404	1,425	1,404	-	21	1,385
-관리용역비(210-15)	5,616	5,616	5,612	-	4	1,385	1,385	1,364	1,385	1,364	-	21	1,385
-자산취득비(430-01)	-	-	-	-	-	40	40	40	40	40	-	-	-
· 소프트웨어예산사용권구입	54	54	54	-	-	507	507	479	507	479	-	28	474
-자산취득비(430-01)	54	54	54	-	-	507	507	479	507	479	-	28	474
· 시스템개선 및 보안강화	1,020	1,020	1,004	-	16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998	998	982	-	16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22	22	22	-	-	-	-	-	-	-	-	-	-
· 기타 운영비	406	406	368	-	38	447	447	392	447	392	-	55	459
-상용임금(110-03)	113	113	99	-	14	117	117	110	117	110	-	7	126
-복리후생비(210-12)	2	2	1	-	1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22	22	15	-	7	22	22	22	22	22	-	-	25
-일반수용비(210-01)	160	160	160	-	-	160	160	158	160	158	-	2	160
-공공요금(210-02)	25	25	14	-	11	58	58	16	58	16	-	42	58
-특근매식비(210-05)	10	10	9	-	1	10	10	10	10	10	-	-	10
-임차료(210-07)	13	13	12	-	1	13	13	12	13	12	-	1	13
-유류비(210-08)	3	3	-	-	3	1	1	0	1	0	-	1	1
-기타운영비(210-16)	8	8	8	-	-	8	8	8	8	8	-	-	8
-국내여비(220-01)	8	8	8	-	-	9	9	9	9	9	-	-	9
-국외여비(220-02)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	-	20	20	20	20	20	-	-	20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	-	2	2	0	2	0	-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관리
- 사건관계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진행정보,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통지서비스 등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운영·관리

○ 운영환경

- 서비스 환경: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 서비스 대상 기관 및 사용자
 - 형사사법기관: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원 등 전국 단위 2,900여개 기관, 약 18만 명의 사용자
 - 일반 국민: KICS 형사사법포털 이용자 약 300만 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4년 참여정부 당시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여 '09. 10. 시스템 구축 완료
- '10. 05. 형사사법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 '21.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1.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및 착수
- '24.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74(7,362)	6,641	7,096	2,803	2,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 관련기관, 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형사사법대민서비스 강화

: (2025 본예산) 424백만원 → (2026 요구) 124백만원, 300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시행령 시행(25. 6)에 따라 민원인이 형사사법포털 화면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제증명 등 전자문서를 열람·출력시 진본확인 인영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진본확인 솔루션 도입 필요
- (산출) 차세대 형사사법포털 진본 확인 서비스 개발 74백만원, Gagic TSA V4.0 AR 도입(3식) 5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4,000천원 · H/W : 210,000천원 · 보안장비(7종, 8식) 207,000천원 · 네트워크 장비(1종, 1식) 3,000천원 · S/W : 214,000천원 · 보안솔루션(6종, 49식) 161,000천원 · 운영관리솔루션(3종, 4식) 53,000천원	12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4,000천원 · S/W : · 보안솔루션(1식) 74,000천원 · 서버(3식) 50,000천원

②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2025 본예산) 1,425백만원 → (2026 요구) 1,385백만원, 40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위탁운영비
- (산출)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SW·HW 유지관리비: 665백만원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의 위탁운영비(8.5명): 72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385,000천원 · 통계시스템 도입장비 유지관리 665,000천원 · H/W(97종) 3,571,000,000원*0.065= 232,000천원 · S/W(205종) 5,128,000,000원*0.0848= 433,000천원 · 통계시스템 위탁운영 720,000,000원=72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 통계시스템 소프트웨어 · S/W(1식) 40,000천원	1,38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385,000천원 · 통계시스템 도입장비 유지관리 665,000천원 · H/W(97종) 3,571,000,000원*0.065= 232,000천원 · S/W(205종) 5,128,000,000원*0.0848= 433,000천원 · 통계시스템 위탁운영 720,000,000원=720,000천원

③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 (2025 본예산) 507백만원 → (2026 요구) 474백만원, 33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서버OS 및 GPU, 서버용 백신 등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보안패치 및 기술지원, 지속적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subscription) 갱신 필요
- (산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자산취득비 : 474백만원
백신 39식, linux os 38식, 서버인증서 15식, 앱변조탐지 3식, CPU라이선스 41식 (조달 쇼핑몰 구매
단가 및 다년도 라이선스 기 구매내역 반영)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7,000천원 · 서버인증서(8식) 5,700천원 · 리눅스OS(13식) 43,500천원 · 리눅스OS DataCenter(25식) 194,000천원 · GPU 라이선스(41식) 72,000천원 · 백신서버(15식) 5,200천원 · 모바일 백신(4식) 56,500천원 · 앱위변조탐지(4식) 48,500천원 · 온라인 백신(7식) 82,000천원	47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74,000천원 · 서버인증서(15식) 16,000천원 · 리눅스OS(13식) 47,000천원 · 리눅스OS DataCenter(25식) 213,000천원 · 백신서버(28식) 13,000천원 · 모바일 백신(4식) 56,500천원 · 앱위변조탐지(3식) 36,000천원 · 온라인 백신(7식) 89,000천원

④ 기타운영경비

: (2025 본예산) 447백만원 → (2026 요구) 459백만원, 12백만원 증액

- (요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 무기계약직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유류비, 사업추진비, 여비, 직책수행경비 등
- (산출) 사무보조원 운영 153백만원
 일반수용비 16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9백만원
 특근매식비 10백만원
 임차료 13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사무실운영비 8백만원
 여비 33백만원(국내 8백만원, 해외 25백만원)
 사업추진비 20백만원
 직책수행경비 2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1,352천원	○ 상용임금(110-03) 116,564천원 1.비정규직 보수4명*2,010,000원*12월=96,480천원 2.명절휴가비4명*1,100,000원=4,400천원 3.급식비4명*140,000원*12월=6,720천원 4.처우개선 8,96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000천원 1.기타직 맞춤형복지비 4명*500,000원=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2,788천원 1.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13,032천원 2.퇴직연금 9,710천원 3.계수조정 46천원	153,474천원	○ 상용임금(110-03) 126,440천원 1.비정규직 보수4명*2,060,000원*12월=98,880천원 2.명절휴가비4명*2,250,000원=9,000천원 3.급식비4명*140,000원*12월=6,720천원 4.처우개선 11,84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000천원 1.기타직 맞춤형복지비 4명*500,000원=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5,034천원 1.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14,492천원 2.퇴직연금 10,500천원 3.계수조정 42천원
159,5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159,500천원 1.회의자료 및 유인물비 5,000,000원*5회=25,000천원 2.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3.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2,200,000원*12개월=26,400천원 4.수수료 및 사용료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5.업무용택시 5,000,000원=5,000천원 6.자문단회의 등 위원수당 4,000천원 가.자문위원수당 200,000원*11명*1회=2,200천원 나.사업평가위원수당 300,000원*5명*1회=1,500천원	159,5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159,500천원 1.회의자료 및 유인물비 5,000,000원*5회=25,000천원 2.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3.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2,200,000원*12개월=26,400천원 4.수수료 및 사용료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5.업무용택시 5,000,000원=5,000천원 6.자문단회의 등 위원수당 4,000천원 가.자문위원수당 200,000원*11명*1회=2,200천원 나.사업평가위원수당 300,000원*5명*1회=1,500천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교육강사수당 280,000원*1명*1회=280천원 라.단수조정 20,000원= 20천원 7.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내자료 53,500천원 가.탁상달력 등 제작 30,000,000원=30,000천원 나.안내책자,L홀더 등 제작 23,000,000원=22,500천원 다.번역, 통역, 리서치 등 500,000원*2회=1,000천원		다.교육강사수당 280,000원*1명*1회=280천원 라.단수조정 20,000원= 20천원 7.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내자료 53,500천원 가.탁상달력 등 제작 30,000,000원=30,000천원 나.안내책자,L홀더 등 제작 23,000,000원=22,500천원 다.번역, 통역, 리서치 등 500,000원*2회=1,000천원
58,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00천원 1.우편요금 41,700원*12월=500천원 2.휴대폰이용 본인인증 이용료 1,166,666원*12월=14,000천원 3.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10,000천원 가.KT망 회선 사용료 200,000원*1라인*12월=2,400천원 나.정부망 회선 사용료 316,666원*12월=3,800천원 다.콜센터 전화요금 316,666원*12월=3,800천원 4.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인터넷회선료=34,000천원	58,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00천원 1.우편요금 41,700원*12월=500천원 2.휴대폰이용 본인인증 이용료 1,166,666원*12월=14,000천원 3.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10,000천원 가.KT망 회선 사용료 200,000원*1라인*12월=2,400천원 나.정부망 회선 사용료 316,666원*12월=3,800천원 다.콜센터 전화요금 316,666원*12월=3,800천원 4.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인터넷회선료=34,000천원
1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000천원 1.특근매식비 10,000,000원	1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000천원 1.특근매식비 10,000,000원
12,948천원	○ 임차료(210-07) 12,948천원 1.차량 995,700원*1대*12월=11,948천원 2.행사장 임차 1,000,000원*1회=1,000천원	12,948천원	○ 임차료(210-07) 12,948천원 1.차량 995,700원*1대*12월=11,948천원 2.행사장 임차 1,000,000원*1회=1,000천원
1,000천원	○ 유류비(210-08) 1,000천원 1.업무용차량 유류대 83,300원*12월 =1,000천원	1,000천원	○ 유류비(210-08) 1,000천원 1.업무용차량 유류대 83,300원*12월 =1,000천원
7,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7,500천원 1.과운영비 156,200원*4팀*12월=7,498천원 2.계수조정 2,000원	7,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7,500천원 1.과운영비 156,200원*4팀*12월=7,498천원 2.계수조정 2,000원
32,976천원	○ 여비(220) 34,200천원 ○ 국내여비(220-01) 9,000천원 1.관내 출장 3명*20,000원*3.5회*12개월=2,520천원 2.관외 출장 3명*50,000원*3.6회*12개월=6,4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5,200천원 1. 형사사법 최신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견학(단장1, 검사1, 일반직원2) - 1회*16,200천원=16,200천원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 경비(단장 1, 검사 1) - 1*9,000천원=9,000천원	32,976천원	○ 여비(220) 34,200천원 ○ 국내여비(220-01) 9,000천원 1.관내 출장 3명*20,000원*3.5회*12개월=2,520천원 2.관외 출장 3명*50,000원*3.6회*12개월=6,4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5,200천원 1. 형사사법 최신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견학(단장1, 검사1, 일반직원2) - 1회*16,200천원=16,200천원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 경비(단장 1, 검사 1) - 1*9,000천원=9,000천원
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0천원 1.유관기관 업무협의 30,000원*10명*12회 =3,600천원 2.회의 운영비 16,400천원 가.자문 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나.실무협의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다.실무자회의 15,000원*20명*14회=4,200천원 라.워크숍 3,100,000원*2회=6,200천원	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0천원 1.유관기관 업무협의 30,000원*10명*12회 =3,600천원 2.회의 운영비 16,400천원 가.자문 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나.실무협의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다.실무자회의 15,000원*20명*14회=4,200천원 라.워크숍 3,100,000원*2회=6,200천원
2,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2,000천원 1.월정직책급(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지원팀장) 150,000원*1명*12월 = 1,800천원 2.계수조정 200천원	2,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2,000천원 1.월정직책급(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지원팀장) 150,000원*1명*12월 = 1,800천원 2.계수조정 2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형사사법포털 피싱 사이트 탐지시스템 고도화 사업 -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도입
2023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인정보 강화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 형사사법포털 개선을 위한 장비 도입
2024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차세대 대응개발 -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2025	- 보이닝ARS 인터넷 환경 구성 - 형사사법 운영관리 솔루션 도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전자적 업무 처리에 따른 단위 업무시간 단축, 종이절감·우편송달 및 벌과금 진행 관련 사회비용 절감으로 연간 2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47일 소요되던 것을 평균 30일 이내로 단축
- 전자약식 사건은 2010. 7.부터 시행하여 '24년 기준 누적건수 735,732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자약식 사건 시행 이후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 납부율도 2배 상승하여 형사사법 비용 대폭 감소

<정성적 효과>

-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업무 단계별 프로세스가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사건 진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 및 효율적인 사건 관리 가능
- 타기관, 타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결과값이 피드백됨으로써 평가·피드백을 통한 업무 품질 향상
- 형사사법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신속한 벌과금 집행명령으로 벌금 집행율이 향상되고, 형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가형벌권이 확립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096	2,803	2,803	2,803	2,803	
2025~2029		2,803	28,438	6,802	3,370	3,3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2.09.)	①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홍보용 기념품 구매 지양 필요(주의)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 필요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 (“24.09.)	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② 내용연수 고려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대상년도	예산 (백만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정보화)	2023	6,641	94.6(보통)	
	2024	7,096	94.8(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도말 홍보용 기념품 구매 지양 필요(주의)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조속한 연계 필요	▪ 연초에 철저하게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각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 개발 완료 (“23.5.9.)
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② 내용연수 고려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 예산 범위내 홍보물품 구매 ▪ 내용연수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모품 구매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형사사법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고도화
- 지속적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74	△12	7,362	-	-	-	7,362	7,145	97.1	97.1	-	217
2023	6,641	-	6,641	-	-	-	6,641	6,508	97.8	97.8	-	133
2024	7,096	-	7,096	-	-	-	7,096	7,038	99.2	99.2	-	58
2025	2,803	-	2,803	-	-	-	2,803	2,691	96.0	96.0	-	1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22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업무 축소 감안하여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 12백만원을 감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03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사법 공동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영미 단장	오은정	임금미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단	02-2110-3930	02-2110-3934	02-2110-395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697	20,751	20,751	20,726	47,917	27,166	13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31.)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722	29,722	29,697	-	25	20,751	20,751	20,662	20,751	20,662	-	89	47,917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27,903	27,903	27,902	-	1	-	-	-	-	-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감리	385	385	385	-	-	-	-	-	-	-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PMO	940	940	940	-	-	-	-	-	-	-	-	-	-	
· 조달수수료	206	206	187	-	19	171	171	90	171	90	-	81	241	
· 추진단 운영비	288	288	283	-	5	-	-	-	-	-	-	-	-	
· 시스템 운영 유자·관리	-	-	-	-	-	20,280	20,280	20,273	20,280	20,273	-	7	27,480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ISMP	-	-	-	-	-	300	300	299	300	299	-	1	-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19,046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감리	-	-	-	-	-	-	-	-	-	-	-	-	687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PMO	-	-	-	-	-	-	-	-	-	-	-	-	463	
○ 비목별 분류(합계)	29,722	29,722	29,697	-	25	20,751	20,751	20,662	20,751	20,662	-	89	47,917	
· 일반수용비(210-01)	316	316	292	-	24	171	171	90	171	90	-	81	241	
· 공공요금(210-02)	48	48	48	-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11	11	11	-	-	-	-	-	-	-	-	-	-	
· 임차료(210-07)	99	99	99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20,280	20,280	20,273	20,280	20,273	-	7	27,480	
· 일반연구비(260-01)	18,547	18,547	18,547	-	-	300	300	299	300	299	-	1	5,761	
· 공사비(420-03)	20	20	20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0,681	10,681	10,680	-	1	-	-	-	-	-	-	-	14,4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722	29,722	29,697	-	25	20,751	20,751	20,662	20,751	20,662	-	89	47,917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27,903	27,903	27,902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17,222	17,222	17,222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0,681	10,681	10,680	-	1	-	-	-	-	-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감리	385	385	385	-	-	-	-	-	-	-	-	-	-	

	2024					2025(2025.12.31.)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일반연구비(260-01)	385	385	385	-	-	-	-	-	-	-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PMO	940	940	940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940	940	940	-	-	-	-	-	-	-	-	-	-
· 조달수수료	206	206	187	-	19	171	171	90	171	90	-	81	241
-일반수용비(210-01)	206	206	187	-	19	171	171	90	171	90	-	81	241
· 추진단 운영비	288	288	283	-	5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110	110	105	-	5	-	-	-	-	-	-	-	-
-공공요금(210-02)	48	48	48	-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11	11	11	-	-	-	-	-	-	-	-	-	-
-임차료(210-07)	99	99	99	-	-	-	-	-	-	-	-	-	-
-공사비(420-03)	20	20	20	-	-	-	-	-	-	-	-	-	-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	-	-	-	20,280	20,280	20,273	20,280	20,273	-	7	27,480
-관리용역비(210-15)	-	-	-	-	-	20,280	20,280	20,273	20,280	20,273	-	7	27,480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ISMP	-	-	-	-	-	300	300	299	300	299	-	1	-
-일반연구비(260-01)	-	-	-	-	-	300	300	299	300	299	-	1	-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19,046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4,611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14,435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감리	-	-	-	-	-	-	-	-	-	-	-	-	687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687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PMO	-	-	-	-	-	-	-	-	-	-	-	-	463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4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 노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전자영장)의 전자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조달수수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의 조달 계약 추진에 따른 조달수수료 지원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HW/SW,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보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플랫폼, 전자화공통 등 운영·관리
- (시스템 구축 감리)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 추진
- (시스템 구축 PMO)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감독 위탁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 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2005. ~ 200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2010. 0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 2018. 04.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추진 합의
- 2018.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행
- 2019. 0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2020. 07.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39)
- 2021. 07. 조달 발주 전 총사업비 협의
- 2021.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4. 10. 시행 예정)
- 2021.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 및 구축 추진
- 2024. 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 2025. 0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 계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08,153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50,455백만원, 감리비 2,441백만원, PMO 사업비 4,302백만원, 조달수수료 1,415백만원, 구축 후 5년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130,194백만원, 설계비 300백만원, 추가구축비 19,046백만원
- 사업기간 : '21년~'29년(시스템 구축 '21년~'24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4년~'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923	48,509	29,722	20,751	47,9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기관, 국민
-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20,580백만원 → (2026 요구) 27,480백만원, 6,900백만원 증액

- (요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실현을 위한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유지관리
- (산출) 상용SW 유지관리비 8,998백만원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기준]
HW 유지관리비 1,873백만원 [견적단가]
응용 SW 유지관리비 5,996백만원 [견적단가]
운영비 10,613백만원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투입공수 방식]

< 사업 수행 범위 >

구분	구축(2021년~2024년)	운영(2025년 ~ 2029년)
사업 내용	○ 차세대 KICS 개발(3차) - (관련과제) ①형사절차 전자화 ②디지털 수사자료 유통 ③정보공동활용 확대 ⑦KICS 근본적 개편	○ 차세대 KICS 운영 유지·관리 ①형사절차 전자화 ②디지털 수사자료 유통 ③정보공동활용 확대 ④모바일 KICS ⑤지능형 사건처리지원 ⑥음성인식 조서작성 ⑦KICS 근본적 개편 ⑧피해자 지원 토털 서비스 ⑨형사사법 민원 서비스 재편 ⑩원격화상조사 ⑪챗봇 서비스 ⑫미래지향적 아키텍처 구축 ⑬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⑭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 신기술 적용 과제 개발(2차) - (관련과제) ④모바일 KICS ⑤지능형 사건처리지원 ⑥음성인식 조서작성 ⑬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대국민 서비스 개발(2차) - (관련과제) ⑧피해자 지원 토털 서비스 ⑨형사사법 민원 서비스 재편 ⑩원격화상조사 ⑪챗봇 서비스	
	○ 형사사법 인프라 구축(3차) - (관련과제) ⑫미래지향적 아키텍처 구축 ⑬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⑭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80	○ 관리용역비(210-15) : 20,580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HW 유지관리: 26,749백만원 × 7.0% = 1,778백만원 · 상용 SW 유지관리: 63,742백만원 × 13% = 8,189백만원 나. 시스템 운영 · 83MM × 127,867천원 = 10,613백만원	27,480	○ 관리용역비(210-15) : 27,480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HW 유지관리: 26,749백만원 × 12월 × 7.0% = 1,873백만원 · 상용 SW 유지관리: 63,742백만원 × 12월 × 13% = 8,998백만원 · 응용 SW 유지관리: 59,964백만원 × 12월 × 10% = 5,996백만원 나. 시스템 운영 · 83MM × 127,867천원 = 10,613백만원

② 조달수수료

: (2025 본예산) 171백만원 → (2026 요구) 241백만원, 70백만원 증액

- (요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및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사업의 조달 계약 추진에 따른 조달수수료
- (산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조달수수료 146백만원,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사업의 조달 수수료 95백만원

* 나라장터 조달수수료 모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조달수수료 합계 산정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	○ 일반수용비(210-01) : 171백만원 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조달수수료 171백만원	241	○ 일반수용비(210-01) : 241백만원 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조달수수료 171백만원 나.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사업 조달수수료 95백만원

③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20,291백만원, 순증

- (요구) 형사사법 기관이 발부한 전자영장을 피집행자가 접속하여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 구축 및 전자영장 전용뷰어 시스템 구축
- (산출)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19,046백만원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감리 687백만원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PMO 46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291	○ 일반연구비(260-01) : 5,761백만원 가.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비 4,611백만원 나.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PMO 463백만원 다.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구축 감리비 687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4,435백만원 나.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스템 HW, SW 도입 14,4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RP/ISP 사업 수행('18.5.~12.)
201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19.4.~20.7.)
2020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용역 과제 수행('20.5.~9.)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8.) ○ 법무부 산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TF' 구성('20.8.)
2021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4. 10. 시행)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 수행
202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1차년도 종료
2023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차년도 종료 및 3차년도 사업 수행
202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2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실현으로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첨단 IT 기술 활용으로 비대면 수사여건 조성 및 사건 관계인의 온라인 업무 처리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 증진
- (정량적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및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혁신을 통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후 10년간 총 3조 3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단위: 억원)

추진과제	편익 범주		계
	기관	대국민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확대	998	8,334	9,332
형사사법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보공동활용 확대	75	26	101
현장중심 업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621	265	885
지능형 사건처리지원 서비스		9,223	9,223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서비스	3,804	3,031	6,835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사사법 민원 서비스 재편	1,388	743	2,131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2,515	1,985	4,500
합 계	9,400	23,606	33,007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조사	KDI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19. 4. ~ '20. 7.	(결과) B/C 1.39, AHP 0.654 (특이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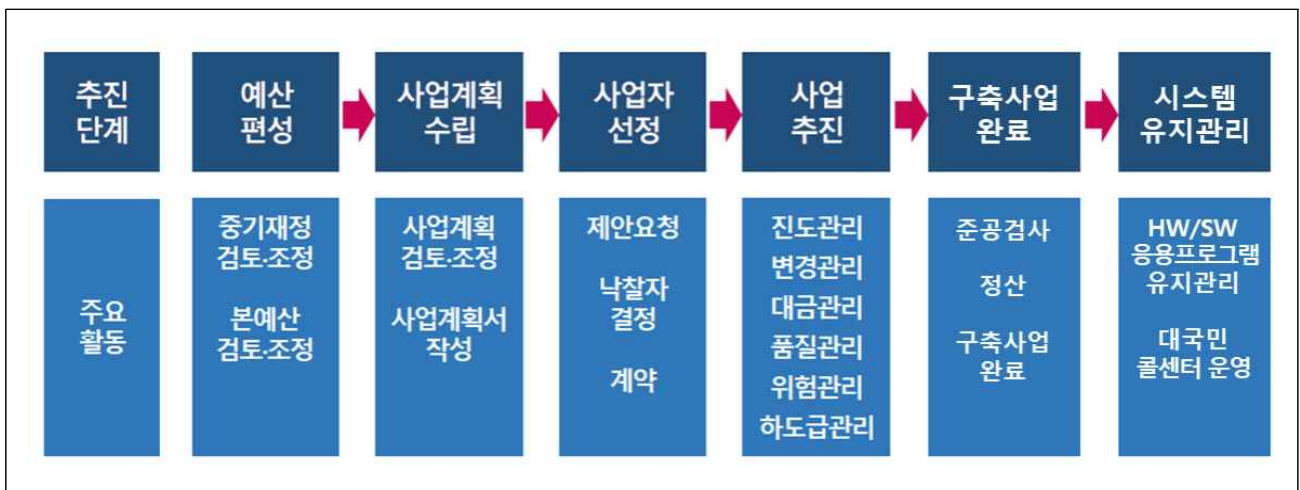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1 ~ '29	791	482	294	207	479	828	3,081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1		3,526	2021	2028	총사업비 신규 등록('21.1.)
(1)차 변경	2021		2,958	2021	2028	발주 전 총사업비 협의('21.7.)
(2)차 변경	2021		2,940	2021	2028	낙찰차액(1,779백만원) 감액 조정('21.12.)
(3)차 변경	2023		2,940	2021	2028	낙찰차액(15백만원) 감액 조정('23.1.)
(4)차 변경	2023		2,940	2021	2028	조달수수료 한도(97백만원) 협의 조정('23.6.)
(5)차 변경	2024		2,940	2021	2028	낙찰차액(29백만원) 감액 조정('24.1.)
(6)차 변경	2024		2,878	2021	2029	운영유지(△6,143백만원) 협의 조정('24.8.)
(7)차 변경	2025		2,875	2021	2029	낙찰차액(△328백만원) 감액 조정('25.2.)
(8)차 변경	2025		2,878	2021	2029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ISMP(303백만원) 증액 협의 조정('25.3.)
(9)차 변경	2025		3,081	2021	2029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사업(20,291백만원) 증액 협의 조정('25.8.)
2026년도 요구			479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9,722	19,389	30,394	30,394	30,394	
2025~2029		20,751	27,680	27,680	27,680	27,6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예결위 '21년 회계연도 시정요구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합리적 편성 필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대상 검토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합리적 편성 필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대상 검토 필요	'2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워 최초 계획상의 1단계 사업 예산 전액(사업기간 '21. 5.~12.)을 편성하였으나, '21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비 중 선금만 집행이 되어 잔금이 이월되고, 운영비 중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안부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진단 절반 규모(13명)의 임시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면서 일반 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22년도 차세대 KICS 구축비 등 예산 편성 시점부터는 위와 같은 사업 지연 사유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소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축비를 편성하였고, 향후 추가 이월 발생 가능성은 없으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기존 KICS망은 공수처와 외부 연계 방식으로 '23.5. 정상 개통하였고, 공수처는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에 참여 의사가 없으며 기존 KICS망과 연계된 부분은 차세대 KICS에도 승계될 예정이고, 추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공수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연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업무 혁신)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사건처리 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증대
- (대국민 서비스 혁신) 원격화상조사, 전자적 기록 열람·출력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포털 구축
- (미래지향 IT구조 개편) 최신 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음성인식, 모바일 등) 기반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1,948	△25	61,923	13,301	-	-	75,224	73,504	97.7	97.7	-	1,720
2023	48,509	-	48,509	-	-	-	48,509	48,384	99.7	99.7	-	125
2024	29,722	-	29,722	-	-	-	29,722	29,697	99.9	99.9	-	25
2025	20,751	-	20,751	-	-	-	20,751	20,662	99.6	99.6	-	8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70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기획조정실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0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기타 법무시설 조성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동헌	정 영	김태연
		시설담당관실	02-2110-3120	02-2110-3116	02-2110-31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8,873	4,141	4,141	5,101	5,101	960	2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7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203	5,101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697	-	36	733	733	716	733	716	-	17	733
· 수용거실 스프링 클러 설치	1,385	1,385	1,374	-	11	1,385	1,385	1,360	1,385	1,360	-	25	1,385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91	-	32	1,823	1,823	1,783	1,823	1,783	-	40	1,823
·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	-	-	-	-	-	-	1,000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2,980	2,785	-	195	-	-	-	-	-	-	-	-
· 서울여자소년분류심 사원 리모델링	3,625	3,642	706 [689]	2,799	137	-	2,799	2,678	-	-	-	121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1,421	1,421	644	-	777	-	-	-	-	-	-	-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721	721	333	-	388	-	-	-	-	-	-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리모델링	744	744	346	376	22	-	376	376	-	-	-	-	-
· 대구소년원 위탁 생활관 리모델링	191	191	-	-	191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9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203	5,101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85	385	296	-	89	-	-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734	751	196 [179]	376	179	138	514	467	138	91	-	47	138
· 공사비(420-03)	9,624	12,566	8,308 [5,366]	2,752	1,506	3,972	6,724	6,592	3,972	3,956	-	132	4,932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감리비(420-04)	81	119	72 [34]	38	9	26	64	50	26	12	-	14	26
· 시설부대비(420-05)	19	19	2	9	8	5	14	4	5	-	-	10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7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	5,10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680	-	53	733	733	716	733	716	-	17	73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6	46	44	-	2	46	46	40	46	40	-	6	46
- 공사비(420-03)	687	687	636	-	51	687	687	676	687	676	-	11	687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수용거실 스프링 클러 설치	1,385	1,385	1,280	-	105	1,385	1,385	1,360	1,385	1,360	-	25	1,385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52	52	52	-	-	52	52	52	52	52	-	-	52
- 공사비(420-03)	1,307	1,307	1,204	-	103	1,307	1,307	1,292	1,307	1,292	-	15	1,307
- 감리비(420-04)	26	26	24	-	2	26	26	16	26	16	-	10	26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35	-	88	1,823	1,823	1,783	1,823	1,783	-	40	1,82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0	40	13	-	27	40	40	5	40	5	-	35	40
- 공사비(420-03)	1,778	1,778	1,720	-	58	1,778	1,778	1,778	1,778	1,778	-	-	1,778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5	5	2	-	3	5	5	-	5	-	-	5	5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	-	-	-	-	-	-	1,00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공사비(420-03)	-	-	-	-	-	-	-	-	-	-	-	-	1,00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2,980	2,952	-	28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	2,942	2,914	-	28	-	-	-	-	-	-	-	-
- 감리비(420-04)	-	38	38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여자소년부류심사원 리모델링	3,625	3,642	706	2,799	137	-	2,799	2,678	-	-	-	121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17	17	-	-	-	-	-	-	-	-	-	-
- 공사비(420-03)	3,578	3,578	689	2,756	133	-	2,756	2,640	-	-	-	116	-
- 감리비(420-04)	38	38	-	34	4	-	34	34	-	-	-	-	-
- 시설부대비 (420-05)	9	9	-	9	-	-	9	4	-	-	-	5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1,421	1,421	644	-	777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6	46	20	-	26	-	-	-	-	-	-	-	-
- 공사비(420-03)	1,353	1,353	615	-	738	-	-	-	-	-	-	-	-
- 감리비(420-04)	17	17	9	-	8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5	5	-	-	5	-	-	-	-	-	-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721	721	333	-	388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721	721	333	-	388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리모델링	744	744	346	376	22	-	376	376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298	298	296	-	2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46	446	50	376	20	-	376	376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2024					2025							2026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대구소년원 위탁생 활관 리모델링	191	191	-	-	191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87	87	-	-	87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104	104	-	-	104	-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법무시설 안전 관리 강화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으로 대 국민 법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수용동 리모델링)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형사고 예방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보완
- (인권친화 환경개선) 여성 수유실 설치 및 성별 휴게실, 화장실 등 분리 설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인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일반회계의 법무시설조성사업(1700) 예산이 '신·증축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편성됨
- 2017년부터 '본부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본 사업에 통합 편성
(2019년부터 사업코드 7039-300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38	22,360	10,843	4,141	5,101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2025 본예산) 4,141백만원 → (2026 요구) 5,101백만원, 960백만원 증액

- (요구) 노후한 법무시설에 미비한 여성 수유실 신규 설치 및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를 통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산출)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4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20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노후관사 개보수 10채 X 20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778백만원 - 50개 기관 X 35.5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5,10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160백만원 (△4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노후관사 개보수 8채 X 20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778백만원 - 50개 기관 X 35.5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 인권친화 환경조성 (+1,00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1,000백만원 -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무시설 공사현장 안전도	목표	100	100	100	100	100	최근 3년간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계획수립여부 및 점검결과	현장점검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공사공정률	목표	90	90	90	90	90	공정률 목표 대비 실적	공정률 목표대비 점검결과	현장점검 및 간담회
	실적	98.8	111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10개 사업 추진
2023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4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5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4개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법무시설 안전 관리
- 민원인, 법무시설 이용자 등의 이용 만족도 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형사고 예방
-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응급 대비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처우 향상
- 기설치된 미흡한 천장형 난방설비로 인한 동절기 수용자 불만 해소
- 외부훼손 심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 민원 발생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구 분	1년				2년				3년				비 고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 계	계획/계약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납품								평균 240일 이상
공 사					조달요청/계약	철거/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입주				평균 1년 이상
감 리					조달요청/계약	감리용역							공사05기간과 비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100	22,200	22,700	11,700	8,480	
2025~2029		22,200	22,700	11,700	8,480	6,5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관련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상임위, 23결산)
 -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예결위·상임위 24결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산안 설계비 동시 계상 지양 및 사업의 긴급성·시급성 면밀히 검토 후 불가피한 동시 계상 시 진행상황 점검 등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 지속
 - 예산 편성전 내진보강 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보강공사 선행으로 사업진행 지연 최소화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및 국민의 정부 방침에 맞게 노후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법무 및 교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미비한 여성 수유실을 신규 설치하고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미분리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직원 및 방문인들의 불편 해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38	-	19,938	2,860	-	-	22,798	19,860	99.3	86.9	2,869	123
2023	22,360	-	22,360	2,869	-	-	25,229	21,179	94.7	83.9	2,997	1,052
2024	10,843	-	10,843	2,997	-	-	13,840	8,874	81.8	64.1	3,175	1,791
2025	4,141	-	4,141	3,175	-	-	7,316	7,113	98.0	97.2	-	20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사유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1차 준공이 '23. 하반기 예정으로 2차 착공 전까지의 최소한의 공사비·감리비 등 2,869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등 집행잔액 123백만원 불용
2023	- 이월사유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 '24.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등 2,981백만원 이월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7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신축 대구교도소 오배수 설비 보강공사 등 집행잔액 1,052백만원 불용
2024	- 이월사유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 : 본 공사전 내진보강공사 선행 필요성 등으로 당초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등 2,799백만원 이월,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75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 지속적 교육진행을 위해 입상관 부분 공사규모 축소로 공사비 등 777백만원 불용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 연결의자 철거공사를 조달업체에서 무상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 절감 사유로 공사비 등 333백만원 불용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 성능평가 시 내진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에 따라 당초 사업비 내에서 공사진행 가능여부가 불투명 해짐에 따라 설계비 등 191백만원 불용
2025	이월 해당사항 없음, 계약 차액 등으로 일부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신규내역 사업 - 인권친화 환경조성(참고자료)

참고

인권친화 환경조성(신규 내역사업)

□ 필요성

- ① 임신부 직원이나 기관 방문하는 대상자 또는 민원인 중 임신부나 영유아 동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휴게실이나 수유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어 **여성 보건실(수유실) 설치 필요**
- ② 직원 휴게실이 전혀 없거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며, 근무지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등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기관이 많음**

< 보완 필요 기관 사진 자료 >



□ 추진 내용

10년간('26 ~ '35) 법무부 소속 기관 대상 단계적 복지시설 보완 추진

- 사업 기간 : 총 10년(2026년 ~ 2035년)
- 사업 규모 : 법무부 복지시설 미흡기관 대상
- 사업 내용 : 여성 보건실(수유실) 설치, 근무지 남녀 화장실 분리, 휴게실 설치 및 성별 분리 등 직원 복지 관련
- 총 사업비 : 총 100억(10억 X 10년)

□ '26년 세부 추진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 전수조사 후 보완 우선순위를 선정, 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 여성 보건실(수유실) 1개소 공사비 2천만원 X 20개 기관 설치
 - 휴게실 및 화장실 1개소 공사비 5천만원 X 12개 기관 설치

□ 기대효과

- (출산장려 시책 부응)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을 고려, 여성용 보건실 등 임신부 편의 시설은 장기적으로 증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기관 방문

- 하는 대상자 및 민원에게도 친인권적 공간 제공의 기회 마련 필요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후 시설에 미비한 성별 휴게실 설치 및 근무 장소 화장실 분리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도모

사 업 명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운영지원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부 기록관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조상민	임진수 기록연구관	김지현
		운영지원과	02-2110-3011	02-2113-9602	02-2113-960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법무부 기록관 운영	7,151	5,566	5,566	4,797	4,797	△769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 비목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 상용임금(110-03)	222	222	171	-	51	309	309	288	309	288	-	21	351
· 일반수용비(210-01)	570	570	528	-	42	684	684	584	684	584	-	100	72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2	882	312	-	570	834	834	775	834	775	-	59	834
· 피복비(210-03)	-	-	-	-	-	2	2	2	2	2	-	0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9	149	132	-	17	149	149	149	149	149	-	0	149
· 복리후생비(210-12)	4	4	2	-	2	5	5	4	5	4	-	1	5
· 일반용역비(210-14)	2,200	2,200	2,200	-	-	2,640	2,640	2,614	2,640	2,614	-	26	2,640
· 관리용역비(210-15)	75	75	75	-	-	22	22	19	22	19	-	3	22
· 고용부담금(320-09)	43	43	16	-	27	61	61	53	61	53	-	8	70
· 자산취득비(430-01)	3,481	3,715	3,715	-	-	860	860	860	860	860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 운영) 기록관 내 시설 유지·관리,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물품·용역비 지원
- (공무직 인건비) 법무부 기록관 시설관리, 방호, 청소 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3.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 통보(국가기록원)
- 2015. 5. 법무부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3. 행정안전부 청사수급계획(18,031㎡) 반영
- 2017. 3. 보호 및 출입국 등 주요 기록물 자체 보관 지정 (국가기록원)
- 2018. 7. 비축부동산(신축부지) 관리전환 (기획재정부→법무부)
- 2018. 8. 기록관 신축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사업 추진
- 2020. 12. 신축공사 착공
- 2024.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 2024. 3. 운영팀 입주
- 2024. 11. 법무부 기록관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730	7,626	5,566	4,79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무부 기록관 운영

: ('25) 5,566백만원 → ('26) 4,797백만원, 769백만원 감액

- 법무부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등
- (산출) 기록관 운영 4,369백만원
공무직 인건비 42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66	○ 상용임금(110-03) : 309,120천원 · 공무직 기본급 등 : 2,576천원 × 10명 × 12개월 = 309,120천원 ○ 운영비(210) : 4,336,24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684,000천원 ·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 기타운영비 등 : 13,000천원 × 12개월 = 15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433천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 6,043천원 × 10명 = 60,433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860,207천원 · 이동식 서가 : 689㎡ × 420천원 = 290,000천원 · 특수공기살균기자재 : 64대 × 3,300천원 = 211,000천원 · 보존상자제작기자재 : 126㎡ × 2,850천원 = 359,207천원	4,797	○ 상용임금(110-03) : 350,861천원 · 공무직 기본급 등 : 2,924천원 × 10명 × 12개월 = 350,861천원 ○ 운영비(210) : 4,376,668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 ·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 기타운영비 등 : 16,333천원 × 12개월 = 19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9,471천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 6,947천원 × 10명 = 69,47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비전자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 163기관, 6,229,850권(현장조사 총 40회) -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이관대상 선별 : 조사수량 6,810점, 이관선별 150점 - 기록물 정리(목록화) : 8,052박스, 112,769권 - 기록물 보존서고 기록물 기록관 이송 결과 : 35,876박스, 960,335권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1~3차) - 기록물 등록·분류 기자재, 시청각 보존 및 변환작업 기자재,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기기 도입 ○ 법무부 기록관 내 전시실 조성 등
2024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정리 및 이관 : 20개 기관, 종이기록물 496,703권, M/F 30,000건 - 분류 및 정리 : 1,019,576권(기록관 609,780권, 소속기관 409,79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314,552면, 시청각 5,242건, 행정박물 67점, 도면류 227면 - 현장조사 : 현장방문 5개 기관, 자체 조사 35개 기관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2025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사전조사 및 기록물 이관 : 77개 기관, 종이기록물 864,815권 - 분류 및 정리 : 49,86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250,000면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특수공기살균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기록관 운영 및 주요 법무 기록물의 안정성 확보
- 국가적·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법무 기록의 적극적 활용 및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부' 구현
- 법무 및 국가 소송, 국가 인권정책,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 정책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제공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용역사업계획 수립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제안요청서 등 작성
↓		
②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	법무부 조달요청 접수
↓		
③ 규격검토 및 예가산정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④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입찰공고 등록
↓		
④ 입찰	조달청	사업자 대상 입찰 진행
↓		
⑤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규격평가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 체결
↓		
⑥ 계약이행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착수
↓		
⑦ 검사/검수 및 인수	법무부	준공내역 검수
↓		
⑧ 계약종결	조달청	대금지불 및 대금납입고지, 수납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626	5,566	4,832	4,732	5,125	
2025~2029		5,566	5,882	5,039	5,190	5,3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6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 · 관리 필요	
- '24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23년 국회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 · 관리 필요	▪ 기록관 운영을 목적으로 집행되던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부 예산을 기록관 운영 사업비(7039-302)로 통합 편성하겠음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감액 조치(△114백만원)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기 보존대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및 법 집행 주요 기록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3	4,730	-	4,730	-	-	-	4,730	4,459	94.3	94.3	234	37
2024	7,626	-	7,626	234	-	-	7,860	7,151	93.8	91.0	-	709
2025	5,566	-	5,566	-	-	-	5,566	5,348	96.1	96.1	-	2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계약완료('24. 1.) 이후 잔금 및 수수료 집행 예정에 따라 234백만원 이월 ·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3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법무부 기록관 개관 초기로 인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9백만원 불용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Ⅱ. 교도작업특별회계

사 업 명
교도작업 (15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도작업	59,062	62,105	62,105	65,004	65,004	2,899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 교도작업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 비목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 상용임금(110-03)	1,244	1,244	822	-	423	1,284	1,284	839	1,284	839	-	445	1,392
· 일반수용비(210-01)	3,779	3,414	3,411	-	3	3,779	3,039	3,039	3,039	3,039	-	-	3,77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40	1,950	1,943	-	7	1,890	2,138	2,120	2,138	2,120	-	18	1,890
· 피복비(210-03)	5	5	3	-	2	5	4	4	4	4	-	-	5
· 임차료(210-07)	328	95	95	-	-	328	141	141	141	141	-	-	271
· 유류비(210-08)	81	86	82	-	5	81	83	83	83	83	-	-	81
· 시설장비유자비(210-09)	682	572	571	-	-	682	537	537	537	537	-	-	682
· 재료비(210-11)	25,612	27,001	27,000	-	-	26,154	27,324	27,324	27,324	27,324	-	-	28,796
· 복리후생비(210-12)	16	16	11	-	5	16	11	10	11	10	-	1	16
· 국내여비(220-01)	153	153	149	-	4	153	153	152	153	152	-	1	153
·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 포상금(310-03)	180	180	180	-	-	180	180	180	180	180	-	-	180
· 기타보전금(310-04)	24,094	24,094	24,094	-	-	26,808	26,808	26,808	26,808	26,808	-	-	26,989
· 법정부담금(320-08)	438	438	438	-	-	438	438	438	438	438	-	-	438
· 고용부담금(320-09)	243	243	207	-	36	251	251	120	251	120	-	131	2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 교도작업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노역의무 집행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962	55,455	58,651	62,105	65,004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 : ('25) 62,105백만원 → ('26) 65,004백만원, 2,899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7개 기관, 10개 기업체, 수형자 92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3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20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6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7,874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개최(제51회)
2023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8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2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0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19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127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2회)
2024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3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55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5개 기관, 41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0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276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3회)
2025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1개 기관, 15개 기업체, 수형자 16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3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9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577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4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작업참여 수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신제품 개발,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수입증대
- 교도작업 수입금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과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 → 고지서 발부 → 징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8,651	62,105	62,105	60,000	55,000	
2025~2029		62,105	65,004	66,954	68,963	71,0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도작업의 생산성 증대 및 유망직종 발굴
-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교도작업의 질적 향상 제고
- 교도작업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세입 실적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022회계년도)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3회계년도)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4회계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213	△ 251	54,962	477	401	-	55,839	55,521	100.0	99.4	-	319
2023	55,455	-	55,455	-	894	-	56,349	55,899	100.8	99.2	-	450
2024	58,651	-	58,651	-	896	-	59,547	59,062	100.7	99.2	-	485
2025	62,105	-	62,105	-	-	-	62,447	61,851	99.6	99.0	-	5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직업훈련 (15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1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직업훈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직업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직업훈련	4,116	4,399	4,399	6,049	5,149	750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64	4,159	4,116	-	43	4,399	4,531	4,502	4,531	4,502	-	29	5,149
· 직업훈련	4,164	4,159	4,116	-	43	4,399	4,531	4,502	4,531	4,502	-	29	5,149
○ 비목별 분류(합계)	4,164	4,159	4,116	-	43	4,399	4,531	4,502	4,531	4,502	-	29	5,149
· 일반수용비(210-01)	1,117	1,177	1,177	-	-	1,367	1,207	1,203	1,207	1,203	-	4	1,433
· 유류비(210-08)	68	62	20	-	43	50	48	25	48	25	-	23	2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0	131	130	-	-	300	275	275	275	275	-	-	300
· 재료비(210-11)	1,531	1,640	1,640	-	-	1,531	1,715	1,715	1,715	1,715	-	-	1,717
· 국내여비(220-01)	30	31	31	-	-	33	33	33	33	33	-	-	33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 포상금(310-03)	9	9	9	-	-	9	9	9	9	9	-	-	9
· 자산취득비(430-01)	1,105	1,105	1,105	-	-	1,105	1,240	1,238	1,240	1,238	-	2	1,63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64	4,159	4,116	-	43	4,399	4,531	4,502	4,531	4,502	-	29	5,149
· 직업훈련	4,164	4,159	4,116	-	43	4,399	4,531	4,502	4,531	4,502	-	29	5,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
- 수형자 출소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 인가 공공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73	3,964	4,164	4,399	5,149

- 기타 : 전국 35개 교정시설에서 14개 분야 약 216개 과정 직업훈련 실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① 직업훈련 : ('25) 4,399백만원 → ('26) 5,149백만원, 750백만원 증액 |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5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16개 과정, 5,422명 실시
2023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10개 과정, 5,943명 실시
2024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48개 과정, 5,849명 실시
2025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56개 과정, 6,079명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규 직업훈련 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확대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직종, 인원 등 계획수립→ 법무부장관 승인→ 직업훈련 시설·장비 확보→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응시 → 직업훈련 수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164	4,399	3,539	3,539	3,539	
2025~2029		4,399	5,149	5,303	5,462	5,6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직업훈련의 취업역량 강화
- 최근 산업 동향에 적합한 취업 유망직종 신설
- 단일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복수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점차 전환하여 다기능인 양성
- 고급과정 확대를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022회계년도)
-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023회계년도)
-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4회계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73	-	4,173	-	△401	-	3,772	3,754	90.0	99.5	-	18
2023	3,964	-	3,964	-	-	-	3,964	3,920	98.9	98.9	-	44
2024	4,164	-	4,164	-	△5	-	4,159	4,116	98.8	99.0	-	43
2025	4,399	-	4,399	-	-	-	4,531	4,502	102.3	99.4	-	2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시설보완 (15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시설보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시설보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시설보완	5,055	3,897	3,897	7,570	7,570	3,673	9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75	5,164	5,076	22	88	3,897	3,784	3,421	3,762	3,399	-	363	7,570
· 시설보완	4,475	5,164	5,076	22	88	3,897	3,784	3,421	3,762	3,399	-	363	7,570
○ 비목별 분류(합계)	4,475	5,164	5,076	22	88	3,897	3,784	3,421	3,762	3,399	-	363	7,570
· 실시설계비(420-02)	170	254	168	-	87	170	170	86	170	86	-	84	315
· 공사비(420-03)	2,800	3,383	3,383	22	-	2,222	2,244	1,965	2,222	1,943	-	279	6,154
· 감리비(420-04)	52	74	74	-	-	52	52	52	52	52	-	-	59
· 자산취득비(430-01)	1,453	1,453	1,452	-	1	1,453	1,318	1,318	1,318	1,318	-	-	1,0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475	5,164	5,076	22	88	3,897	3,784	3,421	3,762	3,399	-	363	7,570
· 시설보완	4,475	5,164	5,076	22	88	3,897	3,784	3,421	3,762	3,399	-	363	7,5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작업장 등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생산성 제고능력 배양
-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수익금으로 작업시설 신·증축, 작업환경 개선, 최신 장비 설치 등 교도작업 발전기반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09	6,564	4,475	3,897	7,570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계속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설보완 : ('25) 3,897백만원 → ('25) 7,570백만원, 3,673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논산지소 1개 기관 작업장 신축
2023	○ 강원북부교도소 1개 기관 작업장 신축
2024	○ 강릉교도소 등 2개 기관 작업장 신축
2025	○ 대구교도소 1개 기관 작업장 신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장 신·증축을 통한 작업환경 조성, 정역집행률 제고 및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도모
- 수형자 작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 실시기관 시설보완 청구 → 예산재배정 → 집행 → 노후장비 교체, 신규 설비 투자 등의 순환과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475	3,897	4,475	3,897	3,897	
2025~2029		3,897	7,570	7,570	7,570	7,5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신설 교도소·구치소에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 증·개축을 통하여 작업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09	-	6,909	2,742	-	-	9,651	3,363	51.3	34.8	-	6,289
2023	6,564	-	6,564	-	-	-	6,564	5,693	86.7	86.7	689	182
2024	4,475	-	4,475	689	-	-	5,164	5,055	113.0	97.9	22	109
2025	3,897	-	3,897	22	-	-	3,784	3,421	87.8	90.4	-	36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7012-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2	250
명칭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교특회계관리 기본경비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통회계관리기본경비	404	444	444	444	44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4	404	404	-	-	444	444	434	444	434	-	10	444
· 교통회계관리기본경비	404	404	404	-	-	444	444	434	444	434	-	10	444
○ 비목별 분류(합계)	404	404	404	-	-	444	444	434	444	434	-	10	444
· 일반수용비(210-01)	176	173	173	-	-	166	169	169	169	169	-	-	16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31	31	-	-	31	28	28	28	28	-	-	36
· 임차료(210-07)	38	38	38	-	-	30	30	30	30	30	-	-	30
· 국내여비(220-01)	44	46	46	-	-	74	65	55	65	55	-	10	74
· 국외업무여비(220-02)	27	28	28	-	-	27	30	30	30	30	-	-	27
· 관사업무추진비(240-02)	36	36	36	-	-	64	64	64	64	64	-	-	64
· 포상금(310-03)	52	52	52	-	-	52	58	58	58	58	-	-	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4	404	404	-	-	444	444	434	444	434	-	10	444
· 교통회계관리기본경비	404	404	404	-	-	444	444	434	444	434	-	10	4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의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자원배분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정책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4	384	404	444	444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2만여 명의 수형자가 참여하는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본부 기본경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 ('25) 444백만원 → ('26) 444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로 경영 마인드 및 실무능력 제고 ○ 교도작업 홍보를 위한 팜플렛, 안내장 등 제작
2023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로 경영 마인드 및 실무능력 제고 ○ 교도작업 홍보를 위한 팜플렛, 안내장 등 제작 ○ 관련업무 담당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집 제작
2024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전 소속기관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개최 ○ 교도작업제품 안내책자 제작·배부
2025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세입증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 교정작품 전시회 각 청별로 개최하여 교도작업 제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 및 4개 지방교정청 기본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4	444	444	444	444	
2025~2029		444	444	444	44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교정활동의 일환인 교도작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4	-	384	-	-	-	384	375	97.7	97.7	-	9
2023	384	-	384	-	-	-	384	382	99.4	99.4	-	2
2024	404	-	404	-	-	-	404	404	100.0	100.0	-	-
2025	444	-	444	-	-	-	444	434	97.7	97.7	-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70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9	250
명칭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60	208	208	208	2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 일반수용비(210-01)	-	-	-	-	-	12	14	14	14	14	-	-	1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	25	23	-	2	26	24	23	24	23	-	1	56
◦ 유류비(210-08)	170	170	138	-	32	170	170	140	170	140	-	30	1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	195	195	208	208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생산한 제품의 납품용 화물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차세·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차량 연료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25) 208백만원 → ('26) 208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 관리 지원
2023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 관리 지원
2024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 관리 지원
2025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 관리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교도작업의 원 목적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효과를 발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제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납품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5	201	207	213	219	
2025~2029		208	208	208	2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활동의 일환인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배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	-	195	-	-	-	195	171	87.7	87.7	-	24
2023	195	-	195	-	-	-	195	152	78.0	78.0	-	43
2024	195	-	195	-	-	-	195	161	82.6	82.6	-	34
2025	208	-	208	-	-	-	208	177	85.1	85.1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91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이우섭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49,500	52,627	52,627	51,909	51,909	△718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비목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480-03)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697	54,917	52,640	52,627	51,909

- 기타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25) 52,627백만원 → ('26) 51,909백만원, 718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3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4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5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640	52,627	52,627	52,627	52,627	
2025~2029		52,627	51,909	51,909	51,909	51,9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운영 효율화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697	254	54,951	-	-	-	54,951	46,500	84.6	84.6	-	8,451
2023	54,917	-	54,917	-	△ 894	-	54,023	47,000	85.6	87.0	-	7,023
2024	52,640	-	52,640	-	-	-	52,640	49,500	94.0	94.0	-	2,249
2025	52,627	-	52,627	-	-	-	52,287	50,000	95.0	95.6	-	2,28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Ⅲ. 범죤피해자보호기금

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5~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서혜주 서기관	김도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0,518	21,442	21,442	32,329	27,988	6,546	3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441	21,442	21,442	21,442	20,271	21,442	20,271		1,171	27,988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3,100	2,979	2,552	-	427	1,343	1,343	1,343	1,159	1,343	1,159		184	1,085
·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운영	4,516	4,508	4,508 [4,477]	-	0	5,267	5,267	5,267	5,263	5,267	5,263		4	5,488
· 스마일센터 운영	8,335	8,335	8,334 [7,913]	-	1	8,571	8,571	8,571	8,571	8,571	8,571		-	11,410
·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3,300	3,260	3,255	-	5	4,413	4,413	4,413	3,473	4,413	3,473		940	4,804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708 [555]	-	0	708	708	708	708	708	708		-	708
·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29	429	-		409	409	409	387	409	387		22	409
·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		412	412	412	412	412	412		0	412
·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30	324	-	6	320	320	320	300	320	300		20	317
·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	-	-	-	-	-	-	-	-	-	-	-	-	-	3,355
○ 비목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441	21,442	21,442	21,442	20,271	21,442	20,271		1,171	27,988
· 상용임금(110-03)	102	102	101	-	1	211	211	211	210	211	210		1	232
· 일반수용비(210-01)	1,131	940	932	-	7	779	779	779	711	779	711		68	7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48	-	2	228	228	228	125	228	125		103	178
· 특근매식비(210-05)	3	3	3	-	0	2	2	2	2	2	2		-	2
· 임차료(210-07)	448	298	254	-	44	291	291	291	290	291	290		1	241
· 유류비(210-08)	5	5	0	-	5	5	5	5	1	5	1		4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157	53	-	104	174	174	174	135	174	135		39	160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0	3	3	3	3	3	3		-	3
· 일반용역비(210-14)	19	220	220	-	0	200	200	200	196	200	196		4	200
· 관리용역비(210-15)	-	-	-	-	-	41	41	41	32	41	32		10	41
· 국내여비(220-01)	33	33	30	-	2	36	36	36	26	36	26		10	36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사업추진비(240-01)	61	61	61	-	0	61	61	61	61	61	61		-	61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9	-	1	200	200	200	165	200	165		35	2,187
· 기타보전금(310-04)	3,184	3,184	3,181	-	3	4,297	4,297	4,297	3,403	4,297	3,403		894	4,688
· 민간경상보조(320-01)	13,685	13,685	13,684 [13,081]	-	1	14,672	14,672	14,672	14,672	14,672	14,672		-	17,833
·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133]	-	0	135	135	135	135	135	135		-	35
· 고용부담금(320-09)	20	20	10	-	10	41	41	41	41	41	41		-	46
· 설 계 비(420-02)	84	84	70	-	14	-	-	-	-	-	-		-	-
· 공 사 비(420-03)	1,520	1,520	1,284	-	236	-	-	-	-	-	-		-	-
· 감 리 비(420-04)	61	61	56	-	5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00	300	296	-	4	66	66	66	65	66	65		2	1,290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21,099	20,959	20,518 [19,914]	-		21,442	21,442	21,442	20,271	21,442	20,271		1,171	27,988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3,100	2,979	2,552	-	427	1,343	1,343	1,343	1,159	1,343	1,159	-	184	1,085
- 상용임금(110-03)	102	102	101	-	1	211	211	211	210	211	210	-	1	232
- 일반수용비(210-01)	286	300	300	-	-	134	134	134	134	134	134	-	-	1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48	-	2	228	228	228	125	228	125	-	103	178
- 특근매식비(210-05)	3	3	3	-	-	2	2	2	2	2	2	-	-	2
- 임 차 료(210-07)	448	298	254	-	44	291	291	291	290	291	290	-	1	241
- 유 류 비(210-08)	5	5	-	-	5	5	5	5	1	5	1	-	4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7	157	53	-	104	174	174	174	135	174	135	-	39	160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3	3	3	3	3	3	-	-	3
- 일반용역비(210-14)	19	33	33	-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41	41	41	32	41	32	-	9	41
- 국내여비(220-01)	12	12	10	-	2	15	15	15	5	15	5	-	10	15
- 사업추진비(240-01)	32	32	32	-	-	32	32	31	31	31	31	-	-	32
- 일반연구비(260-01)	-	-	-	-	-	100	100	100	85	100	85	-	15	-
- 고용부담금(320-09)	20	20	10	-	10	41	41	41	41	41	41	-	-	46
- 설 계 비(420-02)	84	84	70	-	14	-	-	-	-	-	-	-	-	-
- 공 사 비(420-03)	1,520	1,520	1,284	-	236	-	-	-	-	-	-	-	-	-
- 감 리 비(420-04)	61	61	56	-	5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00	300	296	-	4	66	66	66	65	66	65	-	2	22
· 범죄피해지원 센터 운영	4,516	4,508	4,508 [4,477]	-	[31]	5,267	5,267	5,267	5,263	5,267	5,263			5,488
- 민간경상보조(320-01)	4,366	4,366	4,366 [4,335]	-	[31]	5,117	5,117	5,117	5,117	5,117	5,117		-	5,338
- 일반수용비(210-01)	150	-	-	-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142	142	-	0	150	150	150	146	150	146		4	150
· 스마일센터 운영	8,335	8,335	8,334 [7,913]	-	[422]	8,571	8,571	8,571	8,571	8,571	8,571		-	11,410
- 민간경상보조(320-01)	8,200	8,200	8,199 [7,780]	-	[420]	8,436	8,436	8,436	8,436	8,436	8,436		-	11,375
-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133]	-	[2]	135	135	135	135	135	135		-	35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3,300	3,260	3,255	-	5	4,413	4,413	4,413	3,473	4,413	3,473	-	940	4,804
-일반수용비(210-01)	116	76	74	-	2	116	116	116	70	116	70	-	46	116
-기타보전금(310-04)	3,184	3,184	3,181	-	3	4,297	4,297	4,297	3,403	4,297	3,403	-	894	4,688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708	-	0	708	708	708	708	708	708	-	-	708
-민간경상보조(320-01)	708	708	708	-	0	708	708	708	708	708	708	-	-	708
•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29	429	-	0	409	409	409	387	409	387	-	22	409
-일반수용비(210-01)	409	429	429	-	0	409	409	409	387	409	387	-	22	409
•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	0	412	412	412	412	412	412	-	-	412
-민간경상보조(320-01)	412	412	412	-	0	412	412	412	412	412	412	-	-	412
•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30	324	-	6	320	320	320	300	320	300	-	20	317
-일반수용비(210-01)	170	135	130	-	5	120	120	120	120	120	120	-	-	120
-일반용역비(210-14)	-	45	45	-	0	50	50	50	50	50	50	-	-	50
-국내여비(220-01)	21	21	21	-	0	21	21	21	21	21	21	-	-	21
-사업추진비(240-01)	29	29	29	-	0	30	30	30	30	30	30	-	-	3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9	-	1	100	100	100	80	100	80	-	20	97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	-	-	-	-	-	-	-	-	-	-	-	-	3,355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2,090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	1,2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재판모니터링, 기타 지원(홍보·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의 체계적 설계 및 안내·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기관 연계 협력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실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치료 부대비용 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신속히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간병비>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14년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지원

※ 생계비·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청 사업으로 이관('1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6. 11.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1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 중임

※ 2008. 9. 설립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유관 기관간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총괄 업무를 담당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 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총 16개소 운영 중

<원스톱솔루션센터>

-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회복까지 단계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24. 7. 서울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
- '25. 6.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작('13.)하여 경찰청 직접수행('16.)으로 변경

<범죄피해 법률구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16. 1.) 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96	17,270	21,099	21,442	27,9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범피센터	보조	범피센터	5,338	15~2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스마일센터	보조	스마일센터	11,410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간병비 등	보조	범피연합회	708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법률구조	보조	구조공단	412	1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 ('25) 5,267백만원 → ('26) 5,488백만원, 221백만원 증액
- ② 스마일센터 운영
: ('25) 8,571백만원 → ('26) 11,410백만원, 2,839백만원 증액
- ③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25) 1,343백만원 → ('26) 1,085백만원, 258백만원 감액
- ④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 ('25) 4,413백만원 → ('26) 4,804백만원, 391백만원 증액
- ⑤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 ('25) 708백만원 → ('26) 708백만원, 전년동
- ⑥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25) 409백만원 → ('26) 409백만원, 전년동
- ⑦ 범죄피해 법률구조
: ('25) 412백만원 → ('26) 412백만원, 전년동
- ⑧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 ('25) 320백만원 → ('26) 317백만원, 3백만원 감액
- ⑨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5) - → ('26) 3,355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범죄피해자지원 만족도(점)	목표	90.6	90.8	91.0	91.1	91.2	'24년 목표치 대비 0.1점 상향	점수총계/ 응답자수	만족도 설문조사자료
	실적	91.0	91.1	91.5	-	-			
	달성도	99.6	99.7	100.5	-	-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569	82,677	'24년 실적치 대비 3% 상향	스마일센터의 심리지원 + 사회지원 + 법률지원 + 임시주거 실적	스마일센터 분기별 실적 보고
	실적	90,945	82,974	80,269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간병비·치료부대 비용 등 범죄피해자 자립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85	509	'24년 실적치 대비 3% 상향	간병비+치료부 대비용 실적합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 통계시스템
	실적	477	514	494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배포(3월) ·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내에 비치하여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한번에 신청 가능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국 1,600개 병·의원 키오스크 홍보(3~4월) ·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매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공익영상(4편, 각 30초) 광고 -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림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7. ~ 6. 19.(3주)'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0.(금) 청계천 걷기 행사, 범피센터·스마일센터 등 종사자 300명 및 일반시민 참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옥외 광고(9월) ·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 이동량이 많은 기간(9. 8.~22, 2주),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전광판을 통한 공익영상 광고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10월~)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장 강화 ·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 ※ 2022. 10.부터 정례회의 개최, '22년은 총 두차례 회의 개최(①'22. 10. 20. / ②'22. 11. 22.)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11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범죄피해자 위로 및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격려를 위해 인권대회 개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수여자 50여명 격려 - 이태원 사고 관련 심리지원 협조(11월) ·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 부상자·유가족·목격자·소방·경찰 등의 심리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조정·협조 ·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부상자와 유족 등의 심리적 피해 회복에 기여 -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11월) ·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16개 스마일센터 및 유관 기관 참여하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12월) · 범죄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 개최(법무부 차관) ·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개최(법무부 장관)
2023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개선 · '22. 10. 20.부터 관계부처 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진행 · 서울특별시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 11. 15.)에 따라 '24년 하반기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필요 정보 등을 문서 24를 통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자료 교환 체계 운영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결의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23. 12.)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6·17회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3. 7./ 12.) *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20명 대상, 6,500만원 지원 실시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23. 1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 개최 ※ (다령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1,000여명 참여하여 걷기 대회 및 문화공연 등 실시(6. 10. / 서울대공원)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9./국립과천과학관) ·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연수원 집합 교육*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무 전문성 제고 * '23. 8. 28.~ 9. 1, 3일간 진천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실시 감독 및 강의 출강 · 상담사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채용 범위 확대, 직원복지 개선(센터 종사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수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스마일센터 운영 규정 및 매뉴얼 개정 및 시행('23. 3.)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등 배포('23. 1.)
2024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8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4.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 대상, 1,7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령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8. ~ 6. 15.(3주) '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5.(토) 장관, 시민, 피해자지원 종사자 등 500여명 참석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 대구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

	-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자가치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배포 (‘24. 7.)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 7.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대구)
2025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장례비를 인상하였고, 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정 ·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장애·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24. 9. 공포, ‘25. 3. 시행) · 구조금 분할지급제도 신설, 구상권 행사의 실질화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 도입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21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5. 12.)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7명 대상, 2,0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제12회 다링안심 캠페인’ 개최(5. 31. 서울어린이대공원)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4.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61개소) 운영지원 등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기타(주거안정지원, 신변보호, 법정 모니터링 등)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스마일센터(16개소) 및 총괄지원단 운영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주말·야간 운영을 확대 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 실현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년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개소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치료비,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하는 치료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치료를 돕고,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응급 구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취업지원 등)
 -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직접 지출되는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와 치료 부대 비용도 함께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자립을 도움
-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 주거지 등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의 영위하는 장소인 동시에 범죄로 인한 끔찍한 기억을 반복 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신속히 범죄 흔적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범죄피해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사법 절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법률구조 등) 실시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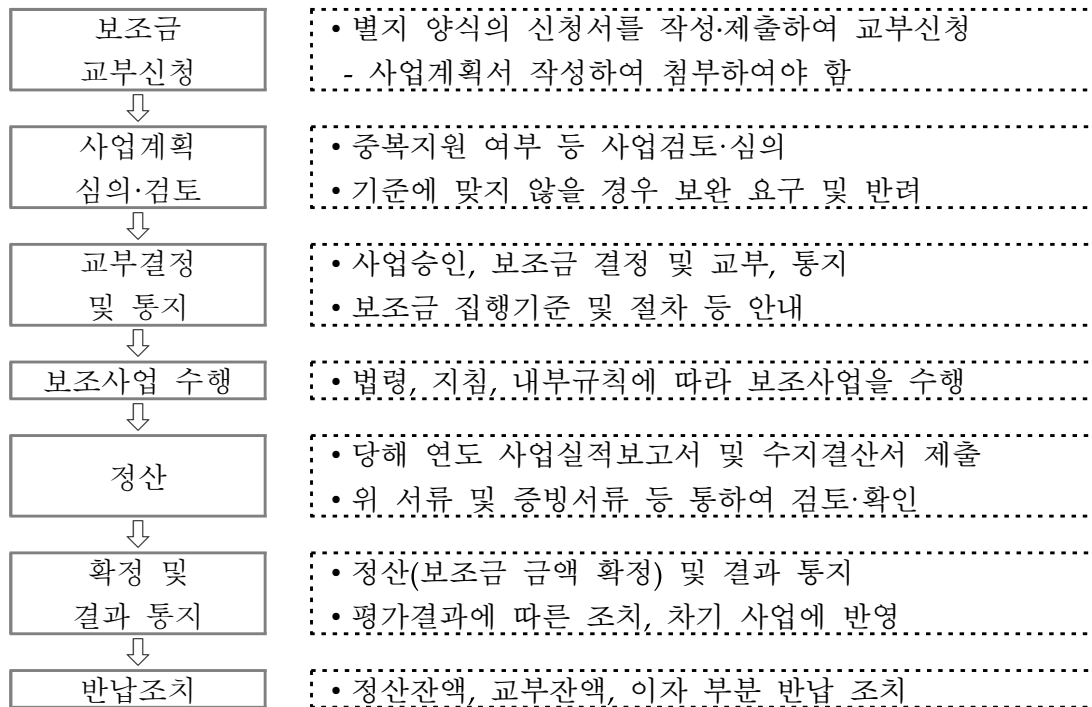
-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서비스 홍보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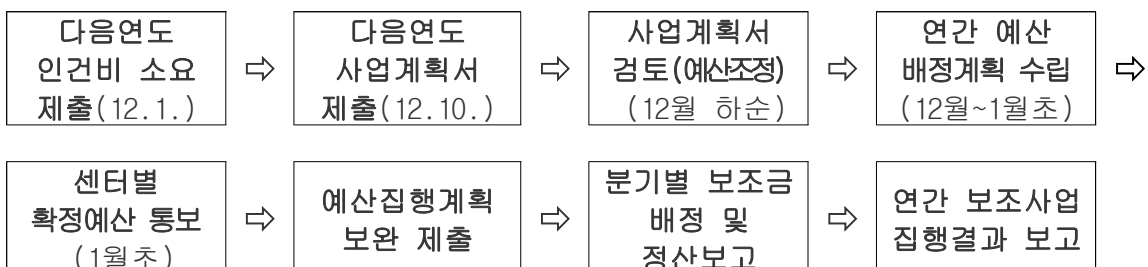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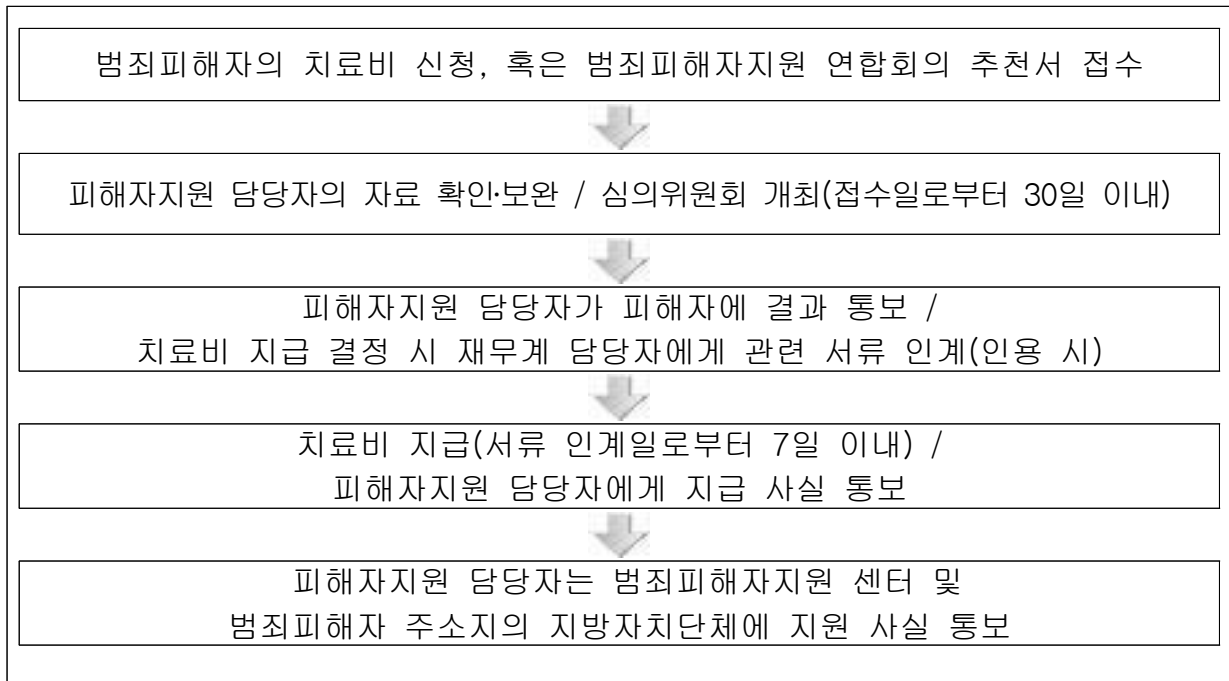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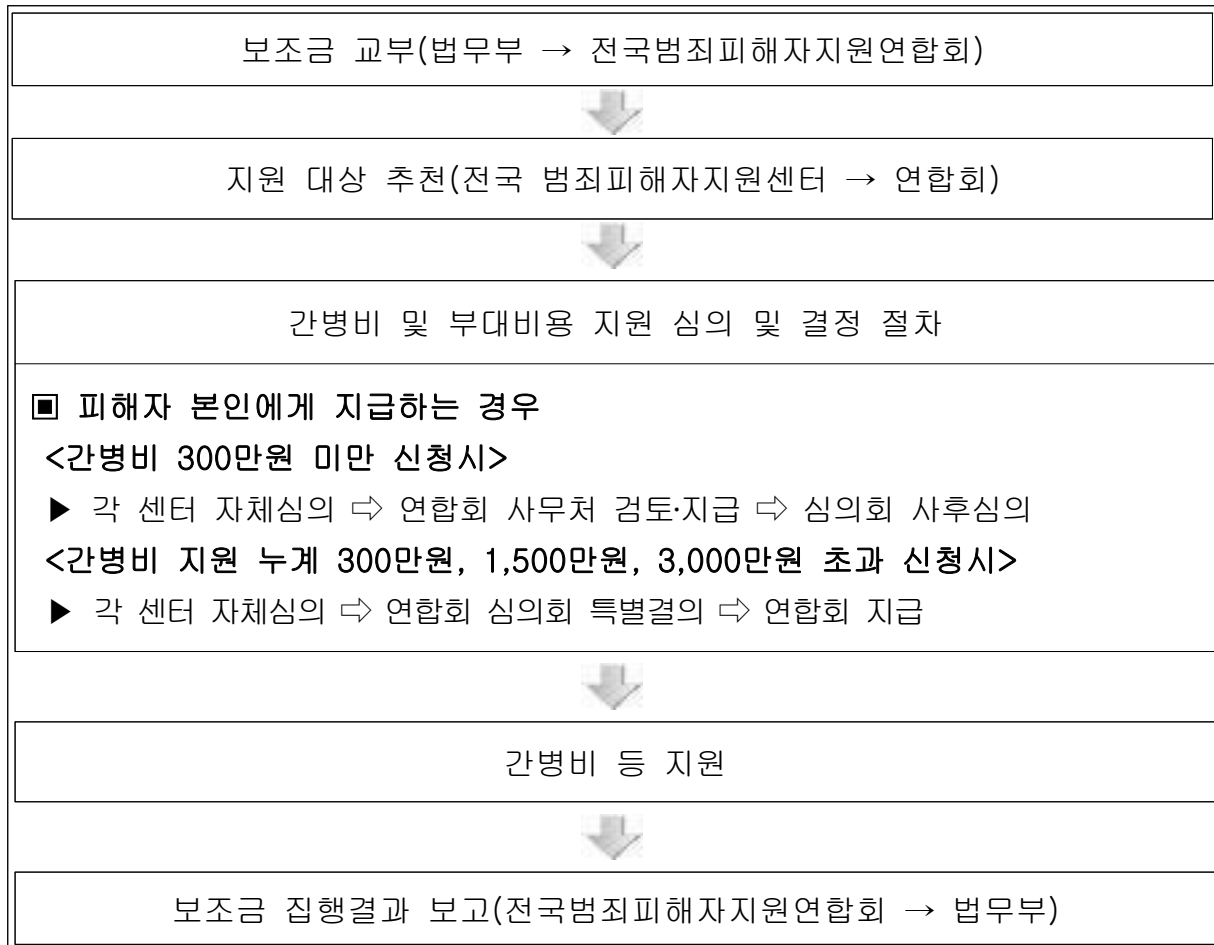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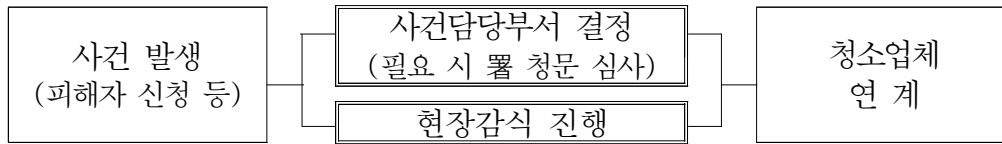
다.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검찰청)



라. 범죄피해자 간병비, 취업지원활동지원비 등 지원



마.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1,099	21,442	24,751	23,751	20,000	
'25~'29		21,442	29,429	30,621	31,897	33,2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평가 정책	결 과
2022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1등급(매우 우수)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자체평가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의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7,796	-	17,796	-	17,796	16,996	95.5	95.5	-	800
2023	17,270	11	17,281	-	17,281	17,115	99.0	99.0	-	166
2024	21,099	△140	20,959	-	20,959	20,518	97.9	97.9	-	441
2025	21,442	-	21,442	-	21,442	20,271	94.5	94.5	-	1,1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12,991	12,991	12,991	12,991	-	12,991	12,283	-	708	94.6
2023	13,038	13,038	12,924	12,924	-	12,924	12,597	-	-	96.6
2024	13,820	13,820	13,819	13,819	-	13,819	13,215	-	604	95.6
2025	14,807	14,807	14,807	14,807	-	14,807	14,807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부진사유 ·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제적 지원 건수 및 지급액 감소
2023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4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5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1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1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검찰청	남수연	임종훈	김은아
		인권기획담당관실	02-3480-2329	02-3480-2966	02-3480-2958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424	3,450	3,450	3,277	3,277	△173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3,440	3,424	-	16	3,450	3,450	3,450	3,357	3,450	3,357	-	93	3,277
· 형사조정위원 수당	2,413	3,353	3,351	-	2	3,363	3,363	3,363	3,280	3,363	3,280	-	83	3,200
· 형사조정위원 교육	24	24	24	-	-	24	24	24	24	24	24	-	-	24
· 공증수수료	21	21	7	-	14	21	21	21	11	21	11	-	10	11
· 형사조정 지도감독	42	42	42	-	-	42	42	42	42	42	42	-	-	42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3,440	3,424	-	16	3,450	3,450	3,450	3,357	3,450	3,357	-	93	3,277
· 일반수용비(210-01)	2,458	3,398	3,382	-	16	3,408	3,408	3,408	3,315	3,408	3,315	-	93	3,235
·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42	42	42	42	42	42	-	-	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0	3,440	3,424	-	16	3,450	3,450	3,450	3,357	3,450	3,357	-	93	3,277
· 형사조정위원 수당	2,413	3,353	3,351	-	2	3,363	3,363	3,363	3,280	3,363	3,280	-	83	3,200
-일반수용비(210-01)	2,413	3,353	3,351	-	2	3,363	3,363	3,363	3,280	3,363	3,280	-	83	3,200
· 형사조정위원 교육	24	24	24	-	-	24	24	24	24	24	24	-	-	24
-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	-	24	24	24	24	24	24	-	-	24
· 공증수수료	21	21	7	-	14	21	21	21	11	21	11	-	10	11
-일반수용비(210-01)	21	21	7	-	14	21	21	21	11	21	11	-	10	11
· 형사조정 지도감독	42	42	42	-	-	42	42	42	42	42	42	-	-	42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42	42	42	42	42	42	-	-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 내역은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에 의해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 회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제46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 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

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형사조정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8. 26.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안' 의결
 - ※ 종합대책안은 공익 민간법인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형사 화해·중재, 경제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방안 추진
 - 2006. 4. 20.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남부, 대전지검, 부천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 시범실시
 - 2007. 1. 1. 형사조정제도 전국청 자율적 확대 지시, 같은 해 8. 전국청 시행
 - 2008. 9 ~ 10.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형사조정위원 교육
 - 2008. 11. 형사조정제도를 명문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9. 4. 및 11. 이화여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형사조정위원 교육
 - 2009. 11.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로 조정 주체 이관
 - 20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규정 신설
 - 2010. 4. 28 ~ 29.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2010. 8. 15.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 : 형사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이의제도 신설 등
 - 2011. 2. 18. 형사조정위원 교육 교재 및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 2011. 6. ~ 2013. 6.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 2014. 1.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전국적 시행
 - 2014. 1. 형사조정 매뉴얼 제작, 배포
 - 2014. 6.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책자 발간
 - 2014. 6.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및 세미나 실시
 - 2014. 10. 형사조정 조서 및 결정문 표준화 서식 마련(전국 청 시행)
 - 2014. 12. 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 2015. 1. 민·형사의 통합적 해결 도모를 위한 공증제도 연계
 - 2015. 10. ~ 11.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 2016. 6. ~ 7.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실시
 - 2016. 9. 26. 대검찰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
 - 2016. 12. 12. ~ 13. 형사조정기법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
 - 2016. 12. ~ 2017. 4. 형사조정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17. 4.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 시행
 - 2017. 4. '제10회 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료모델로 전파
 - 2017. 6. 1.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VSE) 연례회의('17. 5.) 등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국제적 물모델로 전파

- 2017. 11. 고검 권역별로 기초 교육 실시, 2개 지검(서울중앙, 부산)에서 폭력 등 5개 전문 분야 교육 실시
- 2017. 12. 관련 법률·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실무 사례 등을 추가한 「형사조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및 2018. 11. 증보판 발간
- 2018. 11. 고검 권역별로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전문분야 교육 실시
- 2019. 02. '한국 형사조정 표준안' 검찰협력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의 표준모델로 채택
- 2019. 10.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전문화 교육 실시
- 2020. 03.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상 형사조정 관련 정보의 전산화(형사조정위원, 조정 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 계산 등 기능 개선)
- 2020. 8.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 및 기초 교육 실시
- 2021. 11.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심화 교육 실시
- 20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배포,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022. 11.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
- 2023. 10. ~ 11.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
- 2023. 12.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발 교재(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2024. 4.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2024. 11.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
- 2025. 4. 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책자 재배포
- 2025. 11.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20	3,540	3,440	3,450	3,2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고소사건 분쟁당사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형사조정위원 수당 : ('25) 3,363백만원, → ('26) 3,200백만원, 163백만원 감액
- ② 형사조정위원 교육 : ('25) 24백만원 → ('26) 24백만원, 전년동
- ③ 공증 수수료 : ('25) 21백만원 → ('26) 11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④ 형사조정 지도감독 : ('24) 42백만원 → ('25) 42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의뢰건수 : 70,878건 / 성립건수 : 36,719건 / 불성립건수 : 22,070건
2023	의뢰건수 : 69,528건 / 성립건수 : 36,935건 / 불성립건수 : 21,078건
2024	의뢰건수 : 68,220건 / 성립건수 : 36,860건 / 불성립건수 : 20,278건
2025	의뢰건수 : 62,500건 / 성립건수 : 34,626건 / 불성립건수 : 19,256건

○ 형사조정위원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신설

- 2022.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
- 2023.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심화 교육 실시

- 2024.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기초 교육 실시

- 2025.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교육 실시

○ 형사조정의 질적 성장 유도 지속적 유도

- 우수청 선정 시 교육 이수율,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요소 반영

-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개선 방안 일선 청 담당자 송부

-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일선 청 배포 및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편의 및 만족을 고려한 다양한 형사조정제도 지속 추진

- 야간·즉일·찾아가는 조정 및 형사조정 기간 완화, 조기 활용 등 제도 개선으로 형사조정 의뢰건수 증가

- 의료, 노동, 건축, 여성 등 전문분야별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강화

- 형사조정위원의 자격·경력, 조정능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검 권역별 기본·심화교육 분리진행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강좌 추가

○ 형사조정의 질적 성장 지속 유도

- 우수청 선정 시 교육 이수율,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요소 반영

- 분기별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격려 계속

○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 합의 사항 이행,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형사조정과 공증을 연계

- 지속적인 일선 청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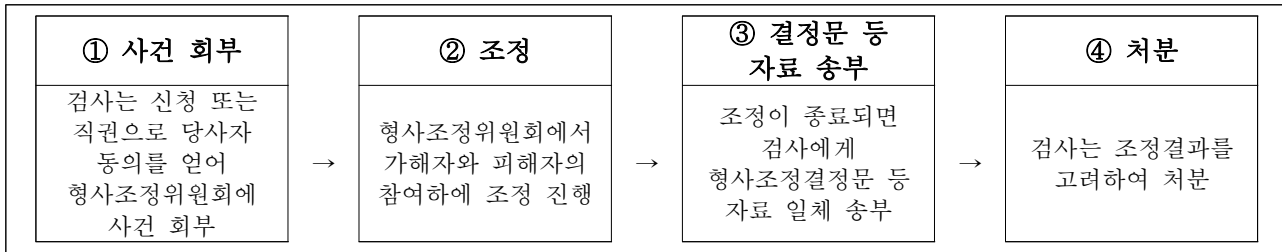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제정하여, 그동안 전국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해온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2009. 11. 10.부터 검찰청으로 이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촉

○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500	3,450	3,596	3,557	3,741	X
'25~'29	X	3,450	3,450	3,450	3,450	3,4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 형사조정 의뢰건수, 성립건수 향상을 도모하고, 야간·즉일·찾아가는 조정 등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중구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이를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실현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함양 및 조정 노하우 공유를 위하여 전문교육 내실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23) : 미흡 - 형사조정성립건수 달성률 저조(62.8%)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620	-	4,620	-	4,620	3,218	69.7	69.7	-	1,402
2023	3,220	320	3,540	-	3,540	3,511	99.2	99.2	-	29
2024	2,500	940	3,440	-	3,440	3,424	99.5	99.5	-	16
2025	3,450	-	3,450		3,450	3,357	97.3	97.3		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기피 현상으로 비대면조정을 병행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예산 집행률 감소 * 대면조정에 비해 조정위원 참여 수가 적은 비대면 조정이 병행됨으로써 조정위원 수당 지급액 감소
2023	- 형사조정위원 수당 부족으로 320백만원 계획변경 * 코로나19 상황 중 대면조정 대폭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23년 예산이 감액되어 수당 부족 상황 발생
2024	- 형사조정위원 수당 부족으로 940백만원 계획변경 * 코로나19 상황 중 대면조정 대폭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24년 예산이 감액되어 수당 부족 상황 발생
2025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범죄피해구조금 (1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2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구조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 구조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이진선 서기관	하태균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43	02-2110-364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범죄피해구조금	8,046	9,573	9,573	11,781	11,781	2,208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3	9,573	7,683	-	1,890	11,781	
· 범죄피해구조금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0	129	120	-	9	129	
· 지도점검비	16	16	15	-	1	16	16	16	12	16	12	-	4	16	
○ 비목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3	9,573	7,683	-	1,890	11,781	
·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0	129	120	-	9	129	
·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8	4	8	4	-	4	8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8	8	8	-	-	8	
· 기타보전금(310-04)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0,015	10,015	8,046	-	1,969	9,573	9,573	9,573	7,683	9,573	7,683	-	1,890	11,781	
· 범죄피해구조금	9,870	9,870	7,910	-	1,960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기타보전금(310-04)	9,870	9,870	7,910	-	9	9,428	9,428	9,428	7,552	9,428	7,552	-	1,876	11,636	
·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120	129	120	-	9	129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1	129	129	129	120	129	120	-	9	129	
· 지도점검비	16	16	15	-	1	16	16	16	12	16	12	-	4	16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8	4	8	4	-	4	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8	8	8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제40조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삭제
-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 11. 28.)
 -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 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 중상해 구조금 중 중증의 정신질환의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필요기간 2개월 이상 요건)로 변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5. 3. 21.)
 - 구조금 지급 시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요건 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구조금을 지급
 - ※ 단,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 구조금 산정시 곱하는 개월수 및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구조금 지급액 20% 상향
 -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53	10,015	10,015	9,573	11,78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범죄피해구조금
: ('25) 9,428백만원 → ('26) 11,636백만원, 2,208백만원 증액
- ② 홍보 및 구상권 행사비
: ('25) 129백만원 → ('26) 129백만원, 전년동
- ③ 지도점검 및 간담회
: ('25) 16백만원 → ('26) 16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지급액	구조금 종류별 지급 내역
2022	9,503	유족구조금 138건 지급, 장해구조금 23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8건 지급
2023	8,990	유족구조금 111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4건 지급
2024	7,910	유족구조금 113건 지급, 장해구조금 16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6건 지급
2025	7,552	유족구조금 91건 지급, 장해구조금 17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35건 지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26. 3. 시행 예정)으로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른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015	9,573	10,647	9,000	9,000	
'25~'29		9,573	15,499	16,359	17,267	18,2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구조금의 단계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확대
- 피해자 권리 의무고지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0,553	-	10,553	-	10,553	9,616	91.1	91.1	-	937
2023	10,015	-	10,015	-	10,015	9,125	91.1	91.1	-	890
2024	10,015	-	10,015	-	10,015	8,046	80.3	80.3	-	1,969
2025	9,573	-	9,573	-	9,573	7,688	80.3	80.3	-	1,8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부진(불용사유) : 구조금 지급건수 감소에 따른 불용
2023	- 집행부진(불용사유) : 강력사건 발생 건수 소폭 감소('22년 285,954건→'23년 282,102건)로 인한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 감소에 따른 불용
2024	- 집행부진(불용사유) : '23년 대비 구조금 지급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건별로 피해자의 월 소득액,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금의 특성상 비교적 소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 발생
2025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3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변보호장치 임시안전숙소 민간경호지원	경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생활안전교통국	총경 여개명	경정 조운제	경감 오용석
		여성안전기획과	02-3150-0210	02-3150-0214	02-3150-0215
이전비지원	대검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기획담당관실	남수연	임종훈	김은아
			02-3840-2329	02-3840-2966	02-3480-2958
임시안전숙소	해양경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국	총경 박형민	경정 이명관	경위 임두환
		수사심사과	032-835-2054	032-835-2131	032-835-2331

가.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31	5,540	5,540	5,540	5,400	△140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안
	계 획 (추경)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46	3,446	3,431	-	15	5,540	5,810	5,768	5,810	5,768	-	42	5,400
· 신변보호장치	2,045	2,075	2,060	-	15	2,362	1,943	1,908	1,943	1,908	-	35	1,808
· 이전비	200	250	250	-	-	200	313	313	313	313	-	-	200
· 임시안전숙소	1,201	1,121	1,121	-	-	528	1,104	1,098	1,104	1,098	-	6	942
· 민간경호지원	-	-	-	-	-	2,450	2,450	2,449	2,450	2,449	-	1	2,450
○ 비목별 분류(합계)	3,446	3,446	3,431	-	15	5,540	5,810	5,768	5,810	5,768	-	42	5,400
· 일반수용비(210-01)	3,376	3,376	3,371	-	5	3,020	3,320	3,280	3,320	3,280	-	40	2,950
· 일반용역비(210-14)	-	-	-	-	-	2,450	2,450	2,449	2,450	2,449	-	1	2,450
· 관리용역비(210-15)	70	70	60	-	10	70	40	39	40	39	-	1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46	3,446	3,431	-	15	5,540	5,810	5,768	5,810	5,768	-	42	5,400
· 신변보호장치	2,045	2,075	2,060	-	15	2,362	1,943	1,908	1,943	1,908	-	35	1,808
-일반수용비(210-01)	1,975	2,005	2,000	-	5	2,292	1,903	1,869	1,903	1,869	-	34	1,808
-관리용역비(210-15)	70	70	60	-	10	70	40	39	40	39	-	1	-
· 이전비	200	250	250	-	-	200	313	313	313	313	-	-	200
-일반수용비(210-01)	200	250	250	-	-	200	313	313	313	313	-	-	200
· 임시안전숙소	1,201	1,121	1,121	-	-	528	1,104	1,098	1,104	1,098	-	6	942
-일반수용비(210-01)	1,201	1,121	1,121	-	-	528	1,104	1,098	1,104	1,098	-	6	942
· 민간경호지원	-	-	-	-	-	2,450	2,450	2,449	2,450	2,449	-	1	2,450
-일반용역비(210-14)	-	-	-	-	-	2,450	2,450	2,449	2,450	2,449	-	1	2,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장치 제공
△주거이전 지원 △임시숙소 지원 △민간경호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 수행
- (신변보호장치)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위치 형태의 보호장치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 보호
- (이전비) 보복범죄를 피해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에게 이전비 지원
- (임시안전숙소)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피해 위험이 크지만 당장 거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이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지정한 숙박업소에 임시거주 지원
- (민간경호)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특히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단기간(기본 14일 이내 + 1회 연장 가능) 민간경비업체 밀착 경호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신변보호장치·이전비 지원
 - 2011. 5. 30. '201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확정
 - 2012. 4. 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장치 및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시행
- 임시안전숙소
 - 2015.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숙소 지원(경찰청)
 - 2024. 해양범죄피해자까지 임시숙소 지원 확대(해양경찰청)
- 민간경호지원
 - 2023. 6.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서울·인천·경기지역 시범운영 (경찰청 일반회계 7억원)
 - 2025. 3.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운영 확대(기금 24.5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55	3,564	3,446	5,540	5,4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된 강력범죄 피해자, 신고자 및 증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 |
|--|
| ① 신변보호 장치 : ('25) 2,362백만원 → ('26) 1,808백만원, 554백만원 감액 |
| ② 이전비 :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 전년동 |
| ③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25) 528백만원 → ('26) 942백만원, 414백만원 증액 |
| ④ 민간경호 지원 : ('25) 2,450백만원 → ('26) 2,450백만원, 전년동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변보호장치 지급 14,208건, 이전비 지원 193건, 임시숙소 지원 6,954명(10,202박)
2023	신변보호장치 지급 16,690건, 이전비 지원 170건, 임시숙소 지원 7,038명(10,971박)
2024	신변보호장치 지급 17,510건, 이전비 지원 174건, 임시숙소 지원 7,226명(12,895박)
2025	신변보호장치 지급 21,978건, 이전비 지원 227건, 임시숙소 지원 7,622명(13,797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복범죄 우려가 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및 기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피해 방지 및 대국민 신뢰 제고 도모
- **(신변보호장치)**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결정 및 긴급신고용 스마트 위치 제공으로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 '21년 경찰 112상황실 관제시스템과 위치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22년 위치확인 성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위치 추가도입으로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피해자 안전 확보
 - 신변보호 조치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전비)**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이전비 지원으로 신변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임시안전숙소)**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으로 주거지에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가·피해자를 분리하여 보복범죄 감소 기대, 보호시설 원거리 위치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 **(민간경호 지원)**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등 추가피해 위험이 특히 큰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비업체 밀착 경호를 지원하여 가해자 검거 등 위험

해소 시까지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신변조치 실효성을 제고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변보호장치

- (경찰) 기기 지급 → 112시스템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긴급상황 시 보호 요청(기기 작동) → 상황실 접수 → 지령 및 실시간 위치확인 → 경찰 출동 → 안전 확보
- (검찰)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 확인 ⇨ 희망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로 안내 (관련서류 인계)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담당검사 결재(전결) 받아 비상호출기 지급, 사용방법 설명

○ 이전비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단계	○ 당해 사건을 수사중 또는 기소한 각 청 피해자지원담당자 -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청서 접수
지원단계	○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 인계 -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

○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 발생 → 임시숙소 연계 → 지방청·경찰청 보고 → 숙박비·긴급부대비 지급

○ 민간경호 지원

- 신변보호 신청 → 위험도 판단(담당 수사관, 체크리스트 활용) → 지원 결정(경찰서 심사위원회) → 시도경찰청 승인 → 민간경호원 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446	5,540	4,966	4,966	4,966	
'25~'29		5,540	5,654	5,654	5,654	5,6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위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가해자의 추가 범행 시도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신변보호 신청 연계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편의 제고
- 보복·재범 위험이 큰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발생 최소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55	-	2,955	-	-	-	2,955	2,949	99.8	99.8	-	6
2023	3,564	△ 641	2,923	-	-	-	2,923	2,521	70.7	86.2	-	402
2024	3,446	-	3,446	-	-	-	3,446	3,431	99.6	99.6	-	15
2025	5,540	270	5,810	-	-	-	5,810	5,768	99.3	99.3	-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진술조력인수당 및 치료및자립지원사업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신변보호사업 예산에서 계획변경(△316) - 형사조정위원수당 및 치료및자립지원사업 여비 부족으로 신변보호사업 예산에서 계획변경(△325)
2024	- 해당없음
2025	- 신변보호사업 예산에서 계획변경(△30) -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에서 계획변경(+300)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차경자	이우람	김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02-2110-3852	02-2110-314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51	1,632	1,632	1,821	1,711	79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2	1,652	1,651 [1,493]	-	1	1,632	1,632	1,632	1,629	1,632	1,629	-	3	1,711
· 진술조력인 수당	758	758	758	-	-	758	758	758	758	758	758	-	-	758
· 진술조력인 배치	773	773	773 [615]	-	-	773	773	773	773	773	773	-	-	852
· 진술조력인 양성	101	121	120	-	1	101	101	101	99	101	99	-	3	101
○ 비목별 분류(합계)	1,632	1,652	1,651 [1,493]	-	1	1,632	1,632	1,632	1,629 [1,567]	1,632	1,629 [1,567]	-	3	1,711
· 일반수용비(210-01)	847	867	867	-	-	847	847	847	847	847	847	-	-	847
· 국내여비(220-01)	6	6	5	-	1	6	6	6	6	6	4	-	2	6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6	-	-	6
· 민간경상보조(320-01)	773	773	773 [615]	-	-	773	773	773	773 [710]	773	773 [710]	-	-	8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32	1,652	1,651 [1,493]	-	1	1,632	1,632	1,632	1,629	1,632	1,629	-	3	1,711
· 진술조력인 양성	101	121	120	-	1	101	101	101	101	101	101	-	-	101
- 일반수용비(210-01)	89	109	109	-	-	89	89	89	89	89	89	-	-	91
- 국내여비(220-01)	6	6	5	-	1	6	6	6	6	6	4	-	2	6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6	-	-	6
· 진술조력인 수당	758	758	758	-	-	758	758	758	758	758	758	-	-	758
- 일반수용비(210-01)	758	758	758	-	-	758	758	758	758	758	758	-	-	758
· 진술조력인 배치	773	773	773 [615]	-	-	773	773	773	773 [710]	773	773 [710]	-	-	852
- 민간경상보조(320-01)	773	773	773 [615]	-	-	773	773	773	773 [710]	773	773 [710]	-	-	8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진술조력인 수당)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의사를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 비상근 진술조력인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 (진술조력인 배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피해자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 (진술조력인 양성)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와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등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16(준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를 운용
- 2012년 국회 성폭력대책특위에서 국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위해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사업은 20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법무부 진술조력인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여·야 합의
- 20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 2013. 12. 진술조력인 48명 자격부여
- 20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 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2015.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사업 추진
- 20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참고인, 증인까지 진술조력 지원대상 확대

- 2022.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지원대상인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장애인에서 모든 범죄(가정폭력 등) 피해자인 장애인으로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3세 미만의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까지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19세 미만'으로 확대
- 2025. 12. 기준 진술조력인 총 181명 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8	1,360	1,632	1,632	1,711

- 기타: '21년 4,184건 → '22년 3,822건 → '23년 4,231건 → '24년 4,517건 → '25년 4,715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양성, 수당), 민간보조(배치)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양성, 수당),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배치)
- 사업 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및 범죄피해자인 장애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진술조력인 배치	보조	전국범죄 피해자지원 연합회	852	1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진술조력인 수당
: ('25) 758백만원 → ('26) 758백만원, 전년동
- ② 진술조력인 배치
: ('25) 773백만원 → ('26) 852백만원, +79백만원
- ③ 진술조력인 양성
: ('25) 101백만원 → ('26) 10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형사사법지원 실적 (단위:건)	목표	42,916	42,941	-	-	-	과거지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진술조력 활동보고서, 검찰청 통계
	실적	42,983	41,381	-	-	-			
	달성도	100.2	94.8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월, 5월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7월~11월 신규 양성(14명) ○ 총 3,822건 지원 (전년 대비 8.7% 감소, '20년 대비 42.4% 증가)
2023	○ 1월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7월~11월 신규 양성(15명) ○ 총 4,231건 지원 (전년 대비 10.7% 증가)
2024	○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원스톱솔루션센터, 7월), '24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4명, 8월) ○ 총 4,517건 지원 (전년 대비 6.8% 증가)
2025	○ '25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2명, 9월) ○ 총 4,715건 지원 (전년 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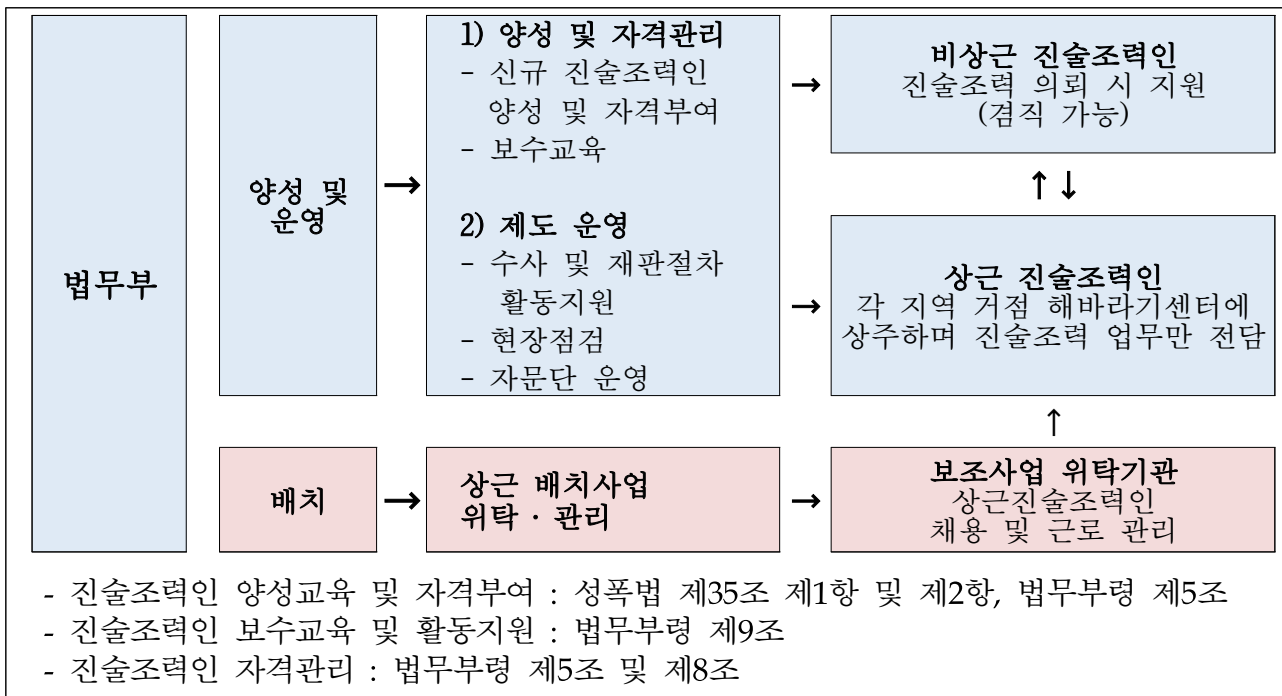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3. 1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조력을 받지 못하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표현하도록 지원 가능
-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연 10명 이상) 심리, 수화, 언어 치료,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진술조력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채용 활성화로 각 지역에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진술권을 보장하는 진술조력 서비스를 각 지역에서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632	1,632	1,665	1,698	1,732	
'25~'29		1,632	1,768	1,795	1,823	1,85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1. 2. 국정감사	진술조력인의 수요 증가 추세 고려 상근 진술조력인 증원 및 수당 예산 충분히 확보할 필요	
- '23. 10. 국정감사	진술조력인 명부의 진술조력인 전문 분야가 '장애인 및 아동'으로만 기재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24. 10. 국정감사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평가 정책	결 과
2022년 법무부 자체평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보통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다소미흡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진술조력인의 수요 증가 추세 고려 상근 진술조력인 증원 및 수당 예산 충분히 확보할 필요	'21. 3. 인천 지역, '22. 2. 서울남부, '22. 5. 서울북부 지역에 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배치
진술조력인 명부에 '장애인 및 아동'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력인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여 피해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전문분야를 기재하도록 개선할 것	진술조력인 명부에 진술조력인의 관심분야 항목을 추가하여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세분화하고, 아동은 '학력 전 아동, 학령기 아동'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선하였음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 및 진술조력 수요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술조력 전담 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
-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수성 등 전문교육을 통하여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85.88점(보통)
 - 평가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평가시기 : '22. 3월)

12) 부처 건의사항

- 상근 진술조력인의 전국적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처우 개선 지속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358	-	1,358	-	1,598	1,592	99.6	99.6	-	6
2023	1,360	-	1,360	-	1,670	1,635	97.9	97.9	-	35
2024	1,632	20	1,652	-	1,652	1,651	99.9	99.9	-	1
2025	1,632	-	1,632	-	1,632	1,629	99.8	99.8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896	-	896	896	-	896	682	-	213	76.1
2023	849	-	849	849	-	849	675	-	173	79.5
2024	773	-	773	773		773	615	-	158	79.6
2025	773	-	773	773	-	773	710	-	62	9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진술조력 수요 증가로 진술조력인 수당 240백만원 전용 - 상근 진술조력인 퇴사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3	- 진술조력 수요 증가 등으로 진술조력인 수당 등 310백만원 전용 - 상근 진술조력인 퇴사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4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 예산 부족으로 20백만원 전용 - 상근 진술조력인 퇴사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안전인권정책관 (성평등가족부)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안전인권정책관	송지은	-	이우주
		성폭력방지과	02-2100-6391	-	02-2100-6397
		“	“	조의성	박정희
				02-2100-6395	02-2100-639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13	39,413	39,413	40,394	981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35,914]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8,521]	39,413	39,367 [38,521]	-	46	40,394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181	14,181	14,170 [13,742]	-	11	14,980	14,980	14,980	14,980 [14,674]	14,980	14,980 [14,674]	-	-	16,060
·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	19,465	19,465	19,465 [18,755]	-	-	20,035	20,035	20,035	20,035 [19,683]	20,035	20,035 [19,683]	-	-	20,622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 비목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35,914]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8,521]	39,413	39,367 [38,521]	-	46	40,394
·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 일반연구비(260-01)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6,710	36,710	36,706 [35,604]	-	4	38,370	38,170	38,170	38,170 [37,482]	38,170	38,170 [37,482]	-	-	40,037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72	472	465 [168]	-	7	185	385	385	385 [227]	385	385 [227]	-	-	1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354	37,354	37,313	-	41	39,413	39,413	39,413	39,367	39,413	39,367	-	46	40,394

	2024					2025								2026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35,914]	-					[38,521]		[38,521]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지원	14,181	14,181	14,170 [13,742]	-	11	14,980	14,980	14,980	14,980 [14,674]	14,980	14,980 [14,674]	-	-	16,06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071	14,071	14,067 [13,640]	-	4	14,891	14,891	14,891	14,891 [14,592]	14,891	14,891 [14,592]	-	-	15,971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10	110	103 [102]	-	7	89	89	89	89 [82]	89	89 [82]	-	-	89
•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운영지원	19,465	19,465	19,465 [18,755]	-	-	20,035	20,035	20,035	20,035 [19,683]	20,035	20,035 [19,683]	-	-	20,622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9,103	19,103	19,103 [18,689]	-	-	19,939	19,739	19,739	19,739 [19,537]	19,739	19,739 [19,537]	-	-	20,526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62	362	362 [66]	-	-	96	296	296	296 [146]	296	296 [146]	-	-	96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536	3,536	3,536 [3,275]	-	-	3,540	3,540	3,540	3,540 [3,352]	3,540	3,540 [3,352]	-	-	3,540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2	-	30	172	172	172	140	172	140	-	32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일반연구비(260-01)	-	-	-	-	-	686	686	686	672	686	672	-	14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를 신속히 채취하기 위한 응급키트를 제작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에 배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제28조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

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설치 지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
- '10~'19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 '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14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
- '15년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17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수립
- '18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 보완대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18.3월)
- '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1.7.13)
 - ※ 성폭력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재발방지대책 제출
- '25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및 신규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172	37,537	37,354	39,413	40,394

- 기타 : 성폭력피해 상담소(99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5개소), 해바라기센터(41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0,222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25) 39,413백만원 → ('26) 40,394백만원, 981백만원 증액
-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16,060백만원, ②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0,622백만원, ③ 의료비 등 지원 3,540백만원, ④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17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91.9	92.0	92.9	92.9	만족도 지표특성을 고려하여 '24년 실 적치와 '25년 목표 치의 평균으로 '25 년과 동일한 목표치 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점수 평균	설문조사 결과
	실적	신규	92.0	92.8	93.2	-			
	달성도	-	100.1	100.9	100.3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실적(건)	목표	신규	48,014	42,000	42,000	42,000	'26년 의료비 및 치 료회복프로그램 지 원예산이 전년동으 로 '25년과 동일한 목표치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건수의 총합계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신규	48,939	47,516	-	-			
	달성도	-	101.9	113.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군 성폭력피해 특화상담소 1개소 신규 설치 ○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추진
2023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
2024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충남) 1개소 신규 설치
2025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전남) 1개소 신규 설치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자립지원금·수당 지원 등 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및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회복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40,222백만원)	=> (16,060백만원)	17개 시도	=> (16,060백만원)	상담소 99개소 보호시설 35개소
	=> (20,622백만원)		=> (20,622백만원)	해바라기센터 41개소
	=> (3,540백만원)		=> (3,540백만원)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8조(의료비 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부처		수행기관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응급키트 제작 및 배포)	=> (배포) <= (배포요청)	17개 시도	=> (배포) <= (배포요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37,354	39,413	38,801	38,000	36,000	
'25~'29		39,413	45,138	47,723	50,807	54,1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바라기센터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난 해소를 위해 수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22년 국정감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3년 결산 여가위)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4년 국정감사)
 -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조치가 제한되어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된 곳이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4년 국정감사)
-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022년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 : 우수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센터 인력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 운영실적 반영('22.6월),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 등 병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3년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 *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23년) : 개당 7.5만원 → 10만원
 - ** 해바라기센터 예산 증액 : ('22년) 174억원 → ('23년) 186억원(12억원 ↑, 7%)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기사업계획('25~'29년)에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해바라기센터 지침 개정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 연령 기준을 완화함
 -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및 인근 해바라기센터 의료진의 응급키트 활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응급키트 교육(거점센터)을 연중 추진함

- * 대면교육('24.11.22.) 및 비대면 교육 실시, 전담의료기관에 응급키트 관련 설명서 및 동영상 기 배포('24.3.20.)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지원되는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24.1월) 하고 퇴소자립지원금 단가 인상(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월50만원, 신설)을 '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지원을 강화함
- * (기존)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 (완화)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통합지원체계 마련(상담 및 치료 전문가 확충, 시설 접근성 제고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 향상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172	-	36,172	-	36,172	35,511 [33,500]	98.2	98.2	-	661
2023	37,537	-	37,537	-	37,537	36,732 [35,182]	97.9	97.9	-	805
2024	37,354	-	37,354	-	37,354	37,313 [35,914]	99.9	99.9	-	41
2025	39,413	-	39,413	-	39,413	39,367 [37,709]	99.9	99.9	-	46

□ 출연·보조사업 등 실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35,322	35,322	34,706	34,706	360	35,066	32,695	158	2,213	92.6
2023	37,365	37,365	36,593	36,593	158	36,751	35,043	373	1,335	93.8
2024	37,182	37,182	37,171	37,171	373	37,544	35,772	295	1,477	96.2
2025	38,355	38,555	38,555	38,555	295	38,850	37,709	150	991	97.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66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6),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616)
2023	- 불용 805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3),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772)
2024	- 불용 4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11)
2025	- 불용 46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2),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4)

라. 기타 추가자료

-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사업 설명자료
- (2)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설명자료

참고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요

□ 해바라기센터 개요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추진주체) 성평등가족부, 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
- (기능별 센터 유형)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25.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 ~	2004 ~	2010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개소수	18개	7개	16개
근무 형태	365일 24시간	09:00 ~ 18:00 * 18시 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365일 24시간
경찰 근무	여경 배치 (상주)	여경 출장 지원	여경 배치 (상주)
주요 업무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 (여경 출장으로 수사지원 가능)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지원

□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현황

- (41개소 운영) 위기지원형 18개소, 아동형 7개소, 통합형 16개소

< 시·도별 센터 설치 현황 >

(‘25.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 수	41	5	2	2	3	2	1	1	6	3	2	2	3	3	3	2	1

참고 2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개요

□ 사업 개요

-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기능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운영
	장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 지원 등
	장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특별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 자립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지원

○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비용, 성매개 감염 검사 등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무료법률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

※ 의료·간병·치료회복프로그램 비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무료법률지원 : 양성평등기금

사 업 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36-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5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차경자	박승혁	고재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7	02-2110-3648	02-2110-314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334	13,495	13,225	12,145	12,145	△1,350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60	11,740	11,334		406	13,495	13,225	13,225	12,113	13,225	12,113	-	1,112	12,145	
· 국선변호사 수당	7,585	6,765	6,369		396	7,585	7,315	7,315	6,205	7,315	6,205	-	1,110	6,535	
· 교육, 홍보, 점검	59	59	49		10	59	59	59	57	59	57	-	2	59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4,916	4,916	4,916 [4,182]		-	5,851	5,851	5,851	5,851	5,851	5,851	-	-	5,551	
○ 비목별 분류(합계)	12,560	11,740	11,334		406	13,495	13,225	13,225	12,113	13,225	12,113	-	1,112	12,145	
· 일반수용비(210-01)	7,609	6,775	6,378			7,595	7,325	7,325	6,215	7,325	6,215	-	1,110	6,545	
· 임차료(210-07)	4	-	-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26	17		9	26	26	26	25	26	25	-	1	26	
· 기타운영비(210-16)	8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4	5	4	-	1	5	
·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	18	18	18	18	18	18	-	-	18	
· 민간경상보조(320-01)	4,916	4,916	4,916 [4,182]		-	5,851	5,851	5,851	5,851	5,851	5,851	-	-	5,55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560	11,740	11,334		406	13,495	13,225	13,225	12,113	13,225	12,113	-	1,112	12,145	
· 국선변호사 수당	7,585	6,765	6,369		396	7,585	7,315	7,315	6,205	7,315	6,205	-	1,110	6,535	
-일반수용비(210-01)	7,585	6,765	6,369		396	7,585	7,315	7,315	6,205	7,315	6,205	-	1,110	6,535	
· 교육, 홍보, 점검	59	59	49		10	59	59	59	57	59	57		2	59	
-일반수용비(210-01)	24	10	9		1	10	10	10	10	10	10		-	10	
-임차료(210-07)	4	-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26	17		9	26	26	26	25	26	25	-	1	26	
-기타운영비(210-16)	8	-	-		-	-	-	-	-	-	-	-	-	-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국내여비(220-01)	5	5	5		-	5	5	5	4	5	4	-	1	5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	18	18	18	18	18	18	-	-	18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4,916	4,916	4,916 [4,182]		-	5,851	5,851	5,851	5,851	5,851	5,851	-	-	5,551
-민간경상보조(320-01)	4,916	4,916	4,916 [4,182]		-	5,851	5,851	5,851	5,851	5,851	5,851	-	-	5,5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선변호사 수당)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 (교육, 홍보, 점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 및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 제도 홍보,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관리·감독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여 법률조력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전체)

② 추진경위

- ('12. 3.)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13. 6.)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3.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시행
- ('14. 9.)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추가
- ('20. 1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추가
- ('21. 3.)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21. 6.) 「장애인복지법」 개정, 지원 대상에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 추가
- ('23.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지원 대상에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추가
- ('23. 10.) 「성폭력처벌법」 개정,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24. 1.)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원 대상에 스톱킹범죄 피해자 추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47	9,707	12,560	13,495	12,145

- 기타: '24년 37,605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각급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선전담 변호사 운영	보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5,551	10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 ('25) 7,585백만원 → ('26) 6,535백만원, 1,050백만원 감액
- ② 교육, 홍보, 점검
: ('25) 59백만원 → ('26) 59백만원, 전년동
- ③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 ('25) 5,851백만원 → ('26) 5,551백만원, 300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신규	16,195	17,550	18,076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4,898	17,239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2명 증원(총 35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및 실태조사 제도 도입 ○ 총 39,161건 지원
2023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8명 증원(총 43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총 37,150건 지원
2024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퇴직인원 충원(총 43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총 37,605건 지원
2025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 증원(총 49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38,507건 지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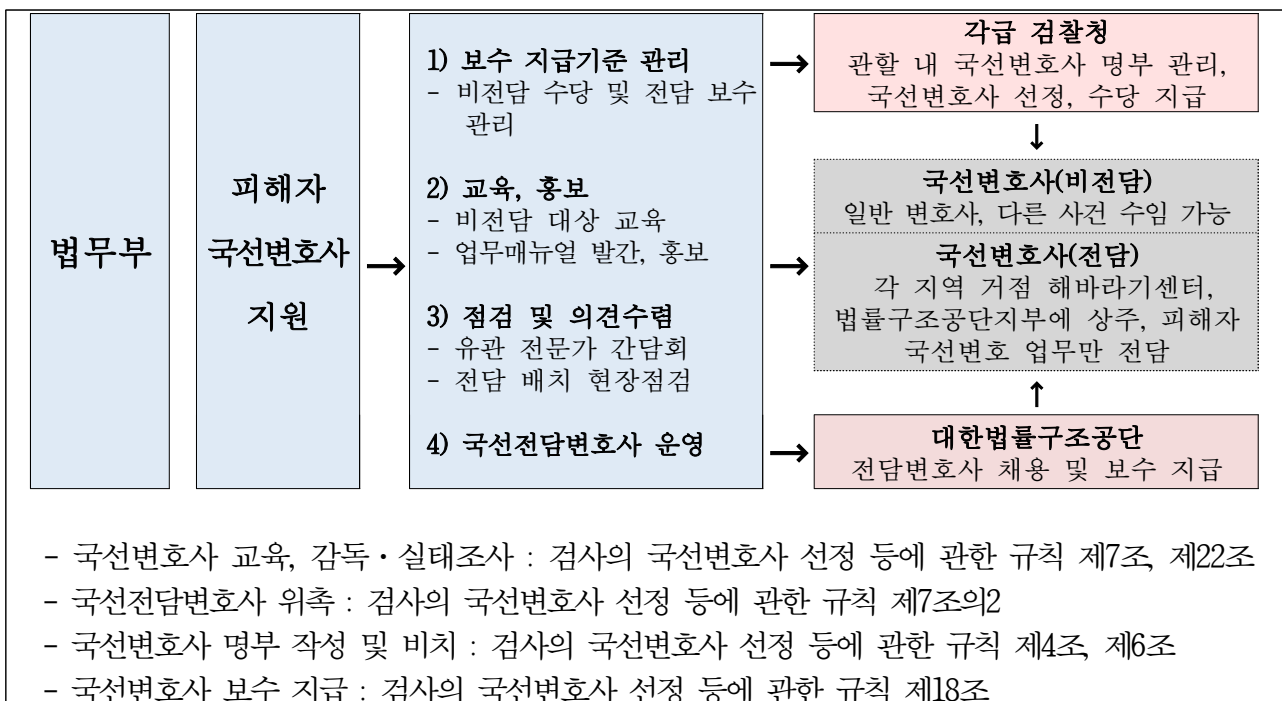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25)에 따른 개선 여부 검토 및 제도 관리
만전,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서비스의 품질 제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2,560	13,495	12,811	13,495	10,000	
'25~'29		13,495	13,825	14,112	14,241	14,3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선전담변호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을 할 것(예결위, '22결산)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관련 예산 비목을 사업 추진방식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법사위, '24예산)
 - 고소장 작성 대행 등의 초기 단계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예정처, '23결산)
-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감사
 - '22년 법무부 자체평가 : 보통
 - '23년 법무부 자체평가 : 다소 미흡
 - '24년 법무부 자체평가 : 우수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월급 12년째 동결,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전환이 우선될 필요(한국일보, '24. 2.)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지난 10년간 월 500만 원대로 급여가 동결되어 처우 개선 시급(법률신문, '24. 7.)
-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4년 예산안에 인건비 등 8개월분만 편성
 -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예산 비목을 일반용역비(210-14)로 변경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를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수준으로 현실화('25. 1.)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증원 필요성 검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85.9점

12) 부처 건의사항

-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근거를 두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어 '26. 6. 시행 예정이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에 대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187	△240	8,947	-	8,947	8,482	94.8	94.8	-	465
2023	9,707	-	9,707	-	9,707	9,704	99.9	99.9	-	3
2024	12,560	△820	11,740	-	11,740	11,334	96.5	96.5	-	406
2025	13,495	△270	13,225	-	13,225	12,113	91.6	91.6	-	1,1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3,446	3,446	3,446	3,446	-	3,446	3,011	-	435	87.4
2023	4,233	4,233	4,233	4,233	-	4,233	3,766	-	467	89.0
2024	4,916	4,916	4,916	4,916	-	4,916	4,182	-	734	85.1
2025	5,851	5,851	5,851	5,851	-	5,851	5,155	-	696	8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비상근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산이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 240백만원 계획 변경하여 집행 -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으로 기본업무 중 일부 업무만 수행한 경우 보수 미지급 사례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지도점검 축소 등 사유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2023	- 해당없음
2024	- 형사조정위원 수당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 800백만원 계획 변경하여 집행 -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예산 부족으로 20백만원 전용하여 집행
2025	-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 강화 사업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 270백만원 계획 변경하여 집행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금관리비 (711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0	300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서혜주 서기관	김도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기금관리비	48	48	60	60	12	2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4	48	34	-	14	60
·사무원 인건비	31	31	31	-	-	35	35	21	35	21	-	14	41
·기금 업무 등	17	17	17	-	-	13	13	13	13	13	-	-	19
○ 비목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4	48	34	-	14	60
·상용임금(110-03)	26	26	28	-	-	28	28	18	28	18	-	10	34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5	5	5	5	5	-	-	11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	4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0.5
·국내여비(220-01)	3	3	3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3	6	3	-	3	7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4	48	34	-	14	60
·사무원 인건비	33	33	33	-	-	35	35	21	35	21	-	14	41
·-상용임금(110-03)	28	28	28	-	-	28	28	18	28	18	-	10	34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0.5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3	6	3	-	3	7
·기금 업무지원	15	15	15	-	-	13	13	13	13	13	-	-	19
·-일반수용비(210-01)	7	7	7	-	-	5	5	5	5	5	-	-	11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	4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에서 사무보조원 1인을 고용하여 직접 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기금 운용 추구
-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다양화 방안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	48	48	48	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① 사무보조원
: ('25) 35백만원 → ('26안) 41백만원, 6백만원 증액
- ② 기금 업무
: ('25) 13백만원 → ('26안) 19백만원, 6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감독 강화 및 기금 집행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기금운용 도모,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8	48	48	48	48	
'25~'29		48	48	48	48	4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48	-	48	-	-	-	48	41	85.4	85.4	-	7
2023	48	-	48	-	-	-	48	46	95.8	95.8	-	2
2024	48	-	48	-	-	-	48	48	99.1	99.1	-	-
2025	48	-	48	-	-	-	48	35	72.9	72.9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3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4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5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화금융기관 예치 (971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30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서혜주 서기관	천무용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4254

가.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통화금융기관 예치	50,692	45,851	42,609	42,386	△5,653	△1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851	45,851	54,106	-	-	48,039	48,039	57,345	48,039	57,345	-	-	42,386
-한국은행예치금(7001)	-	-	2,106	-	-	-	-	1,345	-	1,345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7002)	45,851	45,851	52,000	-	-	48,039	48,039	56,000	48,039	56,000	-	-	42,386
○ 비목별 분류(합계)	45,851	45,851	54,106	-	-	48,039	48,039	57,345	48,039	57,345	-	-	42,386
-한국은행예치금(7001)	-	-	2,106	-	-	-	-	1,345	-	1,345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7002)	45,851	45,851	52,000	-	-	48,039	48,039	56,000	48,039	56,000	-	-	42,3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5,851	45,851	54,106	-	-	48,039	48,039	57,345	48,039	57,345	-	-	42,386
-한국은행예치금(7001)	-	-	2,106	-	-	-	-	1,345	-	1,345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7002)	45,851	45,851	52,000	-	-	48,039	48,039	56,000	48,039	56,000	-	-	42,3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통화금융기관에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② 추진경위

- 법무부 자산운용지침 제정('11. 5.), 연기금투자폴*에 전액 위탁·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부족한 기금운용인력을 보완하고 투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연기금투자폴 예탁방안 채택
- 연기금투자폴 상품 중 입출금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유리한 MMF(수익증권의 일종)에 투자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연기금투자폴 전담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하여 완전위탁편드로 운용중('22.~)

* 연기금투자폴 :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된 투자폴 운영위원회가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금 자산운용 전문시스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805	28,041	45,851	48,039	42,3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통화금융기관 예치 : 42,386백만원 (5,653백만원 감, △11.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2022	-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502백만원 이자 발생
2023	-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1,399백만원 이자 발생
2024	-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680백만원 이자 발생
2025	-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1,637백만원 이자 발생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여유자금운용으로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관련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5,851	48,039	23,253	6,991	6,295	
'25~'29		48,039	33,881	24,134	24,261	28,0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805	-	14,805	-	-	-	14,805	32,766	221.3	221.3	-	-
2023	28,041	-	28,041	-	-	-	28,041	50,692	180.8	180.8	-	-
2024	45,851	-	45,851	-	-	-	45,851	54,106	118.0	118.0	-	-
2025	48,039	-	48,039	-	-	-	48,039	57,345	119.4	119.4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결산상 잉여금 1,266백만원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 31,500백만원
2023	- 결산상 잉여금 3,692백만원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 47,000백만원
2024	- 결산상 잉여금 2,106백만원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 52,000백만원
2025	- 결산상 잉여금 1,345백만원 한국은행예치, 통화금융기관 56,000백만원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